2011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작년 한 해 동안의 언론중재위원회 성과를 담은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을 2012년에도 발간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에 의거,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기관으로 설립된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중재 및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왔습니다. 그 활동의 결과 작년 한 해 2,124건의 조정 및 113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였고, 426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정의 경우,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처리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으며 중재 역시 조정과 더불어 언론분쟁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지난 해 실적과 관련해,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숫자만 놓고 본다면, 언론보도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또, 지난 해 70.9%를 기록한 조정성공률로 인해 우리 언론보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조정건수 및 70.9%를 기록한 조정성공률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언론문화가 한층 성숙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및 중재사건이 많다는 것은 우리 언론보도가 과거보다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보다 신장되었으며 위원회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70%를 상회하는 조정성공률 또한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유와 이성적인 판단이 언론사 및 피해자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쟁해결에 있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극단적인 결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성숙한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

쟁을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회의 실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분쟁의 현황은 위원회의 처리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위원회는 좀 더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례집 발간에 있어서 2011년에 처리된 사건 중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42건을 엄선하여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수록합니다. 나머지 사례는 전수 목록에서 대강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사례집을 e-Book 형태로만 발간합니다. 종이책 형태는 수록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부피가 커지고 휴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0세기의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전자책은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며 활용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언론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학계, 언론계 및 법조계 등에 본 사례집이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2년 5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차 례

제1부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15

제2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63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경북대학교노동조합 對 ㈜디지틀조선일보
(2011서울조정15 · 16 정정 · 손배청구) 64

사례 2 신청인이 심장병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송명근 對 ㈜에스비에스 (2011서울조정40 정정청구) 67

사례 3 마의 태자가 경주김씨라고 보도했으나, 부안김씨이다.
부안김씨대종회 對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2011서울조정58 반론청구) 72

사례 4 구당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김남수 對 ㈜에스비에스 (2011서울조정61 정정청구) 77

사례 5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의 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신청인 기관의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對 부산일보㈜ (2011부산조정1 정정청구) 82

사례 6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휴양소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특혜매입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박장규 對 ㈜중앙일보사 (2011서울조정75 · 76 · 77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 87

사례 7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이익 빼가기에만 몰두"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對 ㈜한겨레신문 (2011서울조정226 정정청구) ····· 93

사례 8 경찰관인 신청인이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임대료를 받아왔으며, 경찰관 영리활동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박○○ 對 대전문화방송㈜ (2011대전조정6 · 7 정정 · 손배청구) ····· 101

사례 9 신청인 회사가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터넷쇼핑몰 광고를 검색광고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엔에이치엔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對 ㈜머니투데이 (2011서울조정387 정정청구) ····· 105

사례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파탄을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對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2011서울조정465 정정청구) ····· 111

사례 11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부당인출 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 외 385명 對 ㈜미디어오늘 (2011서울조정499 · 500 정정 · 손배청구) ····· 117

사례 12 건국대 인근 주상복합 65평형의 거래가격에 대한 신청인(공인중개사)의 발언을 70평형에 대한 발언으로 왜곡 보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원○○ 對 씨제이이앤엠㈜ (tvN) (2011서울조정502 · 503 정정 · 손배청구) ····· 123

사례 13 해병대가 해병대 소속 연예인의 병영생활 화보집을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해병대사령부 對 ㈜에스비에스 (2011서울조정530 정정 · 손배청구) ····· 127

사례 14 신청인이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협박하여 고소당했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돌연 취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 對 ㈜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2011서울조정547 · 548 정정 · 손배청구) 130

사례 15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추가삭감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對 ㈜동아일보 (2011서울조정645 정정청구) 134

사례 16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황우석 對 ㈜한경닷컴 (2011서울조정735 정정청구) 138

사례 17 남해군수인 신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약속을 해주고 부당한 일을 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정현태 對 정○○ (남해뉴스) (2011경남조정83 · 84 정정 · 손배청구) 141

사례 18 민주당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對 ㈜조선일보사 (2011서울조정1067 정정청구) 149

사례 19 한 · 미 FTA 공식서명 뒤, 외교통상부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외교통상부 對 한겨레신문㈜ (2011서울조정1128 정정청구) 155

사례 20 기장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씨름단 해체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전 씨름단 감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노○○ 對 ㈜씨앤비미디어 (CNB NEWS)
(2011서울조정1165 · 1166 추후 · 손배청구) 160

사례 21 신청인 경찰서가 미군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동두천경찰서 對 ㈜민중의소리 (2011서울조정1203 정정청구) 165

사례 22 신청인 회사의 춘천시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아일랜드 對 공○○ (신대한 NEWS) (2011서울조정1226 정정청구) ····· 170

사례 23 과일즙 당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카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잘못 보도했다.
㈜제이○○ 對 한겨레신문㈜ (2011서울조정1308 정정청구) ····· 175

사례 24 신청인 학회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현대사학회 對 한겨레신문㈜
(2011서울조정1350 · 1351 정정 · 반론청구) ····· 179

사례 25 신청인이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고○○ 對 ㈜에스비에스
(2011서울조정1363 · 1364 · 1365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 187

사례 26 복지시설 원장인 신청인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잘못된 재판인 것처럼 보도했다.
김○○ 對 ㈜매일방송 (MBN) (2011서울조정1423 · 1424 정정 · 손배청구) ····· 193

사례 27 신청인이 중앙일보 '공신' 프로젝트 덕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도 컸다.
이○○ 對 ㈜중앙일보사 (2011서울중재5 · 6 정정 · 반론청구) ····· 197

사례 28 목사인 신청인이 아동학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누리교회, 피○○ 對 ㈜오마이뉴스 (2011서울중재27 추후청구) ····· 202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29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허○○ 對 한국방송공사 (KBS-2TV) (2011서울조정658 · 659 정정 · 손배청구) ····· 209

사례 30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에스비에스 (2011서울조정697 손배청구) ····· 213

사례 31 인터넷도박게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업자'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에스비에스 (2011서울조정882 · 883 정정 · 손배청구) ····· 217

사례 32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정○○ 對 ㈜문화방송 (2011서울조정893 손배청구) ····· 220

사례 33 카드사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박○○ 對 ㈜문화방송 (2011서울조정1031 손배청구) ····· 222

사례 34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씨제이이앤엠㈜ (tvN) (2011서울조정1049 손배청구) ····· 224

사례 35 보건복지부의 정책홍보 행사장에서 '대중교통 임산부석 지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신청인을 행사도우미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방○○ 對 한국정책방송원 (K-TV) (2011서울조정1220 손배청구) ····· 226

사례 36 김정일 사망 관련 호외 신문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연합뉴스 (2011서울조정1412 손배청구) ····· 229

사례 37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최○○ 對 ㈜경향신문사 (2011서울중재95 손배청구) ····· 231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사례 38 의사 부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청인의 집을 마치 사건 현장이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 한국방송공사 (KBS-1TV) (2011서울조정69 손배청구) 235

사례 39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박○○ 對 ㈜디오데오 (2011서울조정1047 손배청구) 239

사례 40 신청인들이 경찰에 제공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이○○, 박○○ 對 한국방송공사 (KBS-2TV)
(2011서울조정1325 손배청구) 241

제4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례 41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엄○○ 對 최○○ (파인뉴스) (2011광주조정2 손배청구) 245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사례 42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에 관한 기사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상호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고○○ 對 ㈜제주일보사 (2011제주조정1 손배청구) 248

제3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251

제4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269

제5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471

제1부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2011년도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조정사건 2년 연속 2,000건 상회

위원회가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조정사건은 2,124건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의 2,205건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2년 연속 2,000건 이상을 처리했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57.2% 차지

2011년에도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사건이 전체 조정사건 중 57.2%를 차지해 2010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10년 38.1%에서 24.0%로 감소했지만, 인터넷신문은 2010년 25.7%에서 33.2%로 증가했다.

'언론중재 Eye-Net' 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 시작

2011년 '언론중재 Eye-Net' 이라는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접수가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1,221건(57.5%), 방문을 통한 접수 409건(19.3%)에 이은 304건(14.3%)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접수방법에 비해 편리성과 신속성이 뛰어나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 전망된다.

조정성공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실효성 제고

조정성공률이 2010년 79.0%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70.9%로 다소 낮아졌다. 전년도에 비해 조정성공률이 낮아진 원인을 살펴보면,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불성립결정 건수가 많았다는 점 외에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보도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성공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정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2011년 하반기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바람직한 정정보도 등의 유형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정성공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정정보도문 등의 크기나 위치 등이 상당히 격상되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 117건으로 최다 피청구

2011년 접수 · 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에 203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수를 보였던 네이버가 104건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방송 중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KBS-1, 2TV를 비롯한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해 7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고, 문화방송이 중앙방송, 지역방송을 포함해 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앙일간지 중에는 조선일보가 32건으로 가장 많은 피청구 건수를 기록했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215만원

2011년 손해배상사건의 평균조정액은 215만원을 기록했다. 조정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그 액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빈액(빈도가 가장 많은 배상액)은 100만원(13회)이었으며, 이어 200만원(8회), 50만원(6회), 300만원 및 150만원(각 5회) 등이었다. 고액순의 빈도를 보면 2,000만원 1건, 500만원 3건, 300만원 5건 등이었다.

시정권고소위원회, 2011년 동안 426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에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426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0년 284건에 비해 50.0%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마약 용량 · 용법 공개에 대한 결정건수가 2010년 4건에서 95건으로 증가하였고, 형사사건 피의자 · 피해자 신원공개에 대한 결정건수가 49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제1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가 연간 접수·처리한 조정건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 IPTV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2009년에 1,500건을 넘었고,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2,000건 이상이었다. 위원회는 2011년 한 해 동안 2,124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건수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조정건수	1,043	954	1,573	2,205	2,124
전년대비 증감	-44	-89	619	632	-81

2. 중재부별 현황

중재부별로는 서울중재부가 가장 많은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총 2,124건 중 1,465건을 접수·처리하여 전체의 69.0%를 차지했고, 경남중재부 8.1%(174건), 제주중재부 6.2%(130건), 경기중재부 5.6%(1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문사와 방송사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고 201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 및 인터넷신문사의 소재지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남중재부와 제주중재부의 사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제주중재부의 경우 동일인이 다수 매체를 상대로 수차례 추후보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중재부 \ 연도	2009		2010		2011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서 울	1,173	74.6	1,627	73.8	1,465	69.0
부 산	15	1.0	59	2.7	36	1.7
대 구	35	2.2	31	1.4	26	1.2
광 주	72	4.6	77	3.5	49	2.3

연도 / 중재부	2009		2010		2011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대 전	42	2.7	42	1.9	33	1.6
경 기	103	6.5	120	5.4	118	5.6
강 원	26	1.6	28	1.3	18	0.8
충 북	36	2.3	35	1.6	47	2.2
전 북	33	2.1	49	2.2	28	1.3
경 남	26	1.6	89	4.0	174	8.1
제 주	12	0.8	48	2.2	130	6.2
계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3. 청구권별 현황

2011년 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004건(4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청구 804건(37.8%), 반론보도청구 168건(8.0%), 추후보도청구 148건(7.0%) 순이었다.

청구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정보도청구는 3년간 평균 비율이 49.2%로 나타났다. 다른 사건에 비해 정정보도청구 비율이 높은 것은 조정대상보도의 성격상 정정보도청구보다는 반론이나 추후보도청구가 적합한 경우에도 신청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37.8%로 정정보도청구 47.2%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1년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2010년의 773건보다 31건이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도 35.1%에서 37.8%로 2.7% 증가하였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연도 / 청구명	2009		2010		2011		합 계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정 정	691	43.9	1,211	54.9	1,004	47.2	2,906	49.2
반 론	142	9.0	171	7.8	168	8.0	481	8.1
추 후	41	2.6	50	2.3	148	7.0	239	4.0
손 배	699	44.4	773	35.1	804	37.8	2,276	38.7
계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5,902	100.0

4.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1년 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청구가 1,283건(6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회사가 336건(15.7%), 일반단체 252건(11.9%), 지자체 · 공공단체 126건(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비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일반단체에 의한 청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연도 / 신청인 유형	2009		2010		2011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개 인	847	53.8	1,284	58.2	1,283	60.5
국가기관	74	4.7	66	3.0	78	3.7
지자체 · 공공단체	64	4.1	124	5.6	126	5.9
일반단체	341	21.7	293	13.3	252	11.9
종교단체	4	0.3	2	0.1	19	0.9
회 사	212	13.5	416	18.9	336	15.7
교육기관	31	2.0	20	0.9	30	1.4
계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5.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705건(33.2%), 신문 586건(27.6%), 인터넷뉴스서비스 510건(24.0%), 방송 250건(11.8%), 뉴스통신 62건(2.9%), 잡지 9건(0.4%)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엔 신문과 방송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터넷 매체가 2011년엔 57.2%로 2010년도에 이어 전체 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건이 138건 늘어난 데 반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사건은 331건 줄어들었다. 2011년도에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사건수가 감소한 것은 포털이 기사제공언론사의 보도를 매개하는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포털의 인링크[1] 기사들이 주로 조정대상이 되고 아웃링크[2] 기사에 대한 사건은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포털의 아웃링크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한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포털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포털사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정보도 등은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2)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사제공언론사 홈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됨

〈표 1-5〉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연도 / 매체유형	2009		2010		2011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신 문	632	40.2	540	24.5	586	27.6
방 송	459	29.2	189	8.6	250	11.8
잡 지	27	1.7	24	1.1	9	0.4
뉴스통신	38	2.4	42	1.9	62	2.9
인터넷신문	233	14.8	567	25.7	705	33.2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11.5	841	38.1	510	24.0
기 타	3	0.2	2	0.1	2	0.1
계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표 1-6〉 2011년도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 / 조정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지 상 파 TV	지 상 파 라디오	종합유선 방송					
2,124	183	225	178	211	5	34	9	62	705	510	2
100.0(%)	8.6	10.6	8.5	9.9	0.2	1.6	0.4	2.9	33.2	24.0	0.1

6. 침해유형별 현황

2011년 사건 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조정사건이 2,030건(95.6%)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 39건(1.8%), 사생활 침해 24건(1.1%), 성명권 침해 22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2010년에 109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39건으로 사건수가 약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언론사들이 자료사진 게재에 신중을 기하고,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초상권 침해를 의식해 보다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1-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연도 / 침해유형	2009		2010		2011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명예훼손	1,457	92.6	1,995	90.5	2,030	95.6
신용훼손	6	0.4	20	0.9		
초상권	56	3.6	109	4.9	39	1.8
음성권	5	0.3	3	0.1		
성명권	1	0.1	4	0.2	22	1.0
프라이버시	18	1.1	20	0.9	24	1.1
재산상 손해					8	0.4
기 타	30	1.9	54	2.4	1	0.1
계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위원회가 2011년 접수 · 처리한 조정사건 중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 침해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를 원인으로 하는 123건을 침해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109건(88.6%)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한 경우가 10건(8.1%),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4건(3.3%)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조정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109	88.6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10	8.1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4	3.3
계	123	100.0

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1년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건/사고/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555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고, 경제 · 산업 분야가 137건으로 6.4%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 선거분야가 132건(6.1%), 스포츠 · 연예분야 87건(4.1%), 교육분야 83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조정대상보도 분야	조정건수	비율(%)
정치 · 선거	132	6.1
국방 · 외교	10	0.5
경제 · 산업	137	6.4
사회(사건/사고/고발)	1,555	73.2
보건 · 복지	44	2.1
스포츠 · 연예	87	4.1
레저 · 생활	11	0.5
환 경	10	0.5
종 교	22	1.0
노 조	10	0.5
교 육	83	4.0
미디어	10	0.5
기 타	13	0.6
계	2,124	100.0

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1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 내용을 제공 또는 매개한 포털을 제외한 조정대상보도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543건으로 86.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 · 심층 · 기획기사가 137건(7.7%), 오피니언 41건(2.3%) 순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조정대상보도 유형	조정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1,543	86.1
사 설	10	0.6
오피니언	41	2.3
인터뷰	27	1.5
탐사 · 심층 · 기획보도	137	7.7
만화 · 만평	1	0.1
사 진	8	0.4
가 십	16	0.9
기 타	8	0.4
계	1,791	100.0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제외

한편,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사건만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 관련 프로그램이 206건으로 64.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75건(23.6%),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22건(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2010년과 비교해보면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21건에서 7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1〉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조정건수	비율(%)
뉴 스	206	64.8
드라마	1	0.3
시사고발	75	23.6
교양정보	22	6.9
연예 · 스포츠	3	0.9
다큐멘터리	4	1.3
기 타	7	2.2
계	318	100.0

10. 접수방법별 현황

2011년 조정사건을 접수방법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 (e-메일)이 1,22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들이 방문이나 우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전자우편 접수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전자조정중재시스템 도입으로 가능해진 전자문서에 의한 접수 즉, '언론중재 Eye-Net'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30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방법별 현황

연도 / 접수방법	2009		2010		2011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조정건수	비율(%)
방 문	429	27.3	483	21.9	409	19.3
우 편	225	14.3	233	10.6	143	6.7
전자우편	904	57.5	1,205	54.6	1,221	57.5
전자문서					304	14.3
구 술	15	0.9	284	12.9	47	2.2
계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제2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1년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951건(44.7%), 조정성립 725건(34.1%), 조정불성립결정 285건(13.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05건(5.0%), 기각 44건(2.1%), 각하 1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이 취하된 경우는 2010년 1,131건(51.3%)에 이어, 2011년 951건(44.7%)으로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조정성립 등으로 원만히 처리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한 다수 포털에서도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리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010년 630건(28.6%)에서 2011년 725건(34.1%)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정불성립결정은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신문과 포털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은 전체 사건수의 약 5.0%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동의한 건이 이의신청한 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현황

구분 / 연도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361)
	100.0%	34.2%	4.2%	2.5%	5.6%	16.3%	0.6%	36.6%
2010	2,205	630	109	40(2)	157(5)	137	1	1,131(891)
	100.0%	28.6%	4.9%	1.8%	7.1%	6.2%	0.1%	51.3%
2011	2,124	725	65	40(3)	285	44	14	951(680)
	100.0%	34.1%	3.1%	1.9%	13.4%	2.1%	0.7%	44.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가 구제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등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

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등 또는 손해배상)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피해구제율은 2008년에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79.2%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71.3%를 기록했다.

2011년도에 피해구제율이 전년 대비 다소 낮아진 원인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 건수가 많았다는 점 외에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질적 향상 및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치상 나타나는 피해구제율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인해 2011년 하반기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바람직한 정정보도 등의 유형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을 심리과정에 적용하여 피해구제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정정보도문 등의 크기나 위치 등은 상당히 격상됨으로써 피해구제결과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2〉 피해구제율 현황

전체조정건수 [A]	기각·각하건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124	58	2,066	1,473	71.3

3. 조정성공률

조정성공률이란 전체 조정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이나 신청내용 상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 · 각하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한 사건 중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 모두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2011년의 조정성공률은 70.9%로 2010년에 비해 8.1%나 낮아졌다. 그 이유는 조정성립된 비율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동의율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됐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3〉 조정성공률 현황

전체조정건수 [A]	기각·각하·취하건수 [B]	조정건수 [A-B]	조정성공건수 [C]	조정성공률(%) [C/(A-B)]
2,124	1,009	1,115	790	70.9

4. 본안성공률

본안성공률은 전체 조정사건에서 기각 · 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심리에 부

쳐진 사건 중에서 조정성립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한 사건 및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안성립건수에는 조정성공건수 외에도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과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이 포함된다.

2011년의 본안성공률은 81.7%로 2010년에 비해 6.3%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조정성공률과 마찬가지로 조정불성립결정된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4〉 본안성공률 현황

전체조정건수 [A]	기각·각하·심리전 취하건수 [B]	본안심리건수 [A-B]	본안성공건수 [C]	본안성공률(%) [C/(A-B)]
2,124	564	1,560	1,275	81.7

5.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1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반론보도 청구된 사건의 조정성립된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정보도청구(37.4%), 손해배상청구(31.7%), 추후보도청구(15.5%)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성립된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을 언론사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 2-5〉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청구명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9	정정	691	286	46	21		50		15	2	271	(180)
	반론	142	67	4	5		3		10	1	52	(36)
	추후	41	13				2			1	25	(24)
	손배	699	172	16	13		33		232	6	227	(121)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2010	정정	1,211	337	74	20	(1)	87	(4)	66	1	626	(489)
	반론	171	52	10	1		13		31		64	(38)
	추후	50	23	1	1		1		2		22	(20)
	손배	773	218	24	18	(1)	56	(1)	38		419	(344)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구분 / 연도	청구명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정정	1,004	375	40	23	(1)	150		25	5	386	(249)
	반론	168	72	6			28		7		55	(33)
	추후	148	23	1	1	(1)	7			2	114	(108)
	손배	804	255	18	16	(1)	100		12	7	396	(290)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1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1,283건 중 427건이 조정성립되어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33.3%를 나타냈으며, 단체의 경우 지자체 · 공공단체가 44.4%, 일반단체도 44.4%를 나타내 높은 조정성립률을 나타냈으며 국가기관(26.9%)과 종교단체(26.3%)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표 2-6〉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개인		847	243	15	22		42		240	10	275	(152)
	단체	국가기관	74	32	6	3		2		2		29	(16)
		지자체 · 공공단체	64	27	5	1		3				28	(19)
		일반단체	341	139	21	4		22		12		143	(99)
		종교단체	4	4									
		회사	212	78	17	6		17		3		91	(70)
		교육기관	31	15	2	3		2				9	(5)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2010	개인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단체	국가기관	66	22	11	1		5				27	(18)
		지자체 · 공공단체	124	33	8	2		17		1		63	(44)
		일반단체	293	108	30	7		37		28		83	(60)
		종교단체	2	2									
		회사	416	119	21	10		20	(1)	4		242	(163)
		교육기관	20	11				6				3	(1)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구분 /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개인		1,283	427	37	31	(2)	181		30	12	565	(455)
	단체	국가기관	78	21	5	4	(1)	17				31	(12)
		지자체·공공단체	126	56	6	2		11		1		50	(44)
		일반단체	252	112	4	2		35		11	2	86	(22)
		종교단체	19	5	2			2				10	(10)
		회사	336	94	11	1		36		2		192	(130)
		교육기관	30	10				3				17	(7)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1년 접수되어 처리된 조정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보면 군인/경찰의 조정성립률이 7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언론인 42.8%, 교육자 40.9%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학생(9.0%), 주부(11.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정성립률을 나타냈다.

<표 2-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구분 / 직업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19	7				3		4		5	
법조인	2	1						1			
공무원	66	8	2	4		14				38	(29)
군인/경찰	49	35		2		3		2		7	(5)
기초광역단체장/의원	80	18	1	2		32			4	23	(19)
정당정치인	7	2				3				2	(2)
의료인	39	10	1	1		4				23	(19)
문화예술인	14	11				2				1	(1)
종교인	39	19	1			16				3	
회사원	95	37	1	1		8		5		43	(30)
언론인	49	21				13				15	(8)
교육자	127	52	8	3		15		4	2	43	(32)
개인사업가	342	115	7	8		30		5		177	(157)
금융업종사자	2								2		
연예인	4					2				2	
학 생	67	6				1				60	(59)

구분 / 직업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시민활동가	21	6								15	(8)
공공기관장	23	11								12	
조합대표/협회장	106	27	4			4			2	69	(58)
주부	17	2	6	3		2		1		3	
무직	62	27	2	5	(2)	17			2	9	
알 수 없음	16			1		4		4		7	(5)
기타	37	12	4	1		8		4		8	(4)
계	1,283	427	37	31	(2)	181		30	12	565	(45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8.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2011년 접수 · 처리된 조정사건의 매체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잡지(55.6%), 신문(41.6%), 뉴스통신(33.9%), 인터넷신문(32.6%), 방송(30.0%), 인터넷뉴스서비스(29.4%)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기반 매체는 심리에서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았지만 취하 후 피해구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구분 / 연도	매체유형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신문	632	253	40	24		50		11	3	251	(150)
	방송	459	89	5	7		20		230	3	105	(46)
	잡지	27	18				2				7	(7)
	뉴스통신	38	12	2					4		20	(18)
	인터넷신문	233	118	3	5		14		6		87	(58)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	(82)
	기타	3	1								2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2010	신문	540	261	15	14		64	(2)	25		161	(87)
	방송	189	84	10	6		41		14	1	33	(12)
	잡지	24	8	3			10	(1)			3	
	뉴스통신	42	10						7		25	(18)
	인터넷신문	567	190	12	14		29	(2)	43		279	(219)
	인터넷뉴스서비스	841	77	69	6	(2)	13		48		628	(555)
	기타	2									2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구분 / 연도	매체유형	조정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1	신 문	586	244	19	13		95		22	5	188	(91)
	방 송	250	75	11	6		61		9	4	84	(33)
	잡 지	9	5	1			3					
	뉴스통신	62	21	2	2	(2)	7		1		29	(14)
	인터넷신문	705	230	22	19	(1)	81		10	4	339	(254)
	인터넷뉴스서비스	510	150	10			38			1	311	(288)
	기 타	2							2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9.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2011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접수된 2,030건 중 697건이 조정성립 되어 34.3%의 조정성립률을 나타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는 접수된 24건 중 15건이 조정성립되어 62.5%라는 높은 조정성립률을 나타냈다. 반면 성명권은 22건 중 3건만이 조정성립이 이루어졌으며, 초상권은 39건 중 9건만이 조정성립이 이루어졌지만 취하 후 피해가 구제된 비율이 높았다.

〈표 2-9〉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침해유형	조정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9	명예훼손	1,457	498	63	35		86		249	10	516	(318)
	신용훼손	6	4								2	(2)
	초상권	56	20	1	4		2				29	(25)
	음성권	5	4								1	
	성명권	1	1									
	프라이버시	18	5	1					6		6	(4)
	기타	30	6	1					2		21	(12)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2010	명예훼손	1,995	591	107	39	(2)	144	(5)	87	1	1,026	(801)
	신용훼손	20					2		1		17	(13)
	초상권	109	27	1			10		12		59	(54)
	음성권	3	1		1						1	(1)
	성명권	4									4	(2)
	프라이버시	20	3	1			1		11		4	(4)
	기타	54	8						26		20	(16)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구분 / 연도	매체유형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1	명예훼손	2,030	697	60	35	(3)	272		40	14	912	(656)
	신용훼손											
	초상권	39	9	3	1		3		3		20	(15)
	음성권	3					1				2	(2)
	성명권	22	3	2	3		9				5	
	프라이버시	24	15		1				1		7	(5)
	재산상손해	5									5	(2)
	기타	1	1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10.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별로 조정사건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인 다음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매체유형인 네이버와 네이트가 104건과 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20건), 한겨레(19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KBS가 1, 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해 72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MBC는 중앙방송 56건, 지방방송 12건으로 총 68건을 기록했다. 인터넷신문 중에서는 디지틀조선일보가 3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으며, 노컷뉴스(19건), 오마이뉴스(17건), 인터넷 머니투데이(17건)가 그 뒤를 이었다.

〈표 2-10〉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8	7		1					5					3
	국민일보	7	7							1			1		5
	내일신문	3	3							2	1				
	동아일보	13	13							5	2	1	3		2
	문화일보	13	13								3	2	1		7
	서울신문	10	10							2		4	1		3
	세계일보	9	9							2			1	2	4
	조선일보	32	30	1			1			14	4	7	4		3
	중앙일보	20	20							5	1	3	2		9
	한겨레	19	19							11	2	2			4
	한국일보	13	13							4	2	1	2		4
	소 계	147	144	1	1		1			51	15	20	15	2	44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일간지	서울	아시아일보	2	2									2			
		내외일보	3	3												3
		서울일보	5	5							1					4
		아시아투데이	2	2							2					
		대한매일신문	5	5							2					3
		현대일보	1	1							1					
		신아일보	1	1							1					
		대한투데이	2	2								2				
	부산	국제신문	2	2												2
		부산일보	9	9							4					5
		울산제일일보	2	2							2					
	대구·경북	대구신문	1	1												1
		대구일보	2	2												2
		경북매일	1	1							1					
		경상매일신문	1	1												1
		경안일보	1	1											1	
		매일신문	2	2									2			
		영남일보	4	3					1		1					3
	광주·전남	무등일보	1	1							1					
		전남일보	2	2							2					
		호남신문	3	3									1			2
		광남일보	1	1												1
		전남도민일보	2	2												2
		남도일보	1	1							1					
		남도투데이	2	2												2
		남도매일	1	1									1			
	대전·충남	대전일보	2	2							1					1
		충남일보	3	3							1					2
		충청투데이	4	4									3			1
		금강일보	1	1							1					
		충민일보	5	5							5					
	경기	경기신문	6	6							3		1			2
		경기일보	4	4							2		1			1
		경도신문	2	2									2			
		경인일보	10	10							6		3			1
		기호일보	2	2									2			
		시대일보	4	4							2					2
		우리일보	3	3									2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일간지	경기	인천일보	2	2									1			1
		중부일보	6	6							6					
		전국매일	1	1							1					
		수도일보	2	2							1					1
		인천신문	1	1												1
		일간경기	2	1			1									2
		광명일보	3	3							1					2
		경인매일	1	1							1					
		경인종합일보	3	3							3					
	강원	강원도민일보	3	3							3					
		강원일보	1	1							1					
	충청	동양일보	7	7							2		2	3		
		중부매일	1	1									1			
		충청일보	1	1									1			
		한빛일보	2	2							2					
		충청타임즈	1	1								1				
		충청투데이	2	2							2					
		충청매일	1	1												1
	전북	새전북신문	2	2												2
		전라일보	1		1											1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일보	4	4								2	2			
		전북중앙신문	1	1												1
		전북매일신문	1	1												1
		전북연합신문	1	1							1					
		전주일보	1	1							1					
	경남	경남도민일보	6	6							5					1
		경남매일	9	9							4					5
		경남신문	5	5							1					4
		경남일보	6	6							4					2
		한남일보	4	4							2					2
		일간뉴스경남	4	4							1					3
		창원일보	2	2								2				
		경남연합일보	4	4							2					2
		경남도민신문	6	6							3					3
	제주	제민일보	3	3												3
		제주일보	6	5					1							6
		한라일보	5	5												5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제주매일	3	3							2					1
	제주도민일보	5	5							2					3
	소 계	225	221	1		1		2		92	7	27	3	1	95
경제지	매일경제	9	9							5			1		3
	서울경제	2	2												2
	한국경제	7	7							3	1		1		2
	헤럴드경제	5	5							3					2
	머니투데이	3	3							2	1				
	아시아경제	1	1							1					
	아주경제	2	2												2
	소 계	29	29							14	2		2		11
스포츠지	스포츠동아	2	2							2					
	소 계	2	2							2					
특수일간지	농민신문	1	1							1					
	전자신문	2	2							2					
	이투데이신문	2	2							2					
	소 계	5	5							5					
중앙방송	KBS-1, 2TV	2	1	1						1					1
	KBS-1TV	48	46	1			1			13	3	12	3		17
	KBS-2TV	12	5	3			4			7	2	2			1
	MBC-TV	56	50	6						7	4	24	2		19
	SBS-TV	49	42	5	2					19	4	11		2	13
	EBS-TV	1		1											1
	KBS-R	4	4											2	2
	소계	172	148	17	2		5			47	13	49	5	4	54
지방방송	춘천KBS-1TV	5	5							1		4			
	청주KBS-1TV	1	1									1			
	대구KBS-1TV	1	1									1			
	광주KBS-1TV	1	1									1			
	제주KBS-1TV	2	2												2
	원주MBC-TV	1		1							1				
	춘천MBC-TV	2	2										2		
	청주MBC-TV	1	1												1
	대전MBC-TV	2	2							2					
	울산MBC-TV	1	1												1
	전주MBC-TV	1	1												1
	제주MBC-TV	3	3												3
	충주MBC-R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소 계	22	21	1						3	1	7	2		9
지역민방	KC-TV	1	1												1
	KNN	6	5	1						3					3
	TJB-TV	1	1												1
	TBC-TV	2	2												2
	CJB-TV	6	6							4	1		1		
	KBC-TV	2	2												2
	J-TV	1	1												1
	JIBS-TV	2	2												2
	OBS-TV	1	1							1					
	소 계	22	21	1						8	1		1		12
케이블TV	YTN	10	8					2		3	1	2		4	
	기독교 TV	2	2									2			
	MBN	8	8							5				1	2
	K-TV	1		1									1		
	tvN	3	3							2					1
	MTN	3	3							2					1
	CBS-TV	1	1									1			
	채널A	2	2							2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1	1							1					
	티브로드뉴스	1	1							1					
	BBS불교방송	2	2							2					
	소 계	34	31	1				2		18	1	5	1	5	4
뉴스통신	연합뉴스	26	25	1						8	1	4			13
	뉴시스	31	31							10	3	3	1		14
	아시아뉴스통신	5	5							3					2
	소 계	62	61	1						21	4	7	1		29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6	6									6			
	주간조선	2	2							1		1			
	한겨레21	3	3							2					1
	인터넷시사저널	2	2							2					
	시사IN	3	3							2		1			
	소 계	16	16							7		8			1
시사주간지문	일요서울	7	6				1			2	1	4			
	일요신문	6	6							2		1			3
	소 계	13	12				1			4	1	5			3
	풍양신문	6	6							1		4			1
	영덕신문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주간신문	파주저널	2	2									2			
	CNB저널	1	1							1					
	대부금융신문	1	1												1
	주간동대문신문	2	2												2
	로컬(LOCAL)세계	4	4							2					2
	주간고양신문	2	2											2	
	군위팔공신문	1	1							1					
	고향신문	1	1									1			
	전남타임스	2	2									2			
	함평중앙신문	2	2									2			
	영암군민신문	1	1							1					
	연합군민신문	1	1							1					
	주간진도신문	2	2							1					1
	금산저널	6	6									6			
	안산타임스	3	3							3					
	화성신문	2	2									2			
	평안신문	2	2							2					
	안양시민신문	3	3							2					1
	반월신문	2	2									2			
	보은신문	2	2							2					
	충청리뷰	2	2							2					
	광명지역신문	1	1							1					
	김포미래신문	2	2									2			
	인천공항영종뉴스	2	2							2					
	안산시민신문	1	1										1		
	군포신문	2	2							2					
	서해타임즈	2	2							2					
	함안뉴스	2	2							1					1
	밀양신문	2	2							1					1
	새거제신문	2	2												2
	한려투데이	2	2												2
	양산신문	2	2							1					1
	함안정통신문	2	2							2					
	김해뉴스	3	2			1									3
	남해신문	2	2							2					
	함양신문	2	2							2					
	평택자치신문	4	4							4					
	목포투데이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주간신문	전남희망신문	2	2							1		1			
	더함안신문	4	4							3					1
	함안신문	10	10							3	3				4
	횡성신문	1	1							1					
	제주프레스	2	2									2			
	소 계	104	103			1				49	3	26	1	2	23
특수주간신문	기독교보	1	1								1				
	미디어오늘	4	4							2		2			
	일요저널	2	2							2					
	한국대학신문	2	2							2					
	법보신문	4	4												4
	SP투데이	7	7							5		2			
	뉴코리아리포스트	2	2							2					
	부천신문	1	1												1
	부산여성뉴스	2	2									2			
	삼군신문	6	5			1				3		2			1
	태권도신문	2	2							2					
	간호사신문	1	1										1		
	크리스천투데이	1	1								1				
	합천대야신문	2	2												2
	대한급식신문	1	1								1				
	위클리와이	1	1							1					
	황강신문	4	4							1					3
	부울노보	1	1								1				
	치의신보	1	1									1			
	소 계	45	44			1				20	4	9	1		11
월간지	신동아	4	4							3	1				
	월간조선	1	1							1					
	우먼센스	2	2								2				
	평남민보	1	1							1					
	소 계	8	8							5	3				
인터넷신문	일간뉴스경남	1	1												1
	시사저널	2	2							2					
	노컷뉴스	19	18				1			7		5			7
	오마이뉴스	17	17							7	1	1		2	6
	프레시안	2	2												2
	CNBNEWS	6	6							5					1
	투데이코리아	3	3												3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2	2												2
	민중의소리	4	4							1	2			1	
	시사포커스신문	2	2												2
	조이뉴스24	1	1							1					
	뉴스캔	3	3							2					1
	뉴스파워	1	1												1
	뉴데일리	3	2				1			1	2				
	한강타임즈	1	1												1
	시사제주	5	5												5
	대전뉴스	1	1									1			
	미디어제주	7	7							2					5
	뉴스엔	1	1												1
	TV Daily	2	2												2
	거제인터넷신문	2	2												2
	한국모바일방송	2	2												2
	인터넷뉴스신문고	2	2												2
	e중앙뉴스	4	2			2				2					2
	뉴스와이어	2	2												2
	아이비타임즈	1					1			1					
	e파이낸셜신문	2	2												2
	뉴스토마토	1	1												1
	통일뉴스	1	1							1					
	충청엔뉴스	1	1							1					
	sbn대한방송	2	2												2
	건치	2	2												2
	뉴스타운	2	2												2
	메디소비자뉴스	2	2												2
	메디컬헤럴드	2	2												2
	메디포뉴스	2	2												2
	의약뉴스	2	2												2
	투데이포커스	2	2												2
	파이낸스투데이	2	2												2
	하이닥	2	2												2
	e뉴스wave	4	4												4
	울산포커스	2	2												2
	강릉인터넷뉴스	2	2												2
	소비자고발신문컨슈머리포트	1	1												1
	메디팜스투데이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2	2												2
	브레이크뉴스	4	3				1			2					2
	e뉴조	1	1												1
	메디컬투데이	2	2												2
	로지스틱스뉴스	1	1												1
	에클레시안뉴스	5	5							4					1
	무카스뉴스	1	1							1					
	소비자가만드는신문	4	4												4
	헬스코리아뉴스	2	2												2
	미디어스	2	2									2			
	프라임경제	3	3									3			
	당당뉴스	2	2							2					
	메디파나뉴스	2	2												2
	데일리와이	4	4							2					2
	문화저널	2	2												2
	서울신문NTN	1	1												1
	굿데이뉴스	2	2							2					
	파이낸셜코리아	1	1								1				
	부천매일	1	1							1					
	남해뉴스	4	4								4				
	제주인터넷뉴스	2	2												2
	제주포커스	2	2												2
	데일리팟	2	2							2					
	뉴스페이스	2	2							1					1
	닥터스뉴스	2	2							2					
	헤드라인제주	3	3												3
	제주포커스인터넷뉴스	1	1												1
	CTN	1	1												1
	하이강릉	1	1									1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4	4								1				3
	굿타임즈넷	2	2								2				
	성남저널	2	2							2					
	성남N	2	2									2			
	성남데일리	2	2									2			
	신대한	14	14							1					13
	티에이치이dailynews	11	11							1					10
	한국NGO	2	2							1					1
	디오데오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사하인터넷뉴스	2	2									2			
	통영인터넷뉴스	1	1												1
	엔터미디어	3	3							3					
	스타엔	1					1								1
	뉴민주닷컴	1	1												1
	위키트리	1	1							1					
	미디어충청	1	1												1
	상주포커스	2	2												2
	뉴스에이	1	1							1					
	거제타임스	2	2												2
	디트뉴스24	1	1							1					
	인천뉴스	2	2							2					
	이슈제주	2	2							2					
	제주투데이	4	4												4
	대전시티저널	1	1									1			
	충북인뉴스	2	2							2					
	제주의소리	7	7							2					5
	밀양뉴스	2	2												2
	화순뉴스	5				5					2	3			
	파인뉴스	5				5				1	1	3			
	뉴스타운	2	2									2			
	거제인터넷신문	2	2												2
	티브이데일리	1	1												1
	뉴스페이스	2	2												2
	아이비타임즈코리아	1	1												1
	뉴스에이	4	4									2			2
	기독일보씨디엔	2	2							2					
	메디팜뉴스	2	2									2			
	불교포커스	1	1							1					
	위키프레스	1	1												1
	동아닷컴	11	11							5	2	1	2		1
	디지틀조선일보	36	34	1			1			17	4	3	3		9
	한겨레닷컴	14	14							11					3
	아시아투데이닷컴	3	3							3					
	한경닷컴	7	7							5					2
	인터넷중앙일보	12	12							2		3			7
	헬스조선닷컴	1	1										1		
	인터넷한국일보	6	6							3	1				2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머니투데이	17	17							10	2	1			4
	파이낸셜뉴스닷컴	2	2												2
	IS PLUS	2	2												2
	매경닷컴	11	11							5					6
	인터넷아시아경제	9	7	2						2					7
	인터넷선경일보	1	1							1					
	문화닷컴	4	4								1	1			2
	인터넷의협신문	2	2									2			
	경향닷컴	7	7							3		2			2
	쿠키뉴스	3	3							1					2
	시민일보 인터넷	1	1												1
	인터넷전북일보	4	4								2	2			
	세계닷컴	8	7	1						2					6
	인터넷한라일보	5	5							2					3
	인터넷아주경제	6	6												6
	인터넷부산일보	2	2							1					1
	뉴스한국닷컴	2	2												2
	서울경제닷컴	2	2												2
	인터넷스포츠칸	1	1												1
	헤럴드경제닷컴	9	9							5					4
	인터넷울산제일일보	2	2							2					
	인터넷일간경기	2	2												2
	매일신문닷컴	2	2									2			
	인터넷영남일보	1						1							1
	인터넷안성신문	1	1												1
	인터넷전자신문	2	2							2					
	인터넷한국대학신문	3	3							2		1			
	인터넷서울신문	6	6							2		3			1
	인터넷디지털타임스	1	1												1
	인터넷양산신문	2	2							1					1
	인터넷이투데이	6	6							3					3
	인터넷경남일보	6	6							4					2
	인터넷오마이건설뉴스	2	2									1			1
	인터넷대한급식신문	1	1								1				
	법보신문닷컴	4	4												4
	인터넷미디어오늘	9	9							2	3	2	2		
	인터넷프라임경제	4	4							2	1				1
	인터넷광명지역신문	4	4							4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신문	인터넷일요서울	7	6				1			3		4			
	인터넷신아일보	2	2							2					
	인터넷국제신문	2	2												2
	인터넷소통신문	1	1									1			
	인터넷일요신문	2	2												2
	인터넷파주저널	2	2									2			
	인터넷남도뉴스	5				5					2	3			
	인터넷시사저널	3	3									3			
	인터넷김해뉴스	3	2			1									3
	인터넷데일리경제	2	2												2
	인터넷약사공론	2	2												2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2	2												2
	인터넷 아시아일보	2	2									2			
	인터넷 광명일보	3	3							1					2
	인터넷 광남일보	2	2							1					1
	인터넷 서해타임즈	2	2							2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1	1												1
	인터넷 삼군신문	6	5			1				3		2			1
	인터넷 대구신문	1	1												1
	인터넷 제주일보	9	9										2		7
	인터넷 제주매일	2	2							2					
	인터넷 익산신문	2	2							2					
	인터넷 한겨레21	2	2							1					1
	인터넷 전주일보	1	1							1					
	인터넷 충청투데이	2	2							2					
	인터넷 함양신문	2	2							2					
	인터넷경남도민신문	6	6							2					4
	인터넷소비자가만드는신문마이경제	1	1												1
	인터넷한남일보	4	4							2					2
	스포츠서울닷컴	2	1				1								2
	인터넷경남매일	6	6							1					5
	인터넷거제신문	2	2												2
	인터넷일간뉴스경남	4	4							1					3
	디지털함께걸음	7	7							3		2			2
	인터넷제주도민일보	5	5							2					3
	인터넷제주매일	1	1												1
	인터넷제민일보	3	3												3
	약업닷컴	1	1												1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경남도민일보	3	3							1					2
	인터넷한려투데이	4	4							2					2
	인터넷경남신문	5	5							1		2			2
	인터넷밀양신문	4	4							1		2			1
	인터넷대한투데이	3	3								2			1	
	인터넷새전북신문	2	2												2
	인터넷경북매일	3	3							3					
	인터넷새거제신문	4	4							2					2
	인터넷창원일보	2	2								2				
	인터넷경남연합일보	2	2							2					
	soompi korea	3	3							3					
	인터넷일요저널	2	2							2					
	인터넷기독교타임즈	2	2							2					
	인터넷제주프레스	2	2									2			
	인터넷국토해양신문	1	1												1
	인터넷매일노동뉴스	1	1												1
	빌더스데일리	1					1								1
	로컬세계닷컴	2	2												2
	인터넷크리스천투데이	1	1								1				
	e대한매일신문	1	1												1
	인터넷서울일보	1	1												1
	인터넷충청타임즈	1	1								1				
	소 계	705	676			19	9	1		230	41	81	10	4	339
인터넷뉴스서비스	네이버	104	101	2			1			33	2	4		1	64
	다음	117	114	2			1			29	3	4			81
	야후	53	50	1			2			11	2	2			38
	파란	44	44							12		3			29
	네이트	94	92	1			1			28	2	4			60
	드림위즈	3	3												3
	조인스엠에스엔	7	7							2		3			2
	고	2	2												2
	드림엑스	4	4												4
	팍스넷뉴스	2	2												2
	렛가이드	4	4							2					2
	언베일서치	4	4							2					2
	iMBC	17	17							5		8			4
	SBSi	20	18	1	1					9		2			9
	KBSi	25	22				3			11		7			7

매체유형	구분 / 매체명	조정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디지털와이티엔	3	2	1						1		1			1
	인터넷EBS	2	2							2					
	인터넷MBN	3	3							1	1				1
	인터넷BBS불교방송	2	2								2				
	소계	510	492	9	1		8			150	10	38		1	311
	총계	2,124	2,030	39	3	22	24	5	1	725	105	285	44	14	951

1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1년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처리한 1,465건 중 496건은 조정성립이 이루어져 33.9%의 조정성립률을 나타냈으며, 지역중재부의 경우 659건 중 229건이 조정성립이 이루어져 34.7%의 조정성립률을 나타내 지방이 조금 높았다. 서울에서는 서울제2중재부(41.7%)와 서울제4중재부(41.6%)가 높은 조정성립률을 나타냈으며,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충북중재부(51.0%), 경기중재부(50.0%), 대전중재부(48.5%) 순으로 높게 나타냈다.

〈표 2-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중재부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서울1	178	47	23	9		1		49	1	48	(42)
	서울2	173	53	5	1		11		46	4	53	(23)
	서울3	180	72	9			3		44		52	(48)
	서울4	177	39	17	10		14		35	1	61	(46)
	서울5	174	55				11		39		69	(48)
	서울6	188	78	2	3		9		7	2	87	(34)
	서울7	103	22	7	2				36		36	(29)
	소계	1,173	366	63	25		49		256	8	406	(270)
	부산	15	8				2		1		4	(4)
	대구	35	18	1	2						14	(2)
	광주	72	36		2		16				18	(13)
	대전	42	20								22	(16)
	경기	103	32	2	9		4				56	(24)
	강원	26	4								22	(19)
	충북	36	9				10			2	15	(8)

구분 / 연도	중재부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전북	33	18		1		4				10	(2)
	경남	26	15				3				8	(3)
	제주	12	12									
	소계	400	172	3	14		39		1	2	169	(91)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2010	서울1	258	41	48	8				34		127	(109)
	서울2	234	85				11		17		121	(104)
	서울3	241	75	12	3	(2)	5		16	1	129	(113)
	서울4	225	32	8	12		10	(1)	3		160	(136)
	서울5	215	27	10	2		24		6		146	(104)
	서울6	238	74	23	1		6		9		125	(92)
	서울7	216	27	1			20		40		128	(101)
	소계	1,627	361	102	26	(2)	76	(1)	125	1	936	(759)
	부산	59	13				13		1		32	(19)
	대구	31	16				8	(1)	2		5	(1)
	광주	77	20	3	4		18	(2)	1		31	(14)
	대전	42	29						5		8	(4)
	경기	120	44		2		17				57	(48)
	강원	28	9				15	(1)			4	(4)
	충북	35	23				4		3		5	(3)
	전북	49	22				5				22	(14)
	경남	89	57	4	8						20	(14)
	제주	48	36				1				11	(11)
	소계	578	269	7	14		81	(4)	12		195	(132)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2011	서울1	179	61	20	6	(1)	31		7	2	52	(28)
	서울2	163	68	4			14		13	4	60	(32)
	서울3	303	93	4	5	(2)	13				188	(162)
	서울4	334	139	8	4		39		1	2	141	(121)
	서울5	143	29	9	2		38				65	(39)
	서울6	165	68	3	10		15		2	2	65	(30)
	서울7	178	38	1	1		49		11	2	76	(55)
	소계	1,465	496	49	28	(3)	199		34	12	647	(467)
	부산	36	12	1			5				18	(6)
	대구	26	5				6			2	13	(8)
	광주	49	12	3	3		19				12	(2)
	대전	33	16				11				6	(4)
	경기	118	59		2		22		2		33	(23)

구분 / 연도	중재부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강원	18	8		1		5		2		2	(2)
	충북	47	24	2	1		10		4		6	(2)
	전북	28	10	4			4				10	(4)
	경남	174	65	6	5						98	(62)
	제주	130	18				4		2		106	(100)
	소계	659	229	16	12		86		10	2	304	(213)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2011년 접수된 조정사건 2,124건 중 손해배상사건은 804건으로 37.9%를 차지해 1,004건을 차지한 정정보도청구(4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09년부터 손해배상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엔 2010년보다 전체 조정사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손해배상사건은 오히려 3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구분 / 연도	조정건수	손해배상사건수	비율(%)
2009	1,573	699	44.4
2010	2,205	773	35.1
2011	2,124	804	37.9

2011년의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취하 49.3%, 조정성립 31.7%, 조정불성립결정 1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2%, 기각 1.5% 순으로 집계되었다.

예년에 비해 비율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2011년에도 취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정정보도 등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에 만족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청인에 따라서는 금전배상을 받고자 하는 의도 없이 처음부터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 등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손해배상 사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9	699 (100.0)	172 (24.7)	16 (2.1)	13 (1.7)	33 (4.7)	232 (33.2)	6 (0.9)	227 [121] (32.3)	80.3	90.9	67.0
2010	773 (100.0)	218 (28.2)	24 (3.1)	18 [1] (2.3)	56 [1] (7.2)	38 (4.9)		419 [344] (54.2)	76.6	87.1	80.0
2011	804 (100.0)	255 (31.7)	18 (2.2)	16 [1] (2.0)	100 (12.4)	12 (1.5)	7 (0.9)	396 [290] (49.3)	70.2	81.6	71.8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1년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2억 7,900만원을 기록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그 액수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중앙액은 135만원이었고 평균액은 215만원이었다. 최빈액(빈도가 가장 많은 배상액)은 100만원(13회)이었으며, 이어 200만원(8회), 50만원(6회), 300만원 및 150만원(각 5회) 등이었다. 고액순의 빈도는 2,000만원 1건, 500만원 3건, 300만원 5건 등이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단위: 원)

구분 / 연도	청구액				조정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9	100	50,000,000,000	221,393,861	20,000,000	120,000	30,000,000	3,594,103	2,000,000
2010	100	10,000,000,000	65,993,749	20,000,000	150,000	15,000,000	1,832,759	1,000,000
2011	100,000	50,000,000,000	279,208,198	20,000,000	100,000	20,000,000	2,147,826	1,350,000

2011년 손해배상조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48건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0건으로 41.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15건으로 31.3%를 나타내 전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조정액 분포 현황

(단위: 건수)

구분 / 연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계
2009	6 (15.4)	9 (23.1)	16 (41.0)	4 (10.3)	4 (10.3)	39 (100.0)
2010	9 (31.0)	11 (37.9)	7 (24.1)	1 (3.4)	1 (3.4)	29 (100.0)
2011	15 (31.3)	20 (41.7)	10 (20.7)	2 (4.2)	1 (2.1)	48 (100.0)
계	30 (25.9)	40 (34.5)	33 (28.4)	7 (6.0)	6 (5.2)	116 (100.0)

※ ( ) 안의 숫자는 %

2011년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조정액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최저 10만원, 평균 약 200만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약 200만원, 성명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00만원, 최저 30만원, 평균 약 50만원 정도였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최고 2,000만원, 최저 100만원, 평균 약 410만원이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최고액과 평균액 등이 다른 침해유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직원 성추행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

의 인적사항을 과도하게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2,000만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표 3-5〉 2011년도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빈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최 빈 액
명예훼손	20	100,000	10,000,000	2,060,000	1,250,000	1,000,000
초상권	13	500,000	5,000,000	2,076,923	1,450,000	3,000,000
성명권	7	300,000	1,000,000	514,283	500,000	500,000
프라이버시	7	1,000,000	20,000,000	4,142,857	1,500,000	1,500,000[1]
재산상손해	1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3.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36건, 프라이버시 22건, 성명권 21건, 재산상손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사생활 침해(59.0%)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10년(15.0%)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다른 침해유형별 조정성립률은 명예훼손(32.2%), 초상권(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명권 침해 사건의 42.9%가 조정불성립되었다.

〈표 3-6〉 2011년도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구분 \ 침해유형	조정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720	232 (32.2)	25 (3.5)	87 (12.1)	8 (1.1)	7 (1.0)	361 (50.1)
초상권	36	8 (22.3)	3 (8.3)	3 (8.3)	3 (8.3)		19 (52.8)
성명권	21	2 (9.5)	5 (23.8)	9 (42.9)			5 (23.8)
프라이버시	22	13 (59.0)	1 (4.6)		1 (4.6)		7 (31.8)
재산상손해	5			1 (20.0)			4 (80.0)
계	804 (100.0)	255 (31.7)	34 (4.2)	100 (12.4)	12 (1.5)	7 (0.9)	396 (49.3)

※( ) 안의 숫자는 %

1) 프라이버시 침해 최빈액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각 2건이어서 표에는 15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개인이 586건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단체 81건, 기업체 77건, 지자체 20건 등의 순서였다. 국가기관이 신청한 2건의 손해배상사건은 모두 당사자능력의 문제로 심리 도중 자진 취하하였다.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더라도 언론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별도로 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주체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그 기관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표 3-7〉 2011년도손해배상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구분 / 신청인 유형	손해배상 사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 인	586	181 (30.9)	31 (5.3)	76 (13.0)	12 (2.0)	6 (1.0)	280 (47.8)
국가기관	2						2 (100.0)
지자체	20	6 (30.0)	1 (5.0)				13 (65.0)
공공단체	11	10 (90.9)	1 (9.1)				
일반단체	81	37 (45.7)		15 (18.5)		1 (1.2)	28 (34.6)
종교단체	10		1 (10.0)	1 (10.0)			8 (80.0)
기업체	77	18 (23.4)		7 (9.1)			52 (67.5)
언론사	10	1 (10.0)		1 (10.0)			8 (80.0)
교육기관	7	2 (28.6)					5 (71.4)
계	804 (100.0)	255 (31.7)	34 (4.2)	100 (12.4)	12 (1.5)	7 (0.9)	396 (49.3)

※( )안의 숫자는 %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 · 중재 대상 매체에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시행 초기인 2005년 45건을 시작으로 2006년 77건, 2007년 113건, 2008년 157건, 2009년 233건으로 꾸준히 늘어오다 2010년엔 56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엔 705건으로 전년도보다 25% 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조정사건 중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14.8%(1,573건 중 233건), 2010년 25.7%(2,205건 중 567건)에 이어 전체 조정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1]에 따라 그 동안 조정 · 중재 대상이 아니었던 언론사 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인터넷신문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전체 조정 · 중재 사건 중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2009. 8. 7. ~ 2011. 12. 31.)

구분 / 연도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9	233 (100.0)	118 (50.6)	3 (1.3)	5 (2.1)	14 (6.0)	6 (2.6)		87 (37.3)	78.9	91.3	78.9
2010	567 (100.0)	190 (33.5)	12 (2.1)	14 (2.5)	29 (5.1)	43 (7.6)		279 (49.2)	80.7	91.1	80.7
2011	705 (100.0)	230 (32.7)	22 (3.2)	19 (2.7)	81 (11.5)	10 (1.4)	4 (0.5)	339 (48.0)	71.6	82.6	73.4
계	1,505 (100.0)	538 (35.8)	37 (2.5)	38 (2.6)	124 (8.2)	59 (3.9)	4 (0.2)	705 (46.8)	78.0	87.0	76.9

※( ) 안의 숫자는 %

1) 현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조정 · 중재대상 매체에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나, 언론중재법 시행령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2009년 처음 5개월 동안 181건에 불과했던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건수는 2010년에는 84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11년엔 510건을 기록하여 다소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이는 포털이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한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이 포털의 인링크[2] 기사 위주로 조정을 신청했고, 아웃링크[3] 기사에 대한 신청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포털의 아웃링크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한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포털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포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표 5-1〉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2009. 8. 7. ~ 2011. 12. 31.)

구분 / 연도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9	181 (100.0)	47 (26.0)	16 (8.8)	3 (1.7)	2 (1.1)	6 (3.3)	4 (2.2)	103 (56.9)	92.6	98.1	84.8
2010	841 (100.0)	77 (9.2)	69 (8.2)	6 (0.7)	13 (1.5)	48 (5.7)		628 (74.7)	88.5	95.8	88.7
2011	510 (100.0)	150 (29.4)	10 (2.0)		38 (7.5)		1 (0.2)	311 (61.0)	80.8	87.1	88.0
계	1,532 (100.0)	27.4 (17.9)	95 (6.3)	9 (0.5)	53 (3.4)	54 (3.5)	5 (0.4)	1,042 (68.0)	85.6	92.5	88.0

※( )안의 숫자는 %

2011년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을 처리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취하가 311건(6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정성립 150건(29.4%), 조정불성립결정 38건(7.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0건(2.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사를 단

2)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보도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3)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사제공언론사 홈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됨

순히 매개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의 특징은 단독 신청이 아닌,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리결과 면에서도 기사제공언론사의 조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 5-2〉 인터넷뉴스서비스 청구권별 처리결과

(2009. 8. 7. ~ 2011. 12. 31.)

구분 / 연도	청구명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9	정 정	91	23	14	2			1	51(42)	94.9	100.0	87.8
	반 론	23	5	1			5	1	11(11)	100.0	100.0	100.0
	추 후	2	2							100.0	100.0	100.0
	손 배	65	17	1	1	2	1	2	41(29)	85.7	95.0	75.8
	계	181	47	16	3	2	6	4	103(82)	92.6	98.1	84.8
2010	정 정	474	43	53	3	5	15		355(311)	92.3	97.4	88.9
	반 론	46	2	5			20		19(15)	100.0	100.0	84.6
	추 후	11	3						8(8)	100.0	100.0	100.0
	손 배	310	29	11	3	8	13		246(221)	78.4	91.9	88.2
	계	841	77	69	6	13	48		628(555)	88.5	95.8	88.7
2011	정 정	209	59	8		20			122(109)	77.0	84.5	84.2
	반 론	34	15			4			15(12)	78.9	81.8	79.4
	추 후	52	11			5			36(35)	68.8	82.1	88.5
	손 배	215	65	2		9		1	138(132)	88.2	92.2	93.0
	계	510	150	10		38		1	311(288)	80.8	87.1	88.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조정과는 별도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중재는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조정절차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과 같이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재제도는 2005년 도입 후 제도의 생소함, 그리고 사전에 양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 이용이 많지 않았다.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 등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에 불과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9년부터 중재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을 처리했다. 특히, 중재제도는 포털 등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건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침해유형별 현황

2011년 신청된 중재사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13건 중 11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초상권이 한 건 있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구분 / 연도	중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9	111	99		10		2		
2010	77	76						1
2011	113	112		1				
계	301 (100.0)	287 (95.3)		11 (3.7)		2 (0.7)		1 (0.3)

※( )안의 숫자는 %

2. 청구권별 현황

2011년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론보도청구가 27건, 추후보도청구가 12건, 손해배상청구가 11건을 차지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총 113건의 중재사건 중 107건에 대해서는 중재결정, 취하가 6건이었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중재건수 및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청구명	중재 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9	정정	61	30	31				
	반론	25	20	5				
	추후	7	3	4				
	손배	18	12	6				
	계	111	65	46				
2010	정정	35	34		1			
	반론	28	28					
	추후	12	12					
	손배	2	2					
	계	77	76		1			
2011	정정	63	60				3	
	반론	27	24				3	
	추후	12	12					
	손배	11	11					
	계	113	107				6	

3. 매체유형별 현황

2011년 중재사건을 매체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99건으로 8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 순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중재건수가 많은 이유는 기사제공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이 조정성립되는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 또는 매개한 동일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중재신청에 합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3〉 중재사건 매체유형별 현황

구분 / 연도	중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 문	뉴스통신	방 송	잡 지
2011	113 (100.0)	99 (87.6)	8 (7.1)	3 (2.7)	2 (1.8)	1 (0.8)	

※( )안의 숫자는 %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1년 중재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38건이었다. 그 중 인용이 5건, 취하가 9건, 기각/각하가 5건, 진행중인 사건이 19건이다. 자동 소제기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남해뉴스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미디어오늘 3건, MBC-TV, 문화일보,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대한투데이, 인터넷 대한투데이, 굿타임즈넷 등이 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구분 / 연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정정반론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2009	24	7	2	1	12		2		4	17	3	8	8	8	
2010	40	20	1	18				1	7	31	2	20	8	9	3
2011	38	23		15					6	30	2	5	9	5	19
계	102	50	3	34	12		2	1	17	78	7	33	25	22	22

※인용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청구인낙 등을 포함

〈표 7-2〉 2011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구분 / 매체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CJB-TV	1	1				1			1			
KBS-1TV	1	1				1				1		
MBC-TV	2	1		1			2					2
SBS-TV	1	1					1		1			
굿타임즈넷	2	1		1			2					2
남도뉴스	1			1			1				1	
남해뉴스	4	2		2			4			4		
대한투데이	2	1		1		2						2
문화일보	2	1		1			2				2	
오마이뉴스	1	1					1		1			
원주MBC-TV	1			1			1			1		
인터넷 대한투데이	2	1		1		2						2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1	1					1					1
인터넷 미디어오늘	3	2		1			1	2				3
인터넷 한국일보	1	1					1			1		
일요서울	1			1			1		1			
디지틀조선일보	2	1		1			2					2
조선일보	2	1		1			2					2
크리스천투데이	1	1					1					1
파인뉴스	1			1			1				1	
한겨레	1	1					1		1			

구분 / 매체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한국경제	1	1					1					1
한국일보	2	2					2			1		1
함안신문	1	1					1			1		
화순뉴스	1			1			1				1	
계	38	23		15		6	30	2	5	9	5	19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 정

(1981.3.31. ~ 2011.12.31.)

구분 / 연도	조정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1981	44	9				12 (5)	1	2	20 (2)		42.9%
1982	50	19				19 (5)		2	10 (4)		50.0%
1983	71	21				22 (7)	1	1	26 (8)		48.8%
1984	54	12				29 (8)	3		10 (5)		29.3%
1985	59	12				28 (5)	4		15 (7)		30.0%
1986	49	14				10 (2)	1		24 (11)		58.3%
1987	47	10				9 (4)	1		27 (2)		52.6%
1988	55	16				12 (5)		1	26 (13)		57.1%
1989	121	29				35 (10)		6	51 (21)		45.3%
1990	159	42				43 (10)	1	2	71 (40)		49.4%
1991	220	52				48 (9)	3	1	116 (43)		52.0%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0.6%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7.9%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1%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42.5%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42.7%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7.1%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69.2%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68.0%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72.0%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0.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71.7%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72.2%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7.0%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4.5%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3%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2.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5.5%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82.6%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계	18,220	6,005	489	348 (32)	0	2,923 (277)	743	101	7,611(4,574)	0	66.5%
	100.0%	33.0%	2.7%	1.9%	0.0%	16.0%	4.1%	0.6%	41.8%	0.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조정성공률 =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 / 조정건수(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성립결정) × 100

■중 재

(2005. 7. 28. ~ 2011. 12. 31.)

구분 / 연도	중재 건수	처리 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계	332	279	46	1	0	6	0
	100.0%	84.0%	13.9%	0.3%	6.0%	1.8%	0.0%

2011년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총 6,440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2011년 한 해 동안은 총 746개 매체를 심의하여 426건의 법익침해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0년 284건이었던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2011년에는 50.0%나 급증하였다. 이를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용량 · 용법 등 공개에 대한 결정건수(2010년 4건, 2011년 95건)와 형사사건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 결정건수(2010년 49건, 2011년 100건)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에 대한 결정건수(2010년 149건, 2011년 253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위원회가 2011년 3월부터 인터넷신문 전담 모니터링 제도 도입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침해유형별 분석

2011년 시정권고 결정사항을 침해법익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법익침해 유형이 개인적 법익침해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 권고건수가 전년 대비 100% 증가하는 등 개인적 법익 침해의 비중도 약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관련 보도가 189건(44.4%), 형사사건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가 100건(23.5%), 마약 용량 · 용법 등 공개 95건(22.3%), 사생활 침해 36건(8.5%),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묘사 등) 4건(0.9%),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2건(0.5%) 순으로 나타났다.

2. 매체유형별 분석

2011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를 결정한 426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253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간지 106건(24.8%), 뉴스통신 41건(9.6%), 주간지 20건(4.9%), 방송 5건(1.2%), 월간지 1건(0.2%)순이었다.

2010년에는 일간지 건수 96건 중 지역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74건으로 77.0%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11년에는 중앙일간지 46건(43.3%), 지역일간지 60건(56.6%)을 기록해 중앙일간지에 대한 권고건수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1. 12. 31.)

구분 / 연도	권고 건수	침해 유형									매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
2009	253		1	97	6	15		93	41		57	15		20	132	29
2010	284	2		49	2	10	4	199	18		96	14	5	20	149	
2011	426	2		100		36	95	189	4		106	20	1	41	253	5
계	6,400 100.0%	721 11.2%	134 2.1%	2,072 32.2%	1,041 16.2%	350 5.4%	1,103 17.1%	806 12.5%	213 3.3%		5,195 80.7%	146 2.3%	22 0.3%	332 5.2%	708 11.0%	37 0.6%

제2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 제2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총 2,124건의 조정사건과 113건의 중재사건 중 42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5 · 16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경북대학교노동조합
피신청인 : ㈜디지틀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사망한 아이 아버지의 말을 인용, 대구의 종합병원들이 휴일, 파업 등의 이유로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여 제 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네 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노조는 파업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응급실은 100% 정상운영 되었으며,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중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파업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1억7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디지틀조선일보 : 『[대구 ·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내　　용 : 휴일 대구에서 복통을 앓던 네 살짜리 아이가 치료를 회피하는 병원 때문에 응급실만 전전하다가 사망했다. 아이의 아버지 조모(33 · 대구 달서구 · 회사원)씨는 악몽 같았던 지난달 21일을 이렇게 전했다.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며 음식을 토하는 딸을 데리고 오후 3시쯤 집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직 의사가 소아과 소속이 아니어서 진료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조씨는 가까운 또 다른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소아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씨는 이어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어 "와도 좋다"는 말을 듣고 단숨에 달려갔다.

마침 병원은 파업 중이라 응급실에는 간호사가 1명도 없었고 곳곳에 대자보가 나붙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만난 의사는 "장염이면 다행인데, 장중첩(장의 한쪽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질환)이면 큰일"이라며 "초음파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장비가 없으니 인근(중소)병원에서 검사부터 하라"고 말했다.

조씨는 다시 아이를 안고 뛰었다. 차로 2~3분 거리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마친 뒤 "장중첩이다. 긴급하다. 오래 두면 장이 썩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종합병원에 진단결과를 전했더니 "파업 중이어서 의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하고 있어 수술은 불가능하다. 항문으로 바람만 불어넣으면 되는 간단한 시술이니까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씨는 종합병원마다 전화를 돌려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가 없다", "시술과정에서 장파열 등이 우려돼 휴일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며 아이를 봐주겠다는 병원은 없었다.

결국 조씨는 1시간가량 차를 달려 경북 구미시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오후 7시가 넘은 상태였다. 수술이 시작된 지 7시간, 이튿날 새벽 2시 네 살배기 딸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시술 과정에서 장 파열이 와서 쇼크사 했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외면했던 대구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병원을 찾았을 당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유도한 것 같다"면서 "사실 휴일에는 환자가 몰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병원들이 자기들 사정만 내세우며 미루는 사이에 아이는 죽어갔다"면서 "메디시티 · 첨단복합의료단지 등을 운운하는 대구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만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디지틀조선일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대구 ·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3일자 사회면 전국뉴스에 "[대구 ·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라는 제목으로 '마침 병원은 파업 중이라 응급실에는 간호사가 1명도 없었고 곳곳에 대자보가 나붙어 있었다.', '종합병원에 진단결과를 전했더니 "파업 중이어서 의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하고 있어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파업으로 인해 응급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파업기간에도 응급실은 100% 운영하는 등 장중첩증 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업이 장중첩증 환자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본 문 : 지난해 12월 3일자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및 12월 5일자 <[전문기자 칼럼] 병원이 내몬 아이의 죽음> 기사와 관련, 경북대병원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은 100% 운영했다. 병원파업이 장중첩증 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21일까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에 24시간 이상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금전배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디지틀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

신청인이 심장병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0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명 근
피신청인 :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심장병 카바수술의 사망률이 높은데도 신청인은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에 대해 계속하여 말을 바꾸고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고 신청인이 마치 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구성되었으며, 신청인이 사망률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게임-송명근(CARVAR) 수술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23:00)

내　　용 : ▷진행자 : "지난 해 8월 1년 넘게 카바 수술에 대한 조사를 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바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송명근 교수 2010. 2. 23. : "252명의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사망한 환자가 없습니다. 여기 환자의 리스트 402례와 아산병원 311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송명근 교수 2010. 9. 10. : "그래서 카바 수술은 365명 중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 … 그 다음은 3년 추적 동안에 2명이 더 사망해서 대동맥 박리증이라든지 대동맥의 대동맥류라든지 여기에서 6명이 수술해서 사망하셨고 …"

▷송명근 교수 2010. 10. 6. : "4명이 사망했고 또 3명이 사망했고 또 전체 사망 7명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추적사망이 있고, 그래서 12명이 아산병원에서 추적해서 3명 사망한 걸 집어 넣어서 카바가 15명이 죽었다 …"

▷진행자 : "우리는 삼 년 전 송명근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피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 송 교수로부터 카바 수술을 받았다는 오○○ 씨, 심장에 다시 통증이 느껴진 건 카바 수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

▷진행자 : "…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오○○ 씨는 의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략)

▷진행자 : "송 교수가 자신은 내 환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오○○ 씨는 아마도 자신이 송 교수가 말하는 유령 환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직된 두 교수의 논문에서 송명근 교수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라고 지목했던 5번 사례자가 정말 오○○ 씨가 맞는 걸까? …"

▷진행자 : "…우리는 송명근 교수가 유령 환자라고 했던 5번 사례와 오○○ 씨가 동일 인물인지 의무기록을 비교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 인터뷰 : "맞아요. 5번 환자 재수술한 거는 관상동맥 우회술하고, AVR, 대동맥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갈았고 병원에 온 이유는 STEMI(심근경색)라는 거는 …"

▷진행자 : "환자의 수술전 상황이나 경과, 수술 내역까지도 해직된 심장내과 교수의 논문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송명근 교수 인터뷰 : "내가 서울대학교에 케이스도 하나 집어넣을 텐데 이런거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진료한 다섯 환자 이렇게 써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논문이 이렇든 저렇든 허위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김○○ 교수는 송명근 교수가 오 씨의 존재를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 : "전화를 하셔서 이 환자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 환자가 거기에서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그 환자가 있느냐 해서 저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환자를 찾아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자료나 이런 걸 본인한테 팩스로 해서 이 자료를 달라 해서 … 본인이 수술하셨고 재수술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TV 11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방송과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방송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카바(CARVAR) 수술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2010년 12월 18일자 밤 11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 게임 – 송명근 카바(CARVAR) 수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카바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하여 마치 송명근 교수가 계속하여 말을 바꾸어 왔고,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모른다거나 그러한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카바 수술 사망률과 관련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보건복지부 내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조사 중이고, (2) 송명근 교수는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하여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환을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내려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 결과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고, (3) 송명근 교수는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내 용 : 2010년 12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게임 – 송명근 카바(CARVAR)수술 논란" 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가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 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비급여 기간 동안(~2012. 6.)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명근 교수 측은 "카바수술 환자의 사망률 부분은 송 교수 본인이 사망자 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며, 유령환자 부분은 논문에 기재된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당해 환자를 모른다고 부정한 적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6일자 23:00)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사례 3

마의태자가 경주김씨라고 보도했으나, 부안김씨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8　반론청구
신 청 인 : 부안김씨대종회
피신청인 :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주김씨 종친회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낸 신라삼성연원보를 근거로 마의태자와 그 후손이 경주김씨라고 밝히며, 천년 만에 경주김씨 족보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마의태자는 경주김씨가 아닌 부안김씨라 주장하며, 극히 일부 종파의 의견만 보도하는 것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월간조선 :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씨 족보에 오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화제면)

내　　용 :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 · 912~?). 망국의 한을 품고 삼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마의태자가 후손들에 의해 1000여년 만에 족보에 오른다. 경주김씨 태자파(太子派) 대종회는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大同譜 · 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8월 중에 문중에 배포키로 하고 현재 새로운 족보를 제작 중에 있다. 마의태자는 그동안 관련 기록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경주김씨 계대(繼代 · 대를 이음) 기록에서 누락돼 있었다. (중략)

서울대 규장각 등 샅샅이 뒤져

우여곡절 끝에 김 회장을 비롯한 순웅 장군의 자손들이 경주김씨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를 별

도로 구성한 게 2000년, 순웅장군의 윗대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노력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김 회장은 "한문과 보학에 정통한 20여분이 모여 서울대 규장각 등 관련 자료가 있을 법한 곳을 샅샅이 뒤진 끝에 우리의 1세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게 밝혀졌다"며 "순웅 장군은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이 찾아낸 과거 역사 기록에는 순웅 장군이 경순왕의 후예이고 그 사이에 마의태자가 누락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가 나와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 인물인 경주 김씨 세신공(1668년~1736년)이 쓴 '월성가승원대세계(月城家乘遠代世系)'에 따르면 '손웅과 경순왕 사이에 세계(世系)의 기록을 잃었다', '그러나 (순웅과 경순왕 사이의) 연대가 매우 가깝다'는 등의 문구가 나온다. 결정적인 문건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낸 1934년 발행 '신라삼성연원보(新羅三姓聯源譜)'와 '갑술보(甲戌譜)', 일제시대 때 편찬된 이 두 종류의 족보에는 김일(金鎰 · 마의태자 이름)의 두 아들이 선웅(善雄)과 순웅으로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김 회장은 마의태자의 계대에 관한 기록이 드문 이유에 대해 "고려 입장에서는 마의태자가 일종의 역적이었던 셈인데 그 후손들이 고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숨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은열공의 후예로 갖다붙여 놓은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마의태자의 첫째 아들인 선웅의 5세손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지만 김부식도 자신의 윗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선웅의 자손들은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난에 휘말리면서 멸문지화를 당해 대가 끊겨 버렸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족보 논란

김 회장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두 아들은 외할아버지 김유렴(金裕廉)의 손에 컸다고 한다. 김유렴은 마의태자의 장인이었지만 여동생을 왕건에게 시집보내 고려에서도 권세를 누렸다. 경순왕의 사촌이기도 한 김유렴은 마의태자가 저항한 신라의 손국을 실무적으로 집행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마의태자가 순웅 장군의 아버지였다는 기록을 찾아낸 후 2003년 대종회 총회를 열고 마의태자를 1세로 하는 새로운 대동보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작년 9월에는 기존의 대장군공파라는 대종회 명칭을 태자파로 바꾸자는 결의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도 있었다. 기존 대장군공파의 7개 분파 중 하나인 계림군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계림군파는 "1000년간 은열공 후예로, 순웅장군을 원조로 내려온 족보를 그대로 유지하자"며 족보 변경에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결국 2년 이상 끌며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2007년 5월에 계림군파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회장 등이 제출한 마의태자 계대 관련 역사적 문건들이 진본이며, 원고 측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관련 문건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간

의 지난한 과정 끝에 족보에 오르게 된 마의태자의 진면목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에 시달리다 금강산에 들어가 도인이 됐다는 식의 얘기가 전해오지만 실제 마의태자는 신라 부흥 운동을 펼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가 서라벌을 떠날 때 따르는 행렬이 30리에 걸쳐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의태자가 자신을 따르는 숱한 사람들과 함께 고려에 군사적으로 저항하며 신라 부흥 운동을 벌였을 것으로 후손들은 보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주간조선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마의태자 관련 보도문

2. 내 용 : 본 주간조선은 2010년 8월 2일 화제면 2쪽에 걸쳐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씨 족보에 오른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마의태자와 그 후손이 경주김씨라는 취지로 기사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령(부안)김씨 대종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습니다.

첫째, 신라 마지막 태자(세칭 마의태자)는 경주김씨가 아닙니다. (중략)

둘째, 태자의 아들은 기로와 교입니다. (중략)

셋째, 삼성연원보는 위보(爲譜)입니다. (중략)

넷째, 태자의 자는 겸용이 아닙니다. (중략)

다섯째, 김부식은 무열왕계입니다. (중략)

여섯째, 태자의 아들이 고려의 대장군일 수 없습니다. (후략)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나. 부제목 : 경주김씨 태자파 마의태자 1세로 삼은 새 족보 제작에
부안김씨, 통천김씨 등 "마의태자는 우리 조상" 반발

다. 내　용 :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 · 912~?). 망국의 한을 품고 삼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이 비운의 태자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문중들이 각기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경주김씨 태자파(太子派) 대종회(회장 김주경)가 작년에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大同譜 · 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문중에 배포하면서 증폭됐다. 경주김씨 태자파는 당초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 순웅(順雄 · 932~1015년) 대장군을 중시조로 삼고 있던 문중으로, 순웅 장군의 윗대를 마의태자의 배다른 동생인 은열공으로 계대(繼代 · 대를 이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열공의 나이가 순웅 장군 보다 오히려 3~4살 어린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 2000년부터 진짜 뿌리찾기에 나선 결과 순웅 장군이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동보 제작에 나섰다. 2009년 9월에는 대종회 명칭도 대장군공파에서 태자파로 바꿨다. 정사(正史) 기록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어머니는 경순왕의 첫째부인 죽방부인 박씨고, 은열공은 고려에 손국(遜國 · 나라를 넘김)을 결정한 경순왕이 고려 태조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다.

(중략)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 등은 지난 2005년 10월 마의태자를 1세로 삼은 새로운 대동보 편찬을 준비 중이던 경주김씨 대장군공파 대동보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신라계 김씨 일가의 족보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주김씨 계림군파에서 대동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는 부안김씨와 통천김씨 대종회도 보조 참가인으로 가담했다. 당시 소송에서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는 자신들이 제출한 근거 자료인 '삼성연원보' '갑술보' 등을 위보, 잡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사건 신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1심) "김순웅과 마의태자 김일의 관계가 명확

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김순웅이 김일의 둘째 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항고심)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2007년 8월 항고심의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라김씨연합대종원 김○○ 부총재는 "당시 법원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셈인데, 그렇더라도 족보는 역사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피신청인은 제 1항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간조선> 제2144호(2011. 2. 21.자) 48, 49면에 게재하되, 제목과 부제목 및 내용의 크기는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보도의 것과 같게한다.

3.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2.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1일자 48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4

구당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1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남 수
피신청인 :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신청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 측이 암으로 숨진 장진영을 침뜸 치료로 나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침뜸 치료가 장씨의 암치료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일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고, 신청인의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장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씨의 소속사 간부와 장씨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침뜸치료가 암의 '림프절 전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유명인 치료 과장'의 경우 현재 생존해 있는 유명인은 뺀 채 의도적으로 고인이 된 사람의 가족들만 주로 취재해 신청인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후원자로부터는 건물을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일자 23:10)

내　　용 : ▷한○○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한○○입니다. 앞으로 더욱 뜨겁게 공감하고 더욱 시원하게 소통하는 뉴스추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뜸의 대가로 불려온 구당 김남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에 앞서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구당 선생은 무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의술로 평생 환자를 위해 몸바쳐 왔다는 점에서 수많은 언론에서 명의로 소개돼 왔습니다. 저희 뉴스추적에서

도 지난 해 대체의학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당 신화 뒤에 숨겨진 의혹들이 하나둘 불거지면서 오늘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구당이 공개적으로 침뜸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던 고 장진영씨를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 (김○○ 씨 방문 장면) 취재진은 지난 달 고 장진영 씨의 남편 김○○ 씨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은 김씨, 언론 인터뷰를 꺼려하던 그는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취재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김○○ (고 장진영씨 남편) : 치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진영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인제 결과가 어쨌든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주장이나 효과안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중략)

▷장○○ 교수 : 위벽도 그렇게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복수가 조금 더 생겼고, 복막전이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악화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병기가 4기에서 계속 4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 결국 상태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여 일시적인 치료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침뜸 치료의 효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합니다.

▷이○○ (한의사) : 일방적으로 뭐 뜸 효과다 아니면 뭐 항암 효과다 그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도 뜸만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항암으로 해보고 이래 대조군을 통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젠데... (중략)

▷기자 : 구당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그가 처음으로 창안했다는 화상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당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구당 인터뷰]

▷구당 : 옛날부터 있던 자리를 내가 쓸 수 있다 라는 거...이렇게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지 발명은 아니에요.

▷기자 : 그러면서도 효과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구당 :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이거는 적어도 한 40일 정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침으로 딱 치료하면 진물이 그쳐버립니다. 그쳐버리고 나중에 딱지가 져요.

▷기자 : 그러나 한의학계에서는 구당의 화상침이 그리 놀라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이○○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대학) : 지금 이 화상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침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병변 부위에다가 침을 놓는 일종의 아시혈 요법이에요. 이런 요법은 누구나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한의사라면 누구나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TV 오후 11시 15분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오후 11시 15분에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편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 김남수 회장의 96년 인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장진영씨의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 김○○씨가 '신청인이 침뜸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했다.'라는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의 간곡한 부탁과 장진영씨 부친의 간청으로 치료가 시작된 것일 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침뜸 치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김○○씨의 인터뷰 역시 기자의 기록을 보면 침뜸 치료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치의가 아닌 수련의가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마지막 치료일자의 오류에 관한 김○○씨의 거짓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김○○씨가 자신의 이메일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인터뷰에서는 계속 2월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의 전이도 날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진영씨 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방송과 관련해 김○○씨 자신의 책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오류를 김○○씨 스스로 범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SBS 취재진은 건국대 병원 의사만 취재해 당시 장진영씨 치료를 맡았던 서울대 의료진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뉴스추적 한 프로그램에서 83년과 87년으로 앞과 뒤가 다른 인터뷰 내

용을 보도하고 있어 사실을 잘못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1954년 개원하고 있던 원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아도 명백한 허위 증언이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유명인 치료 부분도 살아 있는 분들은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그의 가족 등 만을 취재해 신청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섯째, 후원자에 대한 허위정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 등은 한 칸도 없음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화상침에 대한 방송도 한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청인이 연구 보급한 뜸을 교묘하게 화상침으로 연결시켰고, 구당 화상침은 누구나 하는 침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이○○ 기자가 침뜸치료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단지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덟째, 화상환자 치료 부분과 관련해 구상 화상침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구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아홉째, 훈장 부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미 행정착오로 공적이 바뀐 오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조작한 것처럼 뉘앙스를 주어 신청인이 마치 부도덕한 인물로 보이게 한 바 이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말미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

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해 11월 4일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와 관련, 구당 김남수 옹의 장진영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 및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암이 전이된 시기인 2월에는 구당이 장진영씨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장진영씨를 마지막으로 치료한 날은 12월 25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구당 김남수 측은 "침뜸을 이용한 장진영씨의 암 치료 과정을 보면 림프절 전이 부분이 상당히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남수 옹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홍보한 적이 없고,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며, 구당 화상침을 다른 한의사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구당 김남수 측은 "1954년 원주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 행안부의 훈장 부분과 관련해, 구당은 침뜸 봉사활동 공로로 수여받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5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의 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신청인 기관의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부산조정1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구제역 의심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바이러스 유입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해 다른 국가의 바이러스 유전자 일치도와 별 차이가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부산일보 :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내　　용 : 대학 때 일이다. 정책학 강의를 하던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비수를 날렸다. "대안은 없어도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 손들어 봐!" 토론수업을 해야 하는데, 도통 반응이 없자 뱉어낸 말이다.

구제역을 보면서 딱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건 정말 아닌데, 답을 찾을 수 없다. 불쌍한 가축들 살리고 싶은데,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공장식 사육'이 근원이라는데 땅은 손바닥 만 하고, 뜬금없이 동물사랑을 외칠 수도 없으니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책'이 빠진 대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제때 신고않은 농민? 바이러스 잔뜩 묻혀 돌아다닌 트럭기사? 제대로 소독 않고 농장을 누빈 방역공무원? 구제역 발병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이건 '마녀사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다. 의심신고가 있은 지 6일이 지나서였다. 바이러스는 퍼질 대로 퍼진 뒤였다. 경북이 초토화 됐고 일주일 만에 경기도, 또다시 일주일 만에 강원도가 휩쓸렸다. 54일 동안 가축 210만여 마리를 죽였다. 두 눈 시퍼렇게 뜬 생명을 생매장 했다.

구제역은 2000년, 2002년에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월과 4월 경기와 인천에서 2차례나 발병했다. 1년 새 3번째 발병했으니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처음 발병한 경북에선 공무원이 셋이나 숨졌고 여성 공무원은 유산까지 해 가며 사투를 벌였지만 18일 대구도 감염됐다.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신고가 있자 당시 농림부는 차관보를 현장으로 보내 반나절 만에 살처분을 끝냈고 백신접종까지 실시해 20여일 만에 구제역을 잡았다. 살처분 가축도 2천216마리에 불과했다.

2년 뒤 경기도 안성 등지서 또다시 구제역이 터졌지만 백신접종 없이 살처분 만으로 52일 만에 상황을 끝냈다. 그해 11월 청정국 지위도 회복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은 210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생매장 했지만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수십㎞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발병 40일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나온 대책이란 것도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라'는 정도였다. 대통령이 방역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16일로, 50여일이나 지난 뒤였다.

현 정권이 그토록 중시하는 '국격(國格)'을 지키고 싶었는지, 정부는 백신접종을 한 달 동안이나 미루며 '청정국'을 고집하더니 국내 돼지의 20%, 소 8% 이상을 죽이고 말았다. 구제역 발병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나서 바이러스 유입 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번 구제역은 발병 경로조차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 국토를 가축 공동묘지로 만들어 놓고, 설날 고향에도 못가게 해 놓고, 가축을 학살해 국민 정서를 황폐화시켜 놓고, 2조

원에 이르는 매몰 보상비를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조차 않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에 이어 이제는 구제역까지, 경위도 파악 못하고, 대처도 제대로 못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도 실추시킨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부산일보 15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 15면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라는 제목으로 구제역 발생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나서 바이러스 유입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번 구제역은 발병경로조차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구제역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구제역 발생 국가를 다녀온 구제역 발생 양돈단지 내의 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부산일보는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이 부산일보 1월 20일자 칼럼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와 관련 제공하는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한다.

2. 위 기고문은 원고지 7매 이내로 한다.

3. 위 기고문에는 "부산일보" 및 "1월 20일자 칼럼"등의 표현을 삽입할 수 없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기고문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게재한다.

2011. 2.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구제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31면)

내　　용 : 2010년 11월 29일 안동시 소재 한 양돈단지 내에 있는 2개 양돈농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병든 돼지가 구제역으로 진단됐다. 이어 추가 검사에서 단지 내 모든 양돈장이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앙역학조사반의 현지 역학조사에 의하면, 이 양돈단지는 와룡면 소재의 5개 양돈농가의 집합체로서 농가경계 없이 다수의 돈사에 약 1만7천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단지 입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4개농가)하고 있으며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각 농가에서 분뇨 이송시 유출한 돈분으로 자주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돈단지 내로 구제역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던 중에 양돈단지 내 5명의 농장주 중 1명이 11월초에 5일 정도 구제역 상시발생 국가인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농장주는 공항에서 축산 관련인에게 실시하는 소독조치를 받지 않고 귀가했고 며칠 뒤 양돈단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기온에서 신발이나 의복 등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을 경우 상당기간 생존할 수 있고 이 바이러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쉽게 동물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농장주가 양돈단지를 방문한 시기와 구제역의 잠복기(바이러스가 동물체에 침입한 후 병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농장 방문과 구제역 발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됐다. 또한 단지 내 돼지들의 항체형성, 임상증상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양돈단지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앙역학조사반은 농장주의 외국여행과 구제역의 국내 유입과는 관련성

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역학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구제역국제표준연구소(WRLFMD)에 의뢰하여 2010년도 베트남과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들의 유전자(VP1) 상동성을 비교하였던바 98%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두 나라의 바이러스가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로 추정됐다. 물론 안동 바이러스는 러시아, 홍콩, 일본 등의 구제역 바이러스와도 유전자 상동성이 매우 높았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사람 · 물자가 양돈단지 내로 이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나라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극히 일부 학자들은 금번 구제역이 2010년도 4월 강화에서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일부 가축에 지속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재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어린 돼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소나 돼지에서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6개월 정도 농장에서 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국내에는 더 이상 구제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자료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하여 OIE로부터 2010년 9월 27일자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돈단지에는 5명의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베트남 2, 중국 2, 태국 1)가 고용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최근에 해외여행을 하거나 구제역 발생국가 사람들을 접촉한 사실이 없고, 외국에서 육류가 포함된 국제소포 등을 받거나 농장 내로 반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농장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현지조사의 한계성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례 6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휴양소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특혜매입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75 · 76 · 77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장 규
피신청인 : ㈜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휴양소용으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매매 당시 용산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져 특혜매입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반론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중앙일보 : (1)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내　　용 : '모텔 속 대형 영화관' '전망 좋은 방, 특별한 서비스'

10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2차로 도로를 낀 안고령 계곡과 시골 동네는 모텔과 음식점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모텔촌이다. 그곳에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건물이 있었다. '용산 가족휴양소'. 건물 4개 동(전체 면적 1,998㎡)에 25개 객실을 갖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텔과 다를 바 없다.

용산구는 박장규(재임 2000~2010년) 전 청장시절인 2009년 12월 땅(7,802㎡)과 모텔을 37억2400만 원에 사 휴양소로 개 · 보수했다. 〈본지 1월6일자 20면〉 이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박 청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확인 결과 이 땅의 주인은 3~4대(1998~2003년) 용산구의회 구의

원을 지낸 윤매근(70) 씨로 밝혀졌다. 윤씨는 2002년부터 1년5개월간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용산구가 휴양소용 땅과 건물을 사면서 윤씨에게 준 돈은 3.3㎡당 158만원꼴이다.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샀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청장 퇴임 직전 전직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구청이 비싼 값에 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백석읍 ○○ 공인중개사무소 윤○○(57)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휴양소 인근의 땅이 3.3㎡당 40만원에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지금 거의 죽어 급매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3년 이 휴양소 땅을 샀다. 이듬 해에 그는 이 땅에 1~4층짜리 모텔 4개 동을 지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당시 안고령 계곡가에는 윤씨의 모텔을 포함해 10여 곳의 모텔이 있었다. 현재 이 모텔 중 4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다. 4곳은 경매로 넘어갔다. 두 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씨는 "윤씨가 모텔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물건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한참 안 팔리다가 용산구가 인수한다고 해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했다"고 덧붙였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80)씨는 "2000년대 들어 경매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모텔 물건이 팔린 건 용산구 거래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구청에 땅을 판 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땅을 사서 모텔을 짓는데 52억원 넘게 썼고 엄청나게 손해보고 팔았다. 이 건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취임 때 휴양소를 짓겠다고 공약해 수도권 일대 여러 땅을 봤지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양주 땅을 선택한 것"이라며 "당시 휴양소 인근 땅은 수십만원 더 비쌌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 서울시 행정국 소속) 전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두 곳의 감정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가를 토대로 땅을 샀다"면서 "주변에 천문대 · 수목원 등 볼거리가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네 주민 정모(64)씨는 "주변에는 관광지도 없고, 아버지와 딸이 와도 불륜이라고 오해할 정도인 동네에 가족 휴양소를 만들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성장현 현 용산구청장은 "전 구청장이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한 일이지만 왜 그때 의회가 승인했을까 의아해 했다"며 "당시의 거래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용산구청 행정감사에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구청에서 이런 의혹을 살 만한 거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매매 절차가 투명했는지, 적정하게 가격을 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용산구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 검토"』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의 가족휴양소 특혜매입 의혹과 관련해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을 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1일 "양주 휴양소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 ·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뤄진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정책회의를 거쳐 세금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는 또 모텔촌에 설립된 양주 휴양소가 가족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휴양소를 120~15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용산구의회의 용산구청 행정감사 때 양주 휴양소가 논란이 됐다는 사실도 11일 밝혀졌다. 땅과 건물의 매입 비용을 놓고서다. 용산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당시 행정감사에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용산구가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장정호(민주당) 구의원은 "당시 휴양소가 들어선 동네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땅 주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었을 텐데도 굳이 감정가대로 산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조건이 맞지 않는 모텔촌에 있는 이 땅을 굳이 선택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구의회의 행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용산구는 애초에 휴양소 땅에 노인전문요양원 설립을 검토했다. 양주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휴양소와 어린이 체험시설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모텔이 많아 어린이 체험시설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이 나오자 휴양소 설립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는 박장규(재임 2000~2010년) 전 구청장 시절인 2009년 12월에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휴양소용 땅(7802㎡)과 건물(전체 면적 1998㎡)을 37억2400만원에 사 개 · 보수했다. 주민 복지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휴양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는 박 전 구청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을 때였다. 확인 결과 이 땅과 건물의 주인은 3~4대(1998~2003년) 용산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윤매근(70)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02년부터 1년5개월간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휴양소가 있는 안고령 계곡가 작은 시골동네에는 외환위기 직전 모텔이 우후죽순 들어섰으나, 현재

대다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휴양소가 있는 안고령 계곡가 인근의 10여 개 모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4개뿐이다. 인근의 부동산업자들은 "2000년 이후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거의 죽어 아주 싼값에 급매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 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성 구청장은 "가족휴양소가 문 연 지 얼마 안 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운영이 어려우면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본 조정결정일 바로 다음에 편집되는 중앙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18면 사회면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9. 12.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3.3㎡당 159만원으로 계산한 37억2,400만원에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 보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위 매수 당시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가 3.3㎡당 40만원을 상회하고, 용산구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18면 사회면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9. 12.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3.3㎡당 159만원으로 계산한 37억2,400만원에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보수하였으나, 매입한 건물이 전형적인 러브호텔촌에 위치하여 있고 외관 또한 모텔과 다를 바 없으며,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이 퇴임을 7개월 앞두고 과거 용산구의회 의원 및 부의장을 지낸 윤매근씨로부터 시가인 3.3㎡당 40만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구청장 퇴임 직전 전직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구청이 비싼 값에 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위 휴양소의 객실 이용률은 주말에도 60~80%에 그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용산구청장을 지낸 박장규씨는 ① 용산구에서 매입한 위 각 부동산은 건물의 외양과 구조가 주변의 모텔건물과 상이할 뿐 아니라 숙소 외에 공동식당·세미나실·바베큐장·족구장·잔디밭·텃밭 등이 갖추어져 있어 구민들의 휴양시설로 적합하고, ② 주민 휴양소설치는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의 선거공약으로 임기 중반인 2007.경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서울과의 접근성 및 주변에 큰 저수지와 천문대, 수목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③ 당시 한국감정원 및 고려감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가대로 용산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④ 비수기인 1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휴양소의 주말 객실 이용률이 80%를 상회할 뿐 아니라 토요일의 경우 계속하여 만실이 되고 있어 당초 예상치보다 높고, 서울시내 타 구청 휴양소에 비해서도 그 이용률이 월등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제하

의 기사에서 박장규 씨가 구청장으로 있던 2009년 12월경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부동산을 3.3 ㎡당 159만원으로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 보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용산구청의 해당 토지 및 건물 매수 당시 시가 합계가 3.3㎡당 40만원을 상회하였고, 용산구는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기사내용 중 해당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용산구의 감사청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결정될 경우 10일 이내 그 사실을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3월 9일까지 중앙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위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3. 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7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이익 빼가기에만 몰두"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226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한킴벌리의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끝이 났으며, 유한킴벌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는 이익 빼가기에만 몰두하고 전통적인 유한킴벌리의 경영철학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주주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주주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기에 파행이 아니고, 주주배당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사안이었기에 이익 빼가기는 사실이 아니며, 유한킴벌리의 인간존중경영철학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데 당사자인 유한킴벌리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방의 의견만을 기사에 반영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21 :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내　　용 : 지난 3월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한킴벌리(이하 YK) 본사 주총장, 제2대 주주인 유한양행(이하 유한)을 대표한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는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 바로 퇴장했다. 맞은편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제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이하 KC) 경영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난 1970년 회사 설립 이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작기업 중 하나로 불려온 YK의 주총이 파행으로 끝나는 순간이다.

이런 결말은 그 전날 KC의 톰 ○○ 회장과 유한 쪽 최고경영진의 회동에서 이미 예고됐다. 유한은

지난해 자신이 선임한 3명의 YK 이사진 중 한 명인 최○○ 사장의 교체 의사를 밝혔지만, KC의 반대에 부딪혔다. KC 역시 지난해 자신이 지명한 4명의 이사진 중 한 명을 KC 북아시아 총괄사장인 ○○로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한이 반대했다. 지난 41년간 유한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과 두 주주사 간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책임경영과 뛰어난 경영성과를 모두 달성해, 한국의 대표적인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받아온 YK에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진 것일까?

KC와 유한의 YK 지분 비율은 7대 3이다. 하지만 합작을 시작한 뒤 표 대결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상호 존중과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합작경영을 해왔다. 전체 7명의 이사진 중에서 KC가 4명, 유한이 3명으로 돼있는 이사 선임 비율이나, 대표이사를 유한의 이사 중에서 선임해온 전통은 주주사 간 호혜정신을 반영한다. 익명을 요청한 YK의 한 임원은 "주주사 간에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은 적이 거의 없고, 주주가 있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유-경영 분리가 잘된 회사로 지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13년간 최고경영자를 맡았던 문국현 사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상황은 급변했다. 유한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터 KC의 'YK이익 빼가기'가 본격화됐다. 그 근거로는 첫째 주주배당의 급증이 꼽힌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배당성향을 보면 문국현 전 사장 시절인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77%, 66%였던 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95%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사실상 이익의 대부분이 배당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유한도 배당금의 30%를 받는 입장이지만 줄곧 고배당 정책에 반대해왔다. 유한 관계자는 "YK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KC 요구가 관철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YK가 KC에 지급하는 로열티(기술사용료)의 급증이다. YK는 2004년까지는 매년 매출액의 2% 정도를 KC에 로열티로 지급했다. 금액으로는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각각 14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계약 갱신 협상을 벌였으나, 문국현 사장이 KC의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버텼다. 하지만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간 뒤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매출액의 2.45%인 2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익명을 요구한 YK의 한 관계자는 "KC의 로열티 인상요구는 무리하고 부당하다"면서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YK로부터 KC가 오히려 배워가는 형편이고, 브랜드 이미지에서도 한국 소비자에게는 KC보다 유한의 평판이 더욱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홍콩에 소재한 KC 북아시아 본부(한국 · 중국 · 대만 · 홍콩 지역 관장)의 운영비 분담 요구다. KC는 문국현 사장 시절 없앴던 북아시아 본부를 재가동하면서 2009년 YK에 20억원의 분담

을 요구했다. YK는 처음에는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익명을 요청한 YK의 한 임원은 "북아시아 본부는 KC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조직으로, YK가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분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KC는 결국 YK에 압력을 가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아냈다. 유한은 "KC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수십억원을 빼간 것은 횡령 · 유용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C는 할 수 없이 지난해 20억원을 반환했으나, 2011년에는 종전의 2배인 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의 '이익 빼가기'로 인해 YK의 금고는 점차 비어갔다. 4천억원에 육박하던 사내 이익잉여금이 2009년에는 2600억원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문국현 사장이 그만둔 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KC가 YK로부터 가져간 배당, 로열티, 분담금을 모두 합치면 3200억원이 넘는다. KC가 YK에 투자한 자본금 14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KC는 '이익 빼가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YK에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YK의 한 임원은 "KC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년에 대규모 감원 계획을 세웠고, YK에도 10% 수준의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YK경영진은 다른 기업과 달리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감원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감원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는 YK가 지켜온 인간존중경영 원칙이 크게 작용했다. YK는 1994년 문국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다.

(중략)

최○○ 신임 사장은 취임 뒤 KC에 협조적 태도를 견지했다. KC의 고배당 요구를 수용하고, 로열티 지급률도 높였다. 또 비용절감 요구를 받아들여 사회공헌 지출을 줄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최 사장이 회의 때 '사회 공헌에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면서 "사회공헌 관련 부서의 위상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회사가 지난 2월 말 실시한 조기퇴직프로그램(ERP)도 인력구조 조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ERP는 원래 안양공장을 충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직의 퇴사 희망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ERP 적용 희망퇴직자 25명 중에서 실제 안양공장 근무자는 절반도 안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직 등 타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YK 관계자는 "최○○ 사장이 회의를 하면서 '인간존중경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나중에 사람을 정리해야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임 사장의 사회공헌 지출 축소와 희망퇴직 실시는 사회책임과 인간존중경영 경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취임 당시 약속에도 위배된다. 최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오늘의 YK를 만들어온 주요 가치인 인간존

중, 고객만족, 가치창조, 혁신주도, 사회공헌의 원칙을 존중하며 이를 그대로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최 사장은 대신 성장 극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현재 1조2천억원 수준인 매출을 5배인 5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YK 퇴직 임원은 "최○○ 사장이 자신을 선임한 유한의 입장을 저버리고 KC의 편에 선 것은 일종의 변절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 한겨레21은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대상보도제목의 크기로, 본문 내용은 원기사의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제852호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제852호 50페이지 ~ 54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50페이지 기사 중 첫째, "지난 3월9일 유한킴벌리 본사 주총장. 제2대 주주인 유한양행을 대표한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는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 바로 퇴장했다. 맞은편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제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 경영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난 1970년 회사 설립 이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작기업 중 하나로 불려온 YK의 주총이 파행으로 끝나는 순간이다."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퇴장한 사람은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이 아니라 제2대 주주인 유한양행을 대표한 김○○ 사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유한킴벌리 주주총회는 관계법과 정관이 요구하는 회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주주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되었기에 파행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둘째, “유한 쪽의 주장에 따르면 KC의 ‘YK이익 빼가기’가 본격화됐다. 그 근거로는 첫째 주주배당의 급증이 꼽힌다. (중략)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95%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의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양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것이며, 배당과 함께 투자도 함께 증가하였기에 “KC의 ‘YK이익 빼가기’가 본격화”가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51페이지 기사중 첫째, “~두 번째는 YK가 KC에 지급하는 로열티(기술사용료)의 급증이다. YK는 2004년까지는 매년 매출액의 2% 정도를 KC에 로열티로 지급했다. (중략) 하지만,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간 뒤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매출액의 2.45%인 296억 원으로 급증했다.”의 보도 내용은 YK가 KC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인상은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에서 세법이 정하는 상호합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양 주주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마치 부당하게 급증한 것처럼 표현한 것을 정정합니다.

둘째, “~세번째는 홍콩에 소재한 KC 북아시아 본부의 운영비 분담 요구다. (중략) 하지만 KC는 결국 YK에 압력을 가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아냈다. (중략) KC는 할 수 없이 지난해 20억원을 반환했으나, 2011년 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는 킴벌리클라크로부터 40억원에 대한 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정합니다.

52페이지 기사중 첫째, “~KC는 ‘이익 빼가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YK에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모든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가절감과 비용절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익 빼가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정정합니다.

둘째, “~회사가 2월 말 실시한 조기퇴직지원프로그램(ERP)도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보도 내용은 2월말 실시한 ‘생애설계지원제도’는 공장 이전으로 인한 배려 차원의 프로그램이었고, 조기퇴직프로그램이나 인력구조조정이 아니었으므로 정정합니다.

셋째, “~결국 KC는 2010년 3월 주총에서 사장 내정자인 최 부사장을 내치고, 대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최○○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궁정 쿠테타’를 감행했다”는 보도 내용은 최○○ 대표이사는 양 주주사인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의 합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으므로 ‘궁정쿠데타’라는 표현은 잘못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넷째, “~KC의 요구에 반대하던 이○○ 인사담당 부사장도 함께 물러났다. 이후 KC의 경영 방침에 협력하지 않은 고위 임원들이 대거 YK를 떠나게 된다. (중략) 이○○ 부사장과 생산쪽의 김○○ 부사장이 지난해 말 이후 사임하는 등 YK의 임원 20여명 중에서 지난 1년간 그만둔 사람만 7명에 달한다.”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전체 임원수는 35명이며, 지난 1년간 은퇴, 이직 등의 이유로 떠난

임원은 6명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다섯째, "~익명을 요청한 한 임원은 "최사장이 회의 때 '사회공헌에 왜 많은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고 말한 적도 있다"면서…"의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취임과 함께 사회공헌을 지속발전 시켜나가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여섯째, "~익명을 요청한 YK 관계자는 "최○○ 사장이 회의를 하면서 인간존중경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나중에 사람을 정리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취임 시 유한킴벌리의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지켜 가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신뢰와 배려를 통해 사원을 존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오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해고를 언급하는 표현이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일곱째, "~신임사장의 사회공헌 지출 축소와 희망퇴직 실시는 사회책임과 인간존중경영 경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취임 당시 약속에도 위배된다. 최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오늘의 YK를 만들어온 주요 가치인 인간존중, 고객만족, 가치창조, 혁신주도, 사회공헌의 원칙을 존중하며 이를 그대로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사원존중과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취임 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가고 있으므로 '사회책임과 인간존중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표현이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여덟째, "~익명을 요구한 한 YK 퇴직 임원은 "최○○ 사장이 자신을 선임한 유한의 입장을 저버리고 KC의 편에 선 것은 일종의 변절로 부도덕한 행동" 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양 주주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으므로 '변절', '부도덕한 행동' 의 표현은 잘못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53페이지 기사 중 첫째,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가자 YK의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KC가 직접 관장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YK의 한 임원은 "KC의 해외담당 부회장과 북아시아 총괄사장이 YK경영 간섭을 주도하고 있다"면서"유한은 이들에 의해 사실상 경영권을 빼긴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경영권은 유한킴벌리에 있으므로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했다', '경영권을 빼긴 것' 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둘째, "~YK의 지난해 매출은 12조 940억원으로..."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2010년 매출액은 1조 2천 94억 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셋째, "~한겨레는 YK의 최○○ 사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몇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라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비서실에 전화한 적은 있으나, 용건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으므로 몇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 및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의 지난 2011년 3월 15일자 제852호 50쪽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유한킴벌리 쪽은 "지난 3월 9일의 주주총회는 관계법과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므로 파행이 아니며 주주배당 및 기술사용료 지급도 양 주주간 협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KC의 YK 이익 빼가기가 아니다. KC가 2011년 북아시아 본부 운영비로 4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유한양행과 KC의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임된 최○○ 대표이사는 취임 시 약속한 사원존중과 사회책임경영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고, YK가 경영권을 뺏기거나 자율경영전통을 폐기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한 사람은 유한양행 김○○ 사장이며 유한킴벌리의 작년 매출액은 1조 2,940억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가능하면 4월 20일까지) <한겨레21>의 「알립니다」 코너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21>의 통상적인 <반론 및 정정보도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알립니다」 코너의 통상적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이 지면에 게재됨과 동시에 7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21>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알립니다> 기사목록에 <유한킴벌리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한다. 아울러,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송고한다.

4. 피신청인 측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신청인 대표이사를 만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오해를 푸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4. 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①

한겨레21 :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독자와함께>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②

한겨레21 홈페이지 : 『<유한킴벌리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8

경찰관인 신청인이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임대료를 받아왔으며, 경찰관 영리활동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대전조정6 · 7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대전문화방송㈜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경찰관인 신청인이 부여읍내에 5층짜리 여관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 내 쓰레기를 신청인 아버지 땅에 방치하고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받아 경찰관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지의무와 성매매 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쓰레기를 쌓아둔 것일 뿐 현재 치우고 있으며 여관건물에 있는 유흥업소는 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기 전부터 영업하고 있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므로 성매매 의혹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2700만원이며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금지의무 위반도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대전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리포트]성매매 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8일자 21:00)

내　　용 :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성매매 의혹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건물 임대료를 받아왔다면 어떨까요? 엄연한 징계 대상감이지만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 건물. 1층에는 다방과 식당이, 지하에는 이른바 '2차'를 나가는 것으로 알

려진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부여경찰서 박 모 경사가 여동생과 재테크를 하겠다며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구입한 것은 지난해 8월. 이들은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 3곳에서 지금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챙겨왔습니다. 더구나 박 모 경사는 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 내 쓰레기를 지난 14일 대전시 안영동에 있는 부친 소유 땅에 가져다 버려 주민들에 의해 대전 중구청에 신고됐습니다.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지 의무와 성매매 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박 경사의 건물 매입 사실을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박 경사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보강조사 방침을, 박 경사도 문제가 된 건물을 곧 되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 업소로 재테크(속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21:00)

부여경찰서는 경찰관이 성매매 의혹 업소에 건물을 임대했다는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박 모 경사가 성매매 의혹 업주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수 차례 접촉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박 경사가 건물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대전 MBC TV 저녁 9시 지역뉴스 및 아침 7시뉴스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하고, 대전MBC(http://www.tjmbc.co.kr) 홈페이지 NEWS 초기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성매매업소로 재테크')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 18. 및 1. 19.자 뉴스프로그램에서 "성매매업소로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부여경찰서 박모 경사가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건물을 구입한 뒤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건물임대료를 받아왔다.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챙겨왔다. 위 건물 내 쓰레기를 부친 소유 땅에 가져다 버렸다. 박모경사는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지의무와 성매매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부여경찰서 박모 경사가 구입한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건물에 있는 유흥업소는 성매매의혹이 있는 업소가 아니었고, 박모 경사가 여관건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2,700만 원이었고, 이 여관 건물 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부친 소유 땅에 잠시 쌓아놓은 것이었고, 박모 경사가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지의무와 성매매의혹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각 확인 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 1월 18일과 19일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부여경찰서에서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이 확인되어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박모 경사는 자신이 경락받은 건물에는 성매매업소가 없고, 여관 건물 내 쓰레기를 부친 소유 땅에다 잠시 쌓아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치우고 있으며, 성매

매 의혹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4월 8일까지 대전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4.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대전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7일자 21: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9

신청인 회사가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터넷쇼핑몰 광고를 검색광고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387 (2011서울조정388과 병합) 정정청구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4. 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브랜드 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 수입을 위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이용자들의 3개월 이상 지속된 불만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경우, 검색 시 노출되는 기간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수수하는 선불식 기간제 방식으로 입점 수수료와 클릭 횟수에 따른 광고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 환경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이트는 광고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확인이 될 경우 노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머니투데이 : (1)『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A2면)

내　　용 : 회사원 김○○씨(34)는 최근 인터넷 서핑 도중 쇼핑몰 사이트 창이 수시로 열리고 컴퓨터 속도가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느려지는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급기야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다운까지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브랜드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프로그램 배포처인 일부 인터넷쇼핑몰을 방치하면서부터 성능이 저하되는 등 누리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법규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일○○○ 등 일부 의류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일명 '납치프로그램'을 사이트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주입해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 업체는 이렇게 얻은 방문자수로 '링크검색 1위', '방문자 1위'라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다.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클릭수를 다시 홍보마케팅에 활용하는 셈이다.

한 회사원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쇼핑몰사이트가 뜬다"며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갑자기 창이 열려 일 안하고 쇼핑한다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쇼핑몰 업체 이름과 함께 '안뜨게 하는 법, 제거, 없애는 법, 차단, 삭제' 등의 문구가 함께 뜰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주무부서를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팀 관계자는 "납치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불건전 사이트의 경우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납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쇼핑몰을 방치하는 포털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도 높다. 대학원생 최○○씨(27)는 "해당 쇼핑몰업체에 전화했지만 아예 받지도 않는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유해사이트로 신고해도 별다른 답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다른 누리꾼은 "네이버에서 쇼핑몰 검색을 하면 무조건 해당 사이트가 떠 네이버 측에 항의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을 빌미로 불만사항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네이버는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 검색 입점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네이버의 입점업체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NHN서치마케팅 등 30군데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쇼핑몰 광고를 진행하고 비용을 받는다. 다음은 정액제로 최소 월 13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쇼핑몰별로 브랜드 검색 입점료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검색광고시장은 1조 179억원(업계 추정) 규모로 이중 네이버가 80%, 다음이 17%의 시장을 점유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돈벌이를 위해 유해 쇼핑몰사이트를 거르는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불건전 쇼핑몰을 입점(브랜드검색 입점)시키는 게 아니냐며 네이버의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네이버 측은 "현재 해당 사이트는 브랜드검색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게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머니투데이가 취재문의를 하자 30일 오후 6시쯤 스타일○○○ 쇼핑몰을 브랜드검색에서 제외했다.

다음 측은 “통상 브랜드검색의 경우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사이트 내용을 검수하는데 검수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라도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광고비를 환급하고 광고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가 광고주 약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⑵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A4면)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고객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일명 ‘납치프로그램’을 사이트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주입해 강제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31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월31일자 본지 2면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참조〉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13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뒤 단 1차례도 논의된 적 없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브랜드검색 입점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악성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부 인터넷쇼핑몰을 방치해 누리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일부 쇼핑몰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쇼핑몰업체 이름과 함께 ‘안 뜨게 하는 법, 제거, 없애는 법, 차단, 삭제’ 등의 문구가 함께 뜰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인터넷쇼핑몰뿐만 아니라 특정 검색어를 반복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 수억원을 챙긴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서로 철학이 다르거나 사업자가 부담을 크게 느껴 반발한다면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도 없고, 사업자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느끼지만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법안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이견이 없는 법안의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등 포털은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네이버의 입점업체인 것으로 업계

에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NHN서치마케팅 등 30군데 광고대행사를 통해 쇼핑몰광고를 진행하고 비용을 받는다. 다음은 정액제로 최소 월 13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쇼핑몰별로 브랜드검색 입점료로 받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머니투데이 지면신문 A2면 및 A4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및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에 관한 정정보도

2.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31일자 A2면 및 지난 4월 4일자 A4면에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및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등 주요포털이 브랜드 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의 온상인 일부 인터넷 쇼핑몰을 방치해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는 등 누리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또한 「보통 네이버는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 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네이버의 입점 업체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이하 'NBP')가 제공하는 네이버 광고서비스는 브랜드 검색광고를 포함한 키워드광고의 경우 이용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인터넷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광고노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NBP가 제공하는 네이버 광고서비스가 브랜드 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의 온상인 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게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검색 광고는 광고 가능한 키워드의 기간 조회수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검색노출되는 기간제 상품으로, 별도의 입점수수료나 클릭당 요금 부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 각 보도를 정정하오며, 본의 아니게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머니투데이 A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네이버, 돈벌이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의 부제목활자크기('스타일○○○' 강제방문 프로그램 몰래 주입)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옷 사려다가 '납치'(?) 당해... 왜?」 하단에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주요포털 악성프로그램 심는 불건전 쇼핑몰 방조)로 하고,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이 사건 보도와 동일하게 한다.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3월 31일자 A2면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 그램 방치」, 4월 4일자 A4면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및 인터넷홈페이지 3월 31일자 IT/BT면 「옷 사려다가 '납치'(?) 당해... 왜?」 및 4월 2일자 「악성코드 피해 범람,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의 경우 인터넷 사용 환경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광고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노출을 중단하는 등 악성 프로그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①

머니투데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2면)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②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사례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파탄을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65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신청인 :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녹색전국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매년 1월에는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 냈다는 녹색전국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홍보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월간조선 :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4~5월 중 건강보험 적립금 0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 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 월 적자가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수입 33조5605억원,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299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 1월에는 수입 2조8103억원, 지출 3조1045억원으로 294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수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려됐던 적립금 고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1월 말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6650억원이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공단의 적립금은 18조원이어야 한다. 전국의 병원과 의원이 하루 환자를 진료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액수는 약 1000억원으로, 보험 급여비에 들어가는 돈의 6개월분을 비축해

야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6개월은커녕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 누적적립금은 2010년 말 9592억원으로 이미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1월에는 6650억원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4개월간 적자폭(2010년 10월 1668억원, 11월 2614억원, 12월 3865억원)을 살펴보면 월평균 2772억원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오는 4~5월 중 건강보험 재정은 완전히 바닥난다는 얘기다. 공단이 금융기관에 손 벌리고 다녀야 하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략)

– 건보 재정 무일푼이 코앞인데 대책은 안 내놔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적자 구조가 바뀔 수 없고 더욱 적자폭이 커지는 일만 남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공단 모두 "올해 안으로 적립금 적자는 나지 않으며, 지급 불능 사태도 없다"고 큰소리를 치는 근거는 미약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해 비상경영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위기경영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초긴축 내핍 경영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십억원이라면 몰라도 매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핍으로 메우겠다는 대책은 황당하게까지 느껴진다.

공단 재정실 관계자에게 현황과 전망에 대해 문의했다.

– 당장 재정이 바닥나게 생겼는데, 향후 의료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부터 요율을 5.64%(2010년 5.33%)로 올린 만큼 2월부터는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장인의 월급상승만큼 보험료도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 자영업자 위주의 지역보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부정수급을 없애고 부과 대상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 전산화 이후 사업장 관리가 용이해져서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당장이 아니라도 근시일 내에 적립금이 바닥나면 이렇다 할 담보도 없는 공단 입장에선 아예 의료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건강보험 수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1~2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도 많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입에 차질이 생겼는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략)

서울대 김○○ 교수는 “매년 쳇바퀴 돌 듯 보험료 인상만으로 땜질처방해서는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고와 보험료 등 사회적 분담을 높이고, 지출구조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이다.

“총체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국고지원과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 지역별 병상 허가제, 보험료율 인상 등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이 바닥나서 의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의료인들이 진료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국가 위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면 병원이 진료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차입 운운하지만 매월 수천억 원씩을 무얼 보고 대출해 주겠는가. 누가 봐도 국가적 재앙이 되고야 말 건보 재정 파탄에 대해 지금 관계자들은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만 하고 있지 아무도 그 재앙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눈앞에 다가온 건보 재정 파탄, 이걸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탕발림으로 의료 혜택을 늘려온 작가들은 지금 어디서 숨죽이고 있는가.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월간조선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재정파탄 코 앞에둔 건강보험’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월간조선은 2011년도 4월호에서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가면 4~5월중 건강보험 0원”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녹색전국연합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취임한 이후 2년만에 재정을 거덜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 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이고, 공단 측 주장대로 된들 현재 누적적립금이 6,650억 원에 불과해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올 상반기에는 완전히 바닥날 전

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1년 1월분 건강보험료는 그 납부기한이 2월 10일이기 때문에 '2011년도 건강보험료인상분'이 보험료수입에 반영되지 않아 1월은 수입이 9.7% 증가에 그친 반면, 지출은 보장성강화 등에 따라 11.3% 증가되어 2,942억 원의 당월 적자가 발생되었던 것이고, 이는 애당초 예상했던 수준이며, 같은 이유로 매년 1월에는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편, 2월에는 보험료인상분이 반영됨으로써 수입이 증가되어 1,381억 원의 당월흑자를 기록하였고, 3월에도 공단 위기경영에 따른 재정안정대책 추진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수입 등은 9.2% 증가된 반면, 급여비지출은 8.5% 증가되어 776억 원의 당월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예년수준의 '약 1조 원 이상 직장정산보험료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흐름의 특성을 감안하면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단 이○○ 팀장이 "연구원 조사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의 62%가 수가 및 급여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이○○ 팀장이 직접 연구한 결과는 아니었고, 이○○ 팀장이 다른 선행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을 본 지가 재인용한 것이었으며, 인용한 '표의 내용도 기사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난해 비상경영의 연장선상에서 2011년 1월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19개 재정안정대책 과제를 선정하여 6,048억 원을 목표로 '성과 더 올리기', '관리운영비 절감' 등 초긴축 내핍경영과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통하여 당기 적자폭을 2,000억 원 내외로 최소화할 계획에 있으며, 2010. 3월부터 12월까지 각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법률안 상정을 추진 지원하는 등 보험자로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10월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보험공단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공단은 보험자로서 복지부의 지휘 · 감독 하에 보험재정 관련 분석과 정책영향을 점검하는 등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권이 없고,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은 정부에서 매년 재정여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으며, 보험료인상과 수가인상, 보장성강화 수준 결정 등 정책적 · 제도적 요인과, 이외에도 취업률 · 임금상승율 등 경기영향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율에 따라 연도별로 재정수지 변동 폭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적자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재정을 거덜 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최근 공단의 달라진 모습, 개혁성과"라는 주제로 새로이 공단을 취재하여 월간조선 2011년 8월호 또는 9월호에 기사를 게재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6. 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의료산업화 위해 공공병원 점유율 5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164면)

내 용 :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도 장맛비가 내렸지만 날씨는 후덥지근했다. 시원함을 기대하고 이사장실이 있는 6층을 찾았지만 건물 밖과 별 차이가 없었다.

안내를 맡은 노타이 차림의 건보공단 이○○ 홍보실장은 "섭씨 28도가 넘어야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직원들 방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사장실은 몰래 냉방기를 가동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직접 체험해 보라"고 했다. 기자 일행이 겉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이사장 접견실은 더웠다. 후텁지근한 접견실로 정형근(鄭亨根) 이사장이 나왔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취임 3주년이 되는 오는 9월 19일까지다.

– 연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3년 했으면 됐지요. 어떤 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인 보건의료복지 문제와 IT 분야에 문외한으로 비슷했는데 눈을 뜨게 됐다는 점입니다."

– 건보공단의 특성상 보건의료복지 문제는 이해되는데 IT 분야에도 눈을 뜨게 됐다는 게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그동안 차세대시스템, 통합경영시스템, 4대보험 징수통합시스템 등 많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IT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이 아니라 IC(정보소비)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OS) 등 소위 부가가치 높은 핵심기술과 부품은 모두 수입품입니다. 큰 것은 모두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가 닷컴 버블 이후 침체되었다가 제2의 변혁기를 맞은 변곡점을 2007년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IT산업과 관련, 과거 정부의 문제는 차치하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정책기능 측면에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원천 과학기술 개발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통부의 폐지는 IT 자체를 주력산업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산업을 도와주는 보조산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T정책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육성할 책임 있는 부처가 없었던 결과 IT기술 주도권을 경쟁국에 넘겨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기술인 와이브로가 LTE(유럽식 4세대 이동통신)에 밀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원천 과학기술 개발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新藥)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는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제약사가 10개나 됩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에 너무 소홀히 한 탓이죠.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슈, 노바티스 등 제약사의 핵심 기술자는 생물화학 등 기초학문을 전공한 독일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에 너무 소홀하여, 그나마 일부 유능한 인재들도 모두 외국 ...(후략)

사례 11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부당인출 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99 · 50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외 385명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북부경찰서가 부산저축은행의 VIP 부당인출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신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부당인출 예금주의 전화번호까지 제시했으나 묵살 당했고, 경찰이 부당인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것이 2011년 3월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VIP인출 신고를 묵살하거나 이를 은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신청인들에게 각 1백만 원씩, 총 3억8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들 개개인이 지명되거나 언급된 바 없고, 신청인들이 소속된 집단인 부산북부경찰서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들 개개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

미디어오늘 :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내　　용 : 부산경찰이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사례를 신고받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등 대형사건을 초기부터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출동사실을 부인하는 등 은폐의혹까지 사고 있다.

30일 부산 북부경찰서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비상대책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다음날인 2월 18일 112에 부당인출 사례가 있다고 신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2월 17일 화명동 지점의 직원이 영업정지 직전에 일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인출해간 의혹이 있으니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신고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위원장 등 피해자들의 말과는 달리 출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 위원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2월 18일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은행 직원의 지인과 VIP고객 두명이 영업정지 발표가 있기 전에 직원의 연락을 받고 각각 돈 1억 원과 3억 원을 미리 인출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 2명이 화명지점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게 '부산저축은행이 사전인출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니 CCTV를 확보해달라' 고 요청했고, 사전인출의 증거로 확보한 은행직원의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VIP고객의 이름을 제시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CCTV 확보가 어렵다며 김 위원장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 만을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과 화명지구대는 신고 접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경찰관 출동 사실은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저축은행 화명동지점에 출동했다고 김 위원장이 지목한 화명지구대 백○○ 경위는 29일 기자와 만나 "은행에서 장내가 소란스러우니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7일 화명지점에 간 적이 있고, 18일 신고는 받았지만 김○○ 위원장와 전화 통화만 했지 현장에 출동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 화명지구대장도 "백 경위가 현장에 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 경위는 "출동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CCTV를 확보해달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백 경위를 비롯한 이들 경찰들은 "18일 신고를 받고 '전화상의 이야기만으로는 CCTV 를 확보할 수 없으나, 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하고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CCTV를 확보할 수 있다' 고 안내해줬으나 김 위원장이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위는 또한 29일 부산저축은행 화명동지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CTV 확보 등에 나서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 때문'이라고 달리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접촉사고 때도 바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임의제출이라든지(시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서도 "이 경우(부산저축은행 불법 사전인출 사건)는 대한민국이 소란스러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소란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 '후폭풍을 예상해 확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백 경위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겨도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찰 윗선에 사건처리를 어떻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 경위는 "김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112지령실 근무자에게 보고했을 뿐 북부경찰서 등 상부에 별도로 보고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12신고 후 지구대에서 전화가 와 화명동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자 15분 쯤 후에 경찰관 두명이 왔다"며 "출동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면서 "부당인출 사태가 드러날 경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한겨레21 등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 VIP 고객들의 예금을 부당인출해 줬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면 수사에 나섰지만,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당국이 처음부터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에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 등에 연락해 긴급 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처리방식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사안'을 신고받고도 본청에서 수사관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지구대에게만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조차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관행과도 달리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월 17일 부당인출 사태를 현장에서 즉각 파악해 부산저축은행 대표 등에게 '부당인출을 하지 말라'는 긴급공문까지 보낸 금융감독원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3월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은 그러나 한겨레21의 보도 때 까지 역시 이같은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부당인출 사태의 파장을 우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

오고 있다. 경찰이 불법 인출 사례를 신고받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인터넷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5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경찰, VIP인출 신고 받고도 묵살 · 은폐했다")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정○○ 외 385명에게 각 1,000,000원 씩(총 386,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제 목 :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 은폐했다" 바로잡습니다.

2.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30일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 은폐했다"는 제목으로 ① 경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인출사례를 신고받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키고, ② 신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제시했지만 이를 묵살했으며, ③ 경찰이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월말 수사의뢰를 받은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경찰은 신고인에게 사건처리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②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시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또한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경찰이 VIP인출 신고를 묵살하거나 이를 은폐하였다는 본 인터넷신문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들의 각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30일자 경제 · IT면 「경찰, VIP인출 신고 받고도 묵살 ·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신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 · 전화번호를 제시했으나 묵살했으며, 부당인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월 말 수사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신고인에게 사건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위치를 문의했으나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현장출동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며,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 · 전화번호를 제시받은 바 없고, 부당인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VIP인출 신고를 묵살하거나 이를 은폐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피해자는 그 피해의 배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자' 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언론보도에는 신청인들 개개인이 지명되거나 언급된 바 없고, 다만 신청인들이 소속된 집단인 부산북부경찰서만이 명시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소속 집단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속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 역시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다수인

을 포괄하는 범주나 개개인이 속한 집단만을 표시하는 형태의 집단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통상적으로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집단의 크기가 상당히 커 신청인들 개개인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들 개개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신청인들의 소속 집단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내용과 구체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신청인들의 인격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9.

사례 12

건국대 인근 주상복합 65평형의 거래가격에 대한 신청인(공인중개사)의 발언을 70평형에 대한 발언으로 왜곡 보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02 · 503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원 ○ ○
피신청인 : 씨제이이앤엠㈜ (tvN)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건국대학교 앞 70평형대 아파트에 대한 출연자들의 토론 중 자료화면으로 해당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인 신청인이 '해당 아파트는 15억~16억' 이라고 언급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터뷰에서 출연자의 소유 아파트는 65평형이며, 동 평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층이어서 15~16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말했으나 마치 70평형대 아파트가 15~16억에 거래되는 것처럼 편집, 자막 처리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민감한 입주민들의 항의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tvN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100억 재산가 복○○편'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일자 24:00)

내 용 : ▷복○○ : 건국대학교 쪽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성주 : 본인 소유 집입니까?

▷복○○ : 네 제 소유 집입니다.

▷김구라 : 몇 평?

▷복○○ : 70평

▷김구라 : 그럼 시가는 어느 정도 18억?

▷복○○ : 15에서 20억 정도

▷이경규 : 15에서 20억 정도

▷김성주 : 말로만 들어서는 참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복○○씨의 일상을 저희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아나운서 : 한강근처에 있는 화성인의집

▷이경규 : 저 빌딩입니까

▷김구라 : 네 맞아요 저 건대에 있는 거

▷원○○ : 유명 장차관도 많이 사시고요 유명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스타 같은 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원○○ : 15에서 한 16억 정도 거래가 될 것입니다.

▷아나운서 : 전격 공개되는 화성인의 집 내부 깔끔하고 모던한 모습의 고급실내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집 그 자체. (화면에 화성인이 혼자지내는 70평대 아파트 자막) 하지만 혼자 지내기엔 넓은 공간 취미생활도 집안에서 가능하다. 화성인이 좋아하는 만화책으로 가득한 방부터 영화관 부럽지 않은 완벽한 시설을 갖춘 DVD방까지 있는데. 드디어 공개되는 화성인의 드레스룸 빼곡이 걸려있는 정장들은 365일 갈아입어도 남을 듯 한데. 여유롭게 출근준비를 하는 백억 자산가 화성인 삼년째 솔로인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엇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직접 따라가 보았다.

▷스테프 : 차는 어떤 걸 주로

▷복○○ : 여기 네 대가 다 저의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더샵스타시티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3일 방영한 화성인바이러스에서 방영된 복○○씨의 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하여 단지내에 소재하는 중개업체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원○○ 대표에게 인터뷰 요청한바, 복○○씨 소유의 주택은 65평형인데 동 평형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층이어서 15억~16억 정도에 거래가 된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영된 내용은 70평형대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또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영상의 자막에 70평형대로 처리되어서 마치 더샵스타시티아파트의 70평형대 아파트가 15억~16억에 거래되는 것처럼 보여져 외부인들의 인식에 스타시티아파트의 가격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당사의 확인되지 않은 방송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원○○ 대표와 자양동 더샵스타시티아파트 입주민여러분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지난 5월 3일 <화성인바이러스> 프로그램 110회 '공개구혼! 3년째 솔로인 100억 자산가' 편에서 7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00억대 자산가를 소개하면서, 해당 주택 가격이 15~16억 정도에 거래가 될 것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방송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출연자 소유의 주택은 65평형의 낮은 층수이므로 15억~16억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 내용과 정정보도문 방송일이 명시된 공문(신청인과 입주민들에 대한 사과문 포함)을 2011년 5월 25일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 더샵스타시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발송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5월 31일(화) 밤12시에 방송하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중에 보도하되, 피신청인 소속 아나운서 중 1명이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내용은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5월 31일까지 금 1백50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5.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tvN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31일자 24:00)

내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3

해병대가 해병대 소속 연예인의 병영생활 화보집을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3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해병대사령부
피신청인 :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해병대가 배우 현빈의 훈련모습과 병영생활을 담은 화보를 제작하는데 있어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제작권을 넘겨주었다가 이 내용이 방송되자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 내렸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화보집은 현빈이 중심이 아닌 해병대 일반 홍보 성격의 화보집이며, 수익금을 대가로 제작권을 넘기지 않았고 수익금 활용을 전제로 한 판매 논의는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1) 「8시 뉴스」 프로그램 "[단독] 해병대, 판매용 '현빈 군 화보집' 제작"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20:00)

내　　용 : ▷앵커 : 해병대가 현빈의 군 훈련 모습을 홍보용 화보로 제작중인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수익까지 내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드라마 '시크릿 가든' 이후 한류스타로 떠오른 배우 현빈.

지난 3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7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치고 한 달 전부터 백령도에 배치돼 복무중입

니다.

▷해병대는 이런 현빈의 훈련모습과 병영생활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작가와 집필작가가 전담 배치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민간 출판사에 위탁을 의뢰했고 올 연말쯤 출간될 예정입니다.

▷화보집 출연료에 대해서는 군과 현빈 기획사 측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됐습니다.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빈은 무료로 참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화보집을 대외판매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화보집 제작권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 각 군이 발간하는 홍보책자가 별도 예산을 편성받아 제작되고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병대는 유료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화보집은 현빈이 아닌 해병대 홍보를 위해 추진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2) 「8시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화보집, 수익금 받지 않겠다' "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2일자 20:00)

해병대는 현빈 화보집 제작과 관련된 어제(11일) SBS 8시뉴스 보도에 대해 책 판매에 따른 출판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화보집은 군 홍보용으로만 사용될 뿐 출판사로부터 어떤 수익금도 받지 않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 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해병대, 판매용 현빈 군 화보집 제작〉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11일(수)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해병대, 판매용 현빈 군 화보집 제작」이라는 제목으로 해병대가 해병대를 소재로 한 도서를 제작하는데 있어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보도하였으며, 5월 12(목)에는「해병대, "현빈 화보집 수익금 받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해병대가 수익금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해병대는 해병대를 소재로 한 도서 제작을 지원하는데 있어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제작권을 주었다거나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홍보도서 수익금 검토한 적 없어' "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1일자 20:00)

내 용 : 지난 5월11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된 '해병대, 판매용 현빈 화보집 제작' 기사와 관련해, 해병대는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라도 받거나 수익금을 댓가로 제작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병대는 반론을 통해 "화보집은 현빈 중심이 아닌 해병대 일반 홍보 성격으로 제작되며 수익금 활용을 전제로 한 판매 논의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14

신청인이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협박하여 고소당했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돌연 취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47 · 548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1년6개월간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가 변심하자,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고소 중에 있는 사건을 일방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여자친구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 또한 취하하지 않았고,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 직업, 본명에 가까운 가명 사용 등으로 사건 당사자가 신청인인줄 알 수 있게 보도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노컷뉴스 : 『연인에서 앙숙으로…"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내　　용 : 그녀는 예뻤다. 솜털이 남아 있던 김○○(25, 여)씨의 하얀 얼굴은 웃을 때마다 발그스르하게 물들었다.

가늘고 흰 손가락으로 치는 김 씨의 키보드 소리는 밴드 연습이 끝난 뒤에도 서○○(28, 남)씨의 귓가를 종일 맴돌았다. 밴드 동호회 모임을 하는 날이면 서 씨는 아침부터 가슴이 쿵쿵거렸다.

서 씨는 작고 예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천천히 다가갔고, 둘은 연인이 됐다. 벌써 1년 6개월도 지난 일이다.

항상 밝은 김 씨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종종 그늘이 드리웠다. 갓 학생 티를 벗은 여대생이 칠순을 앞둔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던 서 씨는 김 씨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매달 용돈(10만원)을 주고 기념일이면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렇게 그녀에게 쓴 돈이 400만원이 넘었다.

김 씨에게 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서 씨는 김 씨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집에 있다는 김 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자고 있다는 그녀를 깨워달라고 했을 뿐이다. 김 씨는 언제부터인가 서 씨의 이런 행동을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한 달 전, 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김 씨에게는 곧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

서 씨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용돈을 주고 등록금까지 대신 내줬는데 자신에게는 돈만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김 씨를 찾아가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동안 선물한 물건 값을 물어내라', '평생에 가장 후회할 일이 될 만큼 힘들게 만들겠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수차례다.

김 씨를 찾아가서는 그녀의 새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찾아가겠다고 공언했다. '네 아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남의 여자 빼앗아서 만나고 있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헤어진 뒤 수차례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아온 김 씨는 결국 서 씨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가 '헤어진 남자친구 서 씨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퍼붓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최근 헤어진 서 씨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나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지만 현재 남자친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가서 협박하겠다고 해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김 씨가 혼인을 빙자해 돈과 선물을 받았다'며 '교제하는 기간 동안 김 씨에게 줬던 용돈과 등록금, 선물 값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고 받은 선물이나 선심성 돈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 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6일 무고죄로 김 씨를 맞고소 했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17일 고소를 취하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연인에서 앙숙으로 …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사는 지난 5월 19일자 "연인에서 앙숙으로 …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에서 서모씨가 김씨를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협박했고 결국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서모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고소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정정합니다.

본 사는 확인이 되지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냥 보도하고 진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처럼 보도하였으며 고소자 일방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서모씨에게 사과합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연인에서 앙숙으로 …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9일자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에서 서모씨가 연인관계였던 김씨와 헤어진 뒤 수차례 협박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고소를 당한 바 있고, 서씨 또한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뒤 취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서모씨는 해당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모씨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협박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으며, 이에 본 신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소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 점과 관련해 서모 씨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1년 6월 3일까지 노컷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위 1.항의 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금 1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제2, 3, 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5. 3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5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추가삭감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45 (2011서울조정646과 병합)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자체 충당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5억을 포함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천억 원을 절감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예산 절감은 교육재정 절감 방침에 따라 매년 추진해왔으며, 그 금액 또한 최근 3년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5억 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낭비 지적과 기존의 전면 보수로 인한 낭비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재조사하여 절감한 사항으로 무상급식과 관련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동아일보 : 『무상급식 예산 자체 충당 가능하다더니 결국 … 서울교육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A14면)

내　　용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10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125억 원을 줄인 데 이어 135억 원을 다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급식(1162억 원) 비용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또 한번 현실화된 셈이다.

동아일보가 주영길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을 통해 28일 입수한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에 947억 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은 학교의 낡은 화장실, 전기 · 소방 시설, 외벽 등을 고치는 사업. 처음에는 524개교에 1207억 원을 들일 계획이었다. 지난해(2351억 원)의 절반 수준. 하지만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25억 원을 줄였다가 최근 4개 분야(화장실 냉난방 바닥 창호) 개선 대상 202개교의 시설을 점검한 뒤 135억 원을 더 삭감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260억 원이 줄어들면서 32개교(67억 원)는 아예 보수공사를 못하게 됐고 492개교(193억 원)는 공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A중의 경우 4개층의 화장실을 고치는 데 필요한 3억36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학교 관계자는 "1997년 개교한 이래 한 번도 못 고쳐 문짝이 떨어지는 등 화장실이 낡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고칠 수 없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B중 역시 화장실 4개층 보수비가 45%(1억8400만 원) 줄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 다른 데 쓸 학교 예산을 돌려서라도 고쳐야 할 것 같다"며 "무상급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00억 원을 절감하는 데 대해 시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지 꼭 무상급식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3월 25일자 A14면 참조

45개 교실 창문 교체 사업비 48%(1억2600만 원)가 줄어든 C중은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가 말했다. 교육감의 시책이 시설보다 먹는 것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요즘 학생은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만 고쳐도 되는데 전체를 개축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절감된 예산은 추경 시 온수시설 설치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다른 복지비로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3006억 원을 늘려 더 이상의 추경은 불가능하다. 노후화한 학교는 점점 늘어나는데 개 · 보수를 미루면 언젠가는 시설 문제가 교육감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제 목 :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관련' 바로잡습니다. (또는 서울 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정정보도문)

2.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9일자 사회면에 "무상급식 예산 자체 충당 가능하다더니 결국…서울교육청, 시설비 135억 원 또 깍아"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비용 때문에 1,000억 원의 예산절감과 시설비 135억 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예산 절감은 정부의 교육재정 절감방침 등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며, 시설비 135억 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낭비 지적과 기존의 전면 보수로 인한 낭비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재조사하여 절감한 사항으로 무상급식 비용 때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보 4월 29일자 A14면 「무상급식 예산 자체 충당 가능하더더니 결국 … 서울교육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목의 기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절감은 정부의 교육재정 절감 방침 등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며, 시설비 135억원은 기존의 전면 보수로 인한 낭비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절감한 것으로 무상급식 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 (주)동아일보는 위 보도문을 2011년 7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종합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202개교 실사... 환경개선 막힌 학교들 "황당")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 (주)동아닷컴은 위 보도문을 2011년 7월 8일까지 <동아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통상의 크기로 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2.,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각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7.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①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②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4월 29일자 A14면』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6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735　정정청구
신 청 인 : 황 우 석
피신청인 :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에게 연구소를 임대해줬던 제이콤의 부도로 인해 신청인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경기도 용인 연구소의 부지가 보증금 분쟁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연구소 관련 보증금 분쟁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소의 주소는 실제 연구소의 주소와 전혀 다르고 주식시장과는 상관없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공익적 연구를 해온 신청인과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마치 '제이콤'이라는 사기업과 관련성을 맺어온 것처럼 오인되어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경닷컴 :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내　　용 : [한경속보]황우석 박사의 연구실이 있는 경기도 용인 토지에 대해 보증금 분쟁이 벌어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제이콤 채권자인 이모씨 등 27명은 이날 강○○ 전 제이콤 대표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제이콤과 함께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 ○○○ 등 5필지에 대해 보증금 6억원, 임대료 월 1,1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강 전 대표는 강○○ 동아제약 회장의 아들인 강○○ 수석무역 대표의 6촌 동생이자 황우석 박사의 처남이다. 제이콤이 이 땅을 임대한 것은 황우석 박사를 위한 줄기세포 시험장을 만들어 각종 실험을 할 수 있게 하

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씨 등은 제이콤 부도로 임대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채권단은 제이콤에 대해 3억5000만원의 원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제이콤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콤은 채권단에 돈을 변제하기 곤란해지자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처리 권한을 김모씨에게 위임했다. 김씨는 이를 채권단 대표인 원고 이씨에게 양도하고 강 전 대표에게 통지했다. 이씨 등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임차 회사의 부도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한경닷컴(www.hankyung.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토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의 기사본문 하단 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황우석 용인연구실 땅 놓고보증금 분쟁금 분쟁"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1년 6월 14일자 속보로 "황우석 용인연구실 땅 놓고보증금 분쟁금 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황우석 박사와 황우석 박사가 재직 중인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기사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한경닷컴은 지난 6월 14일자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관련 기사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실이 있는 경기도 용인 토지에 대해 보증금 분쟁이 벌어졌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황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보증금 분쟁에 얽힌 사실이 없고, 보도에서 언급한 제이콤이란 기업과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 7. 11.까지 한경닷컴(http://www.hankyung.com/)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본문의 각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 같게 한다.

3. 2.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기사의 하단부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1. 7. 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한경닷컴 : 『[정정보도]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7

남해군수인 신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약속을 해주고 부당한 일을 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1경남조정83 · 84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현 태
피신청인 : 정 ○ ○ (남해뉴스)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군수인 신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약속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남해군수와 공무원들은 이미 범죄 집단이며, 삼성중공업과의 MOU 파기는 경솔한 군수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였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하였고, 기고자의 악의적인 주장을 게재했으며, 경기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MOU가 파기된 것을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남해뉴스 : (1)『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6일자)

내　　용 : 정군수는 4월 29일 군청회의실에서 검찰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지금은 장뇌삼 사건으로 군수 부인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어 3차 공판까지 진행되었고 6월 3일 제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6명을 기소하면서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정군수는 바로 뒷날 자청하여 군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함으로써 남해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

검찰은 공소장에 정군수 부인이 "2009년 8월과 2010년 7월에 이 사업의 실제 사장인 유○○씨로부터 보조금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남편인 정현태군수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정군수 부인의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군수는 부인이 받은 뇌물의 대가로 1차 사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전 행정력과 측근 의원들까지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군수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군청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비록 장뇌삼 사건뿐만 아니고 100억짜리 공사의 해괴망측한 입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군내 언론보다 KBS 방송에서 먼저 보도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 이 정도 큰 공사의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서 입찰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입찰 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를 조달청에서 거절하자 남해군에서 직접 입찰을 하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군수 측근 업자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무성하다.

담당 공무원이 절대 그런 일을 혼자서 감행할 사람이 아닌데 윗선으로부터 승진약속을 받고 했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퍼져 있다고 한다.

(중략)

부당한 입찰을 지시를 한 몸통은 빠져 나가고 지시를 받은 하위직 공무원만 욕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가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례를 만들든지 감사청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지켜보겠다.

검찰은 정군수 부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대가로 편익을 제공 하려 했던 정군수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재자로서의 정군수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2)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남해뉴스 후원회 결성 취지문

남해뉴스를 사랑하는 애독자들이 후원회를 결성했다.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그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지키는 언론이 권력에 짓눌려 생존하기가 어려운 동네가 우리 남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올바른 언론이란 부당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꿋꿋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언론이 생존을 위해 권력과 타협하거나 비판수위를 조절한다면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이 사회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남해사회가 대형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군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 언론도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군수부인이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고위 공직자들이 법정에 서고 있는 이 난리통에 100억짜리 공사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10억이나 더 써낸 사람이 공사를 하게하는 해괴망측한 입찰을 했는데 이는 군수 측근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라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이 아니라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00억짜리 관로 매설 사업에서부터 10억짜리 장뇌삼 사업 그리고 4억8000만원짜리 아산 공동묘지 정비 사업 등에서 보더라도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노도 문학의 섬 150억 프로젝트도 군수 측근들로 포진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뜻 있는 남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말을 한다.

남해의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제왕적인 군수가 남해의 물을 흐리게 하고 공직자들을 공범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평생직장인 공직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이럴 때 양심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썩어가는 공직사회를 구하고 공직사회가 더 이상 썩기 전에 양심선언이 있어야 한다. 남해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에서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남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억누르지 못해 후원회 깃발 아래 모였다.

공직사회도 구해야 하지만 남해도 구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남해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할 것이다.

그러나 침묵만 하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부패할 것이다.

바로 잡자는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양심은 있으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남해는 행동하는 양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남해뉴스가 용기를 내어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다.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면서.....

(3)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남해군은 2007년 봄에처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던 적이 없을 것이다.

객지에 나가 성공한 기업인이 고향에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발 빠르게 추진했고 향우 기업인도 밤낮으로 속도전을 감행했다.

1차로 연안매립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자를 맞았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안매립허가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다.

(중략)

정군수는 지분이 80%나 되는 조선산단(주)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상태를 파기시켜버렸다. MOU를 체결한 삼성중공업측의 상무를 불러 놓고는 속된 말로 "할끼요 안 할끼요?"하는 식으로 3번씩이나 즉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군수의 무례한 태도에 황당한 삼성의 상무는 "지금 당장에는 투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게 곧 요즘 일부 신문에서 표현하는 "삼성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다. 이런 표현은 틀린 것이다.

군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는 충정은 이해되지만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

삼성의 일방적 포기가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솔한 "정현태군수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이다. 조선산단(주) 측에서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이다. 고향을 위해 큰마음 먹고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주는 "고향에 가기가 싫다"며 한 동안 남해에 오지 않았다.

(중략)

군수부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공무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런 위기에 처한 군수가 혹시라도 군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쇼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낚시꾼들은 "놓친 고기가 훨씬 커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남해에서 삼성조선소를 놓쳐버렸다.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훨씬 큰 고기를 놓쳐버렸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남해뉴스(http://www.namhe.in)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5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의 각 기사 본문 상단(제목과 본문사이)에도 정정보도문을 각각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남해군 관련 남해뉴스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제하의 기사에서 군수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이 정도 큰 공사의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같은 날 기사에 우리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무성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절대 그런 일을 혼자서 감행할 사람이 아닌데 윗선으로부터 승진약속을 받고 했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퍼져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5월 30일자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기고자의 악의적인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군수가 재판의 당사자도 아니며, 재판중인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군수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악의적인 표현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7월 8일자 초기화면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란 제하의 기사에서 정군수는...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상태를 파기시켜버렸다면서 경솔한 군수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2008년 11월 남해조선산업단지(주)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남해군 서면 지역

에 조선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삼성중공업에서 내, 외적인 요인으로 투자를 지연함에 따라 남해군은 조속한 투자를 위해 2010년 8월초 남해군수 명의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남해군 서면 지역이 새로운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고 강조하였으며, 그러나 진정으로 조선소 건설이 어렵다면 정부가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 또는 생명, 의료 등 바이오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우리 군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삼성중공업에서 경기침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파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삼성과의 양해각서를 파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에서 충분히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의 부당한 지시', '승진 약속', '범죄집단', '일방적인 사업포기' 등으로 선거에 의해 남해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남해군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수와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남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 위치에 게재(주제목 및 부제목 크기는 통상 탑헤드라인 기사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및 문단 구분할 것. 보도 본문 크기는 원 조정대상보도문 본문과 동일하도록 할 것)한 후 최소 만 10일(240시간) 이상 위 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5건은 모두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서 삭제한다.

가. 제 목 : 남해군 및 남해군수 관련 정정보도문 (주제목)

근거없는 보도와 과도한 표현으로 피해준 점 인정 (부제목)

나. 내 용 : 최근 본지의 남해군 및 남해군수 관련 보도에 대해 남해군 및 남해군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재위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군수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이 정도 큰 공사의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지 않은 것도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같은 날 기사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무성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절대 그런 일을 혼자서 감행할 사람이 아닌데 윗선으로부터 승진약속을 받고 했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퍼져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소문은 일부 사람의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별 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5월 30일자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정하며」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기고자의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남해군의 군수 및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으나, 군수나 다른 공무원들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잘못 표현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7월 8일자 초기화면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란 제하의 기사에서 정군수는...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상태를 파기시켜버렸다면서 경솔한 군수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삼성중공업이 내 · 외적인 요인으로 투자를 지연함에 따라 남해군은 서면발송, 면담요청, 관계자 방문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삼성중공업에서 경기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MOU 파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가 경

솔하게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를 파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지난 7월 15일자 「군수가 알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및 7월 18일자 「검찰은 정군수도 기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본지의 보도는 공인인 군수의 책임을 강조한 취지였으나,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군수의 범죄 범위가 들어난 것처럼 그 표현과 내용이 과장되고 과도한 부분아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군수의 부당한 지시', '승진 약속', '범죄집단', '일방적인 사업포기', '정군수도 기소' 등 잘못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정현태 남해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 신청

사례 18

민주당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67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피신청인 : ㈜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조○○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좌편향되어 법관 자격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신중함을 드러냈을 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민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기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1)『천안함 폭침, 北소행 가능성 크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A04면)

내　　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인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네 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조 후보 부인의 주소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건축 인 · 허가 등을 위해 서울 동부이촌동과 경기도 광주 오포읍을 두 차례 오갔다. 2000년 11월에는 통학 편의를 이유로 자녀의 주소를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 집으로 옮겼고, 2006년 12월 이사 가는 외조모와 함께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조 후보가 속해 있는 '민변'이 과거 위장 전입 후보자에 대해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고 추궁했다.

조 후보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위장 전입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여러 차례 공직 후보로 검토됐다가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보류됐었으나, 최근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이 잇따라 공직 입성에 성공하면서 재판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959년생인 후보가 직접 보지 못한 6 · 25는 남침인 것으로 확신하면서 천안함 폭침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조 후보가 1980년대 중후반 기고한 글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 군정의 절대적 영향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이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상당수가 조 후보의 도덕성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회의 인준 표결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 『눈으로 못 봐 못 믿는다면 어떻게 판결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04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52) 변호사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세상에 어느 판사가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판결하느냐"며 "판사는 증거와 경험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지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 현직 판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한데 조 후보자의 발언은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보여

줬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재야 법조계에선 유명한 '인권 변호사'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약했다. 판사나 검사 등 재조(在曹) 경력 없이 곧바로 재판관에 추천된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는 23년 헌재 역사에서도 그가 처음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고인, 재야 노동운동가 등을 위한 변론을 많이 맡았다. 1993년에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미전향 장기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연행하려 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 2005년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결론난 '함주명 사건' 재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 집시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자주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해 수임한 31건의 사건 중 10건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도중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민망하고 창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과 2008년 조 변호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약한 인권 변호사'라며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로 잇따라 추천했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추천 사유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9일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조○○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네 차례의 위장 전입 등 개인적 약점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창립 멤버였던 민변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줄곧 물러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조 후보자가 헌법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석사학위는 국제인권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법사회학' 분야에 속한다.

(3) 『조 헌법재판관 후보,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5면)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8~2006년 사이에 네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농지를 사들여 주택을 짓거나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선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가 1980년 중후반 기고한 글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구절도 나온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의 창립 멤버다. 민변은 200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단순한 도덕적 하자도 아닌 위장 전입이라는 범법 행위를 한 자가 임명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논평을 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똑같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위 자리다. 민변의 논평은 조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시국 현안에서 민변과 같은 주장을 해오고 조 후보자를 2006년과 2008년 두 번이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던 참여연대마저 29일 "위장 전입한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논평을 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아 북한 소행인지 확신할 수 없다' 고 한 조 후보자의 어투는 전 세계가 인정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온갖 말장난으로 외면하려는 좌파의 어투 그대로다. 법관의 직무는 재판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법관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스스로 법관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나 같다.

헌법재판관은 추상적인 헌법을 해석해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의 중심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는 조 후보자의 글뜻이 판결을 통해 표현될 때의 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여 · 야는 조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조 후보자 스스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는지 고심하고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A04면 좌측상단, A35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6일자 A06면에 "천안함 폭침, 北소행 가능성 크지만 내가 직접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어", 지난 6월 30일자 A06면에 "눈으로 못 봐 못 믿으면 어떻게 판결하나" 그리고 같은 날짜 A35면(오피니언)에 "조 헌법재판관 후보,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할때"라는 제목으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리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 발언이 아니라, 청문위원이 조후보자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이를 오인하여 보도하였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추천한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는 공직 후보자 개인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사례 19

한 · 미 FTA 공식서명 뒤, 외교통상부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128　정정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9월 14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포메로이 하원의원과의 예방 면담을 기록)을 인용하여 외교통상부가 한 · 미 FTA 공식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 협상을 약속했으며 이는 한 · 미 FTA에서 쌀은 제외되었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면담대상인 포메로이 의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며, 전문 원문에도 "약속"을 했다는 표현이 없고 FTA와 쌀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FTA 대가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신문 : (1)『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1면)

내　　용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쌀시장 전면 개방)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1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

로 풀이된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김종훈 본부장은 2007년 8월 29일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민주당)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포머로이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려면 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한국 정치권이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밝힌 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쌀 관세화(400%)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미국 쪽의 관세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그동안 쌀 관세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별개라고 밝혀왔다.

(2)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8면)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뒤 미국 의회가 비준을 위해 내세운 '선결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유예, 쌀 추가협상이었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쇠고기와 자동차 재협상은 미국 쪽 요구에 따라 2008년 4월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이뤄졌고, 남은 것은 쌀 추가협상뿐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 31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심의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민주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약속했고 실제로 두 나라는 2008년 4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

포머로이 의원은 또 픽업트럭이 미국 쪽 민감품목이라며 관세 25%를 협정 발효 뒤 10년간 균등 철폐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두 나라는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였고 픽업트럭 관세를 7년차까지 유지하도록 변경했다. 애초 미국 쪽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쌀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한다고 지적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전면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되 미국 · 중국 · 오스트레일리아 · 타이 등 4개국 쌀을 20만5000t씩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수입량을 해마다 2만t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쌀 의무수입량은 32만7000t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 쌀은 28.6%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에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런 방식으로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막기 어렵다. 2015년부터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높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를 하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쪽에서 다른 농산물처럼 미국산 쌀에 관세율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자동차에 이어 쌀까지 미국 쪽 시나리오대로 국내 시장을 대부분 내주게 되는 셈이다.

(3)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31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과 쌀 수입 협상을 따로 하겠다'고 미국 하원 의원에게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문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뒤인 2007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김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까지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협정에 쌀은 제외됐다는 정부 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 문건으로 보면, 김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권한 남용을 한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애초부터 한-미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없었다. 쌀 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간 다자간 협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국가한테만 유리한 조건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하면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다. 그런데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까지 마치 미국과 협상에서 쌀 시장만은 끝까지 지킨 것처럼 자랑해왔다. 당연한 것을 협상의 성과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다.

그런데 김 본부장이 미 하원 얼 포머로이 의원(민주당)에게 2007년 8월 한 약속은 스스로 자랑한 협상 성과마저 뒤집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관련 부처, 국회에 보고한 내용

과도 사뭇 다르다. '미국이 쌀 문제를 꺼내면 협상을 깨라'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협상 지침이었다. 김 본부장이 이를 어기고 국무회의에는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라면 지금쯤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일정에 따른 대대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미국과 비공식 협상 과정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을 속이고 국익에 반하는 밀약을 해준 것은 쌀 문제만이 아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본부장이 쌀 수입 협상을 시사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자동차 세제와 환경기준의 개정을 거론한 대목도 있다. 모두 국회가 나서 진상 조사를 해야 할 사안들이다. 외교통상부는 위키리크스 문서에서 드러난 대미 사대외교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서"라며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만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고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종합 1면 우측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은 활자에 2단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쌀 관세화 추가협상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2. 내 용 : 본지가 9.15일자로 보도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의 기사와 동일자「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의 오피니언에 실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쌀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쌀 농가에 대한 보호정책이 정당한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으며 미국 측에 쌀과 관련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8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인 『위키리크스 공개…"한-미FTA 서명 직후 주한 미 대사 만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1. 제 목 :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지난 9월 15일자 1면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및 동일자 8면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31면 『김종훈 본부장의 쌀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목의 보도에서 위크리크스 문건을 인용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쌀 개방추가 협상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김 본부장이 "쌀 문제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 쌀 쿼터 협정이 종료되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하거나 쌀 개방을 밀약한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 신청

사례 20

기장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씨름단 해체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전 씨름단 감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165 · 1166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노 ○ ○
피신청인 : ㈜씨앤비미디어 (CNB NEWS)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기장군청 공무원인 신청인이 기장군청을 방문한 김 전 기장군 씨름단 감독을 군수실로 올라가는 2층 계단 중간지점에서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김 전 감독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김 전 감독의 사진과 인터뷰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누가 보더라도 신청인이 가해자라고 추측할 수 있게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후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CNB NEWS :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내　　용 :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와 전 기장군씨름단 김○○ 감독의 악연의 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 김 전 감독이 고소를 당하고, 부상으로 입원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장군씨름단에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부은 나머지 입원까지 하게 된 김 전 감독은 "아직도 왜 씨름단이 해체되어야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가피하게 해체해야만 했다면 어쩔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 이유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없이 군수실을 노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일 기장군청을 방문한 김 전 감독은 1층 로비에서 군수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지점에서 감사실 노 모씨가 막아서면서 밀어 뒤로 넘어져 계단을 굴렀다고 주장했다.

부산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김 전 감독은 "입원과 동시에 3주진단으로 기장군 공무원을 고소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그 공무원과는 아무런 개인적 감정도 없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로지 오 군수에게 해체이유만이라도 듣기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과잉반응을 보이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오 군수를 만나기 위하여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오후 6시경 기장군청을 방문하였으나 이날 역시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오 군수와의 면담이 되지 않아 군수실 밖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일정으로 오 군수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김 전 감독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이날도 감사실 노 모씨가 김 전 감독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전 감독의 팔을 잡고,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이 팔로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기장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조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병원에서 만난 김 전 감독은 첫 마디가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10만이 넘는 군민을 다스리는 수장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나 자신도 씨름단 감독이기 전에 기장군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지난 1주일 사이 기장군청 내에서 공무원이 기장군민을 고소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처럼 기장군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곳에는 다름 아닌 기장군 수장인 오 군수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서 씁쓸한 기분을 들게 한다.

그러면 왜 김 전 감독은 오 군수와의 면담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오규석 군수는 취임한지 2개월만인 지난해 8월말에 그 당시 씨름단 감독으로 있던 김○○ 감독에게 씨름단을 해체하겠다고 담당부서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한편 오 군수는 최현돌 전 군수가 창단한 10년 역사의 기장군 씨름단을 지난해 말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단 운영'을 한다면서 지역 체육계나 군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해체를 추진하여 비난을 받았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도 없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10년 역사의 씨름단을 "기장군 수장인 내가 해체하면 그만이지 이유가 뭐 필요해"라는 식의 너무나 일방적인 해체를 통보하여 김 전 감독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수개월동안 오 군수를 만나 해체 이유라도 들어야겠다는 김 전 감독에게 돌아온 것은 오 군수의 '죄송합니다'라는 단 한마디와 공무원으로부터의 고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암, 부상으로 입원 등 상처투성이 뿐이었다. 군민의 수장으로부터 단 한번이라도 위로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씨엔비뉴스(http://www.cnbnews.com) 홈페이지 상단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의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 '감사실 노 모씨가 김 전 감독을 밀어 뒤로 넘어져 계단으로 굴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22일자 정치면 초기화면에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감독을 인터뷰를 하면서 "군청 1층 로비에서 군수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지점에서 감사실 노 모씨가 막아서면서 밀어 뒤로 넘어져 계단을 굴렀다"고 보도하면서 김 전 감독이 감사실 노 모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조사 결과 노 모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김 전 감독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기장군 감사실 직원, 전 씨름단 감독 상해' 관련 무혐의처분

나. 내 용 : 지난 5월 22일자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제하의기사에서 '전 기장군씨름단 김○○ 감독이 씨름단해체에 결정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군수실을 방문하려 하자 감사실 직원 노 모씨는 김 감독을 막고 계단 밑으로 밀어 상해를 입혔고, 김 감독은 노 씨를 고소했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26일자로 노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통보받은 노 씨는 "김 감독과는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일방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늦게나마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CNB뉴스(http://www.cnbnews.com/)' 정치면 초기화면에 48시간 이상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3. 2.항의 사항을 이행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에 이어서 1.항의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1년 10월 31일로 한다.

5. 피신청인이 위 4.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1. 10. 1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CNB NEWS : 『 '기장군 감사실 직원, 전 씨름단 감독 상해' 관련 무혐의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1

신청인 경찰서가 미군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203　정정청구
신 청 인 : 동두천경찰서
피신청인 : ㈜민중의소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동두천경찰서가 사건초기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흉기를 확보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후 수거했고, 경찰 등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건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범행에 사용된 칼 등 증거물을 당일 수거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언론 공개시 2차 피해를 우려해 범죄수법 등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축소 · 은폐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민중의소리 : 『[단독]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경찰은 흉기 확보도 안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내　　용 :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의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의 '엽기적 전말'이 <민중의소리> 취재결과 밝혀졌다. 또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제2사단 소속 잭슨(21)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술을 마신 뒤 동두천시 지행동 인근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한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경찰은 잭슨 이병이 만

취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 여성 A양은 문을 잠그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잭슨 이병의 성폭행은 수법이 매우 '엽기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잭슨 이병은 사건 당일인 지난 24일 오전 4시께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A양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침입했다.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화면에 포착된 잭슨 이병은 고시원에 들어온 뒤 신발장을 뒤지며 여성의 구두가 있는 방 번호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방의 반대 방향에 위치한 방들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잭슨 이병은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있자 복도 맨 끝 A양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이어 방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했다.

잭슨 이병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발장을 뒤지고 방문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잭슨 이병의 진술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잭슨 이병이 A양을 성폭행한 수법도 매우 엽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잭슨 이병은 A양의 방에 침입한 후 TV를 보던 A양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다. A양을 움직일 수 없게 한 잭슨 이병은 A양이 입고 있던 옷을 칼과 가위를 이용해 갈기갈기 찢었다. 곧이어 4시간여에 걸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강간을 자행한 이 미군 병사는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볼펜을 성기에 삽입하고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는 등 변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겪은 A양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잭슨 이병의 성폭행이 이처럼 매우 엽기적이었음에도 <민중의소리> 취재결과 관할 동두천경찰서는 사건 발생 초기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에 쓰였던 흉기를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수거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원 관계자 B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고시원을 방문해 CCTV를 수거해 갔다. 하지만 현장보존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이 발생한 방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다.

B씨는 "얼빠진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현장보존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현장 보존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조차 가져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거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이 지난 뒤 그제서야 범행에 사용된 칼과 가위를 수거하러 왔다"며 "별 것 아니라는 뉘앙스의 경찰들의 태도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관할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미군 병사)의 자백이 있어 현장보존 필요가 없다"며 "수사 책임자로써 현장 보존의 필요성은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뒤늦은 흉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수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즉답을 피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또는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성폭행 미군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라는 제목으로 "성폭행 사건 발생 초기 현장보존 조치 취하지 않고, 범행에 쓰였던 흉기를 확보하지 않다가 사건발생 이틀이 지난 후 수거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해서 사건 피해자 A양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다. 사건 피해자의 옷을 칼과 가위로 갈기갈기 찢었다. 경찰 등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범행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 출동하여 범행에 사용한 칼 등 증거물을 당일 수거 압수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작성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손과 발을 밧줄로 묶은 사실 및 옷을 칼과 가위를 이용하여 갈기갈기 찢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언론 공개 시 2차 피해를 우려해 범죄수법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서는 적절한 현장보존 조치를 취

했고, 칼 등 증거물도 발생 당일 즉시 수거하였으며,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2일자 사회면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찰은 흉기 확보도 안 해」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은 범행에 쓰였던 흉기를 확보하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수거해 간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보존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두천경찰서는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한 칼 등 일부 증거물은 당일 수거하는 등 현장보존 노력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밧줄로 묶었다든가 옷을 칼과 가위로 찢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 경찰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범죄수법 등의 공개를 우려한 것일 뿐 해당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른 보도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민중의소리>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0.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민중의소리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2

신청인 회사의 춘천시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226　정정청구
신 청 인 : ㈜○○○아일랜드
피신청인 : 공○○ (신대한 NEWS)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아일랜드는 개발하겠다고 매입한 위도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아일랜드에 부산저축은행의 자금을 투입시켰지만 저축은행의 지분은 하나도 없이 ○○○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여 채권자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자금을 찾을 길이 없어졌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허가 관청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받았으며, ○○○아일랜드의 지분구성은 부산저축은행 60%, ○○○홀딩스 40%로 ○○○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신대한 NEWS :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내　　용 : 부산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비대위(위원장 김○○)는 현재 ○○○아일랜드가 춘천시와 무리하게 위도섬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했다.

▷쟁 점 1

이것저것 다 제하더라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700억 원이 행방불명=춘천시 서면에 있는 위도사업 개발비는 총 1조 4,000억 짜리 대형 프로젝트 사업(○○○ 아일랜드가 밝힘)에 이름도 없고 건설도 해보지 않은 자본금 5억원짜리 SPC(특수목적 법인)를 만들어 저축은행 자금을 무려 1,024억을 끌어 들였다.

○○○아일랜드 측에 따르면 춘천시 위도섬 사업지의 토지매입가격은 270억 원+저축은행 선이자 200억(저축은행 선이자 받은적 없다고 밝힘)+모델하우스 및 200억 원 =670억 원이다.

▷쟁 점 2

○○○아일랜드가 저축은행에서 PF를 하면서 담보력은 어떠했나?=춘천시 위도섬(270억 원) 토지와 영등포구 당산동(300억 원)부지 총500억 원이지만 대출은 통상적으로 60%를 해준다고 은행관계자는 말했다.

그렇다면 담보력은 300억 원 값어치다. 그럼에도 1,335억 원(한국자산신탁에서 밝힘)의 대출이 가능했을까?

○○○홀딩스는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계열사를 수십개 만들고(대출받기위한 SPC 법인) 대출이 이루어지면 주도면밀하게 지분쪼개기로 몸집을 불리고 계열사를 고의 부도를 냈다.

이는 기업들이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쟁 점 3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은 적법했는가?=○○○아일랜드 측에 따르면 최고의 은행(부산상호저축은행)과 최고의 프로젝트(○○○아일랜드)가 만나서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은행이 지금은 망했다. 또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양상되고 있다.

그 당시 대출을 위해 직접 담당했고 몸을 아끼지 않은 것은 ○○○홀딩스의 윤○○ 회장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양(구속)과 직접 만나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춘천시는 부산저축은행 자금인줄 알았나=처음에는 긴가? 아닌가? 의구심이 있었지만 저축은행 사건 터지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춘천시 관계자들은 말했다.

▷쟁 점 4

○○○아일랜드가 개발하겠다고 매입한 위도섬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양대 평가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원주지방환경청, 국토청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문단으로 참가한 G대 한 교수는 처음에 자료를 받았으나 수정할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지금까지 수정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1차 임대평가가 춘천시장 권한으로 승인이 났다. 이것을 강원도 심의에 올려 조건부로 승인

을 했다.(건축허가는 춘천시장의 결정만 남은 것)

▷쟁 점 5

저축은행의 지분은 하나도 없다. 저축은행 자금을 찾기가 멀어진 것.=○○○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홀딩스가 처음에는 저축은행 지분 60%, ○○○홀딩스(총 회장 안○○)40%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측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홀딩스가 49% ○○○홀딩스 임원이 51%의 지분으로 100% 지분을 ○○○홀딩스가 가진 것으로 되었다.

결국 저축은행 자금은 찾을 길이 멀어지는 대목이다.

▷쟁 점 6

○○○아일랜드 춘천 위도 사업 타당성이 있나?=한 건축사는 그들이 내놓은 설계를 보면 춘천시 개천에 집집마다 보트를 띄운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전했다. 보트가 다닐만 한 곳이 아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기일 뿐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분양사의 전문가 의견은 현재 강원도 국책사업으로 한 평창 알펜시아 예를 들면서 1~2억 분양가격도 20%밖에 안돼 적자에 시름하고 있다. 하물며 ○○○아일랜드 분양가격은 평균 20억원으로 과연 분양이 되겠는가 하며 반문했다.

한 건설사의 전문가는 춘천시 위도섬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을 건설한다면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일랜드가 추진하는 무모한 계획에 대해 "춘천위도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체적 결론"이지만 이는 지방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애태웠다.

국토 관리청 관계자도 무모한 사업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마찬가지다.

▷쟁 점 7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나?=○○○아일랜드 관계자들은 허가를 빨리 내주면 분양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0년, 20년이 걸리지 아무도 장담을 못했다. 더욱 문제는 저축은행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즉, ○○○아일랜드가 오리발 내밀거나 사업이 부도나면 저축은행 자금은 찾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담당은 '건축허가 금지 가처분과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춘천시와 협의중'이라

고 밝혔다.

저축은행 비대위도 같이 밝혔다.

▷결 론=○○○아일랜드 춘천위도 사업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또 다시 궁지로 모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게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춘천시도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공매처분에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업이 사업이 저축은행 피해자(국민)들을 두 번 울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디치지 않을 것이고 사업은 이윤의 극대화 겠지만 양심있는 기업으로 거듭 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비대위(위원장 김○○)는 ○○○아일랜드가 모든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자산을 매각해 하루 속히 돈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결단'을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대한뉴스(http://www.kjhn.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목으로 '○○○아일랜드가 개발하겠다고 매입한 위도섬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양대 평가는 ○○○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원주지방환경청, 국토청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준공 후 미래 교통량과 환경의 영향을 미리 예상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일랜드는 전문기관과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강원도청, 춘천시청,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최종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목으로 '저축은행의 지분은 하나도 없다. 저축은행 자금을 찾기가 멀어진 것.=○○○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홀딩스가 처음에는 저축은행 지분60%, ○○○홀딩스(총회장 안○○)40%라고 밝혔다. 비대위(위원장 김○○)는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측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홀딩스가 49% ○○○홀딩스 임원이 51%의 지분으로100% 지분을 ○○○홀딩스가 가진 것으로 되었다. 결국 저축은행 자금은 찾을 길이 멀어지는 대목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아일랜드는 부산저축은행 지분투자가 ○○○아일랜드에 이루어졌으므로 건축허가를 중단하라고 하고 당사가 ○○○아일랜드의 주식지분 소유현황을 중재위원회에 소명하자 아무말도 못하던 자가 이제 와서는 왜 부산저축은행 지분이 없느냐고 합니다. 있으면 부산저축은행관 연관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중단하라고 하고 없으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지○○의 허위기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론문을 보도합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기사 삭제

사례 23

과일즙 당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카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08　정정청구
신 청 인 : ㈜제이○○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 11.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합성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넣고도 100%천연과즙이라고 속여 판매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 소식을 전하면서 사카린나트륨에 대해 "발암성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강해졌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카린나트륨이 과거 발암 논란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인체에 무해함을 평가했고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사용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발암성 물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켜 국내 유일의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인터넷 한겨레신문 :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내　　용 : 광주식약청, 원료 허위표시 업체 5곳 적발

100% 천연과즙이라고 선전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과일즙 상품을 믿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5일 지난 여름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자 과일즙에 합성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넣고도 이를 감춘 채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ㅎ 제조업자와 ㅈ 판매업자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지난 9월 초 11번가 · 옥션 · 지마켓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30여개 업체의 과일즙을 무작위로 구입해 성분을 분석했다"며 "50팩들이 한 상자를 1만5천원에

파는 등 지나치게 싼 상품들에서 허위표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광주 ㅎ 제조업자는 지난 8~10월 배즙에 사카린나트륨을 ㎏당 0.031 g 씩 넣고도 배 99%와 생강 1%만 사용한 천연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1년인 유통기한을 몇개월씩 연장해 표시한 제품 168상자(268만원어치)를 팔다가 적발됐다. 영동 ㅈ 판매업자도 사카린나트륨을 ㎏당 0.013 g 넣고 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은 포도즙을 100%로 천연과즙이라고 속여 19상자(66만원어치)를 팔았다가 들통났다. 나주 ㅈ · ㄷ 등 제조업자 2명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 271상자(430만원어치)를 인터넷에서 팔았고, 청송 ㄱ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 8상자(21만원어치)를 팔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광주식약청 쪽은 "과채류 음료의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치는 ㎏당 0.2 g 이지만 발암성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절 표시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과일즙의 유통기한이 6개월~1년인데도 구입해보면 유통기한이 내년 말까지 표시된 제품이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광주식약청은 9월 과일즙의 성분을 분석한 데 이어 10월에는 김장철에 많이 쓰이는 고춧가루 · 소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고전화(062-602-1355~7)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위해사범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한 상자가 1만5천원 이하로 지나치게 싼 제품은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유통기한을 멋대로 표시하고, 첨가물을 속여 100% 천연과즙으로 속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겨레(http://www.hani.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의 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사카린나트륨에 관한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한겨레신문은 지난 10월 26일자 사회면 초기 화면에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에 사카린나트륨을 발암성 물질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카린나트륨은 이미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첨가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사카린나트륨' 관련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26일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제하의 기사에서 인공감미료로 사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이 발암성 논란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결과, 사카린나트륨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약청의 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면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고 주식회사 제이○○가 알려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3일 09시까지 인터넷한겨레(http://www.hani.co.kr) 홈페이지 지역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1. 11.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한겨레신문 : 『사카린나트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4

신청인 학회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50 · 1351 (2011서울조정 1352 · 1353과 병합)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현대사학회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학회가 일제강점기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은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고 일제 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학회는 제출한 건의안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자고 주장하거나 일제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없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계승하였음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바 없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신문 : (1)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 '식민사관' 과 상통』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7일자 2면)

내　　용 :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 을 보면, '민주주의' 를 '자유민주주의' 로 수정하길 요청한 배경에 '식민지 근대화론' 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사에서 일제 강점기를 '경제성장' 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이승만 · 박정희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을 편다. 경제사적으로 볼 때 조선은 전근대적인 지배체제로 생산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 근대적 생산체제를 도입했고, 이것이 해방 뒤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현대사학회의 건의서 내용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수정 요구를 보면, 시종일관 '일제 강점기'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등의 기존 서술에 '새로운 경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 등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맞물린다. 식민지 시대에 산업화의 씨앗이 텄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이미 임시정부 헌장에서 '민주공화제'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하고,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건의서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 집필기준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3 · 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 대신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일제 강점기 때 근대적 경제의 도입 →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축 → 박정희의 경제개발'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를 위해, 독립운동사 중심의 근대사 서술에서 일본에 의한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이승만 ·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서술로 바꿀 것을 요구한 셈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배는 식민지가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일본의 식민사관과 맞닿아 있어 그동안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신○○ 연세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일제 강점기 경제발전을 강조하면 이에 협력한 친일파는 긍정적으로, 이를 반대한 독립운동은 부정적으로 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고려대 교수(역사학)는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국가 주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세웠던 '실증적 연구'의 성과도 비판받고 있다. 허○○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당시 통계를 내세워 식민지 시기에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증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들

의 주장이 교과서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한국현대사학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익세력의 활동만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로 바뀔 경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보다는 일제 시대에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찾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조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2)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7일자 31면)

역사 교육과정 각론 개발 최종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뒤집은 집단이 한국현대사학회다. 그런데 바로 이 학회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고, 일제 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다고도 한다. 한편에선 체제수호를 외치며 다른 한편에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외세의 병탄을 정당화하려 한 자들인데, 이런 부류가 우리 역사를 희롱하고 있다니 참으로 끔찍하다.

이들은 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지우자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인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기억에서 없애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병탄을 정당화하고 친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밑돌 구실을 한다. 근거의 허무맹랑함을 떠나,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고 동족을 수탈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니, 모골이 송연하다.

독립운동의 정통성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위에 세워진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론이다. 정통성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넣자고 한 것은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는 것이었다. 민족 지도자들이 꿈꾸던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망라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고작 '반공'으로 좁혀버린 것이다. 하긴 일제 패망 후 친일·매판세력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 반공을 최고의 가치로 앞세운 것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포장하는 말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칭송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공'만 앞세우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이들의 자유민주주의론이다.

각론엔 자유민주주의만 포함됐지만, 문제는 현재 집필기준을 작성하는 연구위원들이다. 교과부는 공개를 기피하지만, 대개 이런 부류들이라고 한다.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자유민주주

의라고 하며, 매국과 병탄을 칭송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한국 현대사가 비참하다. 도대체 이 정권의 정체가 궁금하다. 독재의 망령인가, 일제의 대역인가.

조정신청취지

• 주위적으로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2면 좌측 상단에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수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31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2>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수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예비적으로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2면 좌측 상단에 <반론보도문 1>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수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31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2>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수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1〉

1. 제 목 : "한국현대사학회 식민지근대화론 주장한 적 없어"

2. 본 문 : 본 신문은 2011. 9. 27.자 한겨레신문 2면에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 식민사관과 상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역사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건의안"과 관련하여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의 배경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하고 있으며, 위 학회가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근대사에서 일제강점기를 경제성장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서 내용 가운

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수정요구를 보면 시종일관 '일제 강점기'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등의 기존 서술에 '새로운 경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 등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건의서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3.1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 대신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이 나온다","위 학회가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맞물리는데, 이들은 식민지시대에 산업화의 씨앗이 텃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 받아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위 학회는 이미 임시정부헌장에서 민주공화제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하고, 1984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자유민주주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이라고 강조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등에 확인한 결과 한국현대사학회는 2011. 7. 4. 교육과학기술부등에 보낸 건의안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대한민국이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계승하였음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교과서 위원장 명의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 수정안에도 "새로운 경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등의 표현은 들어 있지 아니하고,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도 확인이 되었으며, 한국현대사학회가 식민지시대에 산업화의 씨앗이 텃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한 바도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가 임시정부헌장에서 민주공화제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하고, 1984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자유민주주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이라고 강조하는 주장을 한 바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위 수정안의 1차 초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3.1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2차 초안에는 위 부분이 삭제되지 않았음도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은 〈정정보도문 1〉의 내용과 유사하여 생략

〈정정보도문 2〉

1. 제 목 : "본보의 사설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2. 내 용 : 본 신문은 2011. 9. 27.자 한겨레신문 31면에 게재된 사설에서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라는 제목으로 한국현대사학회가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고 일제식민지 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으며, 한국현대사학회는 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지우자고 주장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한 후, 위 학회의 주장은 일제의 병탄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밑돌 구실을 한다고 비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등에 확인한 결과 한국현대사학회가 2011. 7. 4.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건의안에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자고 주장하거나 일제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바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 위원장 이○○(공주사대교수)가 제출한 수정안 1차 초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3 · 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2차 초안에는 위 부분이 삭제되지 않았음도 확인되어 해당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2〉는 〈정정보도문 2〉의 내용과 유사하여 생략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9월 27일자 2면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과 상통"제목의 기사에서 한국현대사학회의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3 · 1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는 해당 내용이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발전'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수정안 초안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재수정안을 다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1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한겨레> 2면에 보도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현대사학회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요구』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1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한겨레>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ani.co.kr/)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인터넷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식민사관과 상통' 활자와 동일하게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1. 12.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한겨레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2

인터넷 한겨레신문 : 『[반론보도문]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 과 상통"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5

신청인이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63 · 1364 · 1366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의 사망 사유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망자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으며 최근 신청인과의 다툼이 있었고, 사망한 곳도 신청인 소유의 야산이며, 사체를 발견한 사람도 신청인이기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신청인은 인터뷰를 회피했다며 타살의혹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망자와 다툰 사실이 없고, 사망한 야산도 신청인 소유가 아니며, 인터뷰를 회피한 사실도 없는데 해당보도가 마치 사망자를 살해한 그 누군가가 신청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1일자 20:50)

내　　용 : 이 이야기는 잡힐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 :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 우거진 수풀 사이에서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 친척 : 바로 이 나무예요. 이 나무

▷허○○ : 3미터가 족히 넘는 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백골의 사체였습니다.

▷피해자 친척 : 시체가 지금 여기 검은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여기가, 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있었고, 팔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었더라고.

▷허○○ :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패된 사체의 목에는 굵은 전선이 감겨 있었습니다.

▷담당형사 : 바닥으로 이게 완전히 형체가 없는 정도로, 뼈만,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죠, 정확히.

(중략)

▷담당PD : 그러면 최초의 발견한 사람이 그 사장(산주인)이에요?

▷담당형사 : 그렇죠.

▷허○○ : 남편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산은 남편에게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산 주인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고 또 주말마다 가서 일하는 데가 있어요. 사장네 산소예요. 산을 사가지고 완전히 깍아가지고 잔디도 싹심고, 나무심고 그것을 우리 아빠가, 18년 됐죠. 그 산에 가서 일 한지가.

▷허○○ : 회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주말에 이 산에서 일을 도왔다는데요.

▷담당PD : 그 행방불명된 때가 주말이 아니었잖아요?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아니죠, 화요일이에요.

▷담당PD : 그때는 선산에 갈 일이.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갈 일이 없어요. 예. 주말하고 빨간 글씨. 평일 때는 절대 안 가죠.

▷허○○ : 주말에 그것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장과 동행해서 왔던 산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혼자 와서 죽어있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 : 5월 31일 아침 7시 10분 집을 나선 남편은 평소처럼 사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남편은 몇 가지 지시를 받은 뒤 8시 10분 경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허○○ : 그리고 사체로 발견되기 전까지 남편을 목격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담당PD : 그런데 나가는 모습은 뭐 확인된 게 없어요?

▷담당형사 : 네. 7대 CCTV를 다 체크했는데, 부인하고 딸하고 봤어, 여기서.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우리 아빠가 사무실 가서 그 집(사장 집) 식구들 본 뒤로는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난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허○○ : 그낭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사장의 선산에서 남편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체를 찾은 것도 그였습니다.

(중략)

전화통화

▷사망자의 사장 : 여보세요?

▷담당PD : 여보세요?

▷사망자의 사장 : 네네.

▷담당PD : ○○○ 선생님 되시나요?

▷사망자의 사장 : 네.

▷담당PD : 서울 SBS방송인데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사망자의 사장 : 뭔데요.

▷담당PD : 그 직원 중에 ○○○(사망자)씨가 계셨었잖아요?

▷사망자의 사장 : 아니, 그런 사람 몰라요. 딴 데 알아보세요.

▷담당PD : 네?

▷허○○ : 모른답니다. 이렇게까지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SBS-TV 궁금한 이야기 Y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궁금한 이야기 Y "백골상태로 돌아온 남편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1일 궁금한이야기 Y 프로그램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 제하로 충남 공주의 한 야산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주검에 대한 사망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송을 하면서, "사망자가 발견된 곳은 사망자의 사장 소유인 충남 공주의 한 야산이었다. 사망자의 주검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망자의 사장은 인터뷰를 회피하였다. 사망자는 사장에게 모종의 지시를 받았다, 사망자는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실종당일 사장의 사무실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이사할 돈을 구하러 나간 사망자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사망자의 가족들이 부지런히 모은 돈이 통장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돈을 노리고 사망자를 죽음으로 몬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자살로 위장한 흔적이 많다."는 취지로 백골상태 사체의 죽음의 원인이 사망자의 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방송 내용 중 백골상태의 주검이 발견된 곳은 사망자 사장 소유의 야산이 아니라 그곳 인근에 있는 타인의 소유이고, 사망자의 사장은 인터뷰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사장은 실종당일 무언가를 사망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망자와 사장간에 다툼이 있지 않았으며, 실종당일 사망자가 사무실을 그만 두기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해당부분의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위 사건은 충남 공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사망자의 사장은 잠정적으로 사망자의 죽음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아울러 수사중에 있는 사건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과 사망자의 사장에 관한 주변상황을 직, 간접적으로 적시하여 사망자의 사장이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궁금한 이야기 Y "백골상태로 돌아온 남편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충남 공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의 죽음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송보도를 하면서 사망자의 사장에 관한 주변상황을 직, 간접으로 적시하여 사망자의 죽음의 원인이 사망자의 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송에서 사망자의 사장이라 칭해진 당사자는 위 사건은 경찰에서 진범을 잡기 위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며, 자신은 위 사건과는 무관함이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진 상태라면서 사망자의 죽음

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백골사체 미스터리'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백골사체 미스터리, 내 남편은 왜 죽었나?」제하로, 실종됐던 남편의 죽음이 사망자가 일하던 곳 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에 있으며, 사망자의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까지 실종자의 사망과 사장이 관계가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한편 사망자의 사장은 "실종자의 사망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6일(금)에 방송하는 SBS-TV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말미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제1항 보도문을 화면에 게시하고 낭독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SBS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에 게시된 제1항 보도문이 포함된 방송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고, 해당 영상에 딸린 하단 스크립트(방송 내용 소개글) 란에 제1항 보도문의 텍스트를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스크립트 제목(백골사체 미스터리, 내 남편은 왜 죽었나?)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2.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SBS-TV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 '백골사체 미스터리'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6일자 20:5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6

복지시설 원장인 신청인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잘못된 재판인 것처럼 보도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423 · 1424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도가니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신청인에 대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무죄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도가니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사회복지 법인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받았고, 입소자 모집과 후원자 개발의 어려움으로 시설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N : 「MBN뉴스」 프로그램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 '제2의 도가니 막자' "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3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영화 '도가니'가 화제를 모으면서 장애학생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특수학교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 기자입니다.

▷기자 : 특수학교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들이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지만,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이 영화의 소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인화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이후 확인된 것만 10건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외부인이 많았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이 3건, 복지시설 원장이 가해자가 된 경우가 1건이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피해를 법에 호소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으로 기소된 경북 상주의 복지시설 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상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체계적인 성폭력 방지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인터뷰 (배은희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장애 학생들의) 의사표현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피해 상황이 잘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담교사 같은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도가니 2탄을 관람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MBN뉴스> 프로그램에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 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상주 복지시설 성폭력 피해"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10월 3일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목의 보도에서 경북 상주 복지시설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으나, 성폭행으로 기소된 복지시설 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복지시설 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아 불기소 처분되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성폭력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3일 「장애학생 성폭력 무방비 …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로,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화학교 사례를 보도하면서, 인화학교 사례의 유사 사례로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원장 사건은 '도가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13일(금) [단, 긴급 뉴스 등의 사안으로 보도가 어려울 경우 1월 16일(월)]에 방송하는 MBN-TV <MBN 뉴스 10> 프로그램 말미에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제1항 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MBN 인터넷 홈페이지(www.mbn.co.kr)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및 포털에 매개된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한다. 아울러 제1항 보도문이 보도된 날로부터 1주일간 MBN 인터넷 홈페이지(www.mbn.co.kr) 뉴스면 중앙목록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제목(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제2의 도가니 막자”)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또한 제1항 보도문의 방송영상은 다시보기 서비스로 볼 수 있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①

MBN : 「MBN뉴스 10」 프로그램 “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3일자 22: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②

MBN 홈페이지: 『[정정보도문]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7

신청인이 중앙일보 '공신' 프로젝트 덕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도 컸다.

사 건 : 2011서울중재5 · 6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중앙일보 공부의 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청인이 한 때 대학 입시를 포기했으며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에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진학하였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진학한 학부는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이며, 한 순간도 대학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으며, 중앙일보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가 대학 입시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대학에 합격한 것은 아니며 가족의 도움 및 자신의 노력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중앙일보 :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8면)

내 용 : "언니, 합격이에요. 그것도 전액장학금 받아요!"

재수생 양○○(20 · 여)씨는 지난달 가톨릭대 생활과학부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두 살 위 정○○(22 · 경희대 경영학과 4)씨에게 알렸다. 정씨는 "애썼다. 잘했어"라며 합격의 기쁨을 같이 나눴다. 친자매 같은 둘은 지난해 8월 이전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다. 양씨는 지난해 8월 말 중앙일보가 진행하는 '공부의

신 프로젝트' 2기에 참여해 공부 멘토로 정씨를 만났다.

양씨는 "언니를 만나면서 재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재수를 시작할 때 언어와 외국어 성적은 4등급 정도였다. 정씨는 자신이 공부했던 영어책과 신문 기사를 교재로 제공했다. 영어 공부법을 정리해 주기도 했다. 9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편씩 논술을 쓰게 하고, e-메일로 직접 고쳐줬다. 정씨의 관심과 도움이 이어지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언어 · 외국어 성적이 3등급, 10월에는 2등급으로 오른 뒤 11월 수능에서는 각각 1, 2등급을 받은 것이다.

본지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입 수험생들이 대학생 형 ·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합격하는 성공 스토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노하우와 입시 경험을 고교생들에게 알려줘 성과를 본 것이다. 대학생 멘토가 다니는 대학에 지원해 합격한 사례도 있다. 이○○(19 · 충남외고 졸)양과 윤○○(24 · 인하대 법학과 4)씨의 경우다. 이번 공신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가 됐다. 이양이 인하대 사회과학부에 합격한 것이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멘토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신이 최하권이었다. 수시에 원서를 낼 수 없는 정도였다. 그는 "자꾸만 '난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때 멘토 윤씨가 나섰다. "넌 꼭 해낼 거야"라는 문자를 매일 보냈다. 이양은 흔들릴 때마다 문자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 "언니랑 같은 학교에 꼭 다니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윤씨는 메신저 등으로 과목별 공부법과 문제풀이 요령을 꾸준히 알려줬다. 틀린 문제의 지문 10번 읽기도 윤씨가 가르쳐준 외국어영역 공부법이었다.

올해 건국대 중문과에 합격한 이○○(19 · 경기 안곡고 졸)양에게 멘토 김○○(고려대 국문과 3)씨가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됐다. 김씨는 이양의 전화 목소리가 안 좋을 때면 먼저 "힘든 것 없냐"고 물었다. 자신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해주며 "조금만 더 견디라"고 응원했다. 이양은 "명문대에 다니는 멘토 언니를 보며 동기부여가 된 게 사실"이라며 "언니가 위로와 격려를 잘 해줘 수능시험까지 잘 버텼다"고 말했다.

대학생 멘토가 수험생에게 대학 지원 전략을 제시해 합격으로 이끈 사례도 많았다.

강○○(19 · 서울 덕원여고 졸)양은 모의평가에서 줄곧 전 영역 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다 9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강양은 충격을 받았다. 이때 멘토 황○○(20 ·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2)씨가 "수시모집으로 진로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어느 대학 · 학과를 지원할지 같이 고민해 10곳을 선택했다. 원서를 낸 곳에서 불합격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황씨는 "기다려봐. 꼭 될 거야"라며 강양을 위로했다. 강양은 결국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수시로 합격했다. 강양은 "3등급인 수능 점수로는 갈 수 없는 학교였는데 멘토 언니의 도움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종합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 및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공부의 신 프로젝트 대입성공 사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5일에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부의 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이 한때 입시를 포기했으며 공부의신 프로젝트 덕에 사회과학부로 진학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인하대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였던 것으로 확인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학생은 자신은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중앙일보의 공신 프로젝트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자신이 합격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도움 및 자신의 노력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일보 2면에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보도 등의 게재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2월 15일자 8면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기사와 관련, 지은 양은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입시준비에 공신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기는했으나 가족과 학교의 지원도 컸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인하대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 진학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이 유

1.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11. 2. 15.자 8면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앙일보가 주관한 '공부의 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청인이 한때 입시를 포기한 적이 있으나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에 인하대 사회과학부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중앙일보의 공신 프로젝트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합격한 데에 가족과 학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으며, 인하대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 진학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보도와 함께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를 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이 인하대 사회과학부에 진학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중재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한 인하대 인문학부 합격통지서(수험번호:○○○○○, 2011학년도 신입생 정시)를 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부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가

이행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중앙일보의 공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학교의 지원을 받아 공부한 결과 진학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에서 '한때 입시를 포기했고, 공신 프로젝트 덕에 대학에 합격했다'고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고 신청인 가족과 모교가 신청인의 입시지원에 소홀했던 것으로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스스로를 변론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 · 협의사항 ·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2면)

내 용 : <중재결정서 참조>

사례 28

목사인 신청인이 아동학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 2011서울중재27　추후청구
신 청 인 : ○○○교회, 피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교회 목사인 신청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 남매를 가정위탁양육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아동학대의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사를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1)『"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1일자)

내　　용 : 2009년 12월 20일.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소년이 인천의 한 가출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아이는 반팔 차림이었고, 상의는 코피로 얼룩져 있었다. 입소 동의서를 받아 든 아이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입소 사유를 제외한 모든 칸을 비워 놓았다. 혹시라도 O교회 A 목사에게 연락이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O교회에서) 나올 때는 잡히면 그냥 차에 뛰어들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O교회에 있으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난 7월 26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처음 만난 민수(가명 · 15)는 가출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왜 민수는 그토록 O교회에서 나오고 싶었을까. 왜 민수의 집은 O교회가 되었을까.

연락 끊은 아버지, 아이들은 A 목사의 위탁 남매로

민수 · 민영(가명 · 16) 남매가 A 목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04년. 민수는 "어느 날 A 목사가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 다녀라. 그러면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 주고 밤까지 안 돌아다닌다' 고 했고, 그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A 목사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 민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민수 남매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민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K 씨가 "사고를 쳐서"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겨 놓고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밤 12시까지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두 남매를 키웠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시장을 배회하며 할머니를 기다렸다.

2007년, 민수 가족이 A 목사가 운영하는 O교회 근처로 이사 가게 되면서 민수 남매는 아예 교회에서 먹고살다시피 하게 됐다. 민영이는 "당시 할머니는 안 가려고 했는데 A 목사가 '새벽 예배도 드려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더 봐주겠다' 면서 계속 (교회) 옆으로 오라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중략)

6년간 민수 남매를 '학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목사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7월 29일 <오마이뉴스> 기자의 전화를 받은 A 목사는 "걔네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난리가 났다"며 흥분했다. A 목사와 통화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기자는 A 목사와 B 조카 그리고 A 목사의 남편 C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지인이 운영하는 부평의 한 교회에서 기자를 만난 A 목사는 "민수와 민영이의 말은 모두 거짓" 이라고 펄쩍 뛰었다. 체벌에 대해 A 목사는 "매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은 두어 번 있지만 그건 민수가 돈을 훔치고 교회 아이들에게 톱을 휘둘렀기 때문"이라며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옆에 있던 B 조카 역시 "아이들이 거짓말하거나 도둑질 할 때마다 장난으로 때리거나 매로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민수가 자신에게 맞아서 깁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로 때린 게 아니라 매로 때렸는데, 민수가 맞기 싫다고 발버둥 치다가 팔을 잘못 맞았다"고 했다. A 목사는 "그것도 쇼였다"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팔을 위로 들어올리며) 막 이렇게 하고 다녔고, 우리가 안 볼 때는 아픈 척해서 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목사는 "민수를 가장 많이 때린 건 민영이와 할머니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 목사는 "할머니가

(애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제가 (할머니를) 벌세운 적도 있다"며 "그래 놓고 애들은 내가 (할머니한테 애들을) 때리라고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흥분했다.

자신보다 연장자인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목사는 "(할머니를) 언니처럼, 엄마처럼 항상 그렇게 대했다"며 "할머니가 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애들도 욕을 많이 한다고 할머니를 야단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가 나오자 A 목사는 "음식물 쓰레기를 왜 먹이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옆에 있던 A 목사의 남편 C 목사는 "밥을 비벼 주면 아무래도 흘리는 게 덜하니까 밥을 비벼 줬다"고 말했다.

A 목사는 특히 "부모가 방치한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잘해 준 게 너무 많은데 못한 것만 가지고 과대화(과장)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목사는 "하나님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C 목사는 "서로 의견이 상반되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후략)

(2)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목사로부터 6년간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수(15, 가명) · 민영(16, 가명) 남매는 지난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민수남매의 사연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최초 기사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수랑 민영이가 A목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밥을 줬다는 걸 봤다는 증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에 (A목사가 운영하는) O교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수는 이날 자필로 써온 진술서에서 "A목사네 식구들이 저와 누나를 쇠몽둥이, 연탄집게, 가위, 포크 등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마구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영이는 "밥을 너무 먹기 싫어서 휴지에 싸서 혹은 걸레에 싸서 혹은 양말에 싸서 버렸다 적발될 때에는 아무리 곰팡이가 있어도 다 먹어야 됩니다"라며 "만약 (밥을) 양말에 버렸으면 그걸 다 먹어야 되고 또 그 양말을 물에 빤 다음 그 물을 다 마셔야 됩니다"라고 진술서에 썼다.

하지만 피해내용이 대부분 아이들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말밖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민수가 A목사 가족에게 맞아서 병원에 갔다는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목사는 아이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양경찰서에 A목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O교회 인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정아무개(46)씨가 A목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정씨는 "민수가 A목사에게 가위로 찔려서 상처가 난 걸 보고 화가 나서 계양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정씨의 신고를 받은 계양경찰서는 당시 이 사건을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겼고, 이 기관은 A목사의 '체벌'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계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보름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 검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2. 내 용 : 본보는 작년 8월에 게시한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평 O교회 A목사가 인근의 어린 남매를 가정위탁양육을 자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아동학대의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찰청은 A 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다른 증

거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또한 당시 상황 및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기 힘들다' 며 A 목사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 목사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부추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한 어른들이 더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왔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위 1.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 중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기사의 하단부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도록 하되, 위 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제 목 : 검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나. 내 용 :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8월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천 O교회 A목사가 형편이 어려운 남매의 가정위탁양육을 맡은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맡았던 인천지방검찰청은 A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A 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유

1.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2010. 8. 11. 9:28), 「아동보호기관, 수차례 신고에도 왜 제대로 조사 못 했나」(2010. 8. 11. 9:36), 「경찰, '인턴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착수」(2010. 8. 17. 16:21) 제하의 각 기사를 게시한 바, 그 내용은 신청인 1. 교회에 소속된 신청인 2.가 형편이 어려운 남매의 가정위탁양육을 맡은 후 상습적으로 이들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게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인데,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추후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 1. 교회에 소속된 목사인 신청인 2. 가 어린 남매의 가정위탁양육을 맡고 난 이후에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아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인천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1701호)에 의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신청인 2.의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2010. 12. 31.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추후보도 등을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중재대상기사를 접했던 독자들은 여전히 신청인 2.가 가정위탁양육을 맡은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2.의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추후보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 · 협의사항 ·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7.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검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내 용 : <중재결정서 참조>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29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58 · 659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허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20만원이면 결혼 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혼인 예복을 입고 촬영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싸구려 결혼식을 했냐는 문의를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뜰결혼대작전' 제하의 보도(2011년 5월 11일자 18:00)

내　　용 : <앵커 멘트> 5월은 가정의 달이라지만 결혼의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 참 많죠? 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비부부들은 마냥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 준

비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도 앞서죠. 수요일의 알뜰정보 전해주시는 이분께 도움을 청해볼까요. 심○○ 기자, 잘 알아보면 알뜰하게 결혼하는 법, 있다고요.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할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결혼을 위해 쓰는 돈이 무려 15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결혼이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만 원이면 결혼 비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본 프로그램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사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방송 중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진은 위 방송과 전혀 무관하게 입수한 자료로써, 사진 속의 인물은 그러한 방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정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이 결혼식을 위해 머리를 손질하는 사진을 약 3초간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초상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공개된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되는 것을 신청인이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영시간 3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 점, 평범한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결혼식을 했다고 오인 받거나 진실과 다른 거짓 방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오인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사진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서 이와 같이 이용되는 것에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공중파로서 사회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진 점, 일단 방영된 이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만한 실질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부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에 이용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인 점, 외주 제작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사례 30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97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울 은평 뉴타운의 부실공사에 대해 취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인터뷰 장면도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신청인이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얼고 새는 뉴타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9일자 20:00)

내　　용 : 어렵게 장만한 새 보금자리에 물이 줄줄 새고 얼음까지 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은 지 2년여 밖에 안된 서울 은평 뉴타운이 이런 지경입니다.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북한산 기슭에 자리한 서울 은평 뉴타운, 1만 5천 가구의 대단지입니다.

한 집 마루와 부엌 천장에서 물이 비오듯 떨어집니다.

받쳐 놓은 세숫대야를 금새 채웁니다.

베란다는 물바다입니다.

거실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쓰레받기로 연신 퍼냅니다.

▷피해 주민 : 차라리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물건이라면 반품하고 싶어요. 환불받고 싶다고요.

계속된 한파로 배수관이 얼어붙어 막히면서, 윗집에서 내려 보낸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 넘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웃 아파트의 다용도실은 바깥이나 다름없는 냉골입니다.

얼어붙은 세탁기는 뜨거운 물로 녹여 써야 합니다.

습기가 차는 '결로현상'으로 옷장 벽에 물이 흐르고 마룻바닥엔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김○○/피해 주민 : 화나죠, 욕 나오죠. 이게 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을 이렇게 만드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시행사측은 혹한 핑계만 댈 뿐, 다용도실 같은 서비스 공간은 단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 관계자 : 여기가 서울(도심) 온도보다 3, 4도씩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웠기 때문에 계속 얼어있는 상태죠.

참다 못한 주민들은 정부에 하자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뉴타운 주민들은 기약없이 하자 보수를 기다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29일자 SBS-TV <8시 뉴스> 프로그램 『얼고 새는 뉴타운』 제목으로 서울 은평뉴타운의 하자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입주주민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공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촬영 당시 아무런 요청사항도 들은 바 없다며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당시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은 당시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시공사의 보수 등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

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사실 확인서는 위 동영상 자료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공표에 동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8.

사례 31

인터넷도박게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업자'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882 · 883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인터넷 도박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를 취재했다면서 신청인의 모습과 자택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도박게임 추방운동가로 비록 자신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집구조 등으로 지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어, 짱구방 운영업자로 오인되어 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 원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내　　용 : (전략)

수소문 끝에 우리는 실제 짱구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자를 만날 수 있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늘밭110억원 미스테리"편에서 제작진이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모 씨의 모습과 자택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모 씨는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도박게임 추방운동을 하고 있는 한게임도박추방운동본부 및 한게임 집단소송 준비 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보도합니다.

이모 씨에게 피해를 끼친 점 사과합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1년 9월 3일까지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가. 제 목 :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6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관련 보도에서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를 만났다"고 하는 장면에서 노출된 인물은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한게임 도박 추방운동본부 및 한게임 집단소송 준비위원장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9월 3일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1.항과 2.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8.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일자 23: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32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893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연극배우 곽○○씨가 참가한 강남구청 미혼남녀 미팅 이벤트에 관해 보도하면서 같은 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모자이크 없이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방송이 "도시의 풍토병이 돼 버린 노처녀들"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되어 수치심을 느꼈고, 이벤트 주관사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고 자신이 촬영되고 있음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소개팅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당했다며 2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MBC스페셜」 프로그램 '노처녀가(老處女歌)'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3:05)

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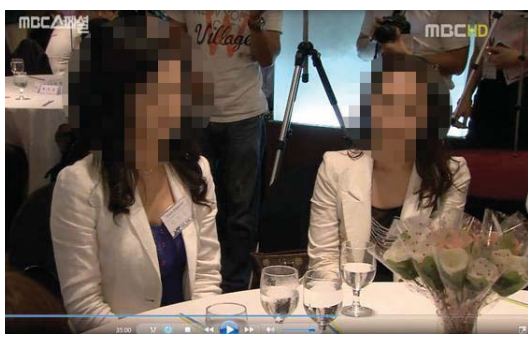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9일까지 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8. 12.

사례 33

카드사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31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카드사 리볼빙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만 노출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모자이크 되지 않은 상태의 얼굴과 함께 실명과 나이, 영업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 수수료 내린다.'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1:00)

내　　용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9. 9.

사례 34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49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씨제이이앤엠㈜ (tvN)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여름철 해운대 패션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동의 없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tvN : 「롤러코스터」 프로그램 '해변탐구생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4일자 23:00)

내용 : 올여름에도 더위를 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바닷가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도 바닷가로 떠나봤어요.

롤러코스터 여름특집, '여름해변 남녀탐구생활'

먼저 바닷가를 찾은 해운대 패셔니스타를 탐구해봤어요.

바다 패션하면 비키니, 비키니하면 바다 패션이에요.

바닷가에선 역시 비키니패션이 대세였어요.

까만 비키니, 빨간 비키니, 노란 비키니, 초컬릿색 비키니.

세상의 비키니들은 여기에 다 모여있나봐요.

S라인 몸매를 뽐내기에는 비키니만한 게 없으니까요.

이때 왕꽃무늬 분홍 비키니를 입은 여자분이 눈에 띄어요.

베스트 사진을 찍기 위해 폴짝 뛰네요. 롤코도 함께 폴짝 뛰고 싶어요.

그 외에도 티셔츠와 코디한 비키니, 빨간색 프릴 비키니, 도트무늬 비키니 등등 해변가는 뷰티풀한 비키니의 천국이에요.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이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신청인은 tvN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파일공유사이트 등 인터넷에 떠있는 롤러코스터 제112화 내용 중 신청인이 나온 부분을 삭제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35

보건복지부의 정책홍보 행사장에서 '대중교통 임산부석 지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신청인을 행사도우미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220　손배청구
신 청 인 : 방○○
피신청인 : 한국정책방송원 (K-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배가 얼마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임산부의 날 행사장 앞에서 시위중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행사를 비판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해당 행사를 홍보하고 동조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 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기에 그 진의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왜곡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정대상보도는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의 시위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K-TV : (1) 「정책 오늘」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0일자 18:30)

내　　용 : 배가 얼마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들, 공공장소에서 자리 양보 받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오히려 임신 초기가 가장 힘이 들고 유산 확률도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임신부들, 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체형 변화가 많지 않은 임신 초기.

임신부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서울 행당동) : 임신 초기에는 배가 얼마 안 나오니까 노약자석 같은데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럼 저는 산모 수첩 꺼내서 괜히 더 표를 내고 그랬죠.

▷변○○(서울 청룡동) : 초기에는 오히려 정말 더 힘이 들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오히려 자리에 더 못 앉아있었어요.

임신 초기인 12주까지의 시기에는 태아가 산모에게 안정적으로 착상되는 시기로 입덧과 수면장애 등으로 임신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80% 이상의 유산이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 초기에는 임신부가 변화하는 신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국의 보건소에서 초기 임신부들을 위한 위한 배려 엠블럼과 카드 등을 무료 배포합니다.

또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임산부 배려 엠블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이 엠블럼을 보고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전시성 행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해당 행사에 동조하는 참석자인 것처럼 비춰지게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판 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집회 · 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 시위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영상은 신청인이 공공장소인 임산부의 날 행사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임이 인정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위 내용의 진의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의를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조정대상보도는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이 시위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주요한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신청인의 시위 내용을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6.

사례 36

김정일 사망 관련 호외 신문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412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백만 원으로 변경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김정일 사망> 호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내　　용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1월 10일까지 계좌이체(◯◯은행000000-00-000000, 예금주 : 이◯◯)를 통해 금 일백만원(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각 포털에게 각 포털이 2012년 1월 4일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정대상기사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과 제2항을 각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12년 1월 11일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1. 8.

사례 37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중재95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8. 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보도에서 15년 만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 등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그대로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7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경향신문 : 『15년 만에 쓴 학사모 …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29면)

내　　용 :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 졸업장을 받아든 만학도가 있다. 주인공은 23일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최○○씨.

최씨가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보통 대학을 8학기에 마치는 것과 비교하면 최씨의 30학기는 방송통신대 설립 이후 최장 기록이다. 방송통신대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저렴하고, 졸업 연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씨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어린 학생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에 유아교육을 추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유아교육과는 교육학이나 교육심리 등 교직 과목 이수가 필수이고, 리포트 등 과제물도 많았다. 최씨는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느라 스터디 모임 등에 참여하기 어려워 모든 과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다. 최씨가 학위 취득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30학기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욱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 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이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0일까지 금 1,700,000원을 지급하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011. 2. 24.자 29면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1. 7. 21.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881)을 하였다가, 2011. 8. 3.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가 신청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 및 나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 · 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1,700,000원으로 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5.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사례 38

의사 부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청인의 집을 마치 사건 현장이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9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임신한 의사 부인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건현장과 같은 구조이며 당시 공실이던 옆집을 촬영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살인사건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동의 없이 집을 촬영하여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5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이 사건기사에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 '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7일자 21:00)

내　　용 : 만삭의 20대 여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을 용의자고 지목했지만,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출산을 한 달 앞둔 29살 박모 씨가 지난달 14일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 31살 백모 씨는 오후 5시쯤 퇴근해 집안에서 숨진 부인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백씨는 부인이 욕실에서 실족해 숨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부검 결과 박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판명됐습니다. 또 박씨의 손톱 밑 혈흔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 최○○(마포경찰서 형사과장) : "사체 상태, 피의자 진술의 모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사고사는 아니다."

경찰은 남편 백씨를 용의자로 보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단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만삭인 박씨가 실족해 쓰러지면서 목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임○○(남편 측 변호사) : "전날 부인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해서 등을 긁어줬고 그래서 손톱에 각질이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여전히 남편 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8,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2011년 2월 7일자 KBS-1TV <뉴스9> 프로그램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목으로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입주 준비 중인 아파트의 욕실 내부 등을 촬영하여 배경화면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건현장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집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욕실 등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료화면' 표기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에서는 신청인 아파트의 명칭, 호수 등이 직접 공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아파트 욕실 내부에 다른 아파트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일반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방송화면상으로는 그곳이 신청인의 아파트임을 인식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8.

사례 39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47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디오데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SBS '짝'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의 글을 그대로 인용, 불륜녀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익명으로 쓰는 게시판의 글을 사실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디오데오 : 『짝, 여자○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은 무엇?』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내　　용 : 천사표 출연자라고 불렸던 여자 ○호가 불륜녀 의혹에 휩싸여 화제다.

지난 31일 방송된 '짝'에서는 애정촌에 입성한 ○○기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여자 ○호는 '다른 분들이 다들 어리고 예뻐서 나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고 나왔다. 나도 눈치가 있다.' 고 전했고 이어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 결혼하면 아들만 있는 집에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고 싶다.' 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 여자 ○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한 네티즌은 '제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 천사표로 등장하셨다. 결혼식 후 신혼집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자면 글쓴이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는 여자 ○호와 양다리를 걸쳤으며 결혼 직후 여자 ○호가 신혼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결혼 한달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아직 이글의 진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짝 제작진과 당사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9월 30일까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본 건 조정신청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9. 21.

사례 40

신청인들이 경찰에 제공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25 (2011서울조정1326과 병합)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박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1.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암보험금을 노린 꽃뱀 사기단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당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찍힌 CCTV화면을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CCTV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경찰에 제공했을 뿐인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여 신청인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범죄를 밀고한 것처럼 비추어져 범죄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암보험금 노린 꽃뱀사기단'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0일자 08:00)

내　　용 : ▷앵커멘트 : 순진한 농촌 주민을 유혹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뜻어낸 혐의로 꽃뱀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무려 12명이 공모해서,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12명이 공모해서 피해자 한명을 속였다는데요. 주범을 잡고보니 더 기가 막혔다죠?

네, ○○ 기자 피해자와 친형제처럼 지내던 동네형님이 범행을 꾸몄다는데 정말 믿기 어렵네요.

네, 사람이 무섭긴 정말 무섭습니다.

전문배우 뺨치는 연기력으로, 앞에선 둘도 없이 좋은 이웃이자 형처럼 마음을 열게 하고는, 뒤에선 대규모 꽃뱀 사기단을 꾸려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암 투병중인 피해자 부인의 암 보험금 이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기극의 전말을 파헤쳤습니다.

▷리포트 : 지난달 1일 저녁, 전남 곡성에 있는 한 식당 인데요.

남자 두 명이 들어옵니다.

한 마을에 살며 친형제처럼 지내는 55살 강 모 씨와 64살 이 모 씹니다.

잠시 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들어오는데요.

뒤쪽 테이블에 앉더니 남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 당시 상황 목격자(식당 종업원) : "(30대 여성이) 자기 동생이 오리를 너무 좋아 하는데, 우리 동생이랑 같이 먹으면 안돼요? 술 한 잔하자고 젊은 여자들이 (제안하니까) "오세요, 같이 먹게 이랬겠죠."

여자 두명은 연신 술과 음식을 권하며 금세 친밀하게 굴었는데, 특히 유 모 여인은 초반부터 강 씨에게 대놓고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 강○○(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그 여자가) 아빠한테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 좋다느니, 어쩐다니 그렇게 하셨나 봐요."

못 마시는 술에 정신이 혼미해진 강씨. 1시간 뒤인 7시쯤, 유 여인의 손에 이끌려 가게를 나섭니다.

▷녹취 · 당시 상황 목격자(식당 종업원) :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여자가 남자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 여기서 나갈때. 여자가 남자 팔짱을 딱 끼고. 노래방을 가 버렸어 ○○노래방으로

그날 밤 강 씨는 유 여인과 같이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유 씨는 보고 싶다며 계속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난달 12일. 강씨는 집 근처 모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인터뷰 · 박○○(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 "(이 여자는) 내 부인이고. (예전에) 집 나갔고 너 계속 만났지? 그리고 간통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강 씨는 평소 친형처럼 믿고 따라 온 이 모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이 씨는 자신이 여자의 남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 강○○(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시골이라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경찰서도 한번 간 적 없고, 모르시더라고요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리고 자신이 4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며 이만하면 잘 된 것이니 돈을 주고 빨리 일을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4천만 원... 너무 큰돈인데요.

(중략)

어려운 합의를 대신 해 주는 척 하면서 공범들과 강씨 부인의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인터뷰 · 이○○(피해자 부인/음성변조) : "우리 집에서 돈을 남편에게서 받아가지고, 범인들한테 돈 주고 합의 받아서 온다는 날도 (공범들과) 돈 천 만 원씩 나눈 후, 지 호주머니에 (돈 챙겨) 넣고 와서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남편 데리고 가서 볏집 나르라고 일도 시키고..."

어이없게도 이 씨는 끝까지 죄를 부인하면서 강 씨 가족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녹취 · 강○○(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경찰서에서는 다 시인을 했으면서도, (우리 집에) 와서는 무혐의다 나는 죄가 없다. 나중에 우리 집을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

▷인터뷰 · 이○○(피해자 부인/음성변조) : "그 사람들이 주범인지는 진짜 몰랐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주범일거란 생각도 안하고 딱 그 사람들이 주범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배신감 그런 배신이 없고 ..."

경찰은 주범 이 씨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 사기꾼 꽃뱀 일당이 다른 농촌마을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0,000원을 위자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1년 12월 20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1.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 · 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2. 1.

제4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례 41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광주조정2　손배청구
신 청 인 : 엄 ○ ○
피신청인 : 최 ○ ○ (파인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피소된 전 화순군수에 관해 보도하면서 고발자인 신청인의 성명을 그대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3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내　　용 : 전형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전형준 전 군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법정에서 쟁점다툼이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세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엄○○ 씨가 전형준 前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선거관련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엄○○ 씨는 지난 7월21일 전형준 前 군수가 총 6건의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엄씨의 고발에 따라 광주지검 공안부는 수사를 통해서 총 4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여 10일 첫 심리가 열린 것이다.

6건의 고발내용은 "이양 청풍면 양○○ 씨, 김○○ 씨 상대로 100억 살포설. 화순읍소재 본향교회앞 불법선거운동. H씨를 상대로 서울 송파구청앞 일식집에서 전완준 군수 지지요구. 지난 5월 23일 임○○ 군수후보 운동원인 서○○ 씨에게 전완준 후보 지지부탁. 2010년 2월 9일 돈선거추방위의 100억 살포설 녹취록 공개 관련. 선거기간인 5월 23일 전완준 후보 유세차량에서 손을 흔들어 지지호소"를 했다는 고발 내용이다.

검찰은 4건의 공소사실만 인정했고 검찰의 공소내용은, "2010년 5월 20일 화순읍 부영3차아파트 정문부근에서 지나가는 지역민에게 전완준 군수를 부탁한다면서 악수를 청하고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 준 것과 5월 23일 화순5일 시장입구에서 전완준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가 전완준을 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5일 한국○○○교회 화순지역회관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기호8번 전완준 부탁하면서 명함을 주었으며, 화순읍 유천리 보석랜드 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전형준 후보의 명함과 홍보물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전형준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 후보자인 동생 전완준을 위해 4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전형준 前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 모두를 부인하고 공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전형준 前 군수는 재판부의 인정 심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현장에는 있었지만 결코 선거운동등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엄○○씨, 이○○ 씨,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12월 1일 오후2시에 속행된다, 이번 공판에 참여한 한 군민은 '이렇게 집요한 세력들이 있는 한 화순군민의 화합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형준 前 군수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불행한 군수는 전형준으로 끝나야 된다"며 "전형준은 앞으로 화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며 "종교인들이 이번에 또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어 화순군민에게 송구할 뿐" 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2월 28일까지 금 일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11. 1. 21.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사례 42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에 관한 기사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상호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제주조정1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제주일보사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한 호스트바가 극성이며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유흥주점의 상호를 함께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신청인의 유흥업소를 마치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전, 신청인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제주일보 : 『'꽃미남 대기' 호스트바 극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신제주 일대서 홍보 전단 배포-호객행위 노골화

남성종업원을 고용해 여성손님에게 '술시중 들고 여흥 돋우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호빠' (호스트바)들의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지난달부터 6월까지 호빠를 중심으로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호빠 영업이 한층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동과 노현동 등 유흥주점들이 밀집한 지역에선 호빠를 홍보하는 전단지 배포와 호객행위 등이 노골화해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낳고 있다. 문제의 전단지엔 '강남선수 00명 항시 대기', '강남 꽃미남 DJ 00명 항시 대기' 등 불법 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예전엔 사람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전단지 배포행위 자체도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는 등 양성화하고 있다. 실제 저녁시간대 연동 유흥가에서는 젊은 남성 두세 명이 호빠 홍보 전단지를 다른 이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호빠에 이어 '디빠'도 등장했다. 디빠에서 '디'는 덤핑(Dumping)의 머리말로 싸다는 의미다.
아울러 성매매 전단과 음란광고물 등도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K씨(42.연동)는 "신제주권 일대는 호빠가 판치고 유해 광고로 도배돼 가족과 함께 못 다닐 정도"라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호빠 영업실태를 파악, 불법 확인 시 강력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9,911,22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제3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 제3부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권고사례 일부를 수록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으로 묶어서 게재하였으며,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주요 시정권고사례

1. 형사사건 피의자 신원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172

언 론 사 : 디지틀조선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4월 2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출신 레슬링 꿈나무의 눈물

1. 보도내용

「… 지난달 30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구 ○○동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행인을 각목으로 때려 실신시킨 뒤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모(○○)군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에서 조사 내내 울먹였다. 최군은 ○○ 출신으로, 레슬링 선수가 되기 위해 귀화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까지 딴 유망주다. 한국인 아버지와 ○○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나, 3세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러시아로 돈을 벌러 떠난 뒤 소식이 끊겼다. 고아가 된 최군은 키워준 이모가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2006년 아버지의 나라로 왔다. (중략) 2009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나간 전국체전에서 소년부 레슬링 ○○형 ○○kg급 금메달을 따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3월에도 대한레슬링협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형 ○○kg 이하급에서 고등부 은메달을 땄고 지금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할 정도로 성장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미성년자 범죄 보도 시 사건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귀화 사실 및 출신국가, 전국체전 수상 경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사건 보도 시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 제1항 및 소년법 제68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47

언 론 사 :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5월 18일자 사회일반면

기 사 제 목 : 한나라당 이○○ 의원 부인 뺑소니 혐의 조사

1. 보도내용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한나라당 이○○ 의원의 부인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행인 B(39)씨의 오른쪽 팔 등을 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인 남편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435

언 론 사 : 한국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11월 16일자 10면

기 사 제 목 : 정동영 때렸던 그녀, 박원순에게도 손찌검

1. 보도내용

「정동영 때렸던 그녀, 박원순에게도 손찌검」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 마약 용량 용법 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238

언 론 사 : e머니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5월 3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흔적 없이 필로폰 투약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1. 보도내용

「…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에 ○○○을 넣고 가열해 ○○○를 흡입하는 일명 '○○○○○'라는 방법을 통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서 관계자는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은 흔적이 3~6개월까지 오래 남는데 비해 ○○○○○ 방법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다"며 "조직 내에서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검거에 대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 권고사항

마약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속칭 '○○○○○'라는 ○○○ 투약 방법을 상세히 적시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86

언 론 사 : 서울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4월 16일자 23면

기 사 제 목 : '악마의 술잔' 한모금에 블랙 아웃 24시간내 검사 못할 땐 미제사건

1. 보도내용

「… 최근 들어 나쁜 목적으로 자주 쓰이는 약물은 '○○○' (○○ 히드록시 ○○○○), 로 ○○○○, ○○○ 등 3가지다. 대개 술이나 음료수 등에 쉽게 녹으며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알약 형태다. 이런 약물들은 원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좀 더 격정적으로 즐기자는 목적에서 퍼지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가 악의적으로 변해 왔다. 가장 흔한 것은 '물 같은 히로뽕(필로폰)'이라는 뜻에서 '○○'으로 불리는 ○○○다. 액체류에 빠르고 감쪽같이 녹는 ○○은 약간 짠 맛이 나지만 술을 마시면서 이를 감지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은 수면장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엉뚱하게 전용된 경우다. 역시 무색무취에 알코올은 물론 콜라, 사이다, 주스 등에 잘 녹는다.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은 환각의 강도가 ○○○○나 ○○○보다도 강해 동남아 등지에서 '○○○K'란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다. (중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건넨 '악마의 술잔'을 들이켜면 30분이 채 안 돼 약효가 나타난다. 차츰 기분이 좋아지다가 그게 심해지면 주체 못할 졸음이 쏟아진다. 한 시간쯤 지나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잃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만취한 여자를 남자가 부축해 술집을 나가는 것 정도로만 비친다. 극소수는 ○○○을 당한 뒤 곧바로 깨어나 부분적이나마 기억을 되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술이 과해 필름이 끊어지는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신체에 이상을 느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스스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

2. 권고사항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방법,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371

언 론 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16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다양해지는 마약… 종류만 수십개

1. 보도내용

「… ○○○은 양귀비 추출물로 처음에는 몽롱한 상태의 효과를 얻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흡입이 필요해져 결국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 (중략) … ○○○은 수면촉진, 기침완화, 통증억제 등 효과가 있지만 남용 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시킨다. 최근 ○○○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방감초편이 우리나라에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해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이다. ○○○을 원료로 한 만큼 약리작용은 ○○○과 유사하나 중독성은 ○○○의 10배에 달한다. (중략) ○○○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을 일으킨다.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과용 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다. ○○은 코카인에서 추출한 백색 결정체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다. 합성마약은 ○○○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이다. ○○○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계, ○○○계, ○○○○계, ○○○○○계, ○○○○○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이 중 ○○○○와 ○○○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 (중략)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 '히로뽕, 필로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다가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돼 전쟁 중 군인과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 생산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는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시중유통이 금지됐지만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다. ○○○○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 '○○○○' 등으로 통칭된다. 복용 후 20~60분이 지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며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해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는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 종이 또는 정제에 ○○○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 '쿤

사'가 개발한 '○○는 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청소년과 회사원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도 남용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환각효과가 세고 중독성이 강하며 기존 히로뽕과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 색을 띠고 있고 정제나 캡슐형태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 주사기로 투약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가격이 저렴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우려가 지적되는 마약이다. ○○○는 FDA가 공식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에는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알코올에 타마시면 의식을 잃고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돼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면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린다. 24시간 내로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중략) ○○○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사이에서 ○○○ 대용 약물로 남용됐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다.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 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의 부작용이 있다. 과다 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을 일으킨다. '○○○'로 불리는 ○○○○○○○○은 가격이 저렴하고 여성들 사이에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하고 있다. ○○○○○○은 근육이완제로 '○정'으로 불리며 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남용되고 있다. 마취제인 ○○○은 오용할 경우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으로 유통시 남용가능성이 높은 마약이다.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통하며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 흡연용으로 ○○○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다. ○○○는 ○○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해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로 부른다. 씨앗 생성기에 풍부하게 생성되는 ○○○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환각제로 분류되며 남용시 집중력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 남용시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보다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부터 추출한 ○○○는 약 10%의 ○○○를 함유하고 있어서 ○○○보다 8~10배 강하다. ○○○ 오일은 ○○로 증류공정 등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 추출되기 때문에 ○○○ 함량이 약 20%에 이르는 물질이다. ○○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과 내분비기능 장애, 면역능력 감소, 정신분열증을 초래한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 및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3. 자살자 신원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266

언 론 사 :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및 기사제목 :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슬픔에 잠긴 故 ○○○어머니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故 ○○○, 자택서 숨진채 발견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내 아들이 죽었다니 …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믿어지지 않는 현실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오열하는 故 ○○○ 어머니
- 2011년 5월 29일자 포토면 : 오열하는 故 ○○○ 유가족
- 2011년 5월 29일자 포토면 : 오 열

1. 보도내용

「슬픔에 잠긴 故 ○○○ 어머니」, 「故 ○○○, 자택서 숨진채 발견」, 「내 아들이 죽었다니…」, 「믿어지지 않는 현실」, 「오열하는 故 ○○○ 어머니」, 「오열하는 故 ○○○ 유가족」,

「오열」 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의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 어머니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자살자의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의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376

언 론 사 : 조인스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9월 28일자 중앙USA면

기 사 제 목 : 한인 일식당 주인, 종업원 살해후 자살

1. 보도내용

「한인 일식당 주인이 여자 종업원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프로스펙트 하이츠의 ○○○○ 콘도 4층에 살고 있던 한인 여성 ○ 유(○○ Yu · 4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남성 오○○(○○ Oh · 46) 씨도 유 씨와 함께 현장에서 사망한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중략) 프로스펙트 하이츠 경찰서의 에릭 룬트 서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오 씨가 유 씨를 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총으로 자살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은 유씨 소유로 두 사람이 다툼 끝에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감식은 이미 마쳤으며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략) 경찰 발표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의 일식당 사장과 종업원 관계였다. 10여 년 전 부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이민온 오 씨는 ○○○○○ 사업을 하다가 4년여 전 현재의 일식당을 인수했다. 한때는 일식조리사를 4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번창하다가 최근 가까운 곳에 동종업소가 들어서면서 예전 같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경력사항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4. 사생활 침해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314

언 론 사 : 시사서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28일자 A11면

기 사 제 목 : 우면산 무너지던 날 ○○○○ '복상사(?)' 스캔들

1. 보도내용

「국내 증권사들에게 '슈퍼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는 ○○○○에 추잡한 스캔들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부에 소속된 42세 모 팀장이 단란주점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은 모텔에서 돌연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중략) ○○○○ 직원들이 모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의하면 이날 ○○○○본부 직원 3명은 증권사 직원 한명과 함께 접대여성이 있는 단란주점에서 음주가무를 즐겼고, 이후 증권사 직원을 제외한 ○○○○ 직원 3명은 접대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중략) 돌연사한 42세 A○○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송파구 방이동의 한 음식점에서 상사인 B(47)씨와 동료 C(41)씨, 모 증권사 직원 D씨와 저녁 식사를 했다. (중략)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탄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 직원이 증권사 직원에게 성접대를 받다가 '복상사'를 당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망한 A씨와 동행했던 여성이 "(A씨가) '몸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 30분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왔다"고 진술했고, 발견 당시 A씨는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으로 봐서 A씨가 '복상사'를 당했다는 것은 억측으로 보인다. …」

2.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망 경위가 불명확한 사망자의 직장, 소속 부서, 직책, 나이를 공개하면서, 미확인된 성매매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및 제2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46

언 론 사 : 전북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6월 1일자 6면

기 사 제 목 : "상대편 주장만 들어주는 판결 너무 억울하다"

1. 보도내용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제지당하자 법원 옥상에 올라가 투신하려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7호 법정에서 권○○ 부장판사의 민사고법 항소심 선고를 듣던 윤모씨(○○·여)가 판결 직후 커터칼 조각을 꺼내 휘두르는 난동을 부렸다. (중략) ○시 ○면 한국불교태고종 ○○사 ○○인 윤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태인~원평간 자신의 사찰 인근의 터널 발포공도로건설공사 도중 이뤄진 발파작업으로 사찰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틀어졌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10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2.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과 나이, 소속 종단 및 사찰명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를 할 때 개인의 인적사항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기사는 헌법 제 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5.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321

언 론 사 :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11일자 A14면

기 사 제 목 : 13명이 9시간 밤샘폭행 '막장 10대'

1. 보도내용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9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한 무서운 10대 남녀 청소년이 대거 검거됐다. 이들은 폭행은 물론이고 피해 남학생의 ○○를 땅에 파묻는 등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중략) 김 군 등은 ○○○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 지역으로 윤 군을 끌고 가 이 지역 빈 건물 지하, 빌라 주차장, 아파트 인근 공원 등을 돌며 집단으로 윤 군을 구타했다. 또 윤 군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로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인근 지역을 돌며 윤 군을 폭행한 것은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폭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할 때는 남들이 윤 군의 폭행당한 ○○을 보지 못하도록 ○ ○○으로 가리기도 했다. 또 이들은 13명이 윤 군을 공평하게 때린다는 이유로 스톱워치로 3분씩 시간을 재면서 폭행했으며, 윤 군이 정신을 잃으면 깨어나도록 물을 끼얹었다. 마지막 폭행 장소인 놀이터에서는 윤 군의 머리를 비닐로 싸매고 약 40cm의 모래 구덩이에 ○를 파묻기도 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보도하거나 범행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10대 청소년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 과정과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여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323

언 론 사 : 인터넷 경향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22일자 사건/사고면

기 사 제 목 : "○○만 있으면 문 딴다"…○○ '달인' 절도범 검거

1. 보도내용

「○○○ 등에 사용하는 ○○으로 출입문을 따고 절도 행각을 벌인 일명 '두 주먹의 붉은 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을 사용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씨(3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매입한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유모씨(3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5시쯤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근처의 커피숍에 침입했다.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슬쩍 앞으로 밀어 틈을 만들었다. 이어 틈새 안으로 길에서 주운 ○○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에 걸었다. 김씨는 곧바로 ○○을 힘차게 비틀어 당겼다. 그러자 '치익'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풀렸다. 문을 여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초. 그는 계산대 위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을 이용한 절도 방법을 기사와 사진으로 상세히 묘사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범죄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65

언 론 사 : 서울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6월 15일자 23면

기 사 제 목 : 「왜 조폭은 ○○의 ○○○를 찔렀나」 제하의 기사 및 그림

1. 보도내용

「… 하지만 이상한 점은 조직폭력배의 ○○○이 있을 때 유독 ○○○를 노려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는 피를 보면서도 최악의 결과로는 치닫지 않아 상대를 겁주기에 알맞다는 판단에서일까. 법의학자들은 그 반대라고 말한다. ○○○ 테러는 칼을 꽤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의 지능적인 살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중략)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했고 범인들이 노린 것은 ○○○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조직 폭력배가 낀 테러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자상이 ○○○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폭들이 ○○○ 부위를 공격하는 이유는 대퇴부의 동맥이나 정맥을 끊어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반면, 나중에 자신은 재판정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할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살해를 하더라도 살의를 감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 부위를 공격하면 살해의 의도를 감출 수 있다는 등의 범행 수법을 상세히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6.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227

언 론 사 : 일요서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5월 22일자 18~19면

기 사 제 목 : "날 믿어야 대학간다" 파렴치 학원장

1. 보도내용

「정씨는 2007년 10월경부터 서울 ○○구 소재 모 ○○전문 학원을 운영했다. 학원장이었던 정씨는 건물 2, 3층을 강의실로 3, 4층 고시원을 학원 숙소로 이용,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했다. (중략) 정씨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정씨는 ○○살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김모(○○)양에게 지속적으로 "결단력이 없다. 성장해라"라고 말하는 등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9년 8월 김양을 은밀히 부른 정씨는 "신뢰도 테스트를 통과하면 나중에 취업까지 보장해 주겠다"며 성추행을 시도했다. 놀란 김양은 정씨를 뿌리쳤다. 하지만 정씨는 같은 날 학원 3층에 위치한 김양의 방으로 찾아가 '○ ○○' 명목으로 김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김양은 학원을 다니는 동안 8~9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같은 시기, 정씨는 김모(○○)양에게도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정씨는 김양을 비롯한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로 견학을 가게 됐다. 정씨는 미국 숙소에서 평소 ○○○라고 부르던 김양을 은밀히 불러 "○○○가 된 이유를 대답해 보라. 대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없다"고 위압감을 조성, 김양을 자신 옆에서 자게 하고,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가 된 이유다"며 김양을 성추행했다. (중략) 2009년 6월에도 박모(○○)양을 불러 "네가 에너지가 부족해 인격적 성장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남자친구가 없으니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겠다"며 추행했다. 또 한 달 후 학원 내에서 박양을 불러 "인격적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윽박지르며 성폭행했다. (중략) 지난해 4월 정씨는 ○○○테스트를 빌미로 윤모(○○)양을 학원 옥탑방으로 불렀다. 테스트를 받으러 온 윤양을 다짜고짜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 (중략) 지난해 6월에는 옥탑방에서 조모(○○)양에게 "성장을 하고 싶냐. 나를 믿느냐"고 물은 뒤 성추행 했다. 이후 조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다른 학생들에게 "조양은 성장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수시로 이야기 하며 조양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조양을 복종하게 만든 정씨는 "○ ○○"라고 물은 뒤 조양을 성폭행했다. 심지어 정씨는 같은 해 7월 중순경 학생 6명과 함께 ○○○○○○○○으로 봉사활동을 가서도 조양을 유린했다. (중략) 또 정씨는 박모(○○)양에게 ○○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으로 성장이 덜 됐으니 ○○ 동영상을 보고 차이점을 말해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 정씨는 놀란 박양이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하자 "테스트에 실패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폭행했다. …」

2. 권고사항

성폭력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성과 나이, 다니던 학원의 소재지와 운영 형태, 해외견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보도 시 피해자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기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4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언론중재 · 조정 사건의 전체목록을 게재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적단체 포함)을 제외하고 익명으로(○○표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내 '이행방법' 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혹은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 편집자 주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2011서울조정1~2	(정정 ·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조 정 대 상	『비리의 온상인가…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4	(정정 ·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조 정 대 상	『비리의 온상인가…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장애인 복지회 지회장과 내연의 관계이며 지회장을 도와 장애인들을 갈취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1~2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함안신문
조 정 대 상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개최, 김○○ 현 자원봉사대장 연임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신청인주장	함안군 칠원면의 주민복지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이 자원봉사대 대장선거 총회개최를 위해 확인 서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2면)

2011서울조정5	(손배청구) 황○○ 對 세계일보
조 정 대 상	『시민단체 대표 협박혐의로 유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무원에게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1심 재판결과를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6	(정정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강원교육청 · 전교조 '이상한 단협'』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1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강원도교육청간의 단체협약 내용이 마치 신청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디지틀조선일보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에서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할 때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월 21일자 12면, 디지틀조선일보 1월 21일자)

2011서울조정7	(정정청구) 환경부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수도권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환경부가 징수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난 11년간 물이용부담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물이용부담금 관련 법률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며, 정정 또는 반론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2011경남조정3~4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함안신문
조 정 대 상	(1) 『그건 이렇습니다 – 칠원자원봉사대장 선거 관련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는?』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2)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개최, 김○○ 현 자원봉사대장 연임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적법한 자원봉사대장으로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본지와 판단이 다르다면서 이를 폄하하는 후속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연유를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의 기사일 뿐, 신청인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손배청구 : 취하

2011서울조정8	(정정청구)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외국인 혐오 확산' 인종주의 사이트 기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홈페이지가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인종주의 사이트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 단체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 및 외국인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외국인 혐오 확산' 인종주의 사이트 기승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2011서울조정9~1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산업 주식회사 對 파주저널, 인터넷 파주저널
조 정 대 상	『민원인 외면한 공무원은 누구편인가?』 (2010년 12월 20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고, 마을 상수원을 끊어 주민들이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파주저널 2011년 1월 24일자 2면)–불성립 결정 후 보도됨

2011대구조정1~2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대구서 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감시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3~14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대구서 또 응급환자 병원 전전하다 의식불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이송되어 온 뇌출혈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5~18	(기사별 정정 · 손배청구)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對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대구 ·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2) 『[전문기자 칼럼] 병원이 내몬 아이의 죽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2011서울조정19~20	(정정 · 손배청구)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소아 응급치료 거부한 경북대병원, 권역센터 취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머니투데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2011광주조정1~3	(매체별 손배청구) 엄○○ 對 화순뉴스(1), 파인뉴스(2), 남도뉴스(3)
조 정 대 상	• **화순뉴스 · 남도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화순뉴스 · 남도뉴스**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 **파인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2011서울조정21	(정정청구) 주식회사 아이○○○○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특별관계자, 서둘러 특별관계 해소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22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정신병원 對 통일뉴스
조 정 대 상	『'정신병원 강제입원' 탈북여성, 6개월째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탈북 여성이 신청인 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탈북여성 1인 시위' 기사 관련 반론보도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2011서울조정23	(정정청구) 양○○ 對 YTN
조 정 대 상	(1)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식당 운영권 달라" 직접 로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2일자 19:01) (2) 뉴스출발 프로그램 『"식당 운영권 달라" 직접 로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07: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청탁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이행방법 : 신청인은 수사종결 혹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YTN에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송부하며, YTN은 신청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협의된 추후보도문 제목을 화면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

2011충북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장○○ 對 충주MBC-TV, 충주MBC-R
조 정 대 상	• **충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영정장식, 술접대 파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일자 21:00) • **충주MBC-R** : 오늘도 좋은 아침 프로그램 『제천 모 장례식장 직원, 꽃배달 업체로부터 술대접 받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4일자 08:35)
신청인주장	장례식장 직원인 신청인이 영정장식 영업의 대가로 꽃집 사장들로부터 고급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24~2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시사저널,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작곡과 교수. 정말 '작업' 했을까』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0년 12월 1일자, 시사저널 12월 7일자 4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시사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시사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 : 사회면에 2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작곡과 교수, 정말 '작업했을까''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1년 2월 7일자, 시사저널 2월 15일자 35면)

2011서울조정28~3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KBS-1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정청 분석결과, ○○ 포도씨유 기준미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22:14) • **KBS 홈페이지** : 『식약청 '○○ 포도씨유, 성분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의 순도가 기준에 못미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32~33, 35~3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아주경제, 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 **아주경제** : 『T투자증권 임원 우리기술 주가관리?』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A16면) • **인터넷 아주경제** : 『○○○증권 임원 우리기술 투자후 주가관리』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T투자증권 임원인 신청인이 우리기술 신주인수권에 투자한 뒤, 해당 주가를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34	(정정청구) (주)○○○코리아 對 투데이코리아
조 정 대 상	『'○○○코리아' 고객정보 대량 유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충북조정3	(정정청구) 한범덕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불이나도 느긋한 청주시 수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청주시청 후관 화재와 관련, 신청인이 청내에 있으면서도 화재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3면)

2011서울조정37	(정정청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對 에클레시안뉴스
조 정 대 상	『교회는 빠른 놈이 차지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 대표목사가 일부 신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교회법에 의거해 제명된 이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에클레시안뉴스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7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8일자)

2011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수도일보, 우리일보
조 정 대 상	• **수도일보** : 『시민 혈세, 쌈지돈 쓰듯 '펑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면) • **우리일보**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비 흥청망청』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신청인주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고 허위기재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대전조정1~2	(매체별 반론청구) 황○○ 對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디트뉴스24
조 정 대 상	•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 충청뉴스포커스 프로그램 『충남공무원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0일자 19:00) • **디트뉴스24** : (1) 『충남공무원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2) 『횡령 의혹 충남노조위원장, "조합비 반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충남노조위원장 권한대행 당시 조합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38~39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수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21:00)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 수뢰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0	(정정청구) 송명근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 게임 – 송명근 카바(CARVAR) 수술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심장병 카바수술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바꾸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이 행 결 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6일자 23:00)

2011서울조정41~45	(매체별 정정청구) 나눔의 집 對 한국일보(41), 인터넷 한국일보(42, 41과 병합), 네이버(43), 네이트(44), 다음(45)
조 정 대 상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日연구원 해고 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1월 17일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위안부 피해 시설인 신청인 단체가 일본인 연구원을 해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한국일보)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해오는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뉴스홈 <e옴부즈맨>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네이트 뉴스홈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011서울조정46	(정정청구) 참여연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검찰 " '천안함서한' 참여연대, 당당히 조사받아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신청인주장	천안함 사건 관련 UN 등에 서한을 보내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소환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뉴시스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2011경기조정3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인터넷 일간경기
조 정 대 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인 용도' 너무 많지 않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고 허위기재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4~9	박○○ 對 **경인일보** (4~5 정정 · 손배청구), **다음** (6 손배청구), **네이버** (7 손배청구), **네이트** (8 손배청구), **파란** (9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경인일보** : (1) 『단독주택 편법 개발 사기 분양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1면) (2) 『편법 · 사기 원룸단지 묵인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23면) • **다음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 『단독주택 편법 개발 사기 분양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원룸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쪼개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편법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고, 시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경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다음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단독주택 편법 개발사기 분양..."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1년 2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47	(정정청구) 최○○ 對 주간동양신문
조 정 대 상	『비리의 온상인가…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비리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던 장애인협회 모 지회장을 돕겠다며 공금을 갈취해 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충북조정4~5	(정정 · 손배청구) 오○○ 對 동양일보
조 정 대 상	(1)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3면) (2) 『 '막말수사' 경찰 적반하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3면) (3) 『충북경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폭행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3면)

2011서울조정48~53	(매체별 손배청구) 함○○ 對 조선일보(48), 디지틀조선일보(49), 네이버(50), 네이트(51), 다음(52), 야후(53)
조 정 대 상	『[사진] 대전 환경사원 공채 경쟁률 31대1』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월 26일자 10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전시 환경미화원 모집 전형에 참여한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취하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4~5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중소기업중앙회 對 이투데이, 이투데이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이투데이** : (1) 『中企중앙회 '직원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면) (2) 『[기자수첩] 中企중앙회 누구 위한 단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2면) • **이투데이 홈페이지** : 『中企중앙회 '직원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직원 컴퓨터에 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전화를 감청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이투데이신문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날 오전 11시부터 48시간 동안 이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1), (2)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中企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 2011년 2월 25일자 2면, 이투데이 홈페이지 2월 25일자)

2011서울조정58	(반론청구) 부안김씨대종회 對 주간조선
조 정 대 상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씨 족보에 오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60면)
신청인주장	마의 태자가 경주 김씨라고 보도했으나, 부안 김씨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1일자 48면)

2011서울조정59~60	(정정 · 손배청구) 민주노총 對 헤럴드경제닷컴
조 정 대 상	『[성○○ 선임기자의 이슈프리즘] 國格추락 G20 반대시위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도하여 구성한 민중행동이 2008년 쇠고기 시위 당시 화염병 등을 이용, 과격 시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2월 10일자 18면)

2011서울조정61	(정정청구) 김남수 對 SBS-TV
조 정 대 상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한국정통침구학회 회장)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 중 정정보도 결정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보도한 바 없으며, 반론보도 결정한 부분 역시 이미 보도 방영분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

2011서울조정62~63	(매체별 손배청구) 유선기 對 민중의 소리, 네이버
조 정 대 상	『인사개입 의혹 받는 유선기, '알선수재' 전과 있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알선수재 혐의의 전과로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을 실명 및 초상과 함께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결정(사유 : 신청인의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은 지 6개월' 이 경과하였다.)

2011광주조정4~6	(매체별 손배청구) 황○○ 對 화순뉴스(4), 파인뉴스(5), 남도뉴스(6)
조 정 대 상	• **화순뉴스 · 남도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실명과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화순뉴스 · 남도뉴스**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만원)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사건이 이미 지역에서 공론화되었으며, 사실관계 적시를 위해 실명이 거론되었을 뿐,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파인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공익성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일 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

2011광주조정7	(정정청구) 여수시청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여수시장, 공정인사 가능할까.. 대규모 승진 하마평 무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여수시가 대규모 승진 인사를 앞두고 매관매직이 시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브레이크뉴스 홈페이지 광주전남판 정치/경제면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여수, 공정인사 가능할까.. '반론보도문' 』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3일자)

2011광주조정8	(정정청구) 박○○ 對 남도매일
조 정 대 상	『보성군, 보상금 수령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폐업된 양식장을 보성군에 내수면어장으로 신고하여 도로공사로부터 부당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4	(정정청구) 이○○ 對 에클레시안뉴스
조 정 대 상	『몰래 이혼녀와 재혼한 목사, 담임목사로 모실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7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전 부인과 사별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교인들 몰래 결혼하였고 그 당사자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65~66	(정정 · 손배청구) (주)○○엔터테인먼트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재회이벤트 작업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6일자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재회 이벤트] 서비스가 상담 1회와 감동 CD 들려주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7~68	(정정 · 손배청구) 경찰청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유치장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12면)
신청인주장	국가인권위 통계 분류상 구금시설이 아님에도 신청인 기관의 유치장을 구금시설로 분류하고 인권침해에 따른 인권위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 손배청구 : 취하

2011광주조정9~11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남도뉴스(9), 파인뉴스(10), 화순뉴스 (11)
조 정 대 상	• **남도뉴스 ·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12~14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남도뉴스(12), 파인뉴스(13), 화순뉴스(14)
조 정 대 상	• **남도뉴스 ·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15~17	(매체별 손배청구) 서○○ 對 남도뉴스(15), 파인뉴스(16), 화순뉴스(17)
조 정 대 상	• **남도뉴스 ·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전북조정1	(정정청구) (유)○○건설 對 JTV전주방송
조 정 대 상	(1) 뉴스&뉴스 프로그램 『체불임금..막막한 근로자』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1일자 20:25) (2) 아침뉴스 프로그램 『체불임금..막막한 근로자』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1일자 07:20)
신청인주장	군산 모 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체불문제로 전면 중단된 것처럼 보도해 시행사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69	(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7일자 21:20)
신청인주장	임신한 의사 부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청인의 집을 몰래 촬영, 마치 사건 현장이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70	(반론청구) 재단법인 ○○○○추모원 對 뉴스캔
조 정 대 상	『납골당을 담보물로 제공...경기도는 감사원 감사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법인(H 추모공원)이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2 참조)]

2011부산조정1	(정정청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5면)
신청인주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발생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안동의 한 축산농민을 바이러스 유입 매개체로 지목했으나, 이는 신청인의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 결과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이 행 결 과	『[기고] 구제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31면)

2011서울조정71~72	(정정 · 손배청구) 윤○○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2400억을 둘러싼 진실게임 – 어느 종교단체의 10년 전쟁』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2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모 종교단체 여주본부도장)의 살인미수와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음에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TV는 법원에서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무고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 있은 후 2주 이내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후속보도, 후속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원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2011충북조정6~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충청리뷰, 충북인뉴스
조 정 대 상	『필리핀 해외지원사업 '시끌시끌' 』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0년 11월 3일자 8면, 충북인뉴스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필리핀돕기 봉사단체 회원인 신청인이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본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1주일 간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필리핀 해외지원사업 '시끌시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1년 3월 25일자 3면, 충북인뉴스 3월 25일자)

2011서울조정73~74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성매매 피해여성의 대모 '두 얼굴의 야누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인시설 일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쓰는 등 규정을 무시한 채 법인을 운영해왔으며, 퇴직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독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6일자 2면)

2011서울조정75~77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박○○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퇴임 직전, 주민휴양소용으로 전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특혜매입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사회면)

2011서울조정78~79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年예산 90억…주민들이 '편법 연임 대표' 축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1일자 9면)
신청인주장	아파트 원로위원회 고문인 신청인이 동대표자회의를 좌지우지하면서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전횡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알림기사, 문화일보 홈페이지에도 알림기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가 제시한 '알려드립니다'의 문안은 통상적인 언론사의 '알림' 형식이 아니다.) ※이행방법 : 알림기사를 지면에 게재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란에 알림 기사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알림 기사의 내용이 검색되게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어지도록 함

2011서울조정80~9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중앙일보(80~81), 인터넷 중앙일보(82~83), 네이버(84~85), 네이트(86~87), 다음(88~89), 조인스엠에스엔(90~91)
조 정 대 상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조인스엠에스엔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학 입시를 포기했다가 중앙일보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5~16 참조)]

2011서울조정92	(정정청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비싼 'BCG 접종' 강요…일부 소아과 횡포』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4일자 21:00)
신청인주장	일부 소아과에서 수익만을 위해 BCG 경피식(도장식) 접종을 선호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KBS 뉴스9 프로그램 중 스포츠 뉴스 직전 단신 코너에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 'BCG 접종'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19일자 21:55)

2011서울조정93~9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내 은행계좌에 100조원 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11월 20일자 B3면, 디지틀조선일보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은행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황당하다고 폄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1서울조정97~99	(매체별 정정청구) 순창군 對 신아일보(97), 인터넷 신아일보(98), 다음(99)
조 정 대 상	(1)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 38억 행방 묘연』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1월 10일자 호남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 다음 1월 9일자) (2)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관리 '구멍?' 』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2월 9일자 호남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 다음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순창군이 관리하는 새농촌육성기금 중 38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하고 기금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신아일보 · 인터넷 신아일보** : 각 조정성립 (정정보도) • **다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3~4 참조)]
이 행 결 과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3월 3일자 15면, 인터넷 신아일보 3월 2일자)

2011서울조정100~101	(정정 · 손배청구) 1. 김○○, 2. 허○○ 對 우먼센스
조 정 대 상	『서울대 유부남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3년 가정 · 음악 · 인생을 잃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5일자 314면)
신청인주장	S대 K교수(신청인1)가 결혼을 전제로 박모 씨와 성관계를 했으며, K교수 부인(신청인2)이 불륜을 묵인, 방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02	(정정청구) 주식회사 ○○○○○저축은행 對 대부금융신문
조 정 대 상	『고금리 간판업체는 이제 저축은행?』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은행이 대출금리를 최고 40% 이상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38.9%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저축은행 금리 현황'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2면)

2011서울조정103	(정정청구) 이○○ 對 에클레시안뉴스
조 정 대 상	『이○○, 명의 사용허락서까지 작성』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2008년 12월 말 이전에 기사를 쓰면서 타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4일자)

2011전북조정2~5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스터디 주식회사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기업형 사교육기관 익산 진출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1년 1월 17일자 11면, 인터넷 전북일보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KT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사교육기관이며 익산에 진출해 수천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북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전북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하단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전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11면) • **인터넷 전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기업형 사교육기관 익산 진출 논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2011서울조정104~105	(정정 · 손배청구) 1. 동대문구청, 2. 유덕열 對 주간 동대문신문
조 정 대 상	(1) 『수 년 동안 안 팔았던 땅을 왜 이제야 팔았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1면) (2) 『신답고가 대처를 잘 하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구청장으로 있는 자치단체가 구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동대문구 반론보도문] 답십리동 528-1외 1건 구유재산 매각 아무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6일자 1면)

2011대전조정3	(정정청구)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 對 충청엔뉴스
조 정 대 상	『이사철 맞아 도시가스 연결 · 마감 '횡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이사철을 맞아 도시가스 철거비를 부당청구하고 설치비용을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충청엔뉴스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이사철 맞아 도시가스 연결,마감 '횡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2011서울조정106~114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윤매근 對 중앙일보(106~108), 인터넷 중앙일보(109~111), 조인스엠에스엔(112~114)
조 정 대 상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엠에스엔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용산구가 용산구 부의장을 지낸 신청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5~118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생기념사업회 對 법보신문, 인터넷 법보신문
조 정 대 상	『'○○ 부당이득금 소송' 서 법보신문 승소』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1년 2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법보신문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 법보신문의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119~13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119~120), 네이버(121~122), 네이트(123~124), 다음(125~126), 야후(127~128), 파란(129~130)
조 정 대 상	『암각화 연구교수 '학생 성희롱' 혐의 '감사 파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 네이버 · 다음 · 야후 · 파란 2011년 2월 22일자, 네이트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암각화학자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고 포괄적 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 모 씨의 탄원서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7~26 참조)] ※이행방법 • **뉴시스** : 홈페이지 전국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8일자)

2011서울조정131~132, 151~16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131~132), 네이버(151~152), 네이트(153~154), 다음(155~156), 야후(157~158), 파란(159~160)
조 정 대 상	『"넌 눈썹이 까만데 X털도..." 국립대 교수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다음 · 야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초기(으뜸)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을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 **다음 · 야후**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한국○○문화학교 김아무개 교수의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6일자,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3월 8일자, 야후 3월 15일자)

2011부산조정2~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울산제일일보(2~3), 인터넷 울산제일일보(4~5, 2~3과 병합), 다음(6~7)
조 정 대 상	『국립대 암각화 학자 성희롱 · 수뢰의혹』 제하의 기사 (울산제일일보 2011년 2월 23일자 1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다음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울산제일일보 ·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다음**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홈페이지 전면에 24시간 유지 이상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암각화학자 성희롱 · 수뢰의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울산제일일보 2011년 3월 10일자 1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3월 9일자, 다음 3월 14일자)

2011서울조정133	(정정청구) 최○○ 對 주간풍양신문
조 정 대 상	『비리의 온상인가…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비리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던 모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돕겠다며 공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8면)

2011서울조정134~13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이한수 對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대검 중수부, 이한수 익산 시장 수사중단 왜』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0년 12월 12일자 12면, 인터넷 일요서울 12월 7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장인 신청인이 소각장 업체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했고 청와대 실세와의 인맥과 대검 차장 출신 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8~140 143~144	(병합) 한국○○광고협회 對 SP투데이(138~140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143~144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협회, 회장선거 앞두고 무리한 규정 신설 추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6면) (2) 『사조직 '경인회', 협회 중심세력으로 급부상』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6면) (3) 『껍데기만 남게 된 수난의 협회 회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7면) (4) 『차○○ 지부장 '재판중 이중징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7면) (5) 『한국○○광고협회 '회장유고' 사태 직면』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63면) (6) 『본사 겨냥, 규정에도 없는 언론대책특별반 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6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내 경인회가 협회 중심세력으로 부상했으며 협회 회관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재판중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SP투데이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이 SP투데이에 게재됨과 동시에 14일 동안 SP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P투데이 2011년 3월 28일자 협회/단체/학계면)

2011서울조정141~142	(정정 · 손배청구) 한국○○광고협회 對 SP투데이
조 정 대 상	『정관 · 규정 무력화시키는 회장의 '절대권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6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회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5~150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스터디 주식회사 對 뉴시스(145~146), 네이버(147~148), 다음(149~150)
조 정 대 상	『교회가 영리업체와 학원 운영?』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교회와 협약체결하고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해 700여 영세학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뉴시스**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또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10일자)

2011경남조정5~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조 정 대 상	『언론단체 앞세운 책 강매 '주의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2월 22일자 5면, 다음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을 마치 유령단체인 것처럼 보도하고 본 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경력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3월 16일자)

2011부산조정8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문화부 공무원 75명, 2년 넘게 놀았다는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부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관련, 개점휴업 상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22면)

2011충북조정10~11	(정정 · 손배청구) 1. 배○○, 2. 이○○ 對 CJB-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도내 한 대학의 논문 표절 시비 – 법에 어긋나는 관행』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9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학위 논문을 표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처 리 결 과	중재부의 결정은 신청인들의 명예훼복에 별다른 소용이 없다.) ▷ 손배청구 : 기각결정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2011경남조정9~1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오 ○ 외 2인 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조 정 대 상	『언론단체 앞세운 책 강매 '주의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2월 22일자 5면, 다음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경력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3월 16일자)

2011서울조정161~162	(정정 · 손배청구) 이○○ 외 2인 對 SBN 대한방송
조 정 대 상	『교장 지시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동 초등학교 행정실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교장의 지시도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63	(정정청구) ○○○○대학교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실무수습' 이 사실상 면접 … 재학생들 로펌에 목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8일자 4면)
신청인주장	피신청인 신문사는 최근 2년간 신청인 대학의 로스쿨 합격자 수를 163명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276명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64~165	(정정 · 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YTN
조 정 대 상	(1) YTN24 프로그램 『KTX 또 고장… '무슨 큰일이라고?'』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6일자 11:00, 13:00, 15:00) (2)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KTX 또 고장… '무슨 큰일이라고?'』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6일자 12:00, 14:00, 16:00)
신청인주장	대구 KTX 열차정지 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인 것처럼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YTN24 프로그램과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각 1회씩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코레일 관련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1)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3일자 18:00) (2) YTN24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3일자 19:00)

2011서울조정166	(정정청구) 1. 교하○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2. 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파주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 소송비용액 부담할 듯』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5400만원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1일자)

2011경남조정13~14	(정정 · 손배청구) 윤○○ 對 함안정통신문
조 정 대 상	『본지, 출판물명예훼손 무혐의 확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확정되었으며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에 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군 ○○○○연합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면)

2011서울조정167	(정정청구) 오○○ 對 무카스뉴스
조 정 대 상	『호주 빅토리아대학 폭행 사기 파문 그 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호주 빅토리아대 태권도 코치인 신청인이 교수사칭 및 사기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2011서울조정168	(정정청구) ○○케이터링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무료면 다야? '곰팡이 밥' 결식 아동 두 번 울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3일자 20:00)
신청인주장	무료 급식으로 제공하는 즉석밥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생산업체 직원의 인터뷰를 급식업체인 신청인 회사 직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15~16	(매체별 정정청구) 1. 김○○, 2. 박○○ 對 경남매일,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 **경남매일** : 『진해 어린이집 원장아들이 원생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5면) • **경남신문** :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여어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진해 모 어린이집에서 신청인 아들(신청인 2)이 원생들을 성추행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남매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 **경남신문**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진해 어린이집 성추행'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3월 21일자 3면)

2011서울조정169~180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주)대한항공 對 프라임경제(169~171), 네이버(172~174), 네이트(175~177), 다음(178~180)
조 정 대 상	(1) 『대한항공 총수의 '비행기 안목'을 파헤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2) 『조양호 회장의 A380 선견지명? 하지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3) 『대한항공 A380과 타이타닉』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4) 『대한항공, 이러다 '3류 항공사' 전락할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5) 『여성 지위 띄워놓고, 성추행 해버린 대한항공』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6) 『대한항공, '결함 뭇매' 맞은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7) 『대한항공 A380 회항공항 없이 '강행'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8) 『' 파일럿' 협찬 시절의 대한항공, 그 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9) 『대한항공 '고자질 혜택' 업계 못마땅』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0) 『대한항공 100일 동안 '결함 9번' 』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11) 『대한항공 잔칫날에 또 기체 결함』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12) 『한진 조중훈-조중건의 '협잡'이 그립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13) 『KAL 앞에 칼 든 김동수 공정위원장, 임칙서가 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일자) (14) 『대한항공 몽골노선 특혜 의혹, 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일자) (15) 『대한항공 '담합 중독' 도무지 끊기 힘든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8일자) (16) 『대한항공은 조종사 불법파견 왕국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17) 『이제 놀랍지도 않은 대한항공 정비 결함』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1일자) (18) 『한진그룹 순탄치 않은 수송보국의 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19) 『KAL 기내면세점 풀바 ... 조현아 전무 개인 생각』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20) 『한진의 굴레 '재무구조개선 졸업'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21) 『대한항공, 입사하고 싶지만 오래 못 다닐 회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3일자) (22) 『대한항공 '김포-베이징 노선 반대' 들춰보니...』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용 중인 항공기에 문제가 많다는 등 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 · 반론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손배청구 : 각 취하

2011서울조정181~188	(매체별 손배청구) 1. ○○○교회, 2. 피○○ 對 오마이뉴스(181), 뉴스앤조이(182), 네이버(183), 네이트(184), 다음(185), 드림위즈(186), 야후(187), 파란(188)
조 정 대 상	• **오마이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1)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 『아동보호기관, 수차례 신고에도 왜 제대로 조사 못 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3)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 **뉴스앤조이**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의 목사가 위탁 · 양육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27~34 참조)]

2011서울조정189~190	(정정 · 손배청구) 김계훈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크라운제이, 폭행 등 혐의 입건…본인은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신청인주장	가수인 신청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매니저를 폭행하고 요트 양도각서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91	(정정청구) 남양○○입주자대표회의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황당한 전기요금‥건설사 부도로 주민에게 전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7일자 21:00)
신청인주장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도로 결빙방지열선을 한 달 동안 계속 켜놓아 입주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대전조정4~5	(반론 · 손배청구) 황국연 對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어이없는 지역구 의원』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일자 13면)
신청인주장	군의원인 신청인이 지역 숙원사업에 딴지를 거는 등 여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13면)

2011경남조정17~2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김해뉴스, 인터넷 김해뉴스
조 정 대 상	『"김 시장, 낙하산 인사 철회 않으면 주민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김해뉴스 2011년 3월 7일자 1면, 인터넷 김해뉴스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김해시청 축구단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신청인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업무비를 횡령한 적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192~19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오마이뉴스(192~193), 네이버(194~195), 네이트(196~197)
조 정 대 상	『○○고 · ○○여고 비리 척결...곽노현과 공정택의 차이』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고 재단이사장인 신청인이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 수천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이를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고 비리척결'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2011서울조정198~201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김○○ 對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대 '발칵' 장본인 청와대 입성』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0년 12월 19일자 17면, 인터넷 일요신문 1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학 교수로 재직 당시 '신임교수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1년 3월 21일자 2면)

2011서울조정202, 243	이○○ 對 KBS-1TV(202 정정청구, 243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CCTV에 덜미, '장애인 대부' 두 얼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5일자 21:20)
신청인주장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신청인이 장애인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공무원 폭행을 사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경기조정10~12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1. 광명시청, 2. 양기대 對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조 정 대 상	(1) 『사퇴는커녕 이사회서 만장일치 추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8일자) (2) 『양 시장, 생체회장선거 개입해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3) 『생체, 양 시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4) 『양 시장은 아이들에게 떳떳한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5) 『생체회장선거 결국 법적 공방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광명지역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7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양 시장, 생체회장 선거 개입해 파문"등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2011전북조정6	(정정청구) 전주완산경찰서 對 전북중앙신문
조 정 대 상	『서장님 납시니 민원인 차 빼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전주시청 민원주차공간 일부가 전주완산 경찰서장 전용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6면)

2011서울조정203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협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 잡종견이 순종 풍산개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8일자 21:20)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풍산개 관련 허위혈통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204~21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안○○ 對 오마이뉴스(204~206), 네이버(206~207), 네이트(208~209), 다음(210~211), 파란(212~213), 야후(214~215)
조 정 대 상	『선생님이 망치로 때리고...속치마 벗으래요』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신청인주장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야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35~36 참조)]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부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송출 받아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 **파란** : 조정성립일 후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미디어편집실〉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 **오마이뉴스 · 네이버 · 다음**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 **네이트 · 파란**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2011경기조정13~1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1. 김○○, 2. 박○○ 對 아시아뉴스통신, 다음
조 정 대 상	(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원아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수사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의 아들인 신청인 2가 어린이집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뉴스통신** : 취하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21~26, 29~3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1. 김○○, 2. 박○○ 對 뉴시스(21~22), 다음(23~24), 아시아뉴스통신(25~26), 네이버(29~30)
조 정 대 상	• **뉴시스 · 다음 · 네이버** : (1) 『진해 어린이 집 원장 아들이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소극적 수사에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 **아시아뉴스통신** : (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원아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수사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의 아들인 신청인 2가 어린이집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아시아뉴스통신**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다음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뉴시스 · 아시아뉴스통신** :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면에 게재(링크 포함)된 조정대상기사(1), (2) 삭제, 신청인 박○○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대상기사(3월 1일자 보도) 분량 이상으로 보도

2011부산조정9	(정정청구) 박○○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부산시교육청 발빼다고 될 일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학교법인 설립자인 신청인 측과 현 이사진 간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과거 설립자의 비리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현 이사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216	(정정청구) 민○○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매경 자본금 납입 난항…종편 무더기 선정 '뒤탈'』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6일자 27면)
신청인주장	매일경제 종편 방송 선정과 관련,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이 "회사가 사원들에게 은행대출을 받아 자본금 납입에 참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217~218	(정정 ·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1) 『언론학자 63% "코리아뷰 반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1면) (2) 『지상파 多채널 '날개' … 광고 쏠림땐 시장 불균형 심화』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7면)
신청인주장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후에도 전파를 독점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219~220	(정정 · 반론청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정부, 2009년 것과 비교 '짜맞추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3면)
신청인주장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9년 베트남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신청인 기관의 분석, 발표가 '궁색한 짜맞추기'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부제소)
이 행 결 과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011서울조정221	(손배청구) 장○○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숨진채, 발견된 3세 영아, 얼굴 · 온몸에 멍』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영아 구타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아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222~223	(정정 ·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성추행 소굴로… '소비자고발' 여성 스태프 인권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성추행 당할 위험이 있는 현장 취재에 여성 제작진을 투입한 것이 상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224~225	(정정 · 손배청구) 한국전력공사 對 신동아
조 정 대 상	『[단독 확인] UAE원자력공사 문건, "외국공급자가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7일자 96면)
신청인주장	한국의 UAE 원전공사 수주와 관련, 향후 한국전력이 UAE 원전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 처리, 보관하는 것으로 UAE측과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신동아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신동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597면)

2011서울조정226	(정정청구)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對 한겨레21
조 정 대 상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5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신청인 회사에 대해 소위 "이익 빼가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정정보도, 인터넷 한겨레21에도 반론 및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21 초기화면 하단 <알립니다> 기사목록에 7일간 반론 및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 및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1년 4월 18일자 독자와함께면, 인터넷 한겨레21 4월 18일자)

2011서울조정227~228	(정정 · 손배청구) 심○○ 외 5인 對 대한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 『안일 행정처리 '그만'』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사회1면) (2) 『국유림 불법 눈감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사회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위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대한매일신문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대한매일신문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사회1면)

2011서울조정229~23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안○○ 對 KBS-1TV(229~230), MBC-TV(231~232), SBS-TV(233~234)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교사가 죽도 · 쇠막대로 체벌" 파문 확산』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1:00)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서울 모 중학교 "쇠파이프, 죽도로 학생 때렸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1:00)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학교 체벌금지령 속 '쇠파이프 매' 드러나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0:00)
신청인주장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 기사수정, 부제소) • MBC-TV : 취하 • SBS-TV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SBS 홈페이지에 반론보도, 부제소)

처 리 결 과	※이행방법 • **SBS-TV**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BS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SBS 홈페이지 2011년 4월 12일자)

2011서울조정235~242, 244~24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세계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235~236), **네이버**(237~238), **다음**(239~240), **파란**(241~242), **야후**(244~245)
조 정 대 상	『소비자 불만 많은 상조업체 1위는 '○○세계' 』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상조업체 중 소비자 불만이 1위라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광주조정18	**(정정청구) ○○기업 주식회사 對 연합군민신문**
조 정 대 상	『○○○ GC, 1인 시위 막장 대응』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과 분쟁중인 시위자에 대해 집회차량을 파손하는 등 막장대응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2면)

2011대전조정6~7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대전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8일자 21:00) (2) 대전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07:10) (3)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19:00)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임대료를 받아왔으며, 경찰관 영리활동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7일자 21:00)

2011경남조정27~28	**(정정 · 손배청구) ○○마을회 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시민의 식수원 구천댐 상류에 건축허가 '충격' 』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댐 상류지역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246~259, 264~271, 274~279, 282~285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건치(246~247), 뉴스타운(248~249), 메디소비자뉴스(250~251), 메디컬헤럴드(252~253), 메디파나뉴스(254~255), 메디포뉴스(256~257), 문화저널21(258~259), 의약뉴스(264~265), 이투데이(266~267), 인터넷 뉴스신문고(268~269), 인터넷 데일리경제(270~271), 인터넷 약사공돈(274~275), 인터넷 중소기업신문(276~277), 투데이포커스(278~279), 하이닥(282~283), 한국모바일방송(284~285)
조 정 대 상	• **건치**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약으로 판매 '구속' 』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뉴스타운** : 『[식품/의약]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메디소비자뉴스** : 『진통제성분으로 만병통치식품 둔갑시키다니』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메디컬헤럴드** : 『"진통제 몰래 넣고 관절염 등 효과"…식품판매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메디파나뉴스** : 『이부프로펜 함유 식품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메디포뉴스** : 『진통소염제 몰래 섞어 관절염 효과식품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문화저널21**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의약뉴스** : 『진통제 첨가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이투데이** : 『의약품성분 식품에 넣은 제조 ·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인터넷 뉴스신문고** :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 **인터넷 데일리경제** :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 둔갑…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인터넷 약사공돈** : 『한의원 팔던 만병통치약, 알고보니 '진통제' 범벅』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 『만병통치약 판매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투데이포커스** : 『진통제 넣어 관절염 특효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하이닥** : 『만병통치 식품? 알고보니 진통제 첨가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한국모바일방송** : 『진통 · 소염제 섞어 가짜 만병통치 식품판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260~263, 272~273, 280~281, 286~287, 294~297, 318~321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브레이크뉴스(260~261), 시사포커스신문(262~263), 인터넷 아주경제(272~273), 파이낸스투데이(280~281), 헬스코리아뉴스(286~287), 뉴스와이어(294~295), 다음(296~297), 투데이코리아(318~319), 네이트(320~321)
조 정 대 상	• **브레이크뉴스 · 파이낸스투데이 · 뉴스와이어 · 다음** :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시사포커스신문 · 투데이코리아 · 네이트**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 **인터넷 아주경제 · 헬스코리아뉴스** : 『관절에 좋다던 식품 알고보니 '소염진통제' … "복용 시 큰 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288~293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288~289), 네이트(290~291), 다음(292~293)
조 정 대 상	『식약청,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298~301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트
조 정 대 상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 으로 둔갑, 판매업자 '구속' 』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02~309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세계닷컴(302~303), 네이버(304~305), 네이트(306~307), 다음(308~309)
조 정 대 상	『가짜 관절염 특효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37~40 참조)]

2011서울조정310~317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310~311), 네이버(312~313), 네이트(314~315), 다음(316~317)
조 정 대 상	『진통제 몰래 섞은 식품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22~329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파이낸셜뉴스닷컴(322~323), 네이버(324~325), 네이트(326~327), 다음(328~329)
조 정 대 상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기조정17~20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뉴스한국닷컴, e뉴스wave
조 정 대 상	• 뉴스한국닷컴 : 『"관절, 디스크에 특효라더니"…알고보니 진통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e뉴스wave :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부산조정10~11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울산포커스
조 정 대 상	『진통제를 넣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30~33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학교법인 ○○대학교 對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조 정 대 상	『○○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 2011년 2월 14일자 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2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동료 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교수 4명에 대해 신청인 대학이 연구실 폐쇄조치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한국대학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시점부터 7일 간 한국대학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 2011년 4월 18일자 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4월 18일자)

2011서울조정334~335, 341	(매체별 정정청구) 강기정 對 동아일보(334), 동아닷컴(335, 334와 병합), 뉴시스(341)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패러디 만화' 유포 누리꾼은 고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3월 23일자 12면, 동아닷컴 3월 23일자) • **뉴시스** : 『강기정 의원, 풍자만화 유포 전업주부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 인터넷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진정했을 뿐인데, 게시자를 고소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기각결정 (사유 : '고소'를 '진정'으로 정정해 달라는 것은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뉴시스** :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강기정 의원, 풍자만화 유포자 수사 의뢰』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21일자)

2011서울조정336	(정정청구) 화천경찰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국가에 50억대 기부 70대노인 쪽방서 나홀로 투병』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2) 『전 재산 기부 쪽방할머니 홀대…경찰 '거짓과 변명' 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신청인주장	과거 화천경찰서 신축 당시 장모씨가 50억대 땅을 기부했으며, 기부 당시 경찰서가 집을 제공하고 등기이전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37~34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아시아일보, 아시아일보닷컴
조 정 대 상	『불법선거로 당선된 통장 위촉』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1년 3월 21일자 15면, 아시아일보닷컴 3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통장선거에 연속 당선됐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8	(정정청구) 대전둔산경찰서 對 TJB-TV
조 정 대 상	TJB 8뉴스 프로그램 『불법오락실 안잡나 못 잡나』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0:25)
신청인주장	대전둔산경찰서의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강원조정1~2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강릉인터넷 뉴스
조 정 대 상	(1) 『[쟁점] ○○예총 복마전 – 지역문화 훼손하는 ○○예총 문제 있어』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2) 『[쟁점] ○○예총 복마전 – 국가와 예술인 명예 훼손한 ○○예총 실무자』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중국 훈춘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예총 기사 건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2011서울조정342	(손배청구) 성○○ 對 MBC-TV
조 정 대 상	로열패밀리 프로그램 『제7화』 방송 (2011년 3월 23일자 22:00)
신청인주장	평창올림픽 IOC 실사 당시 신청인이 행한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드라마에 무단 삽입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343~344	(정정 · 손배청구) (주)○○고속관광 對 한국주유소협회신문
조 정 대 상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5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유사경유를 주입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버스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에 2주일 동안 팝업 창을 띄워 접속 시마다 정정보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011년 4월 20일자 1면,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 4월 18일자)

2011부산조정12	(손배청구) 김○○ 對 KNN
조 정 대 상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붕괴 위험천만 '방치' 』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2일자 20:25)
신청인주장	공사장 안전점검상태와 관련 신청인과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대전조정9	(정정청구) 김○○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 '몰래 매몰'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김모 교수가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를 몰래 매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대전일보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대전일보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09:00~익일 09:00)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배치
이 행 결 과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 '몰래매몰' 파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10면)

2011서울조정345~348	(매체별 반론청구) 전국노점상총연합 對 조선일보(345), 디지틀조선일보(346), 네이버(347), 다음(348)
조 정 대 상	『道公 · 경찰, '20년 전쟁' 끝에 두 손 들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2월 21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다음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법노점상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정정보도문 내용을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9일자 A12면)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다음** : 『[알려왔습니다] '道公 · 경찰, '20년 전쟁' 끝에 두 손 들었다' 기사』 제하의 기사 (디지틀조선일보 2011년 4월 9일자, 네이버 · 다음 4월 11일자)

2011서울조정349	(반론청구) 더○○○○○주식회사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신 뒤바뀌고 해약 안되고 · ·상조회사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3일자 21:23)
신청인주장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광고를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부산조정13~14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부산여성뉴스
조 정 대 상	『비리사학 학교 복귀 시민단체 반대 한목소리』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8면)
신청인주장	학교법인 설립자인 신청인 측과 현 이사진 간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과거 설립자의 비리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현 이사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50~35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35년간 시댁에 5번밖에 안 간 아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3월 29일자 A13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35년간 시댁에 5번 밖에 가지 않았고, 남편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디지틀조선일보 홈페이지 원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4월 23일자 2면, 디지틀조선일보 4월 23일자)

2011서울조정354~355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 정 대 상	『이런 여행사 선택하면 가족 여행 철저하게 망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실수로 고객의 가족패키지 여행이 물거품이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56	(반론청구) 주식회사 ○○스탁 對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소액주주 뭉치면 소형株 '퇴출' 신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온라인 소액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신청인 회사가 경영참여를 요구한 코스닥기업은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덧붙여 게재한 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스탁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2011경기조정21~22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김포미래신문
조 정 대 상	(1) 『강보희 문화원장 "윤○○, 김○○ 감사 형사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1면) (2) 『감사목적, 강보희 원장 사퇴시키기 위한 것』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감사목적이나 기자회견을 한 것이 김포문화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57	(반론청구) ○○대학교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본분 잊어 상아탑…이젠 더 이상 그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의 OT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태권도 선수단 일부 학생이 총장면담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2011서울조정358~36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358~359), 디지틀조선일보(360~361), 네이버(362~363), 네이트(364~365), 야후(366~367)
조 정 대 상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3월 29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회장인 신청인이 신규 개업 부동산 업소에 대해 친목회 가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디지틀조선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 41~46 참조)]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부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이미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9일자 A2면) • **디지틀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3월 29일자 A12면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9일자)

2011서울조정368~37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차○○ 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피부관리 서비스 '스킨○○' 윤○○ 대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3월 18일자 B11면, 매경닷컴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피부관리서비스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피부미용사자격증이 없어 폐업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4월 15일자 B11면, 매경닷컴 4월 14일자)

2011광주조정19	(정정청구) 신안군 對 남도일보
조 정 대 상	『신안 압해면 송공항 오폐수로 '몸살'』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압해면 송공항 몽골텐트촌에 오폐수 시설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9면)

2011서울조정372~373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시민일보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송영길 인천시장 법정에 설까…시민 궁금증 '증폭'』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S모 국회의원 베트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증인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증인 엇갈린 진술...대기업 김모씨 '성접대 의혹' 사실 증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4월 6일자, 시민일보 홈페이지 4월 10일자)

2011서울조정374~37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아시아투데이(374~375), 아시아투데이닷컴(376~377)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 : (1) 『이주 대상 청계천 상인 6000명 중 2~3%만 입점』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1면) (2) 『"임대료 비싸고 손님 없고…" 상인들 한숨』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면) (3)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들은 'SH공사 2중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1면) (4) 『SH공사, 적자로 허덕여도 성과급은 펑펑』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14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유령상가'로 전락한 문정동 가든파이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는 SH공사 퇴직자 직장용?』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3) 『빚더미 SH공사,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1)~(3)의 보도문에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 **아시아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14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바로잡습니다 (SH공사 고액연봉, 가든파이브 유령상가 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2011서울조정378~381	(매체별 정정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네이버(378), 네이트(379), 야후(380), 파란(381)
조 정 대 상	(1) 『'유령상가'로 전락한 문정동 가든파이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는 SH공사 퇴직자 직장용?』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3) 『빚더미 SH공사,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47~50 참조)]

2011서울조정382~383	(매체별 정정청구) 오○○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교회 카페가 불법?』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3월 23일자 33면, 쿠키뉴스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다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추징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취하

2011서울조정384~385	(정정 · 손배청구) 1. 권○○, 2. 강○○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지역] 새터민들, 남쪽나라에서 희망의 씨 뿌려요』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새터민들의 주말농장 참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386	(정정청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네이버 뉴스캐스트 정화? "치마길이도 잰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뉴스캐스트 정화 차원에서 연예인들의 치마길이와 허벅지 각도까지 기사의 선정성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011서울조정387~38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엔에이치엔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對 머니투데이, 인터넷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1)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A2면) (2)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A4면) • **인터넷 머니투데이** : (1) 『옷 사려다가 '납치' (?) 당해..왜?』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2) 『악성코드 피해 범람, 관련법은 국회에서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익을 위해서 브랜드검색광고를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의 조정대상 기사 (1)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1년 4월 30일자 2면, 인터넷 머니투데이 4월 29일자)

2011경기조정23~24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일간경기, 일간경기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간경기** : 『[사설] 송영길 시장은 억울하지만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 **일간경기** : 『[사설] 송 시장은 억울하지만 떳떳하게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인천시장 접대소송건의 증인으로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일간경기**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일간경기** : 취하

2011서울조정389~390	(정정 · 손배청구) ○○○예수교증거장막성전 對 기독교TV
조 정 대 상	CTS뉴스 오늘의 단신 프로그램 『○○○, 과자 팔아 운영경비 조달 중』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18:47)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단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과자를 팔아 이를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91~392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천안함 1년]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해도 알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A5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사건 관련, 신청인이 "민 · 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흡착물질을 조작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93~398	손○○ 對 동아일보(393~394 정정 · 손배청구), 동아닷컴(395~396 정정 · 손배청구), 네이버(397 정정청구), 네이트(398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만원 아끼려다… 홀인원 경품 4억 날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3월 22일자 A30면, 동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동아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뉴스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반론보도문 내용을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동아일보)가 송부하는 반론보도문을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2면) •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알려왔습니다] 3월 22일자 A30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2011서울조정399~40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손○○ 對 **한국일보**(399~400), **인터넷 한국일보**(401~402), **매일경제**(403~404), **매경닷컴**(405~406)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표주박]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홀인원 4억 경품 놓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3월 22일자 16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1일자)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4억짜리 경품 날린 운없는 골퍼』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3월 22일자 A33면, 매경닷컴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매경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덧붙여 게재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기사 중 外』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5일자 사회면, 매경닷컴 4월 22일자)

2011서울조정407~41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손○○ 對 **서울경제**(407~408), **서울경제닷컴**(409~410), **한국경제**(411~412), **한경닷컴**(413~414)
조 정 대 상	• **서울경제 · 서울경제닷컴** : 『1만원 안냈다가 2억 날려』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1년 3월 22일자 A34면, 서울경제닷컴 3월 21일자) • **한국경제** : 『4억짜리 홀인원하고 땅을 친 골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A35면)

조 정 대 상	• **한경닷컴** : 『홀인원하고도 4억 빌라 못받아 땅을 친 사연』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서울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8일자 A34면) • **서울경제닷컴** : 『[알림] '1만원 아끼려다 2억 날려'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A35면) • **한경닷컴** : 『[알림] 본지 3월 22일자 '4억원짜리 홀인원하고 땅을 친 골퍼' 기사 정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2011서울조정415~417	손○○ 對 연합뉴스(415~416 정정 · 손배청구), 다음(41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날아간 제주 리조트..홀인원하고도 경품 놓쳐』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 반론보도문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간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연합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홀인원하고도 경품 놓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1년 4월 21일자, 다음 4월 26일자)

2011서울조정418~42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손○○ 對 디지틀조선일보,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 **디지틀조선일보** : 『[제주] 홀인원하고 4억짜리 경품놓쳐』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골프토픽] 홀인원하고 "4억 경품 날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디지틀조선일보** : 취하 • **아시아경제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홀인원하고도 4억 경품 날려'』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닷컴 2011년 4월 21일자)

2011서울조정422~423	(매체별 정정청구) 범아시아권투협회 對 경향닷컴, 인터넷 스포츠칸
조 정 대 상	『김○○, WBA 1차방어 도전자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자격 미달 외국선수들을 데려와 경기를 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취하

2011경기조정25~26	(매체별 정정청구) 노○○ 對 전국매일, 현대일보
조 정 대 상	• **전국매일** : 『가평 미니공단 조성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11면) • **현대일보** : 『가평 태봉미니단지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가평군의 미니공단 사업부지를 매입한 신청인이 군수의 측근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전국매일 · 현대일보** : 인터넷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가평 미니공단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1년 4월 20일자 11면, 현대일보 4월 20일자 2면, 전국매일 홈페이지 · 현대일보 홈페이지 4월 20일자)

2011서울조정424	(정정청구) 노○○ 對 서울일보
조 정 대 상	『미니공단 조성공사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7면)
신청인주장	가평군의 미니공단 사업부지를 매입한 신청인이 군수의 측근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대구조정3~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김○○ 對 인터넷 매일신문,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아파트 주민끼리 120건 고소 · 고발』 제하의 기사 (인터넷 매일신문 2011년 3월 30일자, 매일신문 3월 30일자 6면)
신청인주장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인 신청인이 관리소장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80여건의 고소 · 고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27	(정정청구) 황우여 對 OBS-TV
조 정 대 상	OBS 뉴스 M 프로그램 『또 특정 종교 편향 발언』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4일자 20:00)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법관을 특정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OBS 뉴스 M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에 청색바탕에 흰색글씨와 함께 아나운서 멘트로 반론보도문 보도
이 행 결 과	이행되지 않음 (반론보도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이면 합의)

2011서울조정425~428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학부모○○○○○ 對 전자신문, 전자신문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 『이○○ 학부모○○○○○대표 "셧다운제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8면) • **전자신문 홈페이지** : 『[포스트게임] 학부모 단체, "셧다운? 시대착오적 정책은 웃음거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를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전자신문 홈페이지**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덧붙여 게재
이 행 결 과	• **전자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오피니언면) • **전자신문 홈페이지** : : 『반론보도문/ '셧다운제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011서울조정429~440	(주)○○공장 對 매일경제(429~431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매경닷컴(432~434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네이버(435~436 정정 · 반론청구), 네이트(437~438 정정 · 반론청구), 다음(439~440 정정 ·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야외 음악축제 월디페에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4월 12일자 A34면, 매경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월드DJ페스티발을 주최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다수 뮤지션들의 출연 거부로 반쪽 공연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매경닷컴** : 홈페이지 뉴스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매일경제)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송부해 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매일경제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DJ들의 축제 양평서 열린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4월 28일자 A35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4월 28일자) • **매경닷컴** : 『월드디제이페스티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011서울조정441	(손배청구) 산본○○병원 對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조 정 대 상	『눈뜨고 코베어간 산본○○산부인과병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불법 낙태를 시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남조정33~3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함안군 對 경남매일(33~34), 일간뉴스경남(35~36), 시대일보(37~38)
조 정 대 상	• **경남매일 · 시대일보** : 『함안군 군민상 공정성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4월 12일자 7면, 시대일보 4월 13일자 12면) • **일간뉴스경남** : (1) 『함안군 군민상 수상자 공정성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3면) (2) 『의심받는 군민상 수상자 심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3일자 15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이 함안군민상 심사위원을 매년 같은 인물로 위촉하여, 사전로비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남매일 · 시대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 **일간뉴스경남**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경남매일 · 시대일보** :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html 형태 기사) 삭제,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부분에 3일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하되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남매일** : 이행되지 않음 (당사자 화해 후 정정보도하지 않기로 이면합의) • **일간뉴스경남** : 『'함안군 군민상 수상자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3면) • **시대일보** : 『함안군 군민상 심사위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15면)

2011서울조정442	(정정청구) 경찰청 對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경찰, 지하철무선망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4면)
신청인주장	경찰청이 지하철 무선망 사업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내일신문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시점부터 1일 간 내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1년 5월 19일자 4면, 내일신문 홈페이지 5월 19일자)

2011서울조정443	(정정청구) 1. 고승덕, 2. 진익철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경매도박장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A12면) (2) 『 '주택가 근처에 안 된다' 는 방침 무시, 농림부, 경마도박장 승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A11면) (3) 『서초구청 前간부가 경마도박장 허가때 핵심역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9일자 A10면) (4) 『서초구청 "구청장은 경마도박장 아는 바 없다" 더니 진익철 서초구청장 당선후에도 건축심의 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3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국회의원, 서초구청장)의 청탁과 압력으로 도심 한복판에 경마도박장 건축이 허가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44	(정정청구) 김○○ 외 5인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는 관광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A14면)
신청인주장	서울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부실한 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했고, 기자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내용을 수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1일자 16면)

2011서울조정445	(정정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재소자까지 등친 파렴치 변호사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재소자까지 등친 파렴치 변호사' 로 매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28	(정정청구) 이○○ 외 3인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경찰수련원에 여성들 불러 밤 늦도록 속옷차림 '술판' 』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0일자 23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경찰수련원에 여성들을 불러 밤늦도록 속옷차림으로 술판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10	(정정청구) 이한영 對 대전뉴스
조 정 대 상	『선진당 이한영 의원, 음주 폭력』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구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46	(정정청구) 정○○ 對 한겨레닷컴
조 정 대 상	『'목사가 성추행' 폭로하자 2억6천 '입막음' 소송』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교회 목사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사람에 대해, 교회가 '입막음'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신청인(변호사)이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2011경기조정29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일간경기
조 정 대 상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 또 해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감사정보를 유출한 감사실 직원을 중징계(해임)한 것에 대해, '무리수를 두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 왜곡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447, 462~464	(병합) 김구섭 對 조선일보(447 정정청구, 462 손배청구), 디지틀조선일보(463~464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임기 2주 남기고… 감사원, 국방연구원장 해임 요구』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4월 23일자 A01면, 디지틀조선일보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인 신청인이 직원 인사와 관련,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3일자 2면) • **디지틀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2일자)

2011충북조정12~1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1. ○○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2. 권○○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조 정 대 상	『씨말리는 다슬기(올뱅이) 조업 현장 덮쳐』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3월 31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회원이 불법으로 조업한 다슬기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삼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씨 말리는 올뱅이 조업 현장 덮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5일자)

2011충북조정16~17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1. 배○○, 2. ○○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조 정 대 상	• **삼군신문** : 『어업종사자 배○○씨 삼군신문 양○○ 대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2면) • **인터넷 삼군신문** : 『배○○ 씨 가족 중심의 영어조합법인 "1천60만원 출자하면 이사 시키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삼군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씨 말리는 올뱅이 조업 현장 덮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5일자)

2011서울조정448	(정정청구) ○○○예수교춘천교회 對 뉴스파워
조 정 대 상	『춘천 ○○○, 한기총 해체 촉구 시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를 촉구한 신청인 교회 신도들을 이단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449~450	(매체별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인터넷 대한투데이, 서울일보
조 정 대 상	• **인터넷 대한투데이** : 『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좇 갈팡질팡에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일자) • **서울일보** : 『성남시설관리공단 '갈팡질팡'』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감사정보를 유출한 감사실 직원을 중징계(해임)한 것에 대해, '무리수를 두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 왜곡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대한투데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서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인터넷 대한투데이** : 『'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위 갈팡질팡에 우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1일자) • **서울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3일자 2면)

2011서울조정451	(정정청구) 농림수산식품부 對 농민신문
조 정 대 상	『양치기 소년과 농식품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2010년 발표한 양곡 수탁판매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지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시점부터 2일 간 농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농민신문 2011년 5월 25일자 2면, 농민신문 홈페이지 5월 25일자)

2011경기조정30	(정정청구) 장○○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1) 『'룸살롱 접대' 교장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19면) (2) 『학부모 신체접촉 · 폭탄주 강요』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대구조정7	(정정청구) 군위군 對 군위팔공신문
조 정 대 상	(1)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선거후유증』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0일자 5면) (2) 『[기자수첩] 취임후 9개월 지난 지금 군 현실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5면)
신청인주장	군위군수가 자기 측근에게는 이권을 주고, 전 군수 측근은 한직으로 전보하는 등 취임 9개월 동안 비난 받을 일만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5면)

2011서울조정452~453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코리아 유한회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수년간 도 넘는 탄압에 노조원들 심리 피폐』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2011년 4월 18일자 12면) • **경향닷컴 :** (1)『수용소 같은 ○○○코리아 ‘노조탄압 극치’』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2)『영암 대불산단 ○○○코리아, 수년간 도 넘는 탄압에 노조원들 심리 피폐』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노조원을 폭행하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경향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2)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1)은 삭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5월 7일자 2면, 경향닷컴 5월 6일자)

2011충북조정18~19	(정정 · 손배청구) 정○○ 외 6인 對 CJB-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아파트 공사 부당 거래 진실 공방』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있을 당시에 실시된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당 거래와 비리의혹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및 추후보도, 반론 및 추후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아파트 공사 부당 거래 진실 공방” 관련 보도문』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5일자 23:00)

2011서울조정454	(반론청구) 이○○ 對 간호사신문
조 정 대 상	『산모들에게 모유수유의 감동 전하는 보람』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정보제공과 도움에 의해 일본 ‘오케타니’ 유방관리 기술을 배운 사람을, 국내 ‘오케타니’ 유방관리 기술의 개척자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해당 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1대전조정11~13	(기사별 반론청구) (병합) 대덕구청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1)『마음은 벌써 콩밭에…』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21면) (2)『대덕구 행정처리 ‘엉망’』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3면) (3)『대덕 국민체육센터 위탁 특혜의혹』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3면) (4)『대덕구 ‘수상한 특혜’』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1일자 1면)
신청인주장	대덕구청장이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지방행정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합동감사에서 행정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55~456	(정정 · 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 "야간 조사 못 한다"…수배자 난동 구경만』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9일자 20:05)
신청인주장	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사건을 신고 받아 출동한 신청인(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SBS 홈페이지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스크립트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SBS 홈페이지 2011년 5월 16일자)

2011서울조정457	(반론청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사감위 과도한 규제가 '풍선 효과'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3일자 16면) (2) 『불법도박 단속권이 반갑지 않은 사감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20면) (3) 『"사감위 불법도박 방치" 국회서 혼쭐난 김성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1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합법사행사업은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서도 불법도박은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지난달 보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사와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면)

2011서울조정458	(정정청구) 주식회사 ○○컨설팅 對 로지스틱스뉴스
조 정 대 상	『E사 UPS LT TMS 도입 실패?』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미국 UPS-LT사의 운송관리시스템을 도입, 국내 물류회사에 적용하려 했던 시스템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E사 UPS LT TMS 도입 실패?" 3월 7일자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9일자)

2011대구조정8	(정정청구) 강석호 對 주간 고향신문
조 정 대 상	『표심! 정당 ➤ 인물 & 전략으로 이동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천 잡음을 일으키고, 지역발전에 뚜렷한 기여가 없다는 여론이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39~40	(정정 · 손배청구) 한국○○○ 주식회사 對 함안신문
조 정 대 상	(1) 『반대투쟁위 구성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1면) (2) 『아연이 미네랄이라니! 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6면) (3) 『시작부터 주민들 속여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7면)

조 정 대 상	(4) 『제어와 통제기능 상실한 함안군』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11면) (5) 『투자의향서 이번 주 협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1면) (6) 『한국○○○ 아연생산 공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3면) (7) 『한국○○○(구 한국○○)은 도덕적 기업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11면) (8) 『우리도 아연공장 절대 반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1면) (9) 『중앙정부 · 시민단체 관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1면) (10) 『반대위,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 탄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기업이며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공장 가동을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한국○○○(구 한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2면)

2011서울조정459~460	(반론 ·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연합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건강기능식품, 방사선 억제효과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인삼이나 홍삼이 방사능 피폭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461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4대강 속도전에 느티나무 100그루 '살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속도전'을 위해 한강6공구 구간 내에 있는 느티나무 100여 그루를 폐기처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8일자 2면)

2011서울조정465	(정정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對 월간조선
조 정 대 상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 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4~5월 중 건강보험 적립금 0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호 62면)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파탄을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의료산업화 위해 공공병원 점유율 5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호 164면)

2011서울조정466, 497~498	(병합) 1. 부산북부경찰서, 2. 백○○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466 정정청구, 497~498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부산북부경찰서가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부당인출 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이 입은 명예훼손을 비롯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한다,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의 취재 당시에는 사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반론은 조정대상 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2011서울조정467~478	(매체별 정정 · 손배 청구) 이○○ 對 서울신문(467~468), 인터넷 서울신문(469~470), 네이버(471~472), 네이트(473~474), 다음(475~476), 야후(477~478)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공안 매수 후 거처 알아내…1000만~2000만원 웃돌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9면) • **인터넷 서울신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브로커 '파랑'과 직접 통화해보니』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파랑'이라는 닉네임으로 결혼중개업을 겸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 난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를 찾아주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서울신문 · 인터넷 서울신문**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10만원,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51~58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신문 :** 사회면 초기화면에 48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5월 13일자 2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12일자)

2011경기조정31	(정정청구) 재단법인 ○○시자원봉사센터 對 광명일보
조 정 대 상	『○○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자격기준 미달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센터소장을 공모하면서 자격미달인 자를 선정하여, 사전 내정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479~483	(매체별 정정청구)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손해보험지부 對 헤럴드경제(479), 헤럴드경제닷컴(480), 네이버(481), 네이트(482), 다음(483)
조 정 대 상	• **헤럴드경제 · 헤럴드경제닷컴** : 『특검에 고발까지…○○○손보 '설상가상'』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4월 12일자 22면, 헤럴드경제닷컴 4월 12일자) • **네이버 · 다음** : 『"이 와중에 노조가 고발을"… ○○○손보 '설상가상'』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2011년 4월 12일자) • **네이트** : 『금융당국 특별검사에 고발까지...○○○손보 '설상가상'』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헤럴드경제닷컴** : 홈페이지 경제면 중앙 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헤럴드경제)가 정정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정정보도문이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손해보험 노동조합 고소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5월 19일자 금융면, 헤럴드경제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5월 19일자)

2011서울조정484~485	(정정 · 손배청구) 남○○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공포의 집합 2』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트위터를 여과없이 인용하면서 자신이 용인대 폭력 사건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32~3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전재희 對 인터넷 광명일보, 광명일보
조 정 대 상	『전재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인터넷 광명일보 2011년 5월 2일자, 광명일보 5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광명시 소재 성당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우물파기' 운동에 성금을 낸 것이 성당 주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이행방법 : 인터넷 광명일보 초기화면 최상단에 정정보도문을 2일간 게시하고, 이후 5일간을 메인화면에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는 원 조정대상기사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전재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광명일보 2011년 5월 17일자, 광명일보 5월 27일자 1면)

2011서울조정486~489	(신청인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1. 염○○, 2.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우즈벡 '사기결혼' 피해 급증··에이즈 여성까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일자 21:00, 3월 3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소속 결혼업체가 소개한 우즈벡 여성에 대하여 성매매 경험 등의 과거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90	(정정청구) 화성서부경찰서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화성지역 티켓다방 영업 '알고도 단속 못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 경찰관들이 화성 시내 성매매 의혹이 있는 티켓다방과 유착되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011서울조정491~495	(매체별 정정청구) 환경부 對 오마이뉴스(491), 네이버(492), 네이트(493), 다음(494), 야후(495)
조 정 대 상	『4대강 수질 사업에 헛돈 쓰는 환경부 퇴직 관료 사장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부처가 4대강 수질사업에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특정 공법(후단 공법)을 도입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96	(정정청구) 한국개발연구원 對 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1조 3천억 원대 국책 사업, '범죄' 있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1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1일자 21:00) (3)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檢, 비리 수사착수 "금품 수수 정황 포착"』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1일자 21:00) (4)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검찰, 국토부와 KDI에 입찰자료 요구‥본격 수사』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4일자 21:00)
신청인주장	전철사업(소사-원시) 입찰평가 과정에서 신청인 기관의 직원이 금품을 받고 평가를 조작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99~500	(정정 · 손배청구) 정○○ 외 385인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부당인출 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 개개인이 이 사건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았고, 보도와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1광주조정20~21	(매체별 정정청구) 윤○○ 對 인터넷 광남일보, 다음
조 정 대 상	『○○중 비정규노조 탈퇴 강요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학교 사서로 재직중인 신청인이 광주지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광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광남일보에도 정정보도) • **다음**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광남일보** : 사회면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광남일보 · 다음** : 『'○○중 비정규직 탈퇴 강요 논란'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6일자) • **광남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7일자 10면)

2011서울조정501	(정정청구) 교육과학기술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학교 비정규직 "체불임금 달라" 손배소송 채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초 · 중등학교 회계직원이 비정규직이며, 교과부가 회계직원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지자체와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면)

2011서울조정502~503	(정정 · 손배청구) 원○○ 對 tvN
조 정 대 상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공개구혼! 3년째 솔로인 100억 자산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일자 24:00)
신청인주장	건국대 인근 주상복합 65평형의 거래가격에 대한 신청인(공인중개사)의 발언을 70평형에 대한 발언으로 왜곡보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공문 발송,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방법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중에 정정보도, 피신청인 소속 아나운서 중 1명이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낭독하되,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화면에 자막 처리
이 행 결 과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1일자 24:00)

2011서울조정504~505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중앙뉴스
조 정 대 상	『광복회, "노인정 선거보다 못한 광복회 선거인 듯"』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 및 성명이 무단 공표되어 기자에게 삭제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신청인이 협박을 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2011서울조정506~50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구○○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해외 '3색 신호등' 사진만 찍고 왔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4월 25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4월 25일자) (2) 『'3색 신호등' 인증샷 찍으러 해외시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4월 25일자 22면, 인터넷 중앙일보 4월 25일자) (3) 『정선태가 봤다는 맨해튼 '빨간 화살표' 어디에 …』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5월 5일자 6면, 인터넷 중앙일보 5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참여한 교통체계선진화를 위한 해외시찰단이 해외의 3색 신호등 사진만 찍는 등 해외 시찰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일보** : 뉴스홈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원 조정대상기사(1)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덧붙여 게재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8일자 2면) • **인터넷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4월 25일 중앙일보 '3색 신호등 인증샷 찍으러 해외시찰?' 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8일자)

2011경남조정41~4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권○○ 對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일보** : 『○○병원 원장 등 2명 사문서 위조 피소』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4면) • **인터넷 경남일보** : 『진주 ○○병원 이번엔 '사문서 위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신청인이 고소된 사실을 보도했으나 고소내용은 사실무근이다.
처 리 결 과	• **경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사과문 발송,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인터넷 경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사과공문 발송,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일보** :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 위치에서 아래로 7번째 위치에 최소 48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표시
이 행 결 과	• **경남일보** : 『'○○병원 사문서 위조 피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7일자 4면) • **인터넷 경남일보** : 『「진주 ○○병원 이번엔 '사문서 위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2011광주조정22~23	(매체별 정정청구) 재단법인 광주○○병원 對 광남일보, 인터넷 광남일보
조 정 대 상	• **광남일보** : 『보상 뒷전 … 광주○○병원 '이상한 셈법' 』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남일보** : 『병원비 안 받은 것만도 고마워 해라』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생아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신청인 병원이 소액의 보상금을 주고 환자의 퇴원을 요구했고,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510~511	(정정 · 손배청구) (주)○○○에듀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1+3 국제전형을 아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0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호주 모 대학과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체적 협약도 없이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512~515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생기념사업회 對 법보신문, 인터넷 법보신문
조 정 대 상	『'○○ 부당이득금 소송' 서 법보신문 승소』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1년 2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법보신문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 법보신문의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516~521	(매체별 정정청구) 재단법인 광주○○병원 對 세계일보(516), 세계닷컴(517), 네이버(518), 네이트(519), 다음(520), 야후(521)
조 정 대 상	『신생아 손가락 절단 피해보상 '나몰라라' 의료사고에 두 번 우는 다문화가정』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1년 5월 12일자 12면,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생아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신청인 병원이 소액의 보상금을 주고 환자의 퇴원을 요구했고,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522~525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정○○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 『이번엔 신협 모럴해저드』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5월 4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4일자) (2) 『낙찰취소 부동산 불법대출… 상환금 착복』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5월 4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4일자) (3) 『1994년 천신협 손실 고객돈으로 메워 규정 어기며 임원 선물 · 보험료 책정』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5월 6일자 10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조합의 이사인 신청인이 불법대출로 업무상 배임을 했고, 조합의 상환금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526~52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아침논단] '준법지원인' 制는 변협의 '도둑 정치'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5월 12일자 A38면, 디지틀조선일보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추진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법제도와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이며 변협은 공익보다는 '도둑 정치'에 열심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36	(정정청구) 광명시청 對 수도일보
조 정 대 상	(1) 『재건축 조합 '무법천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1면) (2) 『[칼럼] 광명시청 도시개발과 정말 이상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인가 독선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14면)
신청인주장	광명시청이 불법적인 아파트 분양승인을 하였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수도일보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수도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광명 제6동 재건축사업 관련 광명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수도일보 2011년 5월 25일자 1면, 수도일보 홈페이지 5월 26일자)

2011서울조정530	(정정청구) 해병대사령부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군 화보집 제작』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20:00, 5월 12일자 20:00)
신청인주장	해병대가 해병대 소속 연예인의 병영생활 화보집을 제작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출판사에 제작권을 주기로 했다가, 이 내용이 방송되자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SBS 8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홍보도서 수익금 검토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1일자 20:00)

2011경기조정37~38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평안신문
조 정 대 상	『웃다리 평택 농악 이대로 주저앉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평택농악보존회 전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현 사무국장과 주도권 다툼을 벌였고, 보존회의 문제점을 외부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평안신문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평안신문 인터넷 판 메인화면에 7일간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웃다리 평택농악 이대로 주저앉나"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평안신문 2011년 5월 30일자 1면, 평안신문 홈페이지 5월 25일자)

2011경남조정45~46	(정정 · 손배청구) ○○읍자원봉사대 對 The함안신문
조 정 대 상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정산서 "천차만별" 무료식당운영 무료봉사대가 유료봉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봉사대가 군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남긴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읍 무료 경로식당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1면)

2011전북조정7~1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사단법인 군산YWCA 對 서해타임즈, 인터넷 서해타임즈
조 정 대 상	『부패의 덫에 걸린 군산YWCA 대포통장, 보조금 횡령, 예산상납 '의혹' 』 제하의 기사 (서해타임즈 2011년 4월 27일자 2면, 인터넷 서해타임즈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봉사대가 군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남긴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서해타임즈 메인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해타임즈 2011년 6월 1일자 2면, 인터넷 서해타임즈 6월 1일자)

2011서울조정531~54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디지틀조선일보(531~532), 네이버(533~534), 네이트(535~536), 다음(537~538), 야후(539~540), 파란(541~542)
조 정 대 상	『학생들 앞에서 동료교사 뺨때린 교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업무상 부탁을 거절하는 동료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대전조정14	(정정청구)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1) 『자유총연맹 국가재산 이용은 범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6면)

조 정 대 상	(2) 『임대 관련문제 조속 정상화시킬 것』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5면) (3) 『불법 임대료 유용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6면)
신청인주장	대전자유총연맹이 임대료 수익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2면)

2011서울조정543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조 정 대 상	『○○제약의 흔들리는 정체성』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제약회사가 본업과는 동떨어진 식음료 개발과 판매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44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수십억 금품 수수...중국 국영 항공사 한국지사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중국 국영 항공사의 한국지사장이 구속됐다는 보도에 해당 회사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비보도 유감표시, 기사수정, 부제소)

2011서울조정545	(정정청구) 성남시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CCTV제공 동장' 인사조치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9일자 21:00) (2)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CCTV제공 동장' 인사조치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9일자 19:00)
신청인주장	성남시 판교동 주민센터 동장이 CCTV 자료를 민원인에게 임의 제공하여 징계됐다고 보도했으나, 제설작업 미실시 및 민원 야기 등의 이유로 전보조치 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39	(정정청구) 이종걸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피켓 시위자-정당인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수행원들이 안양시의원 공천문제와 관련 신청인을 비판하는 시위자들의 피켓을 빼앗고 폭언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경기신문 인터넷판에도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처 리 결 과	게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피켓시위자-정당인 몸싸움'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1년 6월 2일자 23면, 경기신문 홈페이지 6월 2일자)

2011제주조정1	(손배청구) 고○○ 對 제주일보
조 정 대 상	『'꽃미남 대기' 호스트바 극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면)
신청인주장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에 관한 기사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상호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40~41	(정정 · 반론청구) 교하○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1) 『주민에 5천여만원 소송비용 청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9면) (2) 『소송비용 부담 놓고 주민간 분쟁』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8면)
신청인주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발전소 건립 중단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중부일보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중부일보 인터넷판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1년 6월 3일자 8면, 인터넷 중부일보 6월 3일자)

2011서울조정546	(반론청구) 창조한국당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언제까지 문국현? 창조, 이재오만 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창조한국당이 야당연대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547~56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서○○ 對 노컷뉴스(547~548), 네이버(549~550), 네이트(551~552), 다음(553~554), 야후(555~556), 조인스엠에스엔(557~558), 파란(559~560)
조 정 대 상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협박하여 고소당했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돌연 취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조인스엠에스엔 ·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야후**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조인스엠에스엔 ·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가 정정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정정보도문이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1년 6월 2일자,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조인스엠에스엔 · 파란 6월 3일자)

2011경기조정42	(정정청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평택항만청, 시멘트공장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0일자 8면)
신청인주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H시멘트 회사가 공장등록도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561~56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법원,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송영길 시장 증인 채택』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2) 『'성 접대'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송영길 시장 불출석』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3) 『檢, 송영길 시장 '성 접대' 유포 혐의 백 前 후보 징역 1년 6월 구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신청인에 대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됐으나, 1심 재판결과 '성접대 허위공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대구조정9~10	(매체별 정정청구) 임○○ 對 대구신문, 인터넷 대구신문
조 정 대 상	• **대구신문** : 『독성물질 FRP분진 왜 단속 않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경북면) • **인터넷 대구신문** : 『울진 후포조선소내 유독성 물질 펑펑, 군은 단속 외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북 울진 후포조선소에서 유독성 분진이 날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보도해, 군 환경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대구조정11~12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 **영남일보** : 『대구 최고급 아파트 斷電 통첩받은 사연 …』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1일자 1면) • **인터넷 영남일보** : 『수성구 위브더제니스 斷電 통첩』 (2011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도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영남일보에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1년 5월 28일자 11면)

2011서울조정565~566	(매체별 정정청구)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 '남대문시장(주)' 상인들 금품갈취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A13면) • **디지틀조선일보** : 『[단독] '남대문시장(주) (노점 단속 · 쓰레기 처리 회사)' 상인들 금품갈취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경비원들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둘러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567~571	(매체별 정정청구) 교육과학기술부 對 매일경제(567), 매경닷컴(568), 네이버(569), 다음(570), 야후(571)
조 정 대 상	(1) 『보금자리엔 학교가 없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6일자 A1면, 매경닷컴 · 네이버 5월 6일자, 다음 · 야후 5월 5일자) (2) 『강남 · 서초 보금자리 학교대란 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6일자 A3면, 매경닷컴 · 네이버 5월 6일자, 다음 · 야후 5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보금자리 시범지구 내 학교건축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31일자 A29면, 매경닷컴 · 네이버 · 다음 · 야후 5월 31일자)

2011서울조정572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메디팜스투데이
조 정 대 상	『○○제약 · 동성제약 무늬만 제약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제약회사가 본업과는 동떨어진 식음료 개발과 판매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73~57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MBC-TV(573~574), 네이버(575~576), 다음(577~578)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국부 성형 보험 사기 · · 설계사 무더기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4일자 21:00) • **네이버 · 다음** : 『국부 성형 보험 사기 · · 설계사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79~588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이○○ 對 세계일보(579~580), 세계닷컴(581~582), 네이버(583~584), 네이트(585~586), 다음(587~588)
조 정 대 상	『도 보조금은 눈먼돈… 낚시대회 임원들이 행사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세계일보** : 각하결정 (사유 : 세계닷컴에만 보도된 것으로 세계일보에는 보도된 바 없다.) •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011년 6월 3일자)

2011제주조정2~21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이○○ 對 제주일보(2~3), 인터넷 제주일보(4~5), 한라일보(6~7), 인터넷 한라일보(8~9), 제주매일(10~11), 인터넷 제주매일(12~13), 제주의소리(14~15), 미디어제주(16~17), 시사제주(18~19), 이슈제주(20~21)
조 정 대 상	• **제주일보 · 인터넷 제주일보** : 『도내 낚시연합회 개최 비리낚시대회 '얼룩'』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10년 9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일보 9월 13일자) • **한라일보 · 인터넷 한라일보 :** 『낚시연합회가 낚은 것 '비리'』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0년 9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9월 13일자) • **제주매일 · 인터넷 제주매일 :** 『바다낚시대회 비리 얼룩』 제하의 기사 (제주매일 2010년 9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매일 9월 14일자) • **제주의소리 :** 『제주 낚시연합회 전현직 임직원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 **미디어제주 :** 『수천만원대 보조금 '꿀꺽' 낚시연합회 임원 무더기 입건』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 **시사제주 :** 『제주지역 낚시연합회 임원들, '보조금' 도 낚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 **이슈제주 :** 『낚시연합회 보조금 편취.횡령 '얼룩'』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제주일보 · 한라일보** : 각 취하 • **인터넷 제주일보 · 인터넷 한라일보**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제주매일 · 제주의소리 · 이슈제주** :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인터넷 제주매일**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미디어제주**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시사제주**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인터넷 제주매일** : 홈페이지 사회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추후보도문 게재 • **제주의소리 · 이슈제주**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개월간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처 리 결 과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제주일보** : 『<추후보도문>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5일자) • **인터넷 한라일보** :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 **제주매일** : 『서귀포 낚시연합 L씨 보조금편취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제주매일** :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이모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7일자) • **제주의소리 · 이슈제주** :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 **시사제주** :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2011제주조정22~31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22~23), 네이버(24~25), 네이트(26~27), 다음(28~29), 파란(30~31)
조 정 대 상	『제주해경, 낚시대회 보조금 가로챈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제주면에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 행 결 과	『서귀포낚시연합회 전 회장 보조금 편취 '무혐의'』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 네이버 · 다음 2011년 6월 20일자, 네이트 · 파란 2011년 6월 23일자)

2011제주조정32~41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32~33), 네이버(34~35), 네이트(36~37), 다음(38~39), 파란(40~41)
조 정 대 상	『제주도 낚시대회는 보조금 낚기(?) 대회』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5일간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메인화면에 추후보도문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1년 6월 17일자,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6월 23일자)

2011전북조정11~12	(정정 · 반론청구) ○○스터디(주) 對 인터넷 익산신문
조 정 대 상	『○○영어학원 수강료 과다징수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2배 이상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 이상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함.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2011서울조정589~600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최○○ 對 노컷뉴스(589~590), 네이버(591~592), 네이트(593~594), 다음(595~596), 야후(597~598), 파란(599~600)
조 정 대 상	『대북전단 살포 대표 협박한 기초생활수급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01~612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601~602), 네이버(603~604), 네이트(605~606), 다음(607~608), 야후(609~610), 파란(611~612)
조 정 대 상	『대북전단 배포단체 대표 살해 협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뉴스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 **야후 · 파란** : 뉴스홈에 추후보도문 게시, 야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탈북자 단체 대표 살해 협박 40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2011서울조정613~618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최○○ 對 뉴데일리(613~614), 네이트(615~616), 야후(617~618)
조 정 대 상	『"내가 공화국 출신 깡패인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뉴데일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 **네이트 · 야후** :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뉴데일리**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 게시 • **네이트 · 야후** : 뉴스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야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2011서울조정619~628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최○○ 對 뉴시스(619~620), 네이버(621~622), 네이트(623~624), 다음(625~626), 야후(627~628)
조 정 대 상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한 기초생활수급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시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을 게시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뉴스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 **야후** : 뉴스홈에 추후보도문 게시,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한 기초생활수급자'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2011대전조정15~17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황국연 對 금산저널
조 정 대 상	(1) 『지역발전 가져오는 방우리 교량 사업 필요 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1면) (2) 『<발행인 칼럼> 황국연 군의원님 왜그러십니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2면) (3) 『황국연 의원 이장, 새마을단체, 언론, 군청 싸잡아 비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면) (4) 『<발행인 칼럼> 군민, 언론, 군 행정,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군 의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2면) (5) 『이장협의회 황국연 군의원을 명예 훼손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3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군의원인 신청인의 의정활동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29~63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손형기 對 미디어오늘(629~630), 인터넷 미디어오늘(631~632), 네이버(633~634), 다음(635~636), 파란(637~638)
조 정 대 상	(1) 『손형기 KTV 원장 비리 · 성추행 논란』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1년 4월 27일자

조 정 대 상	1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다음 · 파란 4월 27일자) (2) 『KTV 손형기 원장 사표 … 퇴임식 돌연 취소』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1년 5월 11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다음 · 파란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KTV원장인 신청인이 각종 비리와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 24시간 동안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다음 ·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가 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1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다음 · 파란 6월 15일자)

2011서울조정639~64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손형기 對 아주경제(639~640), 네이트(641~642), 야후(643~644)
조 정 대 상	『예술감독 선임 심사조작..박일훈 국악원장 물러날 듯』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KTV원장인 신청인이 각종 비리와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기조정43	(정정청구) 권주홍 對 안양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출렁이는 민주당 "앞날은..."』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1년 4월 15일자 2면, 안양시민신문 홈페이지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민주당 안양시의원인 신청인이 내년 총선 한나라당 유력 후보자의 협력관계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1년 6월 13일자 4면, 안양시민신문 홈페이지 6월 13일자)

2011경기조정44~45	(정정 · 반론청구) 권주홍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중부일보** : (1) 『이번엔 안양시의원이 '막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1일자 5면) (2) 『권주홍 안양시의원 해외 추태설 일축에 여행 가이드 맡았던 직원 "입에 담기 민망할 욕설" 증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6면) • **중부일보 홈페이지** : (1) 『안양시의원 "너무 고압적..날려버리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1일자) (2) 『여행 가이드 "입에 담기 민망할 욕설" 증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민주당 안양시의원인 신청인이 내년 총선 한나라당 유력 후보자의 협력관계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이어서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1년 6월 20일자 6면, 중부일보 홈페이지 6월 20일자)

2011서울조정645~64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서울특별시교육청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1) 『서울교육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4월 29일자 14면) (2)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자체 충당 가능하다더니 … 결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1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삭감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1)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7월 8일자 2면) (2) 『[반론보도문]4월 29일자 A14면』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1년 7월 8일자)

2011서울조정647~648	(정정 · 손배청구) (주)○커뮤니케이션 對 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형수술도 할인쿠폰?…소셜커머스 의료쿠폰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3일자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성형수술도 할인쿠폰?…소셜커머스 의료쿠폰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3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성형 할인쿠폰을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49	(반론청구) 양평군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예산 3450억인데 '750억 운동장' 짓는 양평』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6일자 1면) (2) 『200억 날릴 테마파크 … "세금 낭비가 이곳 테마냐" 분노』 및 『"절차 지켜야 세금 낭비 막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6일자 12면) (3) 『사흘 체육대회 위해 750억 운동장 짓는 양평군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7일자 30면) (4) 『"양평 기둥뿌리 뽑히게 생겼다" … 750억 운동장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9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자치단체가 위법행정, 졸속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 높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1서울조정650	(정정청구) 박○○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단독] 부산저축銀 직원이라 속여 유학 경비 지원(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2) 『[단독] 부산저축銀 직원이라 속여 유학 경비 지원』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딸인 신청인이 부산저축은행에 명목상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매달 월급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저축銀 직원이라..' 기사 중 박회장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2011경기조정46~4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허○○ 對 데일리와이, 위클리와이
조 정 대 상	『오산시의원vs장애인 '5년 전 망치폭행 사건'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데일리와이 2011년 5월 16일자, 위클리와이 5월 16일자 6면)
신청인주장	화성경찰서 경찰관인 신청인이 폭행당한 장애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데일리와이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합의된 다음날부터 데일리와이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데일리와이 2011년 6월 14일자)

2011서울조정651~65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對 주간조선,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軍 검찰단 2인자 1000만원 받고 사건 덮었다』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1년 4월 25일자 13면, 디지틀조선일보 4월 27일자) (2) 『"군검찰, 거짓 진술 강요했다"』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1년 5월 2일자 13면, 디지틀조선일보 5월 3자)
신청인주장	군 검찰 관계자들이 변호사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사건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까지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47~48	(정정 · 손배청구) 통영시 對 굿데이뉴스
조 정 대 상	『전 시장과 현 시장 비교』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일자)
신청인주장	통영시장이 아집에 사로잡혀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방하여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공문 발송,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에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 하고, 최소 만 5일(120시간) 이상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이 행 결 과	『통영시청 밀실행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2011서울조정653~654	(정정 · 손배청구) 송○○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수상한 유치원』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1일자 08:3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부실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내용이 상당성이 있으므로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

2011경남조정49~50	(매체별 손배청구) 학교법인 ○○ 對 인터넷 김해뉴스, 김해뉴스
조 정 대 상	『충격에 빠진 ○○대 "노코멘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김해뉴스 2011년 5월 31일자, 김해뉴스 6월 1일자 5면)
신청인주장	부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강모 교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소속 대학교명을 밝혀 신청인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경기조정48~49	(매체별 손배청구) 최용수 對 데일리와이, 다음
조 정 대 상	(1) 『오산 A시의원 장애인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일자) (2) 『<속보>장애인 폭행 오산시의원 "망치로 머리를?" 충격』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3) 『오산시의원vs장애인 '5년 전 망치폭행 사건'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오산시의원인 신청인이 과거 망치로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중인 사건을 상세히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기사를 더 이상 보도하지 않기로 합의)

2011서울조정655~6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 ○○○대학교 2. 박 ○ 對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
조 정 대 상	• **한겨레 21 :** 『비리 총장의 용돈이 된 등록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18면) • **인터넷 한겨레21** : 『○○대 총장님의 쌈짓돈이 된 등록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총장이 학교 공금을 유용하고, 기업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1일 동안, 한겨레21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목록에 7일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는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1년 6월 27일자 10면, 한겨레21 홈페이지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6월 20일자)

2011서울조정657	(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교제하던 남자와의 결별에 얽힌 이야기를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2011서울조정658~659	(정정 · 손배청구) 허○○ 對 KBS-2TV
조 정 대 상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뜰결혼대작전』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08:00)
신청인주장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2011전북조정13	(정정청구) 군산경찰서 對 전북연합신문
조 정 대 상	『군산경찰, 사건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7일자 6면)
신청인주장	군산경찰서가 현행범으로 처리해야 할 폭력사건을 일반상해사건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군산경찰, 피해자 주장 … 반론 제기』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4일자 6면)

2011서울조정660	(정정청구) 공정거래위원회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1) 『화장품 · 학습지 방문판매 50여만명 직격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A05면) (2) 『"방판법 개정 누구위해…" 업계도 소비자도 반발』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0일자 A25면)
신청인주장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판매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자동차 · 전자제품 분야는 방문판매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방문판매법 개정안'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A19면)

2011서울조정661~66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임○○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KBS-1TV
조 정 대 상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대학교수 낀 사기단, 여권실세 친분 사칭 억대 편취』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단독] 교수 연루 정치권 사칭 사기 들통』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3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권실세와 친분을 빙자한 사기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후속보도, 부제소) • **KBS-1TV**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KBS 홈페이지 뉴스면에도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신청인에 대한 원고지 10매 분량의 인터뷰 기사 또는 기획기사 게재 • **KBS-1TV**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9시뉴스 프로그램(기상정보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추후보도, 보도화면은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수준의 자료 화면을 사용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보도문] '대학교수 낀 사기단, 여권실세 친분 사칭 억대 편취' 기사 제목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 **KBS-1TV** : KBS 뉴스12 프로그램 『'정권 실세 사칭' 모 재단 이사장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7일자 12:00) • **KBS 홈페이지** : 『검찰, 모 재단 이사장 임모 씨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2011전북조정14	(정정청구) ○○새마을금고 對 전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1) 『○○새마을금고 임원 재선거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4일자 10면) (2) 『[기자의 시각] ○○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금고가 정관 해석착오에 따른 임원재선거를 실시하면서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1일자 10면)

2011서울조정665~666	(매체별 정정청구) ○○지구토지보상추진위원회 對 머니투데이방송(MTN), 인터넷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방송(MTN)** : 부동산 WIDE 프로그램 『○○지구 때아닌 토지보상권 거래… SH 보상계획 없어』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7일자 16:20) • **인터넷 머니투데이** : 『[부동산 WIDE] 때 늦은 ○○지구 토지보상권 거래, 들춰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보상이 안되는 폐천부지에 대해 토지보상권을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서울 ○○지구 구 토지주들 추가 보상 위해 소송』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방송(MTN) 홈페이지 ·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2011년 7월 1일자)

2011서울조정667	(손배청구) 박○○ 對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문학회, 올해도 지원금 타내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6면)

신청인주장	구청 문화예술팀장인 신청인이 개인적 친분 관계로 특정문학회에 기금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668~669	(매체별 정정청구) ○○○○○○교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조용기 목사 '말로만' 사퇴했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6월 7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6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 주요 직책에서 사퇴한 조용기 원로목사가 담임목사 임명에 관여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인터넷 한겨레** : 취하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7월 12일자 2면)

2011광주조정24	(정정청구) (재)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對 KBC-TV
조 정 대 상	KBC 8 뉴스 프로그램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비자금 조성』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9일자 20:25)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유령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약직 직원의 월급을 회수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을 내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광주조정25	(정정청구) (재)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對 KBC-TV
조 정 대 상	KBC 8 뉴스 프로그램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추가 의혹 제기』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0일자 20:25)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부족한 행사비를 업체에 떠넘기고 이를 대신해 억대의 사업을 수주하게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50~51	(정정 · 손배청구) 홍○○ 對 종합일보
조 정 대 상	(1) 『수변경관지구에 수상한 건물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7면) (2) 『의정부 장암동에 수상한 건물이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7면) (3) 『수변경관지구 그린벨트 훼손 심각』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7면) (4) 『도2청 감사팀 "의정부감사 지켜보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7면)
신청인주장	수변경관지구에 있는 신청인의 건물이 단속 공무원의 묵인 아래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종합일보 인터넷판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종합일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되,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 **종합일보** : 『'수변경관지구에 수상한 건물 있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2일자 7면) • **종합일보 홈페이지**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1일자)

2011서울조정670~673, 683~684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최○○ 對 SBS-TV(670~671), MBN 홈페이지(672~673), SBS 홈페이지 (683~684)
조 정 대 상	• **SBS-TV** : SBS 뉴스 프로그램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협박전화』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3일자) • **MBN 홈페이지** : MBN 뉴스 프로그램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한 4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 • **SBS 홈페이지**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협박전화』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SBS-TV** : 각하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SBS 홈페이지에만 게시되었을 뿐, SBS-TV 뉴스프로그램에서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MBN 홈페이지 · SBS 홈페이지** : 각 취하

2011대전조정18~20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황○○ 對 금산저널
조 정 대 상	(1)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1면) (2) 『[발행인 칼럼] 대관절 금산군의회 수준을 어디까지 몰고 가려는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2면)
신청인주장	군의원인 신청인의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74~675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탈북자 입소 하루만에 정신병원 보낸 하나원』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0일자) (2) 『정부청사 앞 1년째 1인시위 탈북자』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탈북자인 신청인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76	(정정청구) 김○○ 對 파이낸셜코리아
조 정 대 상	『○○○ 자회사 카엘○○○ 대표 '채무불이행 의혹' ...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의약품 제조 · 판매업체 대표인 신청인이 과거 모 의사에게 빌린 수억원의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2011서울조정677~68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서울일보(677~678), 내외일보(679~680), 대한매일신문(681~682)
조 정 대 상	• **서울일보** : 『민원처리 뒷전… 허가 취득 '말썽'』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1면) • **내외일보** : 『진도군 수산자재 제조공장 준공처리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1면) • **대한매일신문** : 『있으나 마나한 허가조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허가 받은 수산자재 제조공장 준공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경기조정52	(정정청구) 1. 조영훈, 2. (주)인천○○○연구소 對 인천신문
조 정 대 상	(1) 『'아름답지 못한' 간판사업』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4면) (2) 『간판사업 업체 선정 문제 많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5면)
신청인주장	인천 서구의 '아름다운 간판 사업' 시행자로 현직 시의원이 운영해왔던 업체가 선정돼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천신문 2011년 6월 17일자 2면, 인천신문 홈페이지 6월 17일자)

2011경기조정53~54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인천뉴스
조 정 대 상	『허위사실 공표 전 인천시장후보 등 1년 6월 구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평화민주당 대변인이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포털에 전재된 기사삭제, 향후 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실명거론 금지)

2011광주조정26~3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남도투데이(26~27), 주간진도신문(28~29), 전남도민일보(30~31), 호남신문(32~33)
조 정 대 상	• **남도투데이** : 『수산자재 제조공장 특혜의혹 '시끌'』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5면)

조 정 대 상	• **주간진도신문** : 『습지보호구역 신동리 각종 불 · 탈법으로 몸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8면) • **전남도민일보** : 『진도, 공무원 유착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7면) • **호남신문** : 『진도군 수산자제제조공장 끝나지 않은 준공처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진도군으로부터 수산 자재 제조공장을 허가받은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남도투데이 · 전남도민일보 · 호남신문** : 각 취하 • **주간진도신문**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습지보호구역 신동리 각종 불 · 탈법으로 몸살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진도신문 2011년 7월 18일자 2면)

2011서울조정685~689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일요서울(685), 인터넷 일요서울(686), 네이버(687), 네이트(688), 다음(689)
조 정 대 상	『"MBC 기자에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1년 6월 19일자 14면, 인터넷 일요서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성폭행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일요서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해당 기사는 MBC기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이 없었고, 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중재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인터넷 일요서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690~696	(매체별 정정청구) ○○○결혼정보(주) 對 문화일보(690), 인터넷 문화일보(691), 네이버(692), 네이트(693), 다음(694), 파란(695), 인터넷 디지털타임스(696)
조 정 대 상	『‹'다문화 코리아' 元年›잇속만 챙기는 결혼브로커…이주여성들 "한국에 속았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6월 2일자 7면,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불법 국제결혼 중개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간판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697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물 새고 얼어붙고…은평 뉴타운 주민들 '냉가슴' 』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9일자 20:00)
신청인주장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2011광주조정34	(정정청구) 유○○ 對 무등일보
조 정 대 상	『목포 모 언론사간부 詩碑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 공유지에 개인 詩碑를 세우면서 은행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불법 지원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10면)

2011제주조정42~43	(정정 · 손배청구) 강○○ 對 인터넷 제주일보
조 정 대 상	『무시한다 사장 폭행한 30대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정신병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이 가해자를 무시해서 폭행당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698	(정정청구) ○○○코리아 주식회사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KTX 선로고정장치 파손‥감사원 지적 무시』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6일자 21:30)
신청인주장	KTX 선로고정 장치의 고장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제조, 납품한 레일패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55	(반론청구)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對 부천매일
조 정 대 상	『사법당국, ○○여객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임원들이 버스운행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사법당국, ○○여객 수사 중"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2011서울조정699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4대강 준설 후 다시 자라난 낙동강 모래톱』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4대강 준설 후 사라진 모래톱 상당부분이 원래 크기와 비슷한 정도로 자라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에 의한 낙동강 모래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1면)

2011서울조정700~705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법인 전국○○○○○협회 對 노컷뉴스(700), 네이버(701), 네이트(702), 다음(703), 야후(704), 파란(705)
조 정 대 상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인력 중개업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74~78 참조)]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1년 7월 13일자)

2011부산조정15	(정정청구) 김○○ 對 울산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폭행 물의』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자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구 어린이집 폭행 물의 일반사례로 판정돼』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8일자 21:00)

2011서울조정706~707	(정정 · 손배청구) ○○○○○시스템즈코리아주식회사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40~50대 직원들에 '앉아, 일어섯' 오리걸음 시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임원까지 포함된 신청인 회사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군대식 얼차려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등 왜곡보도를 하여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면 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자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정정보도문 보관
이 행 결 과	『'40~50대 직원들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5일자)

2011서울조정708	(정정청구) 일산경찰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공정치 못한 수사' 일산경찰 인권위 제소 당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일산경찰서가 편파수사로 인해 국가인권위에 제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경기북부면 기사목록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8일자)

2011충북조정20~21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배○○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조 정 대 상	『청와대 국회 충청북도 영동군청 경찰 모두 통하니』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의 뒷배경을 내세우며 영세 어부의 어업권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충북조정22~2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1. ○○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2. 배○○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조 정 대 상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어로 딱 걸려』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6월 14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불법어로 작업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신청인 조합의 종사원으로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삼군신문 인터넷판 기사삭제)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어로 딱 걸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7월 15일자 1면)

2011서울조정709	(손배청구) 이○○ 외 2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 21 프로그램 『인신매매에 버려지는 이주여성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2일자 21:00)
신청인주장	남편과 시집 식구인 신청인들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부산조정16	(정정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 감사 막판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인 신청인이 직원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710~711	(정정 · 손배청구) 조현오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내사 전쟁' 하루만에… 檢, 조현오 청장에 선공 날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3일자 3면)
신청인주장	경찰청장인 신청인이 특정사건의 내사중단에 개입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712	(정정청구) 문희상 對 신동아
조 정 대 상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호 82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경기 저축은행 인수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51~5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합천지역자활센터 對 인터넷 경남일보,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합천자활센터 보조금 관리 허술』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일보 2011년 6월 21일자, 경남일보 6월 21일자 6면)
신청인주장	합천군이 신청인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해야 할 정기감사를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의도적으로 비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경남일보의 기사삭제, 조건부 추후보도)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경남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0번째 이상의 위치에 최소 만 2일이상 정정 및

처 리 결 과	반론보도문 게재하되,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이 행 결 과	『'합천자활센터 보조금'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일보 2011년 7월 12일자, 경남일보 7월 8일자 6면)

2011경기조정56	(정정청구) 한○○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시민 울린 경찰관 처벌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A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사업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는 사업 성사를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경인일보 인터넷판에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 이행방법 : 경인일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경찰관 직접 투자금 받거나 쓴적 없다』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1년 7월 6일자 23면, 경인일보 홈페이지 7월 6일자)

2011대전조정21	(정정청구) 금학지구대 對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공주경찰, '기자 낀 도박단 수사' 촉각』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6면)
신청인주장	경찰이 도박판을 벌인 일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판돈 규모를 줄이는 등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공주경찰 '기자 낀 도박단 수사' 촉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1일자 6면)

2011서울조정713~71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KBS-1TV, KBS-R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부품 하나에 자동차 산업 '흔들' 』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3일자 21:00) • KBS-R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07:45)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 산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4,500만원 정도인데 7,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전북조정15~1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군산시 對 전주일보, 인터넷 전주일보
조 정 대 상	(1) 『행정력 앞세워 민간업체 견제』 제하의 기사 (전주일보 2011년 6월 13일자 1면, 인터넷 전주일보 6월 13일자) (2) 『군산 '무리한 임피공단 조성' 문제점 없나?』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전주일보 2011년 6월 13일자 2면, 인터넷 전주일보 6월 13일자) (3) 『[사설] '임피농공단지' 개발사업 재고해야』 제하의 기사 (전주일보 2011년 6월 13일자 11면, 인터넷 전주일보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군산시가 농림부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임피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전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게시, 1일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팝업창으로 게시
이 행 결 과	『'임피농공단지 조성' 정정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주일보 2011년 7월 18일자 6면, 인터넷 전주일보 7월 18일자)

2011충북조정26~27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동양일보
조 정 대 상	『소통없는 교육위 운영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5면)
신청인주장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신청인이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충북조정28~3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증평군지부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증평군 공무원, 민원인 불법도청』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1년 6월 21일자 A03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민원인 불법도청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주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1년 7월 12일자 3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7월 12일자)

2011서울조정717~718	(정정 · 손배청구) (주)○○프로덕션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1) 『 '스파이 명월' , 방송 전부터 잇단 악재 '불길한데…?' 』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2) 『KBS 스파이 명월, '발연기 특집' 드라마 탄생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3) 『[온탕&냉탕] 전성기 맞은 김범수 VS 단단히 찍힌 스파이 명월』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중인 스파이명월이라는 드라마가 해외 촬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719~73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한국경제(719~720), 한경닷컴(721~722), 네이버(723~724), 네이트(725~726), 다음(727~728), 야후(729~730), 파란(731~732)
조 정 대 상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1년 6월 16일자 16면, 한경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학원이 있다는 보도에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의 IT직업전문학교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국경제 · 한경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79~83 참조)] ※이행방법 • **한경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되,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6월 17일자 A17면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 수단으로' 』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1년 7월 16일자 A13면, 한경닷컴 7월 15일자)

2011서울조정733~734	(매체별 정정청구) 국방부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1) 『軍 중기전력 13개 사업 재검토』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6월 15일자 1면, 쿠키뉴스 6월 14일자) (1) 『엄청난 예산 · 조직개편 발목… 절반이상 '구조조정' 』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6월 15일자 4면, 쿠키뉴스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군 중기전력 13개 사업에 대해 추진이 재검토되거나 규모 축소가 결정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쿠키뉴스** : 국민일보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날로부터 3일간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7월 23일자 2면, 쿠키뉴스 7월 23일자)

2011전북조정17~20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양○○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 **전북일보** : 『"상대편 주장만 들어주는 판결 너무 억울하다"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6면) • **인터넷 전북일보** : 『"상대편 주장만 들어준다"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55~5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강○○ 對 함양신문, 인터넷 함양신문
조 정 대 상	『마천면, 창원마을 주민들 더 이상 못참겠다!』 제하의 기사 (함양신문 2011년 6월 20일자 5면, 인터넷 함양신문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통과하는 지리산둘레길의 통행을 막고 마을 경제사업에 반대만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함양신문 기사삭제, 사과편지 발송,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함양신문 초기화면 중 사회교육란의 1번째 위치에 정정보도문의 주제목을 표시해서 게재. 주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표시,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및 문단 구분할 것, 최소 만 3일(4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상 정정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한 후 기사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이 행 결 과	『마천면 창원마을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함안신문 7월 18일자 5면, 8월 1일자 5면, 인터넷 함양신문 7월 20일자)

2011서울조정735~740	(매체별 정정청구) 황우석 對 한경닷컴(735), 네이버(736), 네이트(737), 다음(738), 야후(739), 파란(740)
조 정 대 상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경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1서울중재59~63 참조)] ※이행방법 • **한경닷컴** :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제하의 기사 (한경닷컴 2011년 7월 7일자)

2011서울조정741~74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양○○ 對 연합뉴스(741~742), KBS-1TV(743~744), KBS 홈페이지(745~746)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판결에 불만 50대 女,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 **KBS-1TV** : (1) KBS 뉴스5 프로그램 『재판 결과에 불만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9일자 17:18) (2) KBS 뉴스7 프로그램 『재판 결과에 불만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9일자 19:35) • **KBS 홈페이지** : 『재판 결과에 불만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747~748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내 아버지 목숨값, 재개발하면 얼만가요』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6월 17일자 28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6일자) (2) 『용산 · 두리반 '세입자 눈물' 이번에는 명동에서 흘리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6월 18일자 8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재개발 시행사의 만행에 맞서 싸우겠다는 명동2구역 상인대책위원장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은 세입자와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한겨레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날로부터 7일간 인터넷 한겨레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명동재개발 철거 농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7월 28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7월 26일자)

2011서울조정749	(반론청구)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명동 3구역, 제2의 두리반 투쟁 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이 세입자들의 물건을 찾지도 못하게 하는 등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명동재개발 철거 농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7일자)

2011서울조정750	(반론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명동 상가세입자 10여명 점거농성 돌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이 상인들의 농성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명동재개발 철거 농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2011서울조정751~752	(매체별 반론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SBS-TV, S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명동 한복판서 '재개발 충돌'…또 권리금 문제』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0일자 20:00) • **SBS 홈페이지** : 『명동 한복판서 '재개발 충돌'…또 권리금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측 용역업체 직원들이 강제로 철거 작업을 벌이기 위해 들이닥쳤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의 철거명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
처 리 결 과	• **SBS-TV** : 취하 • **SBS 홈페이지**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텍스트를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홈페이지 2011년 7월 8일자)

2011서울조정753~754	(매체별 반론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MB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서울 명동 상가세입자 농성…제2 용산사태 우려』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7일자 17:00) • **인터넷 MBN** : 『서울 명동 상가세입자 농성…제2 용산사태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이 각종 집기류를 부순 다음 돈이 될 만한 고철들을 모두 뜯어갔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물건들은 보관소에 보관시켰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MBN** :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진행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다른 보도와 동일한 속도로 낭독하게 하며, 조정대상보도를 화면 배경으로 하여 아래 자막으로는 반론보도문 제목을 지속적으로 표시 • **인터넷 MBN** : 조정대상기사의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MBN** : MBN 뉴스 프로그램 『'서울 명동 상가 세입자 농성 … 제2 용산사태 우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 **인터넷 MBN** : 『'서울 명동 상가 세입자 농성 … 제2 용산사태 우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2011경남조정59~60	(정정 · 손배청구) 합천지역자활센터 對 황강신문
조 정 대 상	『자활센터장 심모씨 기자실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6면)
신청인주장	합천군이 신청인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해야 할 정기감사를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의도적으로 비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합천자활센터 보조금'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2일자 6면)

2011경남조정61~62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남해신문
조 정 대 상	『[독자기고] 군민을 조롱하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4일자 6면)
신청인주장	남해지역 모 인터넷 신문 대표인 신청인이 남해신문 사장의 기자회견자리에서 거친 표현과 태도로 질문해서 기자회견을 망가뜨리는 작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본 건과 관련해 상호 후속보도 및 기고문 게재 금지, 부제소)

2011서울조정755	(손배청구) 추○○ 對 EBS-TV
조 정 대 상	극한직업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6일자 22:40)
신청인주장	동의없이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120만원)

2011경남조정63~64	(정정 · 손배청구) ○○○문고 진주시지부 對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조 정 대 상	『진주 북페스티벌 졸속 개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단체가 주최한 진주시 북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신간도 부족하고 어린이 도서 위주로만 전시돼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1년 7월 5일자 4면)

2011서울조정756~759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김○○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나는 후회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9일자 23:15) • iMBC: 『나는 후회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경찰관)이 내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편지 발송, 부제소)

2011서울조정760~761	(정정 · 반론청구) ○○대학교교회 對 CNBNEWS
조 정 대 상	『○○대학교교회 "저작권 침해? 그런 거 몰라"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엘리베이터 시공업체 등과의 계약 과정에서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경기조정57	(정정청구) 정○○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1면) (2) 『경제청이 만들어준 '마법의 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지목변경이 1년여만에 이루어져 공무원과의 뒷거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경인일보 홈페이지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경인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 **경인일보** : 『[정정 · 반론보도문]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3면) • **경인일보 홈페이지** : 『[정정 · 반론보도문]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2011충북조정32	(정정청구) 1. 충주대학교, 2. 황○○ 對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통합 갈등' 충주대 비밀 도청 '충격'』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충주대학교 비서실장인 신청인이 교수평의회의 회의 내용을 감시하고 비밀도청을 했으며, 또한 이를 시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58	(정정청구) 김○○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야구부 지도자 선임' ○○중 또 시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형위원회가 야구부 지도자 선임 문제로 교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강원조정3~4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춘천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리소장 성추행 판결, 입주민 불안』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일자 21:30)
신청인주장	춘천의 모아파트 관리소장이 성추행전력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보도로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2011경기조정59	(반론청구) 김○○ 對 안산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오피니언] 상록수의 허구에 빠진 최용신』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신청인주장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을 폄하하는 칼럼으로 인해 최용신 선생의 추모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 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고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표명이나 비평을 한 데 불과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2011서울조정762~763	(매체별 정정청구) 코리아○○○ 對 KBS-1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가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 관객들 우롱』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8일자 21:00) • KBS 홈페이지 : 『'가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 관객들 우롱』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획사가 청소년 수습단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인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 기사 제목 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독일 융에 뮌헨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유감』 제하의 기사 (KBS 홈페이지 2011년 7월 28일자)

2011서울조정764~768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764), 네이버(765), 네이트(766), 다음(767), 파란(768)
조 정 대 상	『여성 '몰카' 찍은 대학생의 황당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64~68 참조)]

2011서울조정769~770, 773~775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769), 네이버(770), 네이트(773), 다음(774), 파란(775)
조 정 대 상	『여성 다리만 골라 몰카 2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69~73 참조)]

2011서울조정771~772	(정정 ·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KBS, '수신료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KBS노동조합의 민주당 항의집회에 한국방송공사가 노조원 수송버스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776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복지부, 이번엔 의사협회에 밀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11면)
신청인주장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오던 '선택의원 등록제' (주치의 제도)가 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777, 880	(매체별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인터넷 소비자가만드는신문마이경제,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 **인터넷 소비자가만드는신문마이경제** : 『건강식품 · 음료만 만드는 무늬만 제약사 '눈총'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제약, 무늬만 제약사?…비타500 등 음료, 총 매출 46%』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의약품 개발보다는 음료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778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수신료 내도 KBS 못 보는데 인상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KBS 난시청 지역임에도,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수신료 인상에만 몰두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잉걸뉴스' 목록 사회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작성자는 KBS로 하되,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문] '수신료 내도 KBS 못 보는데 인상까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2011서울조정779~78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SBS-TV(779~780), SBS 홈페이지(781~782), 네이버(783~784), 네이트(785~786), 다음(787~788)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20:00) • **SBS 홈페이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 신분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특정인을 협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SBS-TV** : 취하 • **SBS 홈페이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 홈페이지**: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SBS)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홈페이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011년 7월 29일자)

2011서울조정789~79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연합뉴스(789~790), 네이버(791~792), 네이트(793~794), 다음(795~796), 야후(797~798)
조 정 대 상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 신분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특정인을 협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연합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해임 정모 경위 "협박사실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5일자)

2011서울조정799~80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1.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2. ANNI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6월 15일자 A6면, 동아닷컴 6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국제민주연대, ANNI)이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국가인권등급을 강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닷컴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8월 19일자 2면, 동아닷컴 8월 19일자)

2011서울조정803~804	(정정 · 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KBS-R
조 정 대 상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07:45)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 산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이 7,000만원이 넘고 발레오 전장의 영업결과 주요인이 노조활동과 관련있으며, 쌍용차의 자동차 한 대 생산에 106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언론사의 사실적주장이 아닌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가 아니다.)

2011서울조정805~818	(정정 · 손배청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머니투데이방송(MTN)(805~806), 인터넷 머니투데이(807~808), 네이버(809~810), 네이트(811~812), 다음(813~814), 야후(815~816), 파란(817~818)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방송(MTN)** : 4시N 프로그램 『'추가분담금' 폭탄』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조 정 대 상	1일자 16:00) • **인터넷 머니투데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입주 앞두고 '450억 추가 공사비' 요구에 주민들 반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건축조합이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 **머니투데이방송(MTN)** : 4시N 프로그램 중에 반론보도, 신청인 조합을 특정하지 않는 방법의 자료화면을 활용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조정대상보도 진행자의 낭독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내용을 낭독하도록 함, 반론보도문의 방송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 • **인터넷 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를 전재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이 인터넷 머니투데이에 게재되는 즉시 송고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머니투데이)가 반론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머니투데이)가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각 포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
이 행 결 과	• **머니투데이방송(MTN)** : 4시N 프로그램 『광육재건축조합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16:00) • **인터넷 머니투데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입주 앞두고 '450억 추가공사비' 요구에 주민들 반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2011제주조정44~45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제주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소문 무성한 폐가, 어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단독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소문 무성한 폐가, 어쩌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1일자)

2011서울조정819~820	(정정 · 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기업지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부품 하나로 자동차 흔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3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5천만원이 넘지 않음에도 연봉 7천만원 귀족 노동자들의 파업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821~835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중구청 對 아시아경제닷컴(821~823), 네이버(824~826), 네이트(827~829), 다음(830~832), 야후(833~835)
조 정 대 상	『중구는 전입자가 구청 장악, 내부 불만 고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타 구청 출신 중구청 간부들이 구청을 장악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기조정60~61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인천공항영종뉴스
조 정 대 상	『남북동 도로변 공항시설지역 내 개인 토지 지목변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공항시설지역 내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임야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10배 폭등했으며, 지목변경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천공항영종뉴스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메인화면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하며,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본지 302호 "남북동 도로변 공항 시설 지역 내 개인 토지 지목변경 특혜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천공항영종뉴스 2011년 7월 25일자 1면, 인천공항영종뉴스 홈페이지 7월 25일자)

2011경기조정62~63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1)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23면) (2) 『선수 · 부모에 강압적… 훈련은 소홀 자녀에게 해 끼칠까 쉬쉬할 수밖에』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23면)
신청인주장	모시청 수영부 감독인 신청인이 권력남용과 행사 방해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경기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경기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론'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1년 7월 21일자 23면, 경기신문 홈페이지 7월 21일자)

2011서울조정836~845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경찰청 對 문화일보(836~837), 인터넷 문화일보(838~839), 네이버(840~841), 네이트(842~843), 다음(844~845)
조 정 대 상	(1) 『'잠깨스' … '앞뚫' … 전 · 의경도 '왕따 악습'』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7월 6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7월 6일자)

조 정 대 상	(2) 『전의경도 '기수 폐단' … 40년간 가혹행위 '뿌리' 였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7월 6일자 4면,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7월 6일자)
신청인주장	전의경 부대에 가혹행위가 만연해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각 취하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취하 (2011서울중재84~89 참조)]

2011경남조정65~66	(정정 · 손배청구) 남해군 對 남해뉴스
조 정 대 상	(1)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6일자) (2)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3)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남해군 공무원이 군수와 연관되어 있고, 군수가 조선소 건립에 관한 대기업과의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2)에 대한 일부 정정은 가능하나, 나머지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는 허용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 위치에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최소 만 10일(240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2011경남조정67~7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조 정 대 상	『말로만 거제관광 이대론 안된다』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1년 7월 7일자 5면, 인터넷 한남일보 7월 7일자)
신청인주장	거제도관광협의회 자원봉사단장인 신청인이 거제시의 관광정책을 "쓰레기만 남은 관광정책"으로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경남조정71~7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권○○ 對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조 정 대 상	『진주 중앙병원장 일간지 회장 고소』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1년 7월 12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진주중앙병원의 운영권과 관련, 병원장을 공갈 ·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에서 아래로 10번째 이내 위치에 반론보도문의 주제목을 표시해서 게재, 주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최소 만 2일(4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상 반론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

처 리 결 과	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도 정정보도문(제목과 본문)을 삽입
이 행 결 과	『'중앙병원장 고소' 일간지 회장 전면 반박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7월 25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월 24일자)

2011충북조정33~35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손○○ 對 동양일보
조 정 대 상	『○○초 인조잔디 반대시위 교수 징계 받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4면)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반대한 신청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잡음을 일으켰다' 고 폄하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가치판단에 관한 보도로써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

2011서울조정846~847, 851~854	정○○ 對 조선일보(846~847 정정 · 반론청구), KBS-1TV(851 정정청구), KBS 홈페이지(852 정정청구), 인터넷 YTN(853 정정청구), 인터넷 한국대학신문(85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재정 파탄… 교수 ·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총장은 빼낸 돈으로 아들에 식당 차려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A10면) • **KBS-1TV** : KBS 뉴스7 프로그램 『경찰, ○○대학원대학 총장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4일자 19:00) • **KBS 홈페이지** : 『경찰, ○○대학원대학 총장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 **인터넷 YTN** : 『'교비 수억 원 횡령' …대학 총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 『총장이 교비 수억원 횡령…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모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교수채용 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학교 교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848~849	(정정 · 손배청구) 빈○○ 對 티브이데일리
조 정 대 상	(1) 『빈○○ 눈물, 루저 발언으로 상처 받은 마음 고백에 합격 영광』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2) 『빈○○ 눈물, 봉달희 빙의 눈물 열연 '곽경택 사로잡아'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3) 『빈○○ 사과 "루저 발언, 매일 반성했지만 나도 큰 상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4) 『빈○○ 반성, 루저발언 실수 반성 그리고 도전 '연기 보여주고 싶다'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5) 『빈○○ 눈물, 루저발언 사과 누리꾼들은 용서했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과거 미수다 프로그램에서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빈○○ 루저발언'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1일자)

2011서울조정850	(손배청구) 류○○ 對 KBS-2TV
조 정 대 상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살림충전] 5월의 신부! 결혼식도 알뜰하게!』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08:00)
신청인주장	알뜰한 결혼 방법을 소개하면서 고가의 웨딩샵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50만원)

2011광주조정35~36	(정정 · 손배청구) 서○○ 對 전남일보
조 정 대 상	『[굴렁쇠] "한달에 두 번 관계 이혼조건 어겼다" 전 부인 감금』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혼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부인을 감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8면)

2011경남조정75~78	(신청인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1. 이○○, 2. 함안군 對 함안신문
조 정 대 상	(1) 『특정인 차등발급으로 재산손해 김씨, 칠원면 상대 고소장 접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1면) (2) 『'특정인 봐주기' 행정 애궂은 피해자 만들어 '억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4면)
신청인주장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청에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칠원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0일자 1면)

2011대구조정13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칠곡 광역상수도관 파손 '아찔'』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8면)
신청인주장	낙동강 둔치 광역상수도관 파손과 관련, 이 수도관의 관리소유자가 수자원공사이며, 사고 발생 전 관로매설 지점에 대한 문의에 현장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12면)

2011서울조정855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친박단체 "표 모아달라" 대학생 룸살롱 접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후배들을 만나 "박근혜씨를 대통령 만들어야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64	(반론청구) ○○병원 對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짚 앞에 특고압변전실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물증축과정에서 단독주택이 50년간 사용해오던 기존의 출입로를 폐쇄하고 집과 4m거리에 위치한 곳에 특고압 변전실을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K노인전문병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천신문 2011년 7월 21일자 2면, 부천신문 홈페이지 7월 21일자)

2011서울조정856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홍수로 지천 피해도 심각』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14면)
신청인주장	낙동강 지류인 용호천의 콘크리트구조물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역행침식 때문에 파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반론보도, 경향닷컴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경향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8월 9일자 2면, 경향닷컴 8월 8일자)

2011제주조정46~47, 50~53, 60~61, 72~75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제주일보(46~47), 시사제주(50~51), 인터넷 제주도민일보(52~53), 네이버(60~61), 네이트(72~73), 파란(74~75)
조 정 대 상	• **인터넷 제주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 『여성 몰래 촬영한 20대 적발, 조사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 **시사제주** :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부위 집중촬영 대학생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공항 · 대학앞 여성 '몰카' 20대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제주일보 · 시사제주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네이트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제주일보 · 네이버** : 『[추후보도문] 여성 몰래 촬영한 20대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 **시사제주** : 『[추후보도문]카메라로 여성 특정부위 촬영 대학생 무혐의 처분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공항.대학앞 여성 '몰카' 20대 무혐의 처분』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011제주조정48~49, 66~67, 76~77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미디어제주(48~49), 다음(66~67), 파란(76~77)
조 정 대 상	『20대 여성 '몰카촬영' 대학생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 **미디어제주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파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미디어제주 · 다음** : 『[추후보도문] 여성 몰래 촬영한 20대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011제주조정54~59, 62~63, 68~69, 78~79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제주의소리(54~55), 제주인터넷뉴스(56~57), 제주포커스(58~59), 네이버(62~63), 다음(68~69), 파란(78~79)
조 정 대 상	• **제주의소리 · 네이버 · 다음 · 파란** : 『제주공항과 대학에서 여성 '몰카' 촬영 대학생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 **제주인터넷뉴스** : 『여성들 다리만 촬영한 대학생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 **제주포커스** : 『영감 얻기 위해 여성 상대 몰카 찍던 대학생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 **제주의소리 · 제주인터넷뉴스 · 제주포커스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파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제주의소리 · 네이버 · 다음** : 『[추후보도문] 제주공항.대학서 '몰카' 촬영 대학생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 **제주인터넷뉴스 · 제주포커스** : 『검찰, 여성 몰카 대학생 '무혐의 처분'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011제주조정64~65, 70~71, 80~81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제주투데이(64~65), 다음(70~71), 파란(80~81)
조 정 대 상	『20대 여성 다리 '몰카 촬영' 대학생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 **제주투데이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파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제주투데이 · 다음** : 『검찰, 여성 몰카 대학생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011서울조정857~858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1년 만에 10배 뛴 마법의 땅 "수상해"』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9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발제한된 신공항 확장예정부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목 변경하여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내용은 지엽말단적인 것이며, 해당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

2011서울조정859~860	(정정 · 손배청구) 장○○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1년 만에 10배 뛴 마법의 땅 "수상해"』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9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공항 확장예정부지의 부정한 지목 변경을 보도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65~66	(정정 · 손배청구) (사)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 對 군포신문
조 정 대 상	(1) 『주최 '분열', 희비 엇갈린 어린이날 행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2면) (2) 『군포시, 청소년지도연구원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군포시와 주관하여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미숙한 진행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에 비해 행사의 질이 낮다고 평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군포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군포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군포시와 청소년지도연구원 주최 어린이날 행사'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군포신문 2011년 7월 28일자 2면, 군포신문 홈페이지 7월 28일자)

2011부산조정17~19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아미동 묘비석' 일본전시 무산 해프닝』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구소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일교류 목적으로 주최한 행사가, 주최측의 무지와 준비소홀로 실례를 범하는 결과를 초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861	(정정청구) 엄○○ 對 평남민보
조 정 대 상	『동화○○공원 외부감사자료 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5면)
신청인주장	동화○○공원(이북 출신들의 동산) 이사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본부장인 신청인이 외부감사자료가 현 씨제이무역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동화○○공원 외부감사 자료 탈취"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5면)

2011서울조정862~866	(매체별 정정청구) 1. 인민일보 서울지국 , 2. 인민일보해외판 한국지국 對 뉴시스(862), 네이버(863), 네이트(864), 다음(865), 야후(866)
조 정 대 상	『중국기자 "힘없는 한국이…" 아리랑 관련 막말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통신사 소속 기자가 한국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90~94 참조)]

2011서울조정867	(손배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테크노마트 영업 재개 … 불안감 여전』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7일자 22:08) (2) KBS 뉴스12 프로그램 『테크노마크 영업 재개 … 입주민 불안 여전』 제하의 보도 (201년 7월 7일자 12:57)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테크노마트 영업 재개 … 불안감 여전』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8일자 07:55)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868~87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1. 한국언론진흥재단, 2. 이성준 對 일요서울(868~869), 인터넷 일요서울(870~871), 네이버(872~873), 네이트(874~875), 다음(876~877), 데일리팟(878~879)
조 정 대 상	• **일요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감히 언론재단을 건드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3일자 1면) • **일요서울 · 인터넷 일요서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데일리팟**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 정 대 상	이사장 "감히 언론재단을 건드리다니…"』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1년 7월 3일자 14면, 인터넷 일요서울 6월 28일자,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데일리팟 6월 29일자) • **일요서울 · 인터넷 일요서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MB 언론특보 출신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1년 7월 10일자 15면, 인터넷 일요서울 · 네이트 · 다음 7월 5일자, 네이버 7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재단 소속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일요서울 · 데일리팟**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7일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일요서울신문사)가 합의한 정정보도문을 뉴스검색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1년 8월 9일자 15면, 인터넷 일요서울 · 네이트 · 다음 8월 8일자, 네이버 8월 10일자, 데일리팟 8월 9일자)

2011강원조정5~6, 10~11	(기사별 정정 ·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한○○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강원 프로그램 『특혜 의혹…사실무근』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4일자 21:30) (2) KBS 뉴스9-강원 프로그램 『법인만 대토?』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2일자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춘천시의 특혜를 받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강원조정7	(정정청구) 춘천시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강원 프로그램 『특혜 의혹…사실무근』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4일자 21:30)
신청인주장	춘천시가 봉명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9 강원뉴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KBS 뉴스9-강원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5일자 21:30)

2011서울조정881	(손배청구) 최○○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2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배배상 170만원 (2011서울중재95 참조)]

2011서울조정882~883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신청인주장	인터넷 도박게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 업자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0만원, 부제소) ※ 이행방법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일자 23:00)

2011서울조정884~885	(정정 · 손배청구) ○○건설 對 시사IN
조 정 대 상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제하의 기사 (2011년 제201호 4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국회의원 친 · 인척 관계를 이용,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시사IN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시사IN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목록에 박스형태로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강릉 ○○건설 토착비리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시사IN 제203호 8면, 시사IN 홈페이지 8월 3일자)

2011경남조정79~82	(정정 · 손배청구) (병합) 권○○ 對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조 정 대 상	『진주○○병원 부도 관련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1년 7월 21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마치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 양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조건부 추후보도, 본 사건과 관련한 상호간 후속 보도 금지,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2011부산조정20	(정정청구) 1. 한국방송공사, 2. 이○○ 對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부울노보
조 정 대 상	『[뭐라 케쌌노?] 21세기 신 보도지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4면)
신청인주장	KBS부산방송 총국장이 '반값 등록금' 이슈가 야당의 선거전략이라는 전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이행 안 됨

2011경남조정83~84	(정정 · 손배청구) 정현태 對 남해뉴스
조 정 대 상	(1)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6일자) (2)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3)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남해군수인 신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약속을 해주고 부당한 일을 시켰고 신청인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 위치에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최소 만 10일(240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2011경남조정85~9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남매일(85~86), 인터넷 거제신문(87~88), 경남매일(89~90)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남매일 · 경남매일** : 『공짜 좋아하는 거제문화예술회관장』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매일 2011년 7월 20일자, 경남매일 7월 21일자 1면) • **인터넷 거제신문** : 『김○○ 관장 호텔 객실 무상 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인 신청인이 회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호텔 객실료 2천만원을 미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886	(반론청구) 1. ○○치과의원, 2. ○○메디 對 치의신보
조 정 대 상	『U모 네트워크 치위생사 천국?』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치과병원이 소속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간증 형태의 피라미드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887~889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외 2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21 프로그램 『수상한 바이올린』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1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프랑스 바이올린을 이태리 바이올린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현장21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SBS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표시
이 행 결 과	현장21 프로그램 『'수상한 바이올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0:50)

2011경기조정67~69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데스크] 꼴불견 시의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8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안산시의원인 신청인이 '안산시 추모공원 조사특위'에 안산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안산타임스 인터넷판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안산타임스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7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꼴불견 시의원' 칼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1년 8월 11일자 20면, 안산타임스 홈페이지 8월 11일자)

2011강원조정8	(반론청구) 김○○ 對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강릉○○대 총장 후보 '부적격'』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논문표절 등으로 강릉○○대 총장후보자로 부적격판정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연구논문 표절 부적격 판정 교과부에 행정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5일자 4면)

2011서울조정890~892	(매체별 정정청구) 1. 주식회사 ○○, 2. 이○○ 對 한겨레21(890), 인터넷 한겨레21(891), 인터넷 한겨레(892)
조 정 대 상	『○○, CEO와 노동자의 무덤?』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한겨레 21 제870호 20면, 인터넷 한겨레21 · 인터넷 한겨레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주)○○의 실적 부진이 창업주와 그 일가의 전횡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취하

2011서울조정893	(손배청구) 정○○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스페셜 프로그램 『노처녀가(老處女歌)』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3:05)
신청인주장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0만원, 부제소)

2011경남조정91~9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일간뉴스경남,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조 정 대 상	(1) 『진주 모 일간지 횡포 극심』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2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1일자) (2) 『경남도민신문 반론 보도 결정』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2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1일자)) (3) 『[사설] 모 일간지 언론정도 먼훗날 일인가』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5일자 15면)
신청인주장	경남도민신문이 협찬광고로 말썽을 빚고 있으며, 최근 언론중재위로부터 반론보도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조건부 추후보도, 본사건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2011서울조정894~895	(정정 · 손배청구) 서울지방경찰청 對 뉴스페이스
조 정 대 상	『조현오 비리 숨기다 '룸살롱황제'에 협박받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속칭 '룸싸롱 황제'인 이모씨가 모일간지 기자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 · 경제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조현오-룸살롱황제 연루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7일자)

2011서울조정896	(반론청구) ○○물산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종말산업' 뜬다· · 노아의 방주 주문까지』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9일자 21:00)
신청인주장	MBC 뉴스데스크의 쓰나미, 독도 관련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간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해당 보도로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1서울조정897~899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한국뇌성마비장애인○○○사랑회 외 3인 對 디지털함께걸음
조 정 대 상	『국가대표가 있는 축구단, 남편이 단장 부인이 감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 축구단의 감독과 단장을 신청인 부부가 맡는 등 족벌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함께걸음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교육/아동/여성면 중앙 상단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축구단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디지털함께걸음 2011년 8월 5일자, 함께걸음 9월 9일자 19면)

2011서울조정900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남포 항로 7년만에 흑자 됐는데 현정부서 적자→운항중단 수렁』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4면)
신청인주장	국토해양부가 남북한운항 해운회사의 운항항로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901~90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문화의거리상인회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가출 패밀리』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6일 23:00)
신청인주장	주민들에 의해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화의 거리'를 가출청소년들의 집합장소로 허위 보도하여, 신청인 상인회 소속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905~906	(매체별 손배청구) 오○○ 對 SBS-TV, S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 **SBS 홈페이지** :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과 관련, 게임머니 환전상이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SBS-TV** : 취하 (사유 : 손해배상 200만원) • **SBS 홈페이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07~908	(매체별 손배청구) 강○○ 對 SBS-TV, S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 **SBS 홈페이지**: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과 관련, 신청인을 도박중독자로 언급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발언 내용과 신체 일부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부제소) • **SBS 홈페이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95~96	(정정 · 손배청구) 이 ○ 對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조 정 대 상	『사회 지도층 종합 병원장 상습 폭력』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신청인주장	병원장인 신청인이 진료차 방문한 사람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909~910	(정정 · 손배청구) (주)○○○카 對 닥터스뉴스
조 정 대 상	『자동차 리스 '부가세 사기' 조심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리스차량에 대해 불법으로 부가세를 부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경영 · 재테크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2011경기조정70~71	(정정 · 손배청구) 평택시 對 평택자치신문
조 정 대 상	(1)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입찰과정 '잡음'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2일자 1면) (2) 『불투명한 통복전통시장 차양막 공사를 들여다본다! ①』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16면) (3) 『불투명한 통복전통시장 차양막 공사를 들여다본다! ②』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재래시장 시설 공사와 관련, 평택시가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불투명하게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평택자치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통복시장 차광막 설치공사 입찰과정 '잡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8월 9일자 2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7월 12일자)

2011서울조정911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4대강 준설토 붕괴…비닐하우스 400동 침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2일자 12면) (2) 『성주 참외밭 침수 "4대강 탓" "폭우 탓" 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3일자 9면)
신청인주장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비닐하우스 400여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으나, 침수의 직접적 원인은 배수장 처리용량을 초과한 집중호우 때문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0일자 2면)

2011서울조정912~913	(매체별 정정청구) 임○○ 對 대한급식신문, 인터넷 대한급식신문
조 정 대 상	『묵묵히 일하는 영양(교)사여 힘내라』 제하의 기사 (대한급식신문 2011년 7월 11일자 1면, 인터넷 대학급식신문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영양사협회 운영 실태에 관한 신청인(부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한영양사협회 임○○ 부회장 인터뷰 내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대한급식신문 2011년 9월 14일자 1면, 인터넷 대학급식신문 9월 9일자)

2011서울조정914~917	(매체별 반론 · 손배청구) (병합) 이○○ 對 KBS-1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1:00) (2)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제하의 보도 (7월 15일자 23:00)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제하의 보도 (7월 16일자 06:00) • **KBS 홈페이지** : 『 '날씬해지려다가…' 지방흡입 피해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지방흡입수술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보도하면서 의사인 신청인의 수술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초래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 홈페이지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KBS-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 내용과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조정대상보도 진행자의 낭독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내용을 낭독하도록 함 • **KBS 홈페이지** : KBS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 화면 삭제, 조정대상기사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의 방송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
이 행 결 과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8월 18일자 06:00)

2011충북조정36~37	(정정 · 손배청구) 방○○ 對 CJB-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끝없는 내홍, ○○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8일자 23:15)
신청인주장	외국교환학생인 신청인이 한 교수와 불륜 관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편지 발송, 부제소)

2011대구조정14~15	(추후 · 손배청구) 나○○ 외 3인 對 TBC-TV
조 정 대 상	T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유치원에서 성추행 의혹!』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4일 20:05)
신청인주장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인 신청인이 유치원에서 4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T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유치원 여야 성추행의혹 '내사종결' 』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8일자 20:40)

2011경기조정72~73	(정정 · 반론청구) 박○○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연수구 LPG충전소 '난항' 』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23면) (2) 『이권의혹 '연수구 LPG 충전소' 법원, 업체제기 행정심판 각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연수구에 LPG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로서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인천시 행정심판에 제기한 청구서가 각하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경인일보 인터넷판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6일자 3면)

2011경기조정74	(정정청구) ○○여객노동조합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정규직 미끼로 금품요구』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노조 간부가 정규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해 의혹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918~919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최○○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경사면에서 물 솟거나 내려앉으면 산사태 신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A14면) • **디지틀조선일보** : 『우면산 산사태 속 남부순환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신청인주장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사항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차량과 차량번호판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충북조정38	(정정청구) 하○○ 對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왜목마을 리조트 사기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당진 왜목마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진군과 허위서류로 관광지개발 업무협약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정식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당진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22	(정정청구) 진○○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진○○, 퇴임 이후 줄 소송 정계 은퇴 임박』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사원에 적발돼 정계를 은퇴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20	(정정청구) 1. 강릉시청, 2. 최명희 對 시사IN
조 정 대 상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제하의 기사 (2011년 제201호 40면)
신청인주장	강릉시가 공무원이 선거개입, 인사청탁, 민간업자와 유착 등 각종 토착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23	(정정청구) 하○○ 對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모 지방지 H기자, 리조트 분양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당진 왜목마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진군과 허위서류로 관광지개발 업무협약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정식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당진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2일자 4면)

2011서울조정921~94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사)○○○전쟁희생자유족회 對 국민일보(921~922), 동아일보(923~924), 문화일보(925~926), 세계일보(927~928), 한겨레(929~930), 한국일보(931~932), 헤럴드경제(933~934), 노컷뉴스(935~936), 디지틀조선일보(937~938), KBS-1TV(939~940), MBN(941~942), YTN(943~944), 연합뉴스(945~946)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태평양전쟁 보상금 받아주겠다" 유족단체 대표가 사기』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2011년 4월 23일자 6면) • **동아일보** : 『"태평양 전쟁 보상금 받아주마" 15억 가로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A12면) • **문화일보** : 『태평양전쟁 유족회 대표가… 피해자 3만명에 보상금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8면) • **세계일보** : 『태평양전쟁 유족회 회장이 주도 3만명 상대 15억원 보상금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8면) • **한겨레** : 『3만명 속았다…일제 강제동원 보상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9면) • **한국일보** : 『"일제 피해 보상금" 유족 등 3만명에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A08면) • **헤럴드경제** : 『태평양전쟁 피해보상 받자더니 유족 등 3만명에 5억 뜯어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11면) • **노컷뉴스** : 『태평양전쟁 피해 보상금 미끼로 수십억 챙긴 일당 덜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 **디지틀조선일보** : 『태평양전쟁 유족들 상대로 15억 사기친 유족회 회장』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 **KBS-1TV** : KBS 뉴스12 프로그램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장 보상금 사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 12:00) • **MBN** : 뉴스 2.0 프로그램 『강제동원 보상금 받아주겠다… 유족 상대로 15억 사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 18:00) • **YTN** : 뉴스현장(1부) 프로그램 『 "강제동원 보상금 받아 주겠다" … 15억 챙겨』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 10:00) • **연합뉴스** : 『 '일제 강제동원 보상금' 빙자해 15억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태평양전쟁 강제 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며 3만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문화일보 · 세계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헤럴드경제 · 노컷뉴스 · 디지틀조선일보 · KBS-1TV · 연합뉴스** : 각 취하 • **MBN**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MBN에도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YTN**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MBN 뉴스 2.0 방송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 MBN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1년 8월 19일자)

2011전북조정21	(손배청구) 장○○ 對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잠들어 버린 교원평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3면)
신청인주장	전북 교원능력평가제 추진계획 연수에 참석해 졸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할머니들 '글눈' 밝히는 아름다운 교감 선생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14면)

2011서울조정947	(추후청구) 이○○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경찰, 특별단속 39명 검거… '고위공직자 대부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공무원인 신청인이 제주산 옥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뇌물수수 의혹 道 해양수산국과장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4일자)

2011경남조정97~101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對 경남도민일보(97~98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경남도민일보(99~100 정정 · 손배청구, 97~98과 병합), 다음(10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독자와 톡톡] 이런 게 기삿거리 됩니까? 황당합니다』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7월 21일자 10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다음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경남신문이 경남예총 치부를 두루뭉실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사유 : 유감표시 공문 발송, 본 사건과 간련하여 상호간 후속보도 금지, 기사 삭제,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48	(정정청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對 신동아
조 정 대 상	『희토류 경제성 있다? 대국민 기만극이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호 148면)
신청인주장	국내에서 발견된 희토류 광맥에 경제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신동아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년 9월호 말길글길면, 신동아 홈페이지 9월 19일자)

2011제주조정82~98	(매체별 추후청구) 이○○ 對 제주일보(82), 인터넷 제주일보(83), 미디어제주(84), KCTV(85), 제주MBC-TV(86), 헤드라인제주(87), 제주포커스인터넷 뉴스(88), 시사제주(89), 인터넷 제주도민일보(90), 제주도민일보(91), 인터넷 제주매일(92), 제주매일(93), 인터넷 제민일보(94), 제민일보(95), 인터넷 한라일보(96), 한라일보(97), 제주의소리(98)
조 정 대 상	• **제주일보 · 인터넷제주일보** : 『토착 권력비리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일보 1월 12일자) • **미디어제주** : 『도내 고위 공직자 뇌물 먹고 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 **KCTV** : KCTV뉴스 프로그램 『공직사회 비리불감증』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2일자) • **제주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토착비리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조 정 대 상	1월 12일자 21:40)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토착비리 적발』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07:20) • **헤드라인제주** :『공무원-대학교수 등 39명, 공금횡령 등 혐의로 적발』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 **제주포커스인터넷뉴스** :『"혈세 착복은 관행?" 공직자.현직의원.교수, 토착비리 만연』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 **시사제주** :『제주도청 과장에 대학교수까지 '비리' 잇따라 포착돼』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제주도민일보** :『대학교수는 횡령, 공무원은 뇌물… "심각하네"』제하의 기사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2011년 1월 12일자, 제주도민일보 1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제주매일** :『연구비 횡령,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 '심각'』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 **제주매일** : (1)『경찰, 작년 3대 비리 39명 검거』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4면) (2)『[사설] 공직자들 비리, 한도 없고 끝도 없다』제하의 기사 (1월 13일자 11면) • **인터넷 제민일보** :『공금횡령 뇌물 등 혐의 공무원, 대학교수 적발』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 **제민일보** :『"관행인데 뭘" 고위층 비리 심각』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4면) • **인터넷 한라일보** :『경찰 지난해 3대비리 혐의로 총 39명 입건』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 **한라일보** :『지난해 3대비리 연루 39명 경찰행』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4면) • **제주의소리** :『제주대 교수는 연구비 횡령, 도청 간부는 뇌물수수』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공무원인 신청인이 제주산 옥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제주일보 · KCTV · 시사제주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제주도민일보 · 인터넷 제주매일 · 제주매일 · 제민일보 · 한라일보 · 제주의소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인터넷 제주일보 · 미디어제주 · 헤드라인제주 · 제주포커스인터넷뉴스 · 인터넷 한라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제민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제주MBC-TV** : 취하
이 행 결 과	• **제주일보** :『옥돔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무혐의로 밝혀져』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6일자 4면) • **KCTV** : KCTV뉴스 프로그램『제주옥돔관련 수뢰공무원 '무혐의'』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5일자 19:00) • **시사뉴스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제주도민일보 · 제민일보** :『[추후보도문] 제주옥돔 관련, 수뢰 공무원 무혐의로 밝혀져』제하의 기사 (시사뉴스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2011년 8월 4일자, 제주도민일보 8월 8일자 1면, 제민일보 8월 9일자 4면) • **인터넷 제주매일** :『추후보도문』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4일자) • **제주매일** :『제주옥돔 관련 수회 혐의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5일자 4면) • **한라일보** :『'옥돔 명품화 사업' 수뢰혐의 공무원 무혐의』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5일자 5면) • **제주의소리** :『제주옥돔 수수 혐의 받던 제주도 고위 간부 '무혐의' 밝혀져』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4일자)

2011경기조정75~76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수강생 77%에 '묻지마 F난사' 학생자퇴 부른 '학점 참사'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1면)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묻지마식 F학점 부여로 인해 학생이 자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24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對 충청탑뉴스(CTN)
조 정 대 상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수의계약은 선거용?』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신청인주장	농어촌공사 홍성지사가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49~95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대학 對 중앙일보(949~950), 인터넷 중앙일보(951~952), 뉴시스(953~954)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인터넷 중앙일보** : 『'논문표절' 임○ 총장, 교수 연봉 1000만원 올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8월 1일자 8면, 인터넷 중앙일보 8월 1일자) • **뉴시스** : 『○○대학 총장 석사학위 논문 '취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논문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대학 총장은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보도했으나, 교원 인사규정에는 총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강원조정9	(정정청구) 1. 강릉시청, 2. 최명희 對 하이강릉
조 정 대 상	『시사IN ⇒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강릉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토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55~956	(정정 · 반론청구) 국토해양부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 『수해 나면 속으로 웃는 공직자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1면) (2) 『2년간 공직 비리 실태, 1위 행안부 · 2위 교과부 · 3위 국토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3면)
신청인주장	최근 2년간 공직비리실태 조사에서 국토해양부가 11건으로 국가기관 중 3위를 차지했고, 수해복구공사를 대부분의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2면)

2011서울조정957~96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배○○ 외 2인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 **미디어오늘** :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4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YTN임직원)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골프라운딩에 대해 '황제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61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약업닷컴
조 정 대 상	『○○제약, 식품비중 절대적 제약사 명칭 왜 쓰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제약회사가 식음료 개발과 판매에만 공을 들이면서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제약회사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102~10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해시 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1) 『'힘' 따라 바뀌는 김해시 건축허가』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7일자) (2) 『[사설] 아전행세 공무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9일자 15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경남신문이 경남예총 치부를 두루뭉실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18일자 2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17일자)

2011서울조정962~963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낙지로 인한 질식사? 내 딸은 왜 죽었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2일자 20:50)
신청인주장	낙지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남자친구인 신청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64	(손배청구) ○○콘크리트(주) 對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특혜시비 제기, 담당 과장에서 욕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호안 블록을 생산 · 납품하는 신청인 업체가 인맥 등을 이용해 타 업체를 누르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기사목록에 3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G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5일자)

2011서울조정965~96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최○○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EBS 인기 강사의 황당한 근현대사 강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현대사 강의를 하는 중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강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9월 1일자 2면, 디지틀조선일보 9월 1일자)

2011서울조정969~97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지○○ 對 당당뉴스, 에클레시안뉴스
조 정 대 상	• **당당뉴스** : 『성추행 공범으로 몰렸던 삼일교회, 사과받고 소송취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 **에클레시안뉴스** : 『삼일교회, 지○○에 대한 소송취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삼일교회(고소인) 측과 대화를 통한 입장 조율의 결과로 사과문을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벌금 및 거액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으로 인해 사과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각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삼일교회에 대한 지 모씨의 사과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당당뉴스 2011년 8월 27일자, 에클레시안뉴스 8월 29일자)

2011서울조정973~974	(정정 · 손배청구) 이경춘 對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서울의소리)
조 정 대 상	『한나라 부산 영도구 '깡패 구의원 이경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부산 영도구 구의원)이 3차 희망버스 참가자 및 시민들에게 각목을 들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손배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중 취하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의소리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처 리 결 과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나라 부산 영도구 '깡패 구의원 이경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2011경남조정106~107	(정정 · 손배청구) 오○○ 對 한려투데이
조 정 대 상	(1) 『통영지역 병원, 환자 유치경쟁에 의료서비스 실종』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1면) (2) 『[편집국의 창] – 지역병원 환자유치 경쟁보다 의료서비스 질 높여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통영○○병원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1면)

2011광주조정37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 매매 성행』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6일자 21: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어린이집 불법매매 '특별점검'에 '수사착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법 매매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 어린이집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76~977	(반론 · 손배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성직인가? 사업인가?』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2일자 23:15)
신청인주장	경기도 가평에 건축 중인 납골당이 신청인(송광사)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건축 및 운영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iMBC 기사수정, iMBC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iMBC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동영상 중 신청인 사찰의 주지스님 사진 삭제,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텍스트를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송광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1년 9월 19일자)

2011경남조정110~111	(매체별 반론청구) 심○○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합천군 지역자활센터장 기사불만 기자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6월 22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2011년 6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가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8월 26일자 8면) (2) 『[알려왔습니다] '기자에 폭력행사 물의' 기사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신문 2011년 8월 26일자)

2011서울조정978~97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회도서관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힘 있는 곳에 책 주는 국회도서관 '끼리끼리 기증'』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1년 7월 26일자 30면, 인터넷 시사저널 7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특정 실세 의원들에게 책을 기증하는 등 현 국회도서관장 취임 이후 도서기증 형태가 변화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80~98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유재일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힘 있는 곳에 책 주는 국회도서관 '끼리끼리 기증'』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1년 7월 26일자 30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1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회의원들에게 기증한 책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피신청인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77~78	(정정 · 손배청구) 평택시 對 평택자치신문
조 정 대 상	(1) 『통복시장 차광막공사 돈봉투 건네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8월 9일자 1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8월 9일자) (2) 『불투명한 통복전통시장 차광막 공사를 들여다본다! ③』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8월 9일자 16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추진한 통복전통시장 차광막공사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에 7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결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9월 6일자 2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9월 6일자) (2) 『평택시, 통복전통시장 차양막 공사 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9월 6일자 2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9월 6일자)

2011경남조정112~117, 120~12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허 ○ 對 인터넷 밀양신문(112~113), 경남신문(114~115), 뉴시스(116~117), 인터넷 경남신문(120~121, 114~115와 병합), 밀양뉴스(122~123), 네이버(124~125), 다음(126~127), 밀양신문(128~129, 112~113과 병합)
조 정 대 상	• **인터넷 밀양신문 · 밀양신문** : 『특정인을 위한 시민장학재단 인가? 선발규정무시, 공정성과 형평성 도마 위로』 제하의 기사 (인터넷 밀양신문 2011년 8월 10일자, 밀양신문 2011년 8월 10일자 1면) • **경남신문 · 인터넷 경남신문** :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구린내』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8월 11일자 6면, 인터넷 경남신문 8월 11일자) • **뉴시스 · 네이버 · 다음** : 『밀양 시의원 딸 부적절한 장학금 수령…뒤늦게 반납』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0일자) • **밀양뉴스** :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의혹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딸이 규정을 어기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의 비판이 일자 이를 뒤늦게 반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밀양신문 · 밀양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유감표명 공문 발송, 인터넷 밀양신문 기사삭제) • **경남신문 · 인터넷 경남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 **밀양뉴스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신문** : 홈페이지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 **뉴시스**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 **인터넷 밀양신문 · 밀양신문** : 『밀양시민장학재단관련 정정 및 반론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밀양신문 2011년 9월 1일자, 밀양신문 9월 7일자 1면) • **경남신문 · 인터넷 경남신문** : 『'밀양시민장학재단'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9월 1일자 6면, 인터넷 경남신문 9월 1일자) • **뉴시스 · 네이버 · 다음 · 밀양뉴스** : 『밀양시민장학재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 네이버 · 다음 2011년 9월 1일자, 밀양뉴스 9월 2일자)

2011경남조정118~119	(정정 · 손배청구) 함안군의회 對 The함안신문
조 정 대 상	(1) 『[함안논단]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2면) (2) 『인사청탁 안들어주자 '태클걸기?'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3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의회가 인사청탁을 군수가 들어주지 않자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군의회 예산삭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2면)

2011서울조정984~98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아일랜드 對 인터넷 중앙뉴스, 인터넷 파이낸셜신문
조 정 대 상	• **인터넷 중앙뉴스** : (1) 『[단독] 춘천시청,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리한 건축허가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2) 『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8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신문** : 『OOO 아일랜드, "춘천시 부산저축은행 자금 인지, 무리한 건축허가 추진"[1]』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불법건축 승인을 했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88~99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1. 권○○, 2. 지관근 對 인터넷 대한투데이, 대한투데이
조 정 대 상	『성남시, 어린이집 불법영업 방치 '충격'』 제하의 기사 (인터넷 대한투데이 2011년 6월 21일자, 대한투데이 6월 2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1의 남편인 성남시 시의원 신청인 2가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일부 쟁점에 대해 신청인측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부제소 조항을 삽입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011경기조정79~8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1. 권○○, 2. 지관근 對 굿타임즈넷(79~80), 성남저널(81~82), 성남N(83~84), 성남데일리(85~86)
조 정 대 상	• **굿타임즈넷 :** (1) 『성남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인가'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2)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 **성남저널** : (1)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2)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 **성남N** : (1)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2)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 **성남데일리** : (1)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어떻게..."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2일자) (2)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1의 남편인 성남시 시의원 신청인 2가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굿타임즈넷**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일부 쟁점에 대해 신청인측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부제소 조항을 삽입

처 리 결 과	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성남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성남N · 성남데일리**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굿타임즈넷**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 **성남저널** :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특혜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성남저널 2011년 9월 7일자)

2011서울조정992~993	(매체별 정정청구) 빈○○ 對 데일리안, 뉴스엔
조 정 대 상	• **데일리안** : 『빈○○ "루저 발언 탓 눈물의 세월, 결국 활동 중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 **뉴스엔 :** (1) 『'기적의 오디션' 빈○○ 눈물 회상 "루저 발언 후 악플 때문에 방송중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2) 『빈○○ 루저발언 후회의 눈물 "잘못된 발언으로 큰 상처입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3) 『빈○○ 반성, 루저발언 잘못으로 큰 상처.. 김정은 "강해져야한다" 충고』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4) 『'기적의 오디션' 빈○○ 루저발언 후회 고백, 네티즌 따뜻한 격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5) 『빈○○ 사과-기적의 오디션 논란,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닌데 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과거 미수다 프로그램에서 "남자 키 180이하는 루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데일리안** : 『'빈○○ 루저발언' 관련기사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6일자) • **뉴스엔 :** 『[바로잡습니다] 7월 2일자 '빈○○ 루저발언'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6일자)

2011서울조정994~100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아일랜드 對 서울의소리(994~995), 신대한(996~997), The dailynews(998~999), 한국NGO신문(1000~1001)
조 정 대 상	• **서울의소리** : 『"OOO아일랜드...1300억원 부산 저축은행 자금유입"』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 **신대한** : (1) 『춘천시청,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리한 건축허가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조 정 대 상	(2)『OOO아일랜드, "춘천위도, 부산저축은행 1335억 불법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3)『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4)『OOO, "춘천위도 개발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봉이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5)『OOO, "양심불량 어데까지, 통곡 저축은행"』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 **The dailynews**: (1)『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2)『춘천시청,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리한 건축허가 방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 **한국NGO신문** : (1)『춘천시,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리한 건축허가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2)『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 국회 특검으로 이어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불법건축 승인을 했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의소리**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신대한 · The dailynews · 한국NGO신문**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신대한**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이 노출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검색창에 '○○○'을 검색단어로 입력하면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 **The dailynews · 한국NGO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모든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신대한** :『[○○○아일랜드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 **The dailynews · 한국NGO신문** :『○○○아일랜드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5일자)

2011경기조정87~88	(정정 · 손배청구) (주)○○○아일랜드 對 e뉴스wave
조 정 대 상	(1)『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8일자) (2)『OOO아일랜드, "춘천위도, 부산저축은행 1335억 불법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3)『"OOO아일랜드...1300억원 부산 저축은행 자금유입"』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4)『OOO아일랜드, "1조4천억 부실 저축은행 가능한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

신청인주장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불법건축 승인을 했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주)○○○아일랜드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2011전북조정22~2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김○○ 對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밥알 교사' 징계하라』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1년 8월 19일자 10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8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남긴 밥알 수만큼 날짜를 계산해 봉사활동을 지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002	(정정청구) 김○○ 對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서울 심장부서 … 민노총 시위대, 北비판영화(북한 인권 고발한 '김정일리아') 힘으로 저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민노총 시위대가 서울광장에서 북한인권비판영화 상영 집회를 하던 다른 단체를 힘으로 저지했다고 보도해 민노총 시위대에 참여했던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 없고,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1003~1004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맥도날드 할머니 폭행사건'의 진실은? … 양쪽 입장 엇갈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일자) (2) 『[단독]맥도날드 할머니, 최초 입장공개 "이씨는 무서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일명 '맥도날드 할머니 폭행' 사건과 관련, 할머니에게 옷을 주려다 시비가 붙은 신청인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구조정16~1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건설(주) 對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경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경주 고속도공사 비소석재 사용』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2011년 8월 15일자, 경북매일신문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시공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비소석재 문제를 무마하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해당 마을 이장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경주 고속도공사 비소석재 문제 합의금과는 관련 없어'』 제하의 기사 (경북매일신문 2011년 9월 8일자 4면)

2011서울조정1005~100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하○○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한의학 칼럼] 녹내장, 턱관절 바로잡으면 증상 개선』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8월 8일자 건강섹션, 인터넷 중앙일보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녹내장에 관한 신청인의 칼럼을 동의 없이 수정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중앙일보에 후속 칼럼 게재)
이 행 결 과	『[한의학 칼럼] 녹내장, 한방통합치료로 시력 개선』 제하의 기사 (인터넷 중앙일보 2011년 9월 1일자)

2011제주조정99~126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1. 임○○, 2. 이○○ 對 제주일보(99~100), 인터넷 제주일보(101~102), 한라일보(103~104), 인터넷 한라일보(105~106), 제민일보(107~108), 인터넷 제민일보(109~110), 인터넷 제주도민일보(111~112), 제주의소리(113~114), 미디어제주(115~116), 제주투데이(117~118), 헤드라인제주(119~120), JIBS-TV(121~122), KBS-1TV(123~124), 제주MBC-TV(125~126)
조 정 대 상	• **제주일보** : 『공동사업 위장 보조금 12억 꿀꺽』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제주일보** : 『보조금은 '눈 먼 돈' … '위장' 법인 설립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 **한라일보** : 『개인사업하며 보조금 수령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4면) • **인터넷 한라일보** : (1) 『법인공동사업장 위장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2) 『개인사업하며 보조금 수령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3) 『[사설] '보조금 不法'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 **제민일보** : 『수산물공장 보조금 12억 불법 수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제민일보** : 『수산물가공공장 12억 보조금 불법 수령 혐의 3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악취 민원 '어묵공장'…불법으로 보조금 받아 사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 **제주의소리** : 『'악취' 나는 제주시 어묵공장…보조금 12억 부정 수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 **미디어제주** : 『조합원 뻥튀기 보조금 12억원 편취 2인, 공무원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 **제주투데이** : 『명도암 어묵공장, 보조금 부당수령 '도 넘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 **헤드라인제주** : 『수산 보조금 12억원 편취, 사업자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조 정 대 상	• **JIBS-TV** : 종합뉴스 프로그램 『보조금 불법 수령』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7일자 20:25) • **KBS-1TV** : 뉴스 7 프로그램 『불법으로 보조금 타낸 영어조합법인』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7일자 19:05) • **제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불법 보조금 3명 입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7일자 21:45)
신청인주장	영어조합법인 공동대표인 신청인들이 개인사업을 조합협업사업으로 위장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제주일보** : 『경찰서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제주일보 · 한라일보 · 인터넷 한라일보**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제하의 기사 (인터넷 제주일보 2011년 8월 27일자, 한라일보 8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29일자) • **제민일보 · 인터넷 제민일보** :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 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제민일보 2011년 8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민일보 8월 28일자)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헤드라인제주**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 **제주의소리**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 **미디어제주** : 『<추후보도문> 보조금 부정 수령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6일자) • **제주투데이** : 『[추후보도문]보조금 수령 혐의 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 **JIBS-TV** : 종합뉴스 프로그램 『무혐의 처분 내려져』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5일자 20:25) • **KBS-1TV** : 뉴스 7 프로그램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 영어조합 대표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6일자 19:05) • **제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 영어법인 대표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6일자 21:45)

2011서울조정1009~1010	(매체별 반론청구) 경찰청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 **문화일보** : 『경찰 성과주의 탓?』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8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성과주의 경찰' 절도범 검거율 최악』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의 성과주의로 인해 강력범죄가 증가하였으며, 절도 검거율이 감소하는 등 민생 치안은 등한시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9월 23일자 7면, 인터넷 문화일보 9월 23일자)

2011경남조정130~13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권민호 對 새거제신문, 인터넷 새거제신문
조 정 대 상	『문예회관 아트호텔 "잡음이 시끄럽네…"』 제하의 기사 (새거제신문 2011년 8월 18일자 4면, 인터넷 새거제신문 8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이 아트호텔 수사와 관련해 신청인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경남조정134~135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전국 이 · 통장연합회 함안군 지회 對 함안뉴스
조 정 대 상	『이장단 협의회 해외여행 경비 찬조 요청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8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에서 해외여행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경비 찬조를 요청하고 다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합의서 외부공개 금지,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2011서울조정1011~1014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SBS-TV, S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SBS-TV** : (1) SBS 8 뉴스 프로그램 『○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3일자 20:00) (2) 나이트 라인 프로그램 『○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4일자 24:05) (3) 출발! 모닝와이드(3부) 프로그램 『○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6일자 07:30) • **SBS 홈페이지**: 『명문 사립 의대생들,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모대학 의대생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관련 없는 신청인의 펜션 전경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3부) 프로그램『정정보도문』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1일자 07:30) • **SBS 홈페이지**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011서울조정1015~101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프로덕션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외주사 살 길은 '시간 전쟁' … 배우들 다쳐도 촬영 강행』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8월 23일자 2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한예슬 사태'는 드라마 제작 현실을 무시하고 신청인 회사가 배우에게 주5일 촬영을 약속해 빚어졌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인터넷 한국일보에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스파이 명월', 10월 일본 아사히TV서 방송 … 완성도 높은 편집 선보일 터』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9월 7일자)

2011서울조정1019~1020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로컬(LOCAL)세계
조 정 대 상	(1)『주민협의체 위원이 '주민지원금' 횡령?』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3일자 5면) (2)『천안 ○○아파트 비리 속속 드러나』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5면)
신청인주장	주민협의체 위원인 신청인이 기금을 횡령하고 아파트 경매 및 열병합발전시스템 선정과정에서 뇌물수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전북조정26	(정정청구)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전북고속지부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버스업체 선고 무시』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4일자 21:30)
신청인주장	전북고속 노조가 파업 중이며 단체교섭을 사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파업 중인 노조는 민노총 소속의 노조이며 단체교섭은 교섭권을 갖고 있는 신청인 조합과 체결하였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021	(정정청구) 이○○ 對 CNBNEWS
조 정 대 상	『부산시 기장군 1호차 운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2명』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기장군수가 여성 면장인 신청인과 함께 새벽에 정관면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 등 부부 사이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 '오규석 군수가 기장군수 인지, 정관면장 인지 의문스럽다' 관련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011서울조정1022~1025	(매체별 반론청구) 남○○ 對 KBS-1TV(1022), MBN(1023), YTN(1024), 연합뉴스(1025)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12 프로그램 『부산시 수협 간부, 2,000억 대 '불법 대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2:00) (2)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네트워크] 부산 수협, 2,400억 불법 대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23:00) • **MBN** : 뉴스 M 프로그램 『[부산] 부산수협 2천400억 원 부당 대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5:00)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부산] 돈 떼먹은 자갈치 '큰 손' … 수협 '휘청'』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5:00) • **연합뉴스** : 『부산해경, 부정대출 부산수협 전 간부 등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부산시 수협 과장인 신청인이 불법대출 등으로 부산시 수협의부실을 초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MBN · 연합뉴스** : 각 취하 • **YTN**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96 참조)]

2011부산조정21~23	(매체별 반론청구) 남○○ 對 KNN(21), 인터넷 부산일보(22), 부산일보(23, 22와 병합)
조 정 대 상	• **KNN** : KNN 뉴스 투데이 프로그램 『수협간부 부정대출 또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6:30) • **인터넷부산일보 · 부산일보** : (1) 『부산시수협 2천400억 원 부정대출』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1년 8월 2일자, 부산일보 8월 2일자 1면) (2) 『부산시수협 또 대형 대출 비리, 고객 예탁금 수천 억 '내 돈 주무르듯'』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1년 8월 2일자, 부산일보 8월 2일자 4면) (3) 『부산시수협 前』 임직원 '부정대출 잔치'』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1년 8월 2일자, 부산일보 8월 2일자 27면)
신청인주장	부산시 수협 과장인 신청인이 불법대출 등으로 부산시 수협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경남조정136~14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심○○ 對 황강신문(136~137), 창원일보(138~139), 인터넷 창원일보(140~141, 138~139와 병합), 경남연합일보(142~143), 인터넷 경남연합일보(144~145, 142~143과 병합), 한남일보(146~147), 인터넷 한남일보(148~149, 146~147과 병합)
조 정 대 상	• **황강신문** : 『자활센터장 심모씨 기자실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6면) • **창원일보 · 인터넷 창원일보** : 『기자에게 폭력 행사한 합천자활센터장』 제하의 기사 (창원일보 2011년 6월 22일자 7면, 인터넷 창원일보 6월 21일자) • **경남연합일보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합천지역 자활센터장 기자실서 난동』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1년 6월 23일자 4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6월 22일자) • **한남일보 · 인터넷 한남일보** : 『합천군 브리핑룸 기자 폭행 당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2일자 1면, 인터넷 한남일보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가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황강신문** : 취하 • **창원일보 · 인터넷 창원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경남연합일보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한남일보 · 인터넷 한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창원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 삽입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인터넷 한남일보** :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 삽입
이 행 결 과	• **창원일보 · 인터넷 창원일보** : 『합천자활센터장 "일방적 폭행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창원일보 2011년 9월 16일자 2면, 인터넷 창원일보 11월 23일자) • **경남연합일보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합천자활센터장 '일방적 폭행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1년 10월 14일자 4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10월 14일자) • **한남일보 · 인터넷 한남일보** : 『합천자활센터장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1년 9월 23일자 2면, 인터넷 한남일보 9월 23일자)

2011서울조정1026	(손배청구) 장○○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스페셜 프로그램 『노처녀가(老處女歌)』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3:05)
신청인주장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027	(반론청구) 창조한국당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단독] 창조, 허위 전세계약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신청인주장	허위 전세계약으로 인한 창조한국당의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 주요 당직자들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정치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표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창조, 허위 전세계약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2011대전조정25~2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주민협의체 위원이 '주민지원금' 횡령?』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3일자 5면) (2) 『천안 ○○아파트 비리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5면)

신청인주장	목천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폐촉위원회 폐촉위원인 신청인이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이 주민지원금 횡령?' 보도 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5면)

2011서울조정1028~1029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해비치재단 다문화센터 건립 '수상한 입찰'』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8월 31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리모델링 업체 선정 심사과정에 현대그룹 계열 해비치재단이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범현대 계열사가 선정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사회면 초기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3면) • **인터넷 한국일보** : 『'해비치재단 다문화센터 건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2011서울조정1030	(정정청구) 강현석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7 프로그램 『고양시, 사무관 승진 때 4,000만 원 상납』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3일자 19: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고양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반론보도와는 별개로 정정보도 역시 필요하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7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2011서울조정1031	(손배청구) 박○○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 수수료 내린다』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1:00)

신청인주장	카드사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2011서울조정1032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기업] 달콤한 음료맛에…최씨고집도 '옛말'』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식품개발에만 주력하여 의약품 사업 및 신약 개발 성과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산업/IT홈' 란을 통해 반론보도 게시를 시작하되, 24시간 이상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보도문 제목이 노출되도록 함, 이후 기사검색창에서 '○○제약'을 검색단어로 입력하면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이행 안 됨

2011서울조정1033~1034	(매체별 정정청구) 국방시설본부 對 SBS-TV, S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SBS-TV :** (1) SBS 8 뉴스 프로그램 『北 방사포에 망가지는 요새』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6일자 20:00) (2) SBS 8 뉴스 프로그램 『가짜보고서로 승인 요청』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6일자 20:00) (3) SBS 8 뉴스 프로그램 『군-업체 유착 징계 통보』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2일자 20:00) (4) 『다 짓기도 전에 붕괴 걱정』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3일 20:00) • **SBS 홈페이지**: (1) 『北 방사포에 망가지는 서북도서 요새』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6일자) (2) 『'가짜 보고서' 알고도 승인…성능확인 없어』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6일자) (3) 『감사원 "군-업체 유착"…3명 징계 통보』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4) 『'부실공사' 방호진지, 다 짓기도 전에 붕괴 걱정』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서북도서 방호진지에 얇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취약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부산조정24	(정정청구) 김○○ 對 KNN
조 정 대 상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재활요양병원 아파트 입점 갈등』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일자 07:4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업을 추진 중인 재활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KNN 홈페이지 기사삭제) ※ 이행방법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한성○○○○병원 입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0일자 07:30)

2011서울조정1035~103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테크정보주식회사 對 머니투데이, 인터넷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PTC 국내 총판 ○○테크 가짜 라이선스 위법 맞다』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29일자 14면, 인터넷 머니투데이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PTC(글로벌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라이선스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039	(정정청구) 강○○ 對 주간 기독신문
조 정 대 상	『[해설] 총회 정기감사 종합평가, 어떤 내용 들어있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5면)
신청인주장	장로교 총회세계선교회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선교회 재정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 왔으며, 감사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에도 불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GMS 사무총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9일자 5면)

2011서울조정1040	(반론청구) (주)○○교육 對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교육 '유령교사'로 부정영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18면)
신청인주장	학습지 회사인 신청인이 퇴직한 교사 이름으로 회원을 관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퇴직 직원에 대한 전산 처리가 늦어진 것일뿐 고의로 불법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18면)

2011경남조정150~151	(정정 · 손배청구) 심○○ 對 합천대야신문
조 정 대 상	(1) 『지역자활센터 관련 '합천이 시끄럽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5일자 사회면) (2) 『[사설] 자활센터는 특별감사로 의혹 벗어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5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일간지 보도내용에 대해 중재위에 신청하는 등 발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041~1042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집중취재] UN, 경인운하 사업 '저탄소 녹색인증'』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1일자 21:00) • iMBC : 『[다시보기] UN, 경인운하 사업 '저탄소 녹색인증'』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저탄소녹색인증을 UN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152~155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언론사 평생교육 무허가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일보 2011년 9월 1일자 5면, 인터넷 경남일보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막걸리학교가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운영이라고 보도했으나 신고 내지 등록사항에 불과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일보 초기화면 중앙 위치에 만 36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 삽입
이 행 결 과	『'언론사 평생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일보 2011년 9월 23일자 5면, 인터넷 경남일보 9월 27일자)

2011서울조정1043~1044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KBS-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TV** :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서울 강남서 만취운전 교통사고…9중 충돌』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06:00) • **KBS 홈페이지** : 『검찰 조사 받던 한국노총 간부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노총 간부인 신청인 남편이 보조금 부당 수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하였으나, 남편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1045~1048, 1115~1118, 1146, 1148, 1153~1154, 1157	(매체별 손배청구) 박○○ 對 노컷뉴스(1045), 뉴데일리(1046), 디오데오(1047), 조이뉴스24(1048), 브레이크뉴스(1115), 빌더스데일리(1116), 스타엔(1117), 스포츠서울닷컴(1118), 동아닷컴(1146), 인터넷 헤럴드경제(1148), 네이버(1153), 다음(1154), 야후(1157)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불륜녀에 에로배우 만든 '잔인한 ○○촌' 』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 **뉴데일리**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자○호, 욕도 잘하셨던 그분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 **디오데오** : (1) 『○ 여자○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은 무엇?』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 『○ 천사표 여자○호, 결국 불륜녀로 확인... 충격적인 진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4일자) • **조이뉴스24** : 『'○' 여자○호 논란, 왈가왈부 카타르시스가 만든 '예견된 재앙' 』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 **브레이크뉴스** : 『○ 여자○호 '가증스런' 눈물?…불륜녀 폭로글 온라인 발칵』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조 정 대 상	• **빌더스데일리** : 『'○' 여자 ○호, 과거 불륜녀 폭로글 논란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 **스타엔 · 야후** : 『○ 여자○호, 천사표 '평강공주' → '불륜녀' ..지독한 마녀사냥』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 제작진 "여자○호 불륜글 당사자 맞다"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4일자) • **동아닷컴 · 네이버 · 다음** : 『○ 여자○호 눈물에도 네티즌 반응은 싸늘… "게시판 글부터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 여자○호 과거 논란… '천사표 그녀, 알고보니 불륜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원) •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 **디오데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 **조이뉴스24**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 **브레이크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 **빌더스데일리 · 스타엔 · 스포츠서울닷컴 · 동아닷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네이버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119, 1158	(손배청구) 박○○ 對 아이비타임즈 코리아(1119), 야후(1158)
조 정 대 상	(1) 『'○' 여자○호, 과거 폭로글 논란 "유부남과의 불륜도 모자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 『'○' 여자○호, 불륜녀? 네티즌 공포 "과거 사진+행실폭로라…사생활 없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3) 『'○' 남○○PD, 여자○호, '불륜녀' 논란 "테러수준… 큰 상처, 걱정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 **야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147, 1155~1156, 1159	(매체별 손배청구) 박○○ 對 서울신문 NTN(1147), 네이버(1155), 다음(1156), 야후(1159)
조 정 대 상	『'○' 여자○호, 과거논란 글 파문 확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강원조정12	(손배청구) 1. 고○○, 2. 강○○ 對 원주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주택가에 버젓이 대마 재배』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1일자 21:30)
신청인주장	주택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흡입한 일당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며, 범행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신청인 부부의 사전동의없이 촬영한 인터뷰를 불확실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각 8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신변을 충분히 보호하였으므로, 조정대상보도가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2011강원조정13	(반론청구) 김○○ 對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강릉○○대 총장 재선거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1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재심의에 관한 질의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교과부의 답변을 임용제청거부라고 확대해석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강릉○○대 총장 재선거 불가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16면)

2011서울조정1049	(손배청구) 이○○ 對 tvN
조 정 대 상	롤러코스터 프로그램 『해변 탐구생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4일자 23:00, 9월 5일자 09:00, 17:00, 22:10, 9월 6일자 24:30)
신청인주장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200만원)

2011서울조정1050~1055	(매체별 정정 · 추후 · 손배청구) 백○○ 對 soompi korea, 엔터미디어
조 정 대 상	• **soompi korea** : 『성추행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 전 편집장의 성추행 파문 vs '여대생 성희롱 정치인' 강용석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명안 가결』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 **엔터미디어** : 『성폭행 가해자는 무슨 영화들을 보았던 것일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턴직원을 성추행 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soompi korea**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 **엔터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 이행방법 • **soompi korea · 엔터미디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 전 편집장 성추행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soompi korea 2011년 9월 29일자, 엔터미디어 9월 28일자)

2011부산조정25~26	(정정 · 손배청구) 조영철 對 사하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조영철 사하구 의원, 왜 이러시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신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156	(정정청구) 한려투데이 주식회사 對 통영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신문 발행인 편집국장 상대 "1억 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신청인주장	통영서울병원이 신청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 및 고소사건을 확대 과장보도해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충북조정39~40	(정정 · 손배청구) ○○레미콘 주식회사 對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1) 『"호남고속철도 부실 시공" 폭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1면) (2) 『작천보 · LG화학 오창공장에도 납품』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회사가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에 불량레미콘을 납품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조건부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레미콘(주) 불량 레미콘 납품 기사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2일자 2면)

2011서울조정1056	(정정청구) (주)○○○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해비치 재단 다문화센터 건립 '수상한 입찰'』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현대家 계열사였기에 해비치재단의 리모델링 시공업체로 선정됐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현대家 계열사가 아닌 종업원지주회사이며 정상적인 입찰 경쟁으로 시공권을 따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와 신청인 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1서울조정1057~106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한○○ 對 일요저널, 인터넷 일요저널
조 정 대 상	『하청에 하청이 부른 분쟁이 일용직 노동자 폭력 사주 논란으로 확산』 제하의 기사 (일요저널 2011년 8월 27일자 7면, 인터넷 일요저널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사의 사주를 받고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개인간 단순 폭행사건일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일요저널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061~1062	(정정 · 손배청구) 평화동○○지역주택조합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전주 평화동에 '무법천지'가 웬말?』 제하의 기사 (2011년 제1139호 3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이 불법이라고 보도했으나, 해당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063~1071	(매체별 정정청구)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對 국민일보(1063), 동아일보(1064), 문화일보(1065), 세계일보(1066), 조선일보(1067), 중앙일보(1068), 한국일보(1069), 매일경제(1070, 1069 · 1071과 병합), 한국경제(1071, 1069 · 1070과 병합)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1) 『조용환 후보자 국가관 문제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23면) (2) 『조용환 심사보고서 채택 불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4면) • **동아일보** : (1) 『천안함 폭침 정부 발표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北소행 확신은 못 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A08면) (2) 『조용환, 통과의례에 걸려 통과 못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04면) (3) 『[횡설수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0면) (4)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과 후보자 교체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A31면) • **문화일보** :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투표서 부결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7면) (2) 『조용환 후보자, 헌법재판관 자격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39면) • **세계일보** : 『조용환 심사보고서 채택 불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4면) • **조선일보** : (1) 『천안함 폭침, 北소행 가능성 크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A04면) (2) 『눈으로 못 봐 못 믿는다면 어떻게 판결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04면) (3) 『조 헌법재판관 후보,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5면) • **중앙일보** : (1) 『한나라 "조용환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10면) (2) 『조용환 후보자의 부적격한 국가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30면) (3) 『'조용환 표결' 길 잃은 한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1면) • **한국일보** : 『천안함 발언 · 위방 전입 한나라 의원 눈 밖에 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A04면) • **매일경제** : 『조용환 후보자 임명 물건너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A07면) • **한국경제** : 『조용환 헌재 후보자의 괴이한 말장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5면)
신청인주장	민주당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소행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가 발언당사자인 조 후보자가 아닌 신청인의 인격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1072~1085, 1102~1105	1. (주)○○개발, 2. 편○○ 對 오마이뉴스(1072~1073 정정 · 손배청구), 검색포털 고(1074~1075 정정 · 손배청구), 네이버(1076 손배청구), 네이트(1077~1078 정정 · 손배청구), 다음(1079 손배청구), 드림엑스(1080~1081 정정 · 손배청구), 파란(1082~1083 정정 · 손배청구), 팍스넷뉴스(1084~1085 정정 · 손배청구), 렛가이드(1102~1103 정정 · 손배청구), 언베일서치(1104~1105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정권 실세 연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정권실세 등과 비리커넥션을 맺고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비리커넥션은 없었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 : 취하 • **검색포털 고 · 네이트 · 드림엑스 · 파란 · 팍스넷뉴스**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네이버 · 다음 · 렛가이드 · 언베일서치**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086~1101	1. (주)○○개발, 2. 편○○ 對 뷰스앤뉴스(1086~1087 정정 · 손배청구), 네이버(1088 손배청구), 다음(1089 손배청구), 드림엑스(1090~1091 정정 · 손배청구), 드림위즈(1092~1093 정정 · 손배청구), 파란(1094~1095 정정 · 손배청구), 야후(1096~1097 정정 · 손배청구), 렛가이드(1098~1099 정정 · 손배청구), 언베일서치(1100~1101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저축은행 증인채택 요구 인사 88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정권실세 등과 비리커넥션을 맺고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비리커넥션은 없었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처 리 결 과	• **뷰스앤뉴스** : 취하 • **네이버 · 다음 · 드림엑스 · 드림위즈 · 파란 · 야후 · 렛가이드 · 언베일서치**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106~1107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조 정 대 상	『벼랑에 몰린 기독교타임즈 직원들①』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기독교타임즈의 간부인 신청인이 기독교타임즈 소유의 홈페이지와 장비 등을 가로챈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3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기독교타임즈 간부 도덕적 해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2011서울조정1108~1112	(매체별 반론청구) (주)○○교육 對 오마이뉴스(1108), 네이버(1109), 네이트(1110), 다음(1111), 야후(1112)
조 정 대 상	『오빠에게 안 주고 내게 준 집…빼앗겼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학습지 노조를 탄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교육측 반론』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 네이트 · 야후 2011년 9월 19일자, 네이버 · 다음 9월 22일자)

2011경기조정89~90	(추후 · 손배청구) 최○○ 對 화성신문
조 정 대 상	(1) 『오산시의회 의원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1면) (2) 『악재 겹치며 화성오산 市의회 신뢰 추락』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산시구조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오산시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38	(반론청구) 권○○ 對 목포투데이
조 정 대 상	『대출제한 부실대학 '대불대, 성화대' 』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북과학대 운영과 관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면)

2011서울조정1113	(정정청구) 주식회사 ○○건설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1) 『동원, 삼전건설 · 삼보유통 인수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A01면) (2) 『동원 'M&A 성장' 재시동…수산 · 건설 · 급식 '3각 편대' 키운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A11면)
신청인주장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신청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보도가 아니다.]

2011제주조정127~13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문대림 對 제주프레스, 인터넷 제주프레스
조 정 대 상	(1) 『문대림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라』 제하의 기사 (제주프레스 2011년 8월 26일자 1면, 인터넷 제주프레스 8월 26일자) (2) 『문의장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명백』 제하의 기사 (제주프레스2011년 9월 5일자 1면, 인터넷 제주프레스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었던 신청인이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해체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도정 집행부를 도와주었다고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14	(손배청구) 전○○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평균 4~5kg 무거운 핸드백, 여성들에겐 '골병'』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15일자 08:30)
신청인주장	여성의 무거운 가방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촬영이 아닌 단순히 가방 무게만을 재도록 협조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2011경기조정91~92	(정정 · 손배청구) 1. 김○○, 2. 김△△ 對 우리일보
조 정 대 상	『민박 · 펜션 안전에 '구멍'』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축사 관리동을 펜션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내부시설을 고치고 있으며, 연휴기간에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20~1121	(반론 · 손배청구) 대한약침학회 對 인터넷 의협신문
조 정 대 상	『임상시험 안받은 '약침' 대량 유통 '경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 ·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한 약침액을 전국 한의원에 유통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22~112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조현오 對 인터넷 일요서울,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단독보도] 검찰 · 정치권 덩여인 스캔들 경찰 핵심부 은밀히 재조사』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일요서울 2011년 9월 14일자, 일요서울 9월 14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하여 신청인(경찰청장)과 강 전 경찰청장, K 전 영사가 연결된 비리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26~1127	(매체별 정정청구) 광명시청 對 뉴민주닷컴, 위키트리
조 정 대 상	• **뉴민주닷컴** : 『광명시 하안동 복지회관 불거진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4일자) • **위키트리** : 『복지회관 위탁관리 둘러싼 '보은 행정'』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린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위탁관리 취소 조치가 마치 선거전략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뉴민주닷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위키트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경기조정93~94	(정정 · 손배청구) 서○○ 외 5인 對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무슨 죄요" 항의에…수갑 채워 '지지직'』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19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무기를 들거나 강력범도 아닌 장애자에게 전기충격기를 발사해 과잉대응 했고, 이로 인해 타 파출소로 전보되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28	(정정청구) 외교통상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1면) (2)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8면) (3)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31면)
신청인주장	한 · 미 FTA 공식서명 뒤, 신청인(외교통상부)이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1서울조정1129~1130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아이○○ 對 한경닷컴, 네이트
조 정 대 상	『웹해킹으로 러시앤캐시 고객정보 빼내』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문자메시지 서버를 경유해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었을 뿐인데 마치 신청인 회사가 해킹 피해를 입어 메시지가 발송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경닷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 **네이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수정 (2011서울중재97 참조)]

2011부산조정27~28	(정정 · 반론청구) 김○○ 對 KNN
조 정 대 상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0:2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이가 득실거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NN 홈페이지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0:25)

2011서울조정1131~1139	(매체별 정정청구) ○○○건설 주식회사 對 인터넷 국토해양신문(1131), 매경닷컴(1132), 인터넷 매일노동뉴스(1133), 인터넷 머니투데이(1134), YTN(1135), 인터넷 YTN(1136), 인터넷 MBN(1137), 연합뉴스(1138), SBS 홈페이지(1139)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토해양신문** : 『'임금체불' 건설업체서 항의 농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 **매경닷컴** : 『임금 체불 건설노조원들, 강남 삼성동 ○○○건설 사무실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건설 본사 점거농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8일자) • **인터넷 머니투데이** : 『트럭기사 20여명 시너통 들고 빌딩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 **YTN** : (1)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임금 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5일자 15:00) (2) YTN 뉴스나이트 『임금 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5일자 22:00) • **인터넷 YTN** : 『임금 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 **인터넷 MBN** : 『시너통 들고 건설사 사무실 점거…경찰과 대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 **연합뉴스** : 『'임금체불' 건설업체서 항의 농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 **SBS 홈페이지** : 『임금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건설노조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국토해양신문 · 매경닷컴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인터넷 머니투데이 · 인터넷 YTN · 인터넷 MBN · 연합뉴스 · SBS 홈페이지**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YTN** : 취하

2011서울조정1140	(손배청구) 황○○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남녀 4명 동반자살 시도· ·3명 사망 · 1명 중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0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윗집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관련 질문에 답을 했을 뿐인데 아무런 동의 없이 신청인의 얼굴과 이름, 목소리 등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대전조정27	(정정청구) ○○○건설 주식회사 對 미디어충청
조 정 대 상	『건설산업 노동자 체불임금 272억, 체불악순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건설노조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95~96	(정정 · 손배청구) 1.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2. 조○○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광명시-복지봉사회 후원금 싸고 '마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 및 각종 후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광명시-복지봉사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1년 10월 4일자 7면, 경기일보 홈페이지 10월 4일자)

2011서울조정1141~1142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지방지 기자 "술 마시자" 여성의원 숙소에서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신문기자)이 안산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하여 여성시의원에게 성적모독에 해당하는 발언과 이를 만류하는 시의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음주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143	(정정청구) 국민일보 주식회사 對 MBC-TV
조 정 대 상	PD 수첩 프로그램 『나는 아간이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0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국민일보) 사장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김성혜 한세대 총장에게 보낼 '최후통첩문'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을 고소 · 고발하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부산조정29~3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찜질방서 추석맞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1년 9월 8일자 9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알코올 의존증세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경남조정157~16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유○○ 對 경남매일(157~158), 인터넷 경남매일(159~160, 157~158과 병합), 양산신문(161~162), 인터넷 양산신문(163~164, 161~162와 병합)
조 정 대 상	• **경남매일 · 인터넷 경남매일** : 『체벌 ○○ 여고생 정신과 치료』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9월 19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9월 18일자) • **양산신문 · 인터넷 양산신문** : 『교사 체벌로 여고생 정신과 치료』 제하의 기사 (양산신문 2011년 9월 20일자 4면, 인터넷 양산신문 9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여학생의 머리를 때려 해당 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각 취하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매일 · 인터넷 양산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부분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삽입
이 행 결 과	『C교사 "학부모측 주장 위주로 보도해 유감"』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10월 12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10월 11일자, 양산신문 10월 18일자 4면, 인터넷 양산신문 10월 18일자)

2011서울조정1144~1145	(정정 · 손배청구) 추○○ 對 로컬세계닷컴
조 정 대 상	(1) 『화성서부경찰서장 부적절한 행실로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2) 『추○○ 화성서부경찰서장은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관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화성서부경찰서장 부적절한 행실,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8일자)

2011대전조정28~30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충민일보
조 정 대 상	(1) 『홍성군 회 판매센터 건립 "삐걱"』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8일자 1면) (2) 『누구를 위한 어촌계장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일자 1면) (3) 『어사리 '바지락축제' 私心에 멍들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어사어촌계장인 신청인이 어촌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산물 판매장 및 회센터 공사업체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충민일보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충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일간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반론보도문 배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홍성군 회 판매센터 '삐걱' 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1면)

2011대구조정18~1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상주포커스
조 정 대 상	『지역 관광버스 외면한 시 "운수업계 분노 하늘을 찔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주시 문화의 날 행사 참석시 지역운수업체를 외면하고 외지 운수업체 관광버스를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주시청 직원과 신청인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97	(손배청구) 박○○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 여자○호 눈물은 거짓???…천사표 이미지 뒤엎는 불륜녀 주장 제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 『○ 여자○호 '불륜녀 주장 글' 파문…여자△호 에로배우설 이은 마녀사냥』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149~1151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하○○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일자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침 등 의료기기를 재활용했고, 이로 인해 침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 홈페이지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되게 하고,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함
이 행 결 과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4일자 22:00)

2011서울조정1152	(정정청구) 조민제 對 MBC-TV
조 정 대 상	PD 수첩 프로그램 『나는 아간이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0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김성혜 한세대 총장에게 보낼 '최후통첩문'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을 고소 · 고발하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39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한국농어촌공사 골재채취 허가 '온통 불법'』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당사자 확인도 없이 무단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변경하는 등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라임경제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24시간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이행 안 됨

2011서울조정1160	(반론청구) 황○○ 對 키즈맘뉴스
조 정 대 상	(1) 『'눈가리고 아웅', 두 손 놓은 킨텍스(KINTEX)』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6일자) (2) 『킨텍스,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킨텍스에서 열릴 전시회를 추진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키즈맘뉴스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킨텍스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2011서울조정1161	(정정청구) (주)○○기업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일부 운전학원 의무 8시간 외 추가교육 부추기기 '꼼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불필요한 수강료 등을 부담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62	(손배청구) 송○○ 對 KBS-1 · 2TV
조 정 대 상	(1)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19:00) (2) KBS 뉴스7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19: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21:00) (4)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23:00) (5) KBS 뉴스12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3일자 12:00, 9월 28일자 12:00) (6)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5일자 22:30) (7)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2일자 06:00, 9월 28일자 06:00) (8) 930뉴스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8일자 09:30)
신청인주장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에 대해 보도하면서, 통화하며 길을 가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초상 삭제 및 사용 금지-향후 초상사용시 1회당 100만원 지급, 부제소)

2011경기조정98~99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데일리와이
조 정 대 상	(1) 『K일보 안산시 주재기자 추태 막전막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2) 『추태 안산K기자 문제, 김철민 시장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신문기자)이 안산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하여 여성시의원에게 성적모독에 해당하는 발언과 이를 만류하는 시의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음주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163~1164	(매체별 정정청구) (주)○○○코리아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거마 대학생 5000명 '슬픈 동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0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0일자) (2) 『"강남 회사" 덫에 걸린 22세 지방대생…합숙 1년 만에 병 얻고 2000만원 빚』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0일자 4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0일자) (3) 『부모가 와도 "난 안 간다" 그곳은 사이비 종교였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0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1일자) (4) 『'다단계 사람 장사' 단속 걸려도 아메바식 분열…검찰 · 정치권 출신 바람막이 영입』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1일자 4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1일자) (5) 『거마 불법 다단계 71명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3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원들을 강제 합숙시키고 대출을 강요하는 등 불법 다단계 활동을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광주조정40	(반론청구) 유선호 對 영암군민신문
조 정 대 상	『토론회서 진상 밝혀 전 군민의 경고장 보내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3면)
신청인주장	영암군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데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유선호의원 지난 3년간 특별교부세 95억 확보에 역할』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3면)

2011서울조정1165~1166	(추후 · 손배청구) 노○○ 對 CNBNEWS
조 정 대 상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기장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씨름단 해체이유를 듣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전 씨름단 감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 이행방법 : CNBNEW 정치면 초기화면에 48시간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에 이어서 추후보도문 게시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기장군 감사실 직원, 전 씨름단 감독 상해' 관련 무혐의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2011서울조정1167~1168	(정정 · 손배청구) 1. 홍영화, 2. 광진경찰서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1) 『경찰압수수색 도중 피의자 투신 자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2일자)

조 정 대 상	(2) 『홍영화 광진경찰서장 "변사사건 그까짓 것 가지고"』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3) 『 '사람목숨은 파리목숨?' ....연이은 자살사건에 경찰태도 '논란' 』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광진구 관내 모 대학생의 투신자살과 관련, 광진경찰서장이 '대수롭지 않은 일' 인 것처럼 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 및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중의소리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과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각각 1일간 표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과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2), (3)의 하단에는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1)의 하단에는 정정보도문을 각각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1)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5일자) (2) 『「경찰 압수수색 도중 피의자 투신자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2011년 10월 25일자)

2011서울조정1169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스페셜 프로그램 『[2부작 화내는 당신에게] 1부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 푸는 이유』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4일자 23:10)
신청인주장	만취한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300만원)

2011서울조정1170~1171	(정정 · 손배청구) 1. 주식회사 기독교텔레비전, 2. 감○○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1) 『"내부 기밀 훔쳐가" … 제 발 저린거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20면) (2) 『파면 팔수록 '구린내' 』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20면) (3) 『기독교계 발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21면)
신청인주장	기독교TV 회장이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세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일요신문 기사삭제, 신청인측 비리의혹 관련 후속보도 금지, 인터뷰 기사, 부제소)
이 행 결 과	『 '기독교텔레비전(CTS) 및 감○○ 회장 비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3면)

2011서울조정1172~1173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매일 이별하는 부부 그들은 왜 헤어졌나?』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16일자 20:50)
신청인주장	재혼한 어머니가 신청인의 반대로 이혼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74~118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이천십사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 이연택 對 아시아경제(1174), 아시아경제닷컴(1175, 1174와 병합), 네이버(1176), 네이트(1177), 다음(1178), 야후(1179), 파란(1180)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 : (1) 『인천시 · 조직위 '아시안게임 입씨름' 3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27면) (2) 『인천AG조직위, 이번엔 호화청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21면) • **아시아경제닷컴 · 네이버 · 다음 · 야후 · 파란** : (1) 『이래갖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제대로 하겠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2)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호화청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대회 흥행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호화청사로 이전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경제 · 아시아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98~102 참조)] ※ 이행방법 • **아시아경제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 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천 AG조직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1년 10월 21일자 사회면, 아시아경제닷컴 10월 21일자)

2011서울조정1181, 1186, 1189, 1195	(매체별 · 기사별 정정청구) (주)○○○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1181, 1186), 신대한(1189, 1195)
조 정 대 상	(1) 『검찰은 ○○○아일랜드 즉각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3일자) (2) 『춘천, '○○○아일랜드'를 보는 神의 눈』 제하의 기사 (The dailynews 2011년 9월 14일자, 신대한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1182~1183, 1191	(주)○○○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1182~1183 정정 · 반론청구), 신대한(119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김○○, "○○○아일랜드 사업권 승인 취소하고, 검찰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1184, 1185	(기사별 정정청구) (주)○○○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조 정 대 상	(1) 『○○○아일랜드, 위도섬 공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6

조 정 대 상	일자) (2) 『○○○아일랜드 춘천시와 무리한 개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취하

2011서울조정1187~1188, 1198~1199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주)○○○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신대한
조 정 대 상	• **The dailynews** : 『우제창 의원, "○○○아일랜드가 저축은행 파탄 주범"』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 **신대한** : (1) 『우제창, "춘천 위도 관광지 조성 위해 1,188억원 PF불법대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4일자) (2) 『우제창, "○○○ 아일랜드 안○○에게…저축은행이 불법 방임 대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취하

2011서울조정1190	(반론청구) (주)○○○아일랜드 對 신대한
조 정 대 상	『춘천시장, 부산저축은행 돈 들어간 ○○○ 아일랜드 건축승인 취소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192~1194, 1196~1197	(기사별 정정청구) (주)○○○아일랜드 對 신대한
조 정 대 상	(1) 『춘천시, "○○○아일랜드, 환경영향평가 졸속"』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2) 『○○○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으로 춘천 위도 개발 한다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3) 『춘천시, "○○○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4) 『안○○, "○○○그룹, 총회장, 화려한 편법의 왕" 귀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0일자) (5) 『호반의 도시 춘천 위도섬, ○○○ 아일랜드 '法' 무시 度 넘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취하

2011서울조정1200~1201	(매체별 정정청구) 윤○○ 對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1) 『칼빈대 윤○○ 교수, 부적격 학력 등 파문』 제하의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9월 27일자 1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9월 27일자) (2) 『당시 칼빈대 징계위, 파면 의결…이사회에서는 반려 통보』 제하의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9월 27일자 12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부적격 학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학위 취득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므로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72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에 이어서 반론보도문 게시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11서울조정1202	(정정청구) 외교통상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6면) (2)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31면)
신청인주장	한 · 미 FTA 협정 규정과 양국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한국만 국내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100~101	(정정 · 손배청구) 김선기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일일호프티켓 강매? '빛바랜' 희망 나누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방선거 당시 평택참여연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있어 평택참여연대의 행사 티켓을 시 공무원들에게 종용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1년 10월 17일자 2면, 경기신문 홈페이지 10월 17일자)

2011경기조정102~103	(정정 · 손배청구) 손정옥 對 안양시민신문
조 정 대 상	(1) 『안양시의회 파행 "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5면) (2) 『한나라–국민참여 공조, 추경 승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금 2억원 증액에 대해 사감을 가지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안양시민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안양시민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7일간 반론보도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

처 리 결 과	문의 내용이 뜨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1), (2)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안양시의회 파행 "왜?" 보도 등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1년 10월 24일자 5면, 안양시민신문 홈페이지 10월 24일자)

2011서울조정1203	(정정청구) 동두천경찰서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경찰은 흉기 확보도 안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미군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범죄흉기를 제때 확보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2011서울조정1204	(손배청구) 박○○ 對 데일리안
조 정 대 상	『희망버스, '욕설' 논쟁 놓고 결국 '충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희망버스 참가자인 신청인이 마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205~1206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행각 왜 생기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우리나라에 창업 컨설팅 국가 자격 제도나 규제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머니투데이 정책정보면 기사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7일자)

2011대구조정20~21	(정정 · 손배청구) 윤 진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신경전 치열 … '과태료 대납' 다시 쟁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일자 3면)
신청인주장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구 일대에 나돌고 있는 유인물에 윤진 전 서구청장이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인 A시의원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 A 시의원을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어려운 주민 외면할 수 없어 대신 납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9일자 3면)

2011서울조정1207~1208	(매체별 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인터넷 한겨레, 한겨레
조 정 대 상	『브레인트레이너 · 요리치료사 · 리더십지도사…무엇에 쓰이는 자격증인고?』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1년 9월 29일자, 한겨레 9월 30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는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활용 분야가 넓음에도 이를 축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무엇에 쓰는 자격증인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1년 10월 28일자, 한겨레 10월 29일자 8면)

2011서울조정1209~1213	(매체별 정정청구) 성○○ 對 대한매일신문(1209), 인터넷 대한매일신문(1210), 서울일보(1211), 인터넷 서울일보(1212), 인터넷 선경일보(1213)
조 정 대 상	• **대한매일신문** : 『음식스레기 불법매립 '몸살' 』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사회1면) • **인터넷 대한매일신문** : 『불법매립…닭 사료용으로 속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 **서울일보** : 『음식물 폐기물 불법매립 '논란' 』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일보** : 『음식물류폐기물 편법처리 부당이익 '강화군청 뒷짐' 』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 **인터넷 선경일보** : 『음식물류폐기물 편법처리 부당 이익 챙겨 '강화군청 단속뒷짐' 』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대한매일신문 · 인터넷 대한매일신문 · 서울일보**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인터넷 서울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선경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선경일보** : 사회면 초기화면에 72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에 이어서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 **대한매일신문 · 인터넷 대한매일신문** : 『음식쓰레기 불법매립 '몸살'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대한매일신문 2011년 10월 26일자 14면, 인터넷 대한매일신문 10월 25일자) • **서울일보** : 『강화 C농장 음식물폐기물 편법처리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4면) • **인터넷 선경일보** : 『강화 C농장, 음식물류폐기물 편법처리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5일자)

2011서울조정1214~121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MBC-TV(1214~1215), SBS-TV(1216~1217), YTN · 사이언스TV(1218~1219)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못 믿을 머리 염색제 · ·알레르기 없다고 허위

조 정 대 상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21:00) • **SBS-TV** : (1) SBS 8 뉴스 프로그램 『부작용 걱정 말라더니…염색약 허위 · 과대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20:00) (2) 나이트 라인 프로그램 『부작용 걱정 말라더니… 염색약 허위 · 과대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7일자 24:05) • **YTN · 사이언스TV** : (1) YTN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염색약 부작용 없다" 14개 제품 허위과장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19:00) (2) YTN사이언스24 프로그램 『"염색약 부작용 없다" 14개 제품 허위과장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7일자 1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염색제를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제품으로 과장광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MBC-TV · YTN · 사이언스TV** : 각 취하 • **SBS-TV**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대전조정31	**(정정청구) (사)한국해비타트 對 티브로드뉴스**
조 정 대 상	t-broad 뉴스 프로그램 『해비타트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14일자 18:00, 23:00, 9월 15일자 07:00, 12:00)
신청인주장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희망의 집짓기 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해비타트 주택이 과도한 매매대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부실공사의 온상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티브로드 중부방송 심층취재 뉴스시간 말미에 반론보도, 청색 바탕에 흰글씨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내용을 원래 프로그램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t-broad 뉴스 프로그램 『 '해비타트의 진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6일자 18:00, 10월 27일자 07:00, 12:00)

2011대전조정32~33	**(반론 · 손배청구) 박○○ 對 충민일보**
조 정 대 상	『충주시장 재 · 보궐선거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충주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인 신청인이 돈을 받고 한나라당으로 이적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충주시장 재보궐 선거 보도 중 박○○ 후보 관련 내용을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일자 1면)

2011충북조정41~4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교육과학기술부 對 충청타임즈, 인터넷 충청타임즈**
조 정 대 상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1년 9월 27일자 1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재정지원대학 선정 평가에 있어 신뢰성과 공정성 없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평가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이 충청타임즈에 게재되는 날 09:00부터 72시간 동안 인터넷 충청타임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뜨도록 하며,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
이 행 결 과	『'충북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1년 10월 31일자 2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10월 31일자)

2011경기조정104~10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 안○○ 對 광명지역신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조 정 대 상	『○○시장 조합, 시 보조금 슬쩍?』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1년 10월 5일자 1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비품구입비 차액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조합원 동의 없이 부당하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광명지역신문 인터넷 판 메인화면에 14일간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장조합, 시 보조금 슬쩍?" 보도 관련 A조합장이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1년 11월 2일자 2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1월 2일자)

2011경기조정106~107	(매체별 정정청구) 성○○ 對 경인매일, 경인종합일보
조 정 대 상	• **경인매일** : 『음식물류 불법매립 '강화군 뭐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2면) • **경인종합일보** : 『음식물 편법처리 부당 이익챙겨』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0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경인매일 홈페이지 · 경인종합일보 홈페이지 :**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인매일** :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7일자 2면, 경인매일 홈페이지 10월 26일자) • **경인종합일보** : 『강화 C농장, 음식물류 폐기물 편법처리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13면, 경인종합일보 홈페이지 10월 27일자)

2011서울조정1220~1221	(매체별 손배청구) 방○○ 對 K-TV, 인터넷 K-TV
조 정 대 상	• **K-TV** : (1) 정책 오늘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0일자 18:30) (2) KTV NEWS 10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0일자 22:00)

조 정 대 상	(3) 굿모닝 투데이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1일자 07:00) • **인터넷 K-TV** :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관련 정책홍보 행사장에서 '대중교통 임산부석 지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행사도우미로 잘못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이유 :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 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기에 그 진위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왜곡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정대상보도는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의 시위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11서울조정1222~1223	(매체별 정정청구) 참여연대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참여연대 비판받은 교보생명 아름다운 재단에 47억원 기부』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2011년 10월 1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9월 30일자)
신청인주장	LG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비판하던 참여연대가 LG측으로부터 20여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이후 비난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11월 3일자 2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3일자)

2011서울조정1224~1225	(매체별 정정청구) (주)케이지○○○○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택배 운송물 파손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4일자 18:32) • **iMBC** : 『택배 운송물 파손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신청인주장	택배회사인 KG○○○의 피해보상율이 54.5%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81.8%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1226	(매체별 정정청구) (주)○○○아일랜드 對 신대한
조 정 대 상	(1) 『'검찰은 ○○○아일랜드 즉각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3일자) (2) 『"춘천시장 부산저축은행 돈 들어간 ○○○ 아일랜드 건축승인 취소 해야…"』 (2011년 8월 24일자) (3) 『김○○, "○○○아일랜드 사업권 승인 취소하고 검찰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4) 『춘천시, "○○○아일랜드 환경영향평가 졸속"』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5)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6) 『춘천시, "○○○아일랜드를 보는 신의 눈"』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7) 『[경악] 호반의 도시 춘천 위도섬, ○○○ 아일랜드 '법' 무시 도 넘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8) 『[국감]우제창, "○○○ 아일랜드 안○○에게… 저축은행이 불법 방임 대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227	(정정청구) 송파경찰서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국민연금공단 간부 접대 · 성매매 사실 은폐 시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10면)
신청인주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증권사 간부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건과 관련, 송파경찰서가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한국일보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검찰 송치 의견서를 참고한 것으로, 관련 수사책임자의 언급을 기준삼아 작성되었다.) ※ 이행방법 : 한국일보에 반론보도를 게재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인터넷 한국일보 초기화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1경기조정108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0구단 유치희망 수원시 적색등 켜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 야구부가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해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아시아뉴스통신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 '수원Y고교 해체설'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일자)

2011서울조정1228	(정정청구) (주)○○○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조 정 대 상	(1) 『(단독) 검찰은 ○○○아일랜드 즉각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3일자) (2) 『김○○, ○○○아일랜드 사업권 승인 취소하고 검찰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3) 『○○○아일랜드 위도섬 공사 모래위에 집을 짓는격』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6일자) (4) 『○○○아일랜드 춘천시와 무리한 개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5) 『춘천시, ○○○아일랜드 를 보는 신의 눈』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4일자) (6) 『[국감]우제창, ○○○아일랜드가 저축은행 파탄 주범』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부산조정33	(정정청구) ○○대학교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대 '괘씸죄' 교수 2명 강의 배제』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6면)
신청인주장	파면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를 잘못 보도해 ○○대학교가 마치 보복성 징계를 한 것처럼 오인케 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대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0일자 2면)

2011서울조정1229	(반론청구) (주)○○교육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그들은 왜 아직도 거리에 서있나'… ○○ 학습지 교사들 1400일간의 외침』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파업과 관련, 노조원들의 월급 및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등 노조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그들은 왜 아직도 거리에 서있나'…○○ 학습지 교사들 1400일간의 외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1일자)

2011서울조정1230~1233	(정정 · 손배청구) 현정원 對 주간 고양신문,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 **고양신문** : (1) 『현직 시의원이 여성 성추행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1면) (2) 『'성추행 시의원' 윤리위 · 징계안 발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3면) (3) 『시의회 윤리특위, 박윤희 위원장 선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3면) (4) 『현정원 의원 의원장직 사임 · 탈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3면) (5)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환영』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5일자 2면) (6) 『일산경찰서 성추행 사건 '두달째 표류'』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3면) • **오마이뉴스** : 『성추행으로 물러난 자리에 '도로 한나라' '반연대파' 득세로 참여자치가 흔들린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결정 (사유 : 본 조정신청은 조정대상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2011대구조정22	(정정청구) 1. 주식회사 ○○건설산업, 2. 김○○ 對 경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 『P건설,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1면) (2) 『검찰, 포항 D건설사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1 회사가 거액을 빼돌린 후 고의 부도를 냈으며 계열사 사장인 신청인2가 부도의 전과정을 진두지휘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234~1235	(정정 · 손배청구) 손○○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자동차보험의 '숨겨진 먹이사슬'』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9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허위 청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유감표명 공문 발송, 부제소)

2011충북조정43~44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민원담당 비서 하는 일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1면)
신청인주장	보은군청 민원담당 비서인 신청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의 급여만 축낸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보은신문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보은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에 이어서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민원담당비서 하는 일 없다" 보도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1년 11월 17일자 1면, 보은신문 홈페이지 11월 17일자)

2011서울조정1236~1237	(매체별 정정청구) 대한한의학회 對 조선일보, 헬스조선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약으로 체질 개선해 완치' 근거 없어 생활습관 철저히 바꿔야 완화된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5월 18일자 D1면, 헬스조선 홈페이지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서울대병원 모 교수가 '한약재에 스테로이드 제재를 넣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신청인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1전북조정27~28	(매체별 정정청구)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對 전북매일신문,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술취한 사람 모욕죄 적법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매일신문 2011년 11월 1일자 10면,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속 경찰관에게 몇 마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술 취한 사람에게 모욕죄를 적용, 체포 · 감금해 과잉대응,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취객 모욕죄 논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전북매일신문 2011년 11월 8일자 10면,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11월 7일자)

2011경남조정165~166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1) 『하동 도축장도 쇠고기 불법유통』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10월 28일자 1면, 인터넷 경남신문 10월 28일자) (2) 『도축장 유통구조 대대적 개선해야』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10월 28일자 7면, 인터넷 경남신문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밀거래를 하는 등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조정1238~1240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주)대한항공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학업포기 종용하는 항공사 채용조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대한항공의 신입사원 채용 조건(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이 대학생들의 학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41	(손배청구) 민○○ 외 2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바바리맨의 이중생활』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9일자 23:00)
신청인주장	일명 바바리맨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신청인들(아파트 경비원)의 동의 없이 인터뷰 내용 및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42~1243	(정정 · 손배청구) 홍상표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檢, 김두우 이어 홍상표 前 홍보수석도 금품수수 포착』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전 홍보수석인 신청인이 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홍상표 전 홍보수석 금품수수 포착'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2011부산조정34	(정정청구) 김○○ 對 KNN
조 정 대 상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억울한 시민 이젠 누구를 믿나?』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3일자 20:25)
신청인주장	수사관인 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계좌번호 건넨 경찰, "금품요구 않아"』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8일자 20:00)

2011서울조정1244~125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對 인터넷 교회연합신문(1244~1245), 인터넷 새한일보(1246~1247),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1248~1249), 뉴스에이(1250~1251), 뉴스캔(1252~1253)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목사들에게 탈취 당했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 **인터넷 새한일보** : (1) 『불법 총회 열어 대표행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 『노인 울리는 목회자 없었으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1)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불법 총회와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 『하루빨리 정상화해 노인인권운동 최선 다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 **뉴스에이** :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사기' 알고 보니 목사들이 벌인 짓』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4일자) • **뉴스캔** : 『인터뷰/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전○○ 총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인터넷 새한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뉴스에이** : 각 취하 • **뉴스캔**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경기조정109~110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對 기독일보 씨디엔
조 정 대 상	(1)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목회자 개입 사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4일자) (2) 『노인 울리는 목회자 없었으면 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2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국노년자원봉사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2011경남조정167~168	(정정 · 손배청구) (주)○○테크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1)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짓기도 전에 '악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2)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업체 선정 담당 공무원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3) 『거제시 자원순환과 정정보도 요구 자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4) [집중취재①] 운이 좋은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5) 『[집중취재③] 실적도 없는 업체가 어떻게 '책임 적격자'가 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6) 『거제시의회 역할과 시의원 양심을 믿는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9일자) (7) 『3년째 시험가동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핵심 부품, 어느 회사 제품일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8) 『[사설] 시의회, '쓰레기 복마전 도시' 오명 벗겨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9) 『엉터리 자료로 기술평가 했는데 다시 심사하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10) 『[몽당 연필] 거제시의회 의무 · 역할 기대에 미흡』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9일자) (11) 『이중감점 · 점수조작 '의혹' 곳곳…채점표 정밀 분석 결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업자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심사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되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의 시공 운영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254~125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금융소비자연맹 對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공정위 변액보험 비교평가…시작전부터 '삐그덕'』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10월 12일자 22면, 헤럴드경제닷컴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변액보험 상품 비교평가 작업을 위탁받은 신청인 단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헤럴드경제닷컴** : 금융면에 48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에 정정보도문 게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 금소연 공정성 · 신뢰성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22면) • **헤럴드경제닷컴** : 『[정정보도] '금소연 공정성 · 신뢰성'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2011서울조정1258	(반론청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對 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승진에 해외연수까지』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0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징계는 커녕 포상』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1일자 21:00) (3)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부정부패에 무감각』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2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개발원의 연구원들이 연구비와 출장비를 유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서울조정1259~1262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시스템스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군 무기개발 실패는 허술한 사전조사 · 무리한 국산화 때문』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1년 11월 3일자 6면, 세계닷컴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UH-60 헬기 시뮬레이터 사업을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개발 사업의 부실 사례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세계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시스템스 "UH-60 헬기 시뮬레이터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1년 12월 1일자 6면, 세계닷컴 12월 1일자)

2011서울조정1263~1264, 1294~1295	(매체별 정정청구) 전○○ 對 KBS-1TV(1263), KBS 홈페이지(1264), SBS-TV(1294), SBS 홈페이지(1295, 1294와 병합)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12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조 정 대 상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3:01) (2) KBS 뉴스7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9:32) (3)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3:48) (4)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9일자 07:53) • **KBS 홈페이지**: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 **SBS-TV** : SBS 뉴스 8 프로그램 『세균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0:00) • **SBS 홈페이지** : 『세균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지하수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KBS 홈페이지**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 **SBS-TV · SBS 홈페이지** :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 **KBS-1TV** :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인터넷 구매자 '체험후기'가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2일자 23:00) • **KBS 홈페이지** : 『인터넷 구매자 '체험후기'가 광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2011서울조정1265~1266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법인 자원봉사단 ○○對 CBS-TV,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 **CBS-TV** : (1) CBS교계뉴스 프로그램 『신천지에 의해 훼손된 8.15정신』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2일자 21:40) (2) 주간 교계뉴스 프로그램 『국립현충원에도 신천지 '손도장 태극기' 전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3일자 07:30, 19:30) • **노컷뉴스** : 『임진각에 이단 교리 담은 통일비석이 웬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임진각과 통일전망대에 세운 통일염원 비석을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리를 담아 세운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111~112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경도신문
조 정 대 상	『업무소홀 질책에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담당과장의 업무 소홀 질책에 대해 욕설을 하고 덤벼들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67	(반론청구) (주)○○교육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박원순 시장, 시청광장 한켠의 '투명인간'을 봤습니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학습지 교사들을 부당 대우

신청인주장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이에 대해 ○○교육은…』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2011서울조정1268	(반론청구) ○○유비쿼터스고등학교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박원순 시장, 시청광장 한켠의 '투명인간'을 봤습니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고등학교가 동일 법인 소속의 인천○○대학 모집정원 증원을 위해 학교시설물 전체를 대학에 넘겨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유비쿼터스 고등학교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2011서울조정1269~1270	국토해양부 對 KBS-1TV(1269 반론청구), KBS 홈페이지(1270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다시보는 4대강』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일자 22:00) • **KBS 홈페이지** : 『다시보는 4대강』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일자)
신청인주장	수리 모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사업의 일부 보 구조물에 설계상 결정적 허점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KBS-1TV** : 취하 • **KBS 홈페이지**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2011서울조정1271~1280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최○○ 對 조선일보(1271~1272), 디지틀조선일보(1273~1274), 네이버(1275~1276), 네이트(1277~1278), 다음(1279~1280)
조 정 대 상	『[Why] 김수철도 모르는 김수철 이문세도 모르는 이문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1월 12일자 B7면,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가 발매한 '올 댓 마스터미스' 라는 음반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뮤지션들에게는 1원도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음반의 음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디지틀조선일보 · 네이버**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03~106 참조)]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조선일보)가 전송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즉시 뉴스홈에 마련된 e옴브즈만 코너에 게재,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올 댓 마스터피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1월 26일자 7면, 디지틀조선일보 11월 22일자, 네이버 11월 26일자)

2011서울조정1281~1284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성○○ 對 뉴스타운, 메디팜뉴스
조 정 대 상	(1) 『여대생 비염환자에 공진단 6천만원어치를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2) 『성○○ 원장 기사 내려라 협박』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운영의 한의원에서 비염환자에게 공진단 6천만원어치를 고가로 처방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85~1288, 1313~131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문○○ 對 뉴스에이(1285~1286),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1287~1288), 인터넷 대한기독신문(1313~1314),
조 정 대 상	• **뉴스에이 · 인터넷 대한기독신문** :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사기' 알고 보니 목사들이 벌인 짓』 제하의 기사 (뉴스에이 2011년 10월 4일자, 인터넷 대한기독신문 10월 5일자)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1)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불법 총회와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 『하루빨리 정상화해 노인인권운동 최선 다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자원봉사회 대표인 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89	(정정청구) 동방○○○○주식회사 對 KBS-2TV
조 정 대 상	호루라기 프로그램 『청춘의 덧 거마대학생』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21:00)
신청인주장	불법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을 취재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를 불법다단계 회사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해명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호루라기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해명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해명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해명보도 방송 중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동방○○○○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자막으로 해명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호루라기 프로그램 『 '청춘의 덫, 거마대학생' 관련 해명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2일자 21:00)

2011서울조정1290~1291	(매체별 반론청구) 농업회사법인 ○○○○농산(유) 對 KBS-1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7 프로그램 『항암배추 흉작...농민 '불안'』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0일자 19:32) (2) KBS 뉴스9 프로그램 『항암배추 흉작...농민 '불안'』 제하의 보도(2011년 11월 9일자 22:06)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항암배추 흉작...농민 '불안'』 제하의 보도(2011년 11월 11일자 08:01) • **KBS 홈페이지** : (1) 『항암배추 흉작 … 농민 '불안'』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2) 『효능 입증 안 된 '항암배추' … 예산만 낭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9일자) (3) 『항암배추 재배 농민 반발…괴산군 '나몰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종자를 개발한 항암배추에 대해, 작황이 좋지 않고 효능도 입증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92	(정정청구) 최영희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정치권, 툭하면 말 뒤집어』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31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본회의 중에 열린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회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1293	(정정청구) 주호영 對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헛다리 짚은 주호영 "김난도 · 강호동 영입 실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한나라당에 인기 연예인 등 특정 인사들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296~1297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홍삼 제조기』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8일자 18:50) • **iMBC** : 『소비자가 기가막혀 – 홍삼 제조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홍삼제조기능이 없는 제품을 홍삼제조기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MBC-TV** : 취하 • **iMBC**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iMBC** : 1개월 간 iMBC 홈페이지 불만제로 시청자게시판 상단 공지사항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불만제로 241회 홍삼제조기 관련 반론보도문 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011서울조정1298~1303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SBS-TV, S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메시아가 된 아버지와 아들, 베드로와 다윗의 실체』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7일자 23:00) • **SBS 홈페이지** : 『메시아가 된 아버지와 아들, 베드로와 다윗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신도들로부터 메시아라 불리고 있고 여성신도를 성폭행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SBS 홈페이지** : 조정성립 (내용 : 다시보기 및 기사제공 서비스 중단, 부제소) ※ 이행방법 •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메시아가 된 아버지와 아들, 베드로와 다윗의 실체>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17일자 23:00)

2011서울조정1304~130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교사 · 학생 "교장이 24시간 감시"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8면)
신청인주장	학생들의 안전과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CCTV를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교사와 학생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1경기조정113	(정정청구) 허○○ 對 김포마루
조 정 대 상	『마을의 이름을 잉태한 아홉우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호 9면)
신청인주장	김포 감정리에 있는 구두물이 조헌선생 및 우저서원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

2011서울조정1306~1307	(매체별 정정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조 정 대 상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1월 10일자 1면, 경향닷컴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과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의에 나섰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2월 23일자 16면, 경향닷컴 12월 24일자)

2011서울조정1308~1312	(매체별 정정청구) (주)○○○씨 對 인터넷 한겨레(1308), 네이버(1309), 네이트(1310), 다음(1311), 파란(1312)
조 정 대 상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과일즙 당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카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잘못 보도해, 국내 유일의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07~110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지역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사카린 나트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1년 11월 26일자)

2011서울조정1315~131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1. 정○○, 2. 정△△ 對 KBS-2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2TV** : 호루라기 프로그램 『어느 선교 교회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8일자 20:50)

조 정 대 상	• **KBS 홈페이지** : 『어느 선교 교회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가족을 비인가복지시설에 강제수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19~132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송○○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서귀포 경찰의 황당한 세가지 약속』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8월 26일자 A2면, 디지틀조선일보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前서귀포경찰서장)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현행범을 연행하는 도중 시위대에 억류되자 '간단한 조사 후 석방할 것' 등을 시위대에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시위대 대표로서 송서장과 협상해 약속을 받아낸 모 신부의 공개발표 동영상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조선일보가 반론 및 정정보도를 게재한 날 오전 9시 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1서울조정1323~1324	(매체별 반론청구) 이○○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약사회 '약사법 저지' 치밀한 로비 계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A14면) • **동아닷컴** : 『약사회 '약사법 저지' 치밀한 로비 계획…약사회 회의록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약사법 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로비계획을 담은 내부 회의록을 인용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는 이미 신청인이 요청하는 반론의 주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2011서울조정1325~1326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1. 이○○, 2. 박○○ 對 KBS-2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암보험금 노린 꽃뱀사기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0일자 08:00) • **KBS 홈페이지** : 『[뉴스 따라잡기] 암 보험금 뜯어낸 '꽃뱀'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경찰에 제공한 신청인들의 식당 전경 등이 녹화된 CCTV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2011서울조정1327~1330	(매체별 정정청구) (주)○○영천 對 MBC-TV(1327), iMBC(1328), SBS-TV(1329), SBS 홈페이지(1330)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기적의 물이라더니...』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1:00) • iMBC :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기적의 물이라더니...』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세균 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0:00) • SBS 홈페이지 : 『세균 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지하수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대구조정23	(정정청구) 우○○ 對 영덕신문사
조 정 대 상	『목욕탕 업주 간 감정싸움 타 지역까지 피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7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목욕탕 매매를 하면서 다시는 목욕탕운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보도와 목욕비 2천원~2천500원으로 인하해서 영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목욕탕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331~1332	(정정 · 손배청구) (주)○○닷컴 외 2인 對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동물농장' 스타강아지 '○○' 주인, 투자자 잘못만나 年20억에서 빈털터리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와 투자자들의 편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 설립자가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광주조정41~42	(정정 · 손배청구) 김평기 對 전남타임스
조 정 대 상	『[김재식 칼럼] 민주당 나주시 위원회가 한양이 무섭다고 과천부터 기어서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8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나주시의회 의장에게 민주당 탈당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구조정24~2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고○○ 對 경안일보, 인터넷 경안일보
조 정 대 상	『조폭과의 전쟁선포 하면 뭐하나?』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대구대학교 구 재단 대표인 신청인측 이사를 보호한 청년들이 조직폭력배나 용역이고, 이들이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도 없고,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이익이 없다.)

2011서울조정1333~13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장제원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조 정 대 상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1월 10일자 1면, 경향닷컴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철회한 '기간통신사업법 개정안'을 'SNS원천차단법안'이라 왜곡했고, 이 법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경향닷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2면, 경향닷컴 12월 11일자)

2011경기조정114~115	(정정 · 손배청구) 안○○ 對 반월신문
조 정 대 상	『안○○ 기자, 검찰에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문사 기자인 신청인이 현수막게시대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검찰에 고소 당한 상태인 것처럼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보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43	(정정청구) 김○○ 對 호남신문
조 정 대 상	『[정치클릭] '번영'이란? 폭력&불법』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모지역 번영회장인 신청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산림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35~1336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PD 수첩 프로그램 『어느 보도방 여성의 죽음』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2일자 23:15)
신청인주장	노래방 도우미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소유 노래방 상호를 3회나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37~1340, 1343~1347	(매체별 정정청구) 1. (주)○○영천 2. 김○○ 對 MBC-TV (1337), iMBC (1338, 1337과 병합), SBS-TV (1339), SBS 홈페이지(1340, 1339와 병합), KBS-1TV (1343), KBS 홈페이지 (1344), YTN (1345), 인터넷 YTN (1346, 1345와 병합), 연합뉴스(1347)
조 정 대 상	• **MBC-TV** : (1) MBC 뉴스 프로그램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2: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기적의 물' 세균 우글』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1:00) • **iMBC** : (1)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2)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기적의 물이라더니...』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 **SBS-TV** : (1) SBS 12 뉴스 프로그램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2:00) (2)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7:00) (3) SBS 8 뉴스 프로그램 『세균 지하수가 만병통치약?』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0:00) • **SBS 홈페이지** :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2)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3) 『세균 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2011년 10월 28일자) • **KBS-1TV** : KBS 뉴스5 프로그램 『지하수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7:00) • **KBS 홈페이지** :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 **YTN** : (1) 뉴스24 프로그램 『세균 오염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1:59) (2) 뉴스&이슈 프로그램 『세균 오염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3:59) • **인터넷 YTN** :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12억 원 상당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 **연합뉴스** :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제조, 판매, 유통하는 지하수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KBS 홈페이지**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YTN · 인터넷 YTN · 연합뉴스**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YTN · 인터넷 YTN** : YTN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뉴스&이슈 프로그램 4부 말미에 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되게 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함, 인터넷 YTN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연합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YTN** : 뉴스&이슈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3일자 13:59) • **인터넷 YTN**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3일자) • **연합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0일자)

2011광주조정44~4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최○○ 對 화순군민신문, 인터넷 화순군민신문
조 정 대 상	『[사설] 一魚濁水된 지역 언론계 이제는 淨水 돼야…』 제하의 기사 (화순군민신문 2011년 11월 15일자 1면, 인터넷 화순군민신문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사이비기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48	(반론청구) 함평군청 對 전남희망신문
조 정 대 상	『헉, 550억 빚으로 산단 조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1면)
신청인주장	함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550억원의 채무보증과 관련해 선이자와 커미션으로 92억원을 날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41	(반론청구) (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對 불교포커스
조 정 대 상	『불교, 정부의 수족이 될 건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불교조계종 핵심사업 대부분을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불교포커스 지역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불교, 정부의 수족이 될 건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5일자)

2011경기조정116~117	(정정 · 손배청구) 임○○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1) 『도면 한 장에 당한 용인시 '코미디 행정' 』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1면) (2) 『용인시 주먹구구식 행정 '빈틈' …혈세 쓰고도 돈내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가 소유지에 빗물관을 묻고 진입로를 포장하였다며 도면 한장을 들고 와 보상을 요구하자 용인시가 확인 절차 없이 보상해 주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중부일보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 조정대상기사 모두 삭제
이 행 결 과	『도면 한장에 당한 용인시 '코미디 행정' 보도 등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1년 12월 14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12월 14일자)

2011서울조정1342	(정정청구) 조○○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허준영 사장, 출판기념 사인회 갑자기 취소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추진한 코레일 사장의 교보문고 팬사인회를 허 사장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언급되거나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1경기조정118	(정정청구) ○○애드컴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1) 『안산 현수막 게시대 '제멋대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19면) (2) 『현수막 게시대 업체 '결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7일자 19면) (3) 『안산시, 불허방침 바꿔 위 · 수탁 계약 재연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며 불법 운영 및 구조 변경을 하고 안산시와 결탁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48~1349	(정정 · 손배청구) (주)○○○아시아퍼시픽그룹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미스아시아퍼시픽월드 미인대회』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2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최한 세계미인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충북조정45~46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 ○○○○농산(유) 對 충주KBS-1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충주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항암배추 어설픈 해명.. 자료 왜곡 인정』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1일자 21:00) • **KBS 홈페이지** : 『항암배추 어설픈 해명.. 자료 왜곡 인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항암배추 성분 표시가 과장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 신청인 단체가 반박하는 보도에서 신청인 단체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뉴스 자막과 보도에 잘못 표기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50~1353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한국현대사학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 '식민사관' 과 상통』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9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7일자) (2) 『[사설]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9월 27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회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과 상통"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2011서울조정1354~1357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이○○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편향된 역사교육 불보듯』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9일자 3면) • **인터넷 한겨레** : 『'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역사교육 거꾸로 간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8일자)
신청인주장	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 위원장인 신청인이 친일파 청산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 "'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역사교육 거꾸로 간다"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2011대구조정26	(정정청구) 최○○ 외 4인 對 대구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여중생 폭행으로 골절.. 교육계 '쉬쉬'』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중학생인 신청인들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학기초부터 따돌림을 시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58, 1444~1447	(매체별 정정청구) ○○학교 對 연합뉴스(1358), 뉴시스(1444), 아이비타임즈 코리아(1445), 티브이데일리(1446), 한강타임즈(1447)
조 정 대 상	• **연합신문** : 『울산시의원, "울산 대한학교서 비인권적 감옥체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 **뉴시스** : 『○○학교 대안교육 '감옥체험' 비인권적 교육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 『울산 대안학교 '학생감옥체험' 논란…두려움 · 수치심 '비교육적'』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6일자) • **티브이데일리** : 『학생 감옥체험 논란, '담배피면 감옥간다' 반성의 시간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6일자) • **한강타임즈** : 『울산 ○○학교, 학생 감옥체험 논란 '과연 올바른 교육방법인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부적응 학생들에게 비인권적 감옥체험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뉴시스 ·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 티브이데일리 · 한강타임즈**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울산 ○○학교 "비인권적 감옥체험 없었다"』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1년 12월 21일자)

2011서울조정1359~1362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KBS-1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1TV** :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무서운 점집의 두얼굴』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일자 19:30) • **KBS 홈페이지** : 『무서운 점집의 두얼굴』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굿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유발해 고액을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1강원조정14~1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우○○ 對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춘천 안보리 주민 집단 민원』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1년 7월 14일자 5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여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초기 화면에 2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뜨도록하며, 이후 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
이 행 결 과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1년 12월 22일자 5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12월 22일자)

2011경남조정169~17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함안군 對 경남연합일보, 시대일보
조 정 대 상	『함안, 철폐된 규제 시행 민원인들 큰 불편 호소』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1년 12월 1일자 1면, 시대일보 2011년 12월 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이 이미 철폐된 규제법규인 '경남도 산림개발 그린경남' 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규제는 2004년 이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남연합일보** : 『함안 철폐된 규제 시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5일자 1면) • **시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6일자 13면)

2011경남조정173~174	(정정 · 손배청구) 강○○ 對 경남도민신문
조 정 대 상	『부도난 병원장이 진주의료원장 응모』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6일자 4면)
신청인주장	진주중앙병원의 전 병원장인 신청인이 중앙병원을 부도내서 검찰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진주의료원장에 응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검찰조사와 무관하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최소 만 2일(4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상 주제목을 표시해서 게재, 주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반론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도 반론보도문(제목과 본문)을 삽입
이 행 결 과	『'진주의료원장 응모 전 중앙병원장'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6일자 4면)

2011서울조정1363~1365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고○○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백골사체 미스터리, 내 남편은 왜 죽었나?』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1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 및 반론보도, SBS 홈페이지에도 알림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말미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알림 및 반론보도문을 화면에 게시하고 낭독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함, SBS 홈페이지에 게시된 알림 및 반론보도문이 포함된 방송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 해당 영상에 딸린 하단 스크립트(방송 내용 소개글) 란에 알림 및 반론보도문의 텍스트 게재
이 행 결 과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백골사체 미스터리'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6일자 20:50)

2011서울조정1366	(손배청구) 정○○ 對 KBS-2TV
조 정 대 상	의로인K 프로그램 『딸을 죽도록 때리고 PT체조 시킨 아버지』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5일자 19:55)
신청인주장	아버지로 부터 학대 받는 학생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교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 기사삭제, 비보도 유감표시, 부제소) ※ 이행방법 : KBS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VOD) 서비스'에서 조정대상보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되, 'VOD서비스' 중지사유를 KBS 홈페이지의 의뢰인K 프로그램 메인화면 공지란에 게시

2011서울조정1367~137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우○○ 對 네이버(1367~1368), 네이트(1369~1370), 다음(1371~1372)
조 정 대 상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여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1서울중재111~113 참조)]

2011서울조정1373~137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죽은 사람이 '찬성'』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6일자 21:00) • iMBC : 『'결의서 위조' 뉴타운 조합··죽은 사람이 '찬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묻는 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77~1378	(정정 · 손배청구) 송영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송영길 시장, 라면도 안먹었다?…말뿐인 '청라입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시장인 신청인이 청라지구에 입주했다고 크게 홍보했으면서도 도시가스와 온수 사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연출된 쇼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79~1380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학교법인 ○○대학교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끝이 안 보이는 태고종 '종립대학' 운영권 다툼』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1년 제1153호 30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법인 소유의 ○○대학원 대학교가 '태고종 종립대학'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81~138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TV 갑론을박] 부모 유산 누가 갖나! 부모 모신 아들 vs 제사모실 큰 아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1일자 08:30) • iMBC : 『갑론을박1-유산 때문에 제수씨까지 폭행, 큰아들이니까 유산 마음대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가족 간 상속재산 분쟁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선친의 유언을 무시하고 상속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비보도 유감표시,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 iMBC : 조정성립(내용 : 비보도 유감표시, 부제소, 기사수정)

2011강원조정18	(정정청구) 횡성축산업협동조합 對 횡성신문
조 정 대 상	『횡성한우축제 이대로는 않된다 '불평 · 불만 드높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사회/통합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횡성한우축제에서 예정되었던 시식회는 하지 않고 한우고기 판매에만 몰두해 관광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횡성신문 인터넷판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횡성한우축제 이대로는 안 된다 '불평 · 불만 드높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6일자 6면)

2011서울조정1385~1386	(매체별 정정청구) 1. (주)○○가이엔씨, 2. 박○○ 對 SBS-TV, S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무늬만 한옥 마을』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9일자 20:00) • **SBS 홈페이지** : 『수입 목재에 아토피 유발…무늬만 한옥마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시공한 공주한옥마을에 일본산 목재나 아토피 유발 유리섬유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돼 무늬만 한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방송 중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계속 표시 • **SBS 홈페이지** :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SBS-TV의 이행방법과 동일) 이후 S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이 행 결 과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수입 목재에 아토피 유발 … 무늬만 한옥마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7일자 20:00) • **SBS 홈페이지** : 『[반론보도문] 단열재 유리섬유 아토피 유발 근거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7일자)

2011서울조정1387~139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KBS-2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 **KBS-2TV** : 의뢰인K 프로그램 『딸을 죽도로 때리고 PT체조시킨 아빠』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5일자 20:30) • **KBS 홈페이지** : 『(코너1) 10대 딸을 죽도로 때리고 PT체조시킨 아버지, 법원의 판결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된 신청인의 아버지가 신청인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훈육차원에서 벌을 준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 기사삭제, 비보도 유감표시)

2011서울조정1391~139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커뮤니케이션도어즈 對 CNB저널, CNB뉴스
조 정 대 상	• **CNB저널** : 『호텔 아트페어는 곱의 곱 장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4일자 54면) • **CNB뉴스** : 『[기자수첩]호텔에서 그림을 판다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호텔 객실에서 미술품을 전시 · 판매하는 '호텔 아트페어'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화랑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CNB뉴스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정정 및 반론보도] '호텔 아트페어는 곱의 곱 장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CNB저널 2012년 1월 20일자 54면, CNB뉴스 1월 20일자)

2011서울조정1393~1395	(매체별 정정청구) 경찰청 對 일요신문(1393), 인터넷 일요신문(1394), 뉴스페이스(1395)
조 정 대 상	• **일요신문** : 『11월 초 보고받고 한 달간 보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1일자 1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청와대 '디도스 사건' 은폐 의혹 전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4일자) • **뉴스페이스** : 『靑 'FTA 날치기' 전 11월초 '사이버테러' 알고도 은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이 최구식 의원 비서의 디도스 공격 사실을 10월말에 알고도 청와대의 요청으로 발표를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일요신문 · 인터넷 일요신문**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뉴스페이스** : 취하 (사유 : 일요신문이 정정보도하면 뉴스페이스도 정정보도 게재하기로 약속)

2011서울조정1396~1399	(매체별 정정청구) 이만희 對 일요신문(1396), 인터넷 일요신문(1397), 뉴스페이스(1398), 위키프레스(1399)
조 정 대 상	• **일요신문 :** 『11월 초 보고받고 한 달간 보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1일자 1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청와대 '디도스 사건' 은폐 의혹 전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4일자) • **뉴스페이스** : 『靑 'FTA 날치기' 전 11월초 '사이버테러' 알고도 은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4일자) • **위키프레스** : 『靑, 경찰에 '사이버테러' 입단속 지시 … 파문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디도스 사건과 관련하여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공씨가 개입되었다' 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일요신문 · 인터넷 일요신문 · 뉴스페이스**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위키프레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일요신문 · 인터넷 일요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2년 1월 4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신문 2011년 12월 22일자) • **뉴스페이스** : 『경찰청, 해당신문사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 정정보도 요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2일자) • **위키프레스** : 『11. 12. 15자 <靑, 경찰에 '사이버테러' 입단속 지시 … 파문 일파만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0일자)

2011서울조정1400~140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13일자 1면, 인터넷

조 정 대 상	한겨레 12월 13일자) (2) 『4대강 유지 · 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14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13일자) (3) 『4대강 유지 · 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14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상 4대강사업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1630억원인데, 이를 6125억원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24시간 동안 인터넷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정치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31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31일자)

2011부산조정35~36	(매체별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1) 『 '밑빠진 독' 되나 4대강 유지관리비 논란』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1년 12월 14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12월 14일자) (2) 『4대강 유지관리비 "연 6천억 원", 누구 '짐' 인가』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1년 12월 14일자 31면, 인터넷 부산일보 1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상 4대강사업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1630억원인데, 이를 6125억원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24시간 동안 인터넷 부산일보 홈페이지 경제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4대강 유지비'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1월 6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1월 6일자)

2011서울조정1402	(정정청구) 경찰청 對 인터넷 한겨레21
조 정 대 상	『[한겨레21 단독] "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이 최구식 의원 비서의 디도스 공격 사실을 10월말에 알고도 청와대의 요청으로 발표를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03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 억원 미스터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신청인주장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과 관련,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 업자로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음성도 변조하지 않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04~140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파티 對 KBS-1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 '개인정보 1건에 5천 원' 거래현장 포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12월 16일자 21:00, KBS 홈페이지 12월 16일자) (2) 뉴스라인 프로그램 『'개인정보 1건에 5천 원' 거래현장 포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12월 16일자 23:00, KBS 홈페이지 12월 16일자) (3) 뉴스광장 프로그램 『'개인정보 1건에 5천 원' 거래현장 포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12월 17일자 06:00, KBS 홈페이지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출산 관련 인터넷 정보 업체인 신청인이 회원정보를 건당 5천원에 불법거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내용의 공문 발송, 부제소)

2011서울조정1408~141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경기도 ○○○ 소무역 연합회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현장M출동> 현대판 밀수선…' 따이공'을 아시나요』 제하의 보도 (MBC-TV 2011년 11월 1일자 21:00, iMBC 11월 1일자)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현장M출동] 밀수선 배후는? 세관에 '정기적 뇌물'』 제하의 보도 (MBC-TV 2011년 11월 2일자 21:00, iMBC 11월 2일자)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세청, MBC보도 관련 '따이공' 집중 단속』 제하의 보도 (MBC-TV 2011년 11월 3일자 21:00, iMBC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평택항 국제여객선 노선을 통해 소상인인 '따이공'들이 불법 밀수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12~1414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1412), 네이버(1413), 다음(1414)
조 정 대 상	『<김정일 사망> 호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김정일 사망 관련 호외 신문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415~1430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1415~1416), 디지틀조선일보(1417~1418, 1415~1416과 병합), SBS-TV(1419~1420), SBS 홈페이지(1421~1422, 1419~1420과 병합), MBN(1423~1424), 인터넷 MBN(1425~1426, 1423~1424와 병합), BBS불교방송(1427~1428), 인터넷 BBS불교방송(1429~1430, 1427~1428과 병합)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도가니' 또 있었다 … 강릉선 교사, 경북선 이사장이 … 』

조 정 대 상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9일자 13면, 디지틀조선일보 2011년 9월 29일자) • **SBS-TV · SBS 홈페이지**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그 후』 제하의 보도 (SBS-TV 2011년 10월 15일자 23:00, SBS 홈페이지 10월 15일자) • **MBN · 인터넷 MBN** : MBN뉴스 프로그램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3일자 21:00, 인터넷 MBN 10월 3일자) • **BBS불교방송 · 인터넷 BBS불교방송** : 뉴스 파노라마 프로그램 『 '도가니' 피해 인화학교 뿐만이 아니었다』 제하의 보도 (BBS불교방송 2011년 10월 3일자 18:00, 인터넷 BBS불교방송 10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아 불기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디지틀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SBS-TV · SBS 홈페이지**: 조정성립 (내용 : SBS 홈페이지에 반론보도, SBS 홈페이지 기사삭제, 부제소) • **MBN ·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MBN 홈페이지 기사삭제, 부제소) • **BBS불교방송 · 인터넷 BBS불교방송**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SBS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방송다시보기 화면 중 내용설명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 MBN** : 1주일간 홈페이지 뉴스면 중앙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스크립트를 게재 • **인터넷 BBS불교방송** :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텍스트를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2면) • **디지틀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본지 2011년 9월 29일자 A13면 '도가니 또 있었다… 강릉선 교사, 경북선 이사장이…' 제하의 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 **SBS 홈페이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 **MBN** : MBN 뉴스 10 프로그램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3일자 22:00)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 **BBS불교방송** : 뉴스 파노라마 프로그램 『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3일자 18:00) • **인터넷 BBS불교방송** : 『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11충북조정47	(정정청구) 진천○○초등학교 對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어처구니없는 진천여중 · OO초』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1년 12월 1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기말시험 답을 밀려 쓴 학생의 답안을 정답 처리한 것으로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결 과	『[바로잡습니다] 'OO초 답 밀려쓴 학생답안 정답으로 처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1년 12월 28일자 2면, 충청매일 홈페이지 12월 28일자)

2011서울조정1431~143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조○○ 외 7인 對 태권도신문, 인터넷 태권도신문
조 정 대 상	• **태권도신문** : 『합기도장서 태권도 지도, 승품심사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2면) • **인터넷 태권도신문** : 『합기도장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고 관원들에게 승품심사를 받게 한 것이 불법이며, 승품심사비도 과도하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태권도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태권도신문** : 『"합기도장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종합면) • **인터넷 태권도신문** : 『[정정 및 반론 보도] "합기도장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2011서울조정1435~143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코리아 유한회사 對 KBS-TV, KBS 홈페이지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생명보다 돈이 먼저? 반려동물 불량 먹을거리 점검』 제하의 보도 (KBS-TV 2011년 12월 16일자 19:30, KBS 홈페이지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반려동물의 불량 사료 및 간식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KBS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정정내용을 게재)
이 행 결 과	『12월 16일자 반려동물 먹거리 방송 관련 공지』 제하의 기사 (KBS 홈페이지 2012년 1월 10일자)

2011서울조정1439~144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송○○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도가니 방지법 (다시)추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9일자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도가니 방지법 (다시)추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0일자 06:00) • **iMBC** : (1) 『복지시설 일제 조사 … '도가니 방지법' 마련』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9일자) (2) 『'도가니' 열풍 정치권까지 …정부, '도가니 방지법'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43	(정정청구) 장○○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4일자 12면)

신청인주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사이에 구체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보도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1448~1449	(매체별 정정청구) ○○건설(주) 對 뉴시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는 연천군 수해복구사업을 경쟁입찰시스템에 의해 수주했는데, 연천군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네이버** : 취하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뉴시스** : 홈페이지 전국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2년 1월 13일자)

2011서울조정1450~1451	(매체별 정정청구) 서울특별시교육청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교육청 감시할 시민감사관 "특정제품 도입하라" 압력』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10월 29일자 10면, 동아닷컴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이 교육청 정보화사업에 개입해 특정업체 제품을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49	(정정청구) 함평군청 對 전남희망신문
조 정 대 상	(1) 『안병호 군수 지지율 51.2% 지난 5월 대비 하락』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1면) (2) 『군민 48.3% "동함평산단 신중한 검토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신청인주장	함평군 현안에 대한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함평군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안병호 군수 지지율 51.2% …'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3일자 7면)

2011서울조정1452	(정정청구) ○○여객자동차(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버스회사 임직원들, 기사 '공갈 협박' 2억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1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임직원들이 기사들이 낸 사고를 버스공제조합보험금으로 처리하고도 합의금 명목으로 기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53	(정정청구) 이지형 對 신동아
조 정 대 상	『한국투자공사의 나랏돈 1조원 대 해외투자 손실 여권 내부에서 "정권 실세 외압 · 이권 의혹" 지적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7일자 82면)
신청인주장	한국투자공사의 1조원대 해외투자 손실 과정에 신청인이 개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신동아 홈페이지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동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메릴린치 투자 정권실세 개입 의혹'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2년 2월 21일자 82면, 신동아 홈페이지 2월 6일자)

2011서울조정1454~146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동아일보(1454~1455), 동아닷컴(1456~1457), 스포츠동아(1458~1459), 채널A(1460~1461)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강호동, 1988년 부산 칠성파-日 야쿠자 회합 참석』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1면) • **동아닷컴** : 『채널A, 강호동 23년 전 日야쿠자 행사 참석 단독 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 **스포츠동아** : 『강호동 조폭 연루 사실이었나? 채널A, 조폭행사 참여 동영상 공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23면) • **채널A** : (1) 굿모닝! 채널A 프로그램 『[굿모닝!]故김학용 감독, 강호동과 함께 야쿠자 모임 참석』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일자 07:00) (2) 뉴스830 프로그램 『씨름계 대부 故김학용 감독, 왜 야쿠자 모임에…』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일자 20: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수원파 조직폭력배 보스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스포츠동아 · 채널A**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주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채널A** : 굿모닝! 채널A 프로그램과 뉴스 830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방송 중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스포츠동아** : 『'부산 칠성파-日 야쿠자 회합'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월 13일자 2면, 동아닷컴 1월 13일자, 스포츠동아 1월 12일자 2면) • **채널A** : (1) 뉴스A 프로그램 『'부산 칠성파-日 야쿠자 회합'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5일자 22:00)

이 행 결 과	(2) 굿모닝! 채널A 프로그램 『'부산 칠성파-日 야쿠자 회합'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6일자 07:00)

2011서울조정1462~146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최○○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23년전 한 · 일 조폭 결연 참석 … 강호동의 해명 "감독님이 밥먹자 해 따라간 것 고교생인 내가 뭘 알았겠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3일자 12면) • **디지틀조선일보** : 『23년전 한 · 일 조폭 결연 참석 … 강호동의 해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수원파 조직폭력배 보스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디지틀조선일보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23년전 한 · 일 조폭결연참석' 기사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0일자 2면, 디지틀조선일보 1월 20일자)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1서울중재1~2	(정정 · 반론청구) 재단법인 ○○○○추모원 對 뉴스캔
중 재 대 상	『납골당을 담보물로 제공...경기도는 감사원 감사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법인(H 추모공원)이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게재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2011서울중재3~4	(정정 · 반론청구) 순창군 對 다음
중 재 대 상	(1)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 38억 행방 묘연』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2)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순창군이 관리하는 새농촌육성기금 중 38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하고 기금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2011서울중재5~1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중앙일보(5~6), 인터넷 중앙일보(7~8), 네이버(9~10), 네이트(11~12), 다음(13~14), 조인스엠에스엔(15~16)
중 재 대 상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조인스엠에스엔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학 입시를 포기했다가 중앙일보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처 리 결 과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 **조인스엠에스엔**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2면) • **인터넷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조인스엠에스엔** :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2월 15일자 8면 '한때 입시 포기 했던 ○○이…' 』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2011서울중재17~2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김○○ 對 네이버(17~18), 네이트(19~20), 다음(21~22), 야후(23~24), 파란(25~26)
중 재 대 상	『암각화 연구교수 '학생 성희롱' 혐의 '감사 파문' 』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다음 · 야후 · 파란 2011년 2월 22일자, 네이트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암각화학자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고 포괄적 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 모 씨의 탄원서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다음 2011년 3월 8일자,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파란 3월 11일자)

2011서울중재27~34	(매체별 추후청구) 1. ○○○교회, 2. 피○○ 對 오마이뉴스(27), 네이버(28), 네이트(29), 다음(30), 드림위즈(31), 야후(32), 파란(33), 뉴스앤조이(34)
중 재 대 상	• **오마이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1)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 『아동보호기관, 수차례 신고에도 왜 제대로 조사 못 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3)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 **뉴스앤조이**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의 목사가 위탁 · 양육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3)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 **드림위즈**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추후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 **뉴스앤조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 제목을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2011년 3월 18일자, 네이트 · 뉴스앤조이 3월 22일자)

2011서울중재35~36	(정정 · 반론청구) 안○○ 對 야후
중 재 대 상	『선생님이 망치로 때리고...속치마 벗으래요』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신청인주장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2011서울중재37~40	(매체별 추후청구) 김○○ 對 세계닷컴(37), 네이버(38), 네이트(39), 다음(40)
중 재 대 상	『가짜 관절염 특효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 **세계닷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 이어서 게시 •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동일기간까지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농수산 전 대표 무죄 판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2011서울중재41~4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이○對 네이버(41~42), 네이트(43~44), 야후(45~46)
중 재 대 상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회장인 신청인이 신규 개업 부동산 업소에 대해 친목회 가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3월 29일자 A12면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기사』 제하의 기사 (네이버 · 야후 2011년 4월 9일자, 네이트 2011년 4월 11일자)

2011서울중재47~50	(매체별 정정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네이버(47), 네이트(48), 야후(49), 파란(50)
중 재 대 상	(1) 『'유령상가'로 전락한 문정동 가든파이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는 SH공사 퇴직자 직장용?』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3) 『빚더미 SH공사,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처 리 결 과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반영 • **야후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SH공사 고액연봉, 가든파이브 유령상가 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2011서울중재51~58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네이버(51~52), 네이트(53~54), 다음(55~56), 야후(57~58)
중 재 대 상	『브로커 '파랑'과 직접 통화해보니』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파랑'이라는 닉네임으로 결혼중개업을 겸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 난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를 찾아주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2일자)

2011서울중재59~63	(매체별 정정청구) 황우석 對 네이버(59), 네이트(60), 다음(61), 야후(62), 파란(63)
중 재 대 상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보도문 게시 • **야후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야후

처 리 결 과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정정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2011서울중재64~68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64), 네이버(65), 네이트(66), 다음(67), 파란(68)
중 재 대 상	『여성 '몰카' 찍은 대학생의 황당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검찰, 여성 몰카 대학생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2011서울중재69~73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69), 네이버(70), 네이트(71), 다음(72), 파란(73)
중 재 대 상	『여성 다리만 골라 몰카 2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여성 다리 몰카' 20대,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2011서울중재74~78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법인 전국○○○○○협회 對 네이버(74), 네이트(75), 다음(76), 야후(77), 파란(78)
중 재 대 상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인력 중개업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2011서울중재79~83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네이버(79), 네이트(80), 다음(81), 야후(82), 파란(83)
중 재 대 상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학원이 있다는 보도에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의 IT직업전문학교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6월 17일자 A17면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 수단으로' 』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다음 · 야후 · 파란 2011년 7월 15일자, 네이트 7월 16일자)

2011서울중재84~89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경찰청 對 네이버(84~85), 네이트(86~87), 다음(88~89)
중 재 대 상	(1) 『'잠깨스' … '앞뚫' … 전 · 의경도 '왕따 악습' 』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2) 『전의경도 '기수 폐단' … 40년간 가혹행위 '뿌리' 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신청인주장	전의경부대에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1서울중재90~94	(매체별 정정청구) 1. 인민일보 서울지국, 2.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 대표처 對 뉴시스(90), 네이버(91), 네이트(92), 다음(93), 야후(94)
중 재 대 상	『중국기자 "힘없는 한국이…" 아리랑 관련 막말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통신사 소속 기자가 한국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8시간 이상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처 리 결 과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을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섹션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도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런민르바오 기자, '아리랑' 관련 막말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5일자)

2011서울중재95	(손배청구) 최○○ 對 경향신문
중 재 대 상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2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170만원)

2011서울중재96	(반론청구) 남○○ 對 YTN
중 재 대 상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부산] 돈 떼먹은 자갈치 '큰 손' … 수협 '휘청'』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5:00)
신청인주장	부산시 수협 과장인 신청인이 불법대출 등으로 부산시 수협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3시 방송되는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다른 뉴스와 동일한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중재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돈 떼먹은 자갈치 큰손, 수협 휘청'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4일자 15:00)

2011서울중재97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네이트
중 재 대 상	『웹해킹으로 러시앤캐시 고객정보 빼내』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문자메시지 서버를 경유해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었을 뿐인데 마치 신청인 회사가 해킹 피해를 입어 메시지가 발송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기사수정)

2011서울중재98~102	(매체별 정정청구) 1.인천십사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이연택 對 네이버(98), 네이트(99), 다음(100), 야후(101), 파란(102)
중 재 대 상	(1) 『이래갖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제대로 하겠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2)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호화청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대회 흥행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호화청사로 이전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 (1), (2)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을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야후코리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도 반론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인천 AG조직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1일자)

2011서울중재103~10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최○○ 對 네이트, 다음
중 재 대 상	『[Why] 김수철도 모르는 김수철 이문세도 모르는 이문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가 발매한 '올 댓 마스터피스' 라는 음반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뮤지션들에게는 1원도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음반의 음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반영
이 행 결 과	『'올 댓 마스터피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트 2011년 12월 2일자, 다음 11월 26일자)

2011서울중재107~110	(매체별 정정청구) (주)○○○씨 對 네이버(107), 네이트(108), 다음(109), 파란(110)
중 재 대 상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과일즙 당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카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잘못 보도해, 국내 유일의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한겨레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을 게시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 목록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중재대

처 리 결 과	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반영,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사카린 나트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011서울중재111~113	(매체별 정정청구) 우○○ 對 네이버(111), 네이트(112), 다음(113)
중 재 대 상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여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강원도민일보)가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에 게시한 정정보도문을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2일자)

제5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신 청 인	대상매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사례번호	면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디지틀조선일보	2011서울조정15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	64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디지틀조선일보	2011서울조정16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1	64
고 ○ ○	제 주 일 보	2011제주조정1	손 배	취 하		사례42	248
고 ○ ○	S B S - T V	2011서울조정1363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5	187
고 ○ ○	S B S - T V	2011서울조정1364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25	187
고 ○ ○	S B S - T V	2011서울조정1365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25	18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 산 일 보	2011부산조정1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5	82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간 조 선	2011서울조정465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0	111
국회교섭단체민주당	조 선 일 보	2011서울조정1067	정 정	기 각 결 정		사례18	149
김 남 수	S B S - T V	2011서울조정61	정 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4	77
김 ○ ○	S B S - T V	2011서울조정697	손 배	기 각 결 정		사례30	213
김 ○ ○	M B N	2011서울조정1423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6	193
김 ○ ○	M B N	2011서울조정1424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26	193
김 ○ ○	K B S - 1 T V	2011서울조정69	손 배	기 각 결 정		사례38	235
(ㄴ)							
노 ○ ○	C N B N E W S	2011서울조정1165	추 후	조 정 성 립		사례20	160
노 ○ ○	C N B N E W S	2011서울조정1166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20	160
(ㄷ)							
동 두 천 경 찰 서	민 중 의 소 리	2011서울조정1203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1	165
(ㅂ)							
박 장 규	중 앙 일 보	2011서울조정75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6	87
박 장 규	중 앙 일 보	2011서울조정76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6	87
박 장 규	중 앙 일 보	2011서울조정77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6	87
박 ○ ○	M B C - T V	2011서울조정1031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3	222
박 ○ ○	대전MBC-TV	2011대전조정6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8	101
박 ○ ○	대전MBC-TV	2011대전조정7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8	101
박 ○ ○	디 오 데 오	2011서울조정1047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9	239
방 ○ ○	K - T V	2011서울조정1220	손 배	기 각 결 정		사례35	226

신 청 인	대상매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사례번호	면
부 안 김 씨 대 종 회	주 간 조 선	2011서울조정58	반 론	조 정 성 립		사례3	72
(ㅅ)							
서 ○ ○	노 컷 뉴 스	2011서울조정547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4	130
서 ○ ○	노 컷 뉴 스	2011서울조정548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14	130
서울특별시교육청	동 아 일 보	2011서울조정645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5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동 아 닷 컴	2011서울조정646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5	134
송 명 근	S B S - T V	2011서울조정40	정 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례2	67
(ㅇ)							
엄 ○ ○	파 인 뉴 스	2011광주조정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41	245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식회사	머 니 투 데 이	2011서 울 조 정387	정 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례9	105
○○○교회 외 1인	오 마 이 뉴 스	2011서울중재27	추 후	중 재 결 정		사례28	202
외 교 통 상 부	한 겨 레	2011서울조정1128	정 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19	155
원 ○ ○	t v N	2011서울조정502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12	123
원 ○ ○	t v N	2011서울조정503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12	123
유한킴벌리주식회사	한 겨 레 2 1	2011서울조정226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7	93
이 ○ ○	t v N	2011서울조정1049	손 배	취 하		사례34	224
이 ○ ○	연 합 뉴 스	2011서울조정1412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6	229
이 ○ ○	중 앙 일 보	2011서울중재5	정 정	중 재 결 정		사례27	197
이 ○ ○	중 앙 일 보	2011서울중재6	반 론	중 재 결 정		사례27	197
이 ○ ○	S B S - T V	2011서울조정882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31	217
이 ○ ○	S B S - T V	2011서울조정883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1	217
1.이○○, 2.박○○	K B S - 2 T V	2011서울조정1325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40	241
1.이○○, 2.박○○	KBS홈페이지	2011서울조정1326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40	241
(ㅈ)							
정○○ 외 385명	인터넷미디어오늘	2011서울조정499	정 정	기 각 결 정		사례11	117
정○○ 외 385명	인터넷미디어오늘	2011서울조정500	손 배	기 각 결 정		사례11	117
정 ○ ○	M B C - T V	2011서울조정893	손 배	조 정 성 립		사례32	220
정 ○ ○	남 해 뉴 스	2011경남조정83	정 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17	141
정 ○ ○	남 해 뉴 스	2011경남조정84	손 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17	141
㈜○○○아일랜드	신 대 한 N E W S	2011서울조정1226	정 정	취 하		사례22	170
㈜ 제 이 ○ ○	인터넷 한겨레	2011서울조정1308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3	175
(ㅊ)							
최 ○ ○	경 향 신 문	2011서울중재95	손 배	중 재 결 정		사례37	231
(ㅎ)							
한 국 현 대 사 학 회	한 겨 레	2011서울조정1350	정 정	조 정 성 립		사례24	179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번호	면
한국현대사학회	한겨레	2011서울조정1351	반론	조정성립		사례24	179
한국현대사학회	인터넷 한겨레	2011서울조정1352	정정	조정성립		사례24	179
한국현대사학회	인터넷 한겨레	2011서울조정1353	반론	조정성립		사례24	179
해병대사령부	SBS-TV	2011서울조정530	정정	취하		사례13	127
허○○	KBS-2TV	2011서울조정658	정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례29	209
허○○	KBS-2TV	2011서울조정659	손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례29	209
황우석	한경닷컴	2011서울조정735	정정	조정성립		사례16	138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 울

*주 소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언론피해상담: 02) 397-3000, 3010, 3100, 3110
*홈페이지 : www.pac.or.kr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트 위 터 : www.twitter.com/pac_news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 역

■ 중부본부_중부본부장 ☎ 031)211-9027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442-835
☎ 031)211-9027,9022/FAX 031)212-0223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302-220
☎ 042)525-0778~9/FAX 042)525-0768

충북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산남동 657)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361-160
☎ 043)286-8083,8081/FAX 043)286-8084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200-030
☎033)255-2878~9/FAX 033)255-2872

■ 영남본부_영남본부장 ☎ 051)759-7083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613-120
☎ 051)759-7083~4/FAX 051)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706-040
☎ 053)763-0020~1/FAX 053)763-0242

경남사무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641-826
☎ 055)263-1787,1780/FAX 055)263-1769

■ 호남본부_호남본부장 ☎ 062)676-0360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503-310
☎ 062)676-0360~1/FAX 062)676-0362

전북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560-040
☎ 063)288-0010,0981/FAX 063)288-0980

제주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5길 6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690-825
☎ 064)722-3328,3352/FAX 064)726-3201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2012년 5월 18일 제작
2012년 5월 22일 발행

편저_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발행_언론중재위원회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FAX:상 담 센 터 02)397-3089